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金準東 · 金洪起 · 朴大槿 · 辛星煥 · 楊斗鏞
吳奎澤 · 李準擘 · 李炯根 · 小川英治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金準東 · 金洪起 · 朴大權 · 辛星煥 · 楊斗鏞
吳奎澤 · 李準曄 · 李炯根 · 小川英治

발간사

세계경제의 무역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의와는 담을 쌓고 지냈던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FTA 체결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기에 모색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통상대국의 꿈을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저희 경제사회연구회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우리 경제 운영에 중·장기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한·중·일 FTA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초부터 이 연구에 필요한 연구재원을 확보하고, 2002년 하반기에 이 연구를 주관할 연구기관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2002년 말 중국의 주룽지 당시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검토를 제안함으로써 저희 연구회의 연구주제 선정이 시의성이나 내용 면에서 바람직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매년 10권 내외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연구 첫해인 2003년에는 한·중·일 FTA 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2004년에는 각 산업 및 분야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연구하며, 연구 마지막 연도인 2005년에는 한·중·일 FTA 추진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2003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 첫해에는 9권의 보고서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연구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04년부터는 참여 연구기관의 수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연구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협동연구에 참여한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진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훌륭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연구회의 玉台煥 사무국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鄭仁敎 FTA 연구팀장은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협동연구의 보고서가 한·중·일 FTA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방향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文石南

2003년도 한·중·일 FTA 협동연구 보고서 제목

보고서 시리즈 번호	보고서 제목	집필 책임기관
03-01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2003년 연구의 주요 결과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3-02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3-03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산업연구원
03-04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03-05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03-06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개발 연구원
03-07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3-08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3-09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서 언

최근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국가를 비롯하여 일본 등은 동아시아지역 내 국가는 물론 미국, 멕시코, EU 등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 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최종 승인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은 협정대상국간의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의 추세를 살펴보면 단순히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한 협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교역재로 인식되어 온 서비스 부문의 국경간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상품거래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체결국간의 시장통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단일시장의 형성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럽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 시장, 특히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하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의 효율적인 협상은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체결국간의 무역 활성화는 무역, 금융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상호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 위기 이후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금융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인 금

용 부문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고, 금융규제를 정비하고, 국제적 적합성에 맞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은 각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적 적합성을 상호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금융선진화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상범위가 매우 포괄적일 수 있다는 데 기인합니다.

쌍무간 자유무역협정하에서는 WTO 금융서비스 협상 범위를 넘어서 금융감독 규제와 통합화, 자본거래 규제의 차별적인 예외 적용 등 그 협상범위는 체결국 상호간에 합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한 협상은 단순히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개방화 및 확실적인 자유화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우리의 국제금융센터의 육성 계획은 한·중·일 금융서비스 협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센터와의 상호연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혼자만 국제금융센터가 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즉 국제적인 투자가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고, 국제적 금융거래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나아가서 동아시아 주요 금융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 투자가가 국내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공존의 원칙하에서 동아시아 금융네트워크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결국 국내 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장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금융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 자유무역 협상의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이거니와 한·중·일 3국이 처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3국의 자유무역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상 방향과 주요의제가 협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양두용 연구위원, 김준동 선임연구위원, 이형근 전문연구원이 서론(1장),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주요 검토사항(2장),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 비교(4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5장),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6장)을 집필하였고, 한양대 박대근 교수, 중앙대 오규택 교수, 홍익대 신성환 교수가 한국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히토쓰바시(一橋大学) 대학 Eiji Ogawa(小川英治) 교수가 일본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한남대 이준엽 교수와 한남대 김홍기 교수가 중국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Ogawa 교수의 일문 논문은 이형근 전문연구원이 번역을 담당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완성되기까지 연구 심의를 맡아주신 숙명여대 이영섭 교수,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홍영만 과장,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형도 연구위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앞으로 진행될 한·일 자유무역협정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의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협상에서 유용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03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중·일 FTA에서의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 내용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연구는 당연히 한·중·일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각국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도적 규제사항 및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한·중·일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국별로 금융서비스 산업, 즉 은행, 증권, 보험 및 투신업 분야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기초로 해서 한·중·일 3국의 주요 금융서비스 기관의 경쟁력을 추정하였고, 국제적인 금융서비스 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한·중·일 FTA에서의 금융서비스 협상 주요의제를 분석하고, 이를 향후 협상의 의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금융서비스 시장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증권, 보험의 경우 모두 규모면에서 세계 우수기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겸업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 구현에 있어서도 국내 금융기관은 세계 우수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낮다. 은행의 경우 최근 수익성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증권 및 보험 등에서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대형화 및 겸업화의 미흡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영업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 및 증권의 자산운영 및 영업형태를 보면, 위험한 투자를 꺼리고 안정적인 투자에 아직

도 치중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국제적 정합성의 확립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은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국내 금융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은 국내 금융 규제 선진화 및 금융 하부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의 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가능할 것이나, 일부 자본 거래제한조치와 감독체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은행 중심의 금융중개기관을 경유하는 간접금융이 우위에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자금순환계정표를 보면, 국내 비금융부문의 자금조달잔고 가운데 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버블 붕괴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때문에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1990년대의 버블붕괴 이후 부실채권의 증가에 따라 대차대조표(balance sheet)가 악화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악화는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대출이 기피되면서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의 악화 때문에, 간접금융 우위인 일본의 금융시스템 전체가 기능저하 상태에 빠져 있다. 금융기관·금융시스템의 기능저하로 인해 일본의 국내 금융기관·금융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금융시스템에 대한 평가 저하에 따라 일본 금융기관은 자금조달과 관련해 리스크 프리미엄(Japan premium)을 요구받게 된다. 금융기관·금융시스템의 기능저하와는 별도로, 1980년대 후반의 버블기부터 일본 국내의 발행기관과 국내 기관투자

가가 동경 금융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유로채 시장을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금융산업은 실물부문의 성장을 초과하는 급속한 팽창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과정에서 금융산업의 경영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는 수반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산업에 만연한 비효율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WTO 가입으로 인한 개방은 중국 금융산업에 커다란 충격으로 인식되어 최근 몇 년간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효율성은 일정 정도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업의 경우 4대 국유상업은행의 독점체제가 타파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의 수익성은 민영은행에 비하여 매우 떨어지고 있다. 또한 국유상업은행에 누적된 천문학적 규모의 부실채권의 처리가 은행부문의 당면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유상업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4개 자산관리공사의 신설을 통한 부실채권의 처리와 더불어 주식회사제로의 개조 및 주식시장 상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 역시 국유보험회사에 의한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저금리와 신생 민영 보험회사들과의 경쟁격화로 파생된 이자율역마진은 보험업계 전반의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업의 경우 증권업계 전반에 만연한 편법경영과 1999년 이후의 주식시장 침체로 상당수 증권회사들이 적자경영에 직면하여 있다. 열악한 증권회사의 경쟁력과 해외자금의 유입 필요성이라는 모순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외국 기관투자자의 자격조건을 규정한 QFII 제도를 통한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신탁업의 경우 1990년대 후반 광동투자신탁의 파산으로 인한 신탁업의 대대적인 정리정돈이 실시되었다. 2001년 <신탁법>의 공포와 이에 근거한 모든 신탁회사에 대한 재심사, 영업허가 및 등록이 2002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신탁회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서는 향후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추정해본 결과,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의 상대적 경쟁력은 모든 부문에서 일본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그리고 중국순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중·일 3국의 국경간 금융상품거래가 미미하고, 각국의 금융서비스기관의 상호 시장 진출이 미미한 원인은 한·중·일 금융서비스 기관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한·중·일 3국 금융서비스 부문의 국제경쟁력 미흡은 한·중·일 FTA의 금융서비스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방을 차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쉽게 개선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현재 한·중·일 3국의 WTO 양허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3국간 또는 양자간 차별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한·중·일 금융서비스 기관의 상호 진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3국의 금융서비스 기관이 국내 시장에 한정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산조달 및 운영에 있어서도 국내 시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중·일 3국 금융서비스의 상호 진출과 국경간 거래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한·중·일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해 각국 금융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고, 각국의 금융국제화를 촉진시키고, 국제적 경쟁력을 상호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금융서비스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금융서비스 협상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금융서비스 협상은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더욱 확대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는 지역무역협정의 기본 골격을 구성한다. 그러나 보다 많은 무역 및 투자의 국경간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의 원활한 국경간 거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금융서비스 협상은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상은 체결국간의 자본시장 연계를 통해 단순한 금융서비스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시장의 국경간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통합을 보다 가속화시키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장통합을 위한 자본시장의 연계 및 통합, 규제 **harmonization**, 그리고 시장 인프라의 협력 등 다양한 자본시장의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각 부분의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3국간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기구를 설립하고, 향후 각 부분의 실질적인 시행조치를 위한 금융서비스 행동계획(**Financial Service Action Plan**)을 설정하고 이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차 례

발간사	5
서언	7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27
1. 한·중·일 FTA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29
가. 한·중·일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	29
나. 다자간 금융서비스협상의 한계극복 및 금융 선진화에의 기여	33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주요 검토사항	38
1. 금융서비스 부문의 설정 및 기재방식	38
2. 주요 항목의 검토	40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40
나. 내국민대우	41
다. 최혜국대우	41
라. 시장접근	42
마. 국경간 거래	43

바. 투명성	44
사. 분쟁해결기구	45
아. 신금융서비스	46
자. 적용대상 제외	47
차. 신규조항	47

제3장 한·중·일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 49

1. 한국	49
가. 한국 금융서비스 현황 및 특징	49
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규제 현황	87
2. 일본	100
가. 일본 금융산업의 현황	100
나. 분야별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과 계획	134
3. 중국	149
가.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과정	149
나.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및 특징	159
다.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및 규제 현황	203

제4장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 비교 214

1. 한·중·일 금융기관별 경쟁력 비교	215
가. 은행	215
나. 증권업	224
다. 보험회사	228
라. 투자신탁회사	234
2.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236
가. 은행	236
나. 증권	237
다. 보험업	238

라. 투자신탁업	240
3. 소결	241
제5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243
1.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243
2. 금융서비스 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245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246
나. 시장접근	247
다. 국경간 거래	247
라. 신금융서비스	248
마. 분쟁해결기구	250
바. 적용대상 제외	250
사. 신규조항	250
3.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251
가. 자본시장 연계 및 통합	254
나. 규제협력	257
다. 시장 인프라 협력	260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65
참고문헌	269
부 록	271
1. 일·한 자유무역협정 -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검토	273
2. 日本金融サービス産業の現状と特徴	277
Executive Summary	337

표 차례

<표 1-1> 한·중·일의 관세율 현황(단순평균실행관세율 기준)	30
<표 1-2> 전세계 및 한·중·일의 서비스 무역 규모(1999)	31
<표 1-3> 한·중·일의 총 무역액 중 서비스 무역의 비중(1999)	31
<표 1-4> 전세계 및 한·중·일의 금융(보험 포함) 서비스 교역 현황(1998)	32
<표 1-5> 한·중·일의 WTO 금융서비스 분야 개방 정도(1997)	35
<표 3-1> 국내 은행의 업무범위	53
<표 3-2> 국내 일반은행의 수익성 추이	57
<표 3-3> 국내 일반은행의 자금조달 추이	59
<표 3-4> 국내 외은지점의 자본조달 형태(2001)	59
<표 3-5> 국내 증권사 주요지표(규모)	63
<표 3-6> 국내 증권사와 세계 4대 증권사의 규모 비교	65
<표 3-7> 증권회사의 업무영역	65
<표 3-8> 국내 증권사의 이익구조 추이	67
<표 3-9> 삼성증권과 메릴린치의 순영업수익 구성비(%)	68
<표 3-10> 국내 증권사의 자본운영 추이	71
<표 3-11> 국내 증권사의 자본조달 추이	72
<표 3-12> 국내 증권사의 자본조달비중 추이	73
<표 3-13> 국내 보험사 현황(2002)	74
<표 3-14> 국내 손해보험사 상품별 수입보험료 추이	76

<표 3-15>	국내 생보사의 자금운영 추이	80
<표 3-16>	국내 손보사의 자금운영 추이	80
<표 3-17>	국내 투자신탁운영사의 주요지표	82
<표 3-18>	한국과 미국의 펀드 유형별 비교	83
<표 3-19>	국내 금융기관 경쟁력 평가	84
<표 3-20>	국내 외국계 금융회사 진출 현황	91
<표 3-21>	외국계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 추이	91
<표 3-22>	국내 금융서비스의 대외개방 현황	91
<표 3-23>	국내 규제의 영역 및 제한사항	100
<표 3-24>	국내시장을 통한 국내 비금융부문의 자금조달잔고	101
<표 3-25>	일본 금융빅뱅의 진전상황	104
<표 3-26a>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조기시정조치	107
<표 3-26b>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비율	107
<표 3-26c>	보험회사의 조기시정조치 제도	108
<표 3-27>	전국 은행의 자산구조	111
<표 3-28>	전국 은행의 대출·예금상황	113
<표 3-29>	전국 은행의 부실채권액	115
<표 3-30>	정부계 금융기관의 자산	117
<표 3-31>	정책대출의 비율	118
<표 3-32>	전국 은행의 부채구조	119
<표 3-33>	외화기준 차입	121
<표 3-34>	주식시가 총액·회전을	125
<표 3-35>	외국인의 비율	126
<표 3-36>	보험금 총액	128
<표 3-37a>	생명보험 상품	129
<표 3-37b>	손해보험상품	131
<표 3-38a>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132

<표 3-38b>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133
<표 3-39>	외국은행의 자금조달	134
<표 3-40>	외국은행의 자산운용	135
<표 3-41>	외국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138
<표 3-42>	외국 증권회사의 자금운용	138
<표 3-43>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140
<표 3-44>	외자계 생명보험회사	141
<표 3-45>	일본 금융서비스의 약속 분야	143
<표 3-46>	중국의 금융기관체제(2001년 말 현재)	151
<표 3-47>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	153
<표 3-48>	예대금리차	157
<표 3-49>	은행의 업무영역	162
<표 3-50>	자금조달 추이	167
<표 3-51>	자금운영 추이	168
<표 3-52>	4대 국유은행 + 주식제 상업은행	169
<표 3-53>	중국 은행별 자산 및 시장비중	170
<표 3-54>	중국 은행별 대출 및 시장비중	171
<표 3-55>	중국 각 은행별 예금 및 시장비중	173
<표 3-56>	중국 4대 국유상업은행의 자산 및 경영 현황	174
<표 3-57>	중국 10대 주식제 상업은행의 자산 및 경영 현황	175
<표 3-58>	증권회사 규모 및 수익 현황	180
<표 3-59>	증권회사 업무영역	181
<표 3-60>	증권회사 대차대조표(1999)	183
<표 3-61>	중신증권(中信證券) 자산 및 경영 현황	184
<표 3-62>	굉원증권(宏源證券) 자산 및 경영 현황	184
<표 3-63>	중국 보험시장의 성장	186
<표 3-64>	중국의 보험회사 수	187

<표 3-65> 중국 보험회사의 경영 현황(보험업 전체)	187
<표 3-66> 중국의 보험업 자산규모	188
<표 3-67> 중국의 생명보험업 규모	189
<표 3-68>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성격 및 점유율(2001)	190
<표 3-69> 주요 손해보험회사	191
<표 3-70> 손해보험 상품판매 현황	194
<표 3-71> 2001년 주요 생명보험회사 수익률	196
<표 3-72> 2001년 주요 생명보험회사 수익 현황	196
<표 3-73> 2대 손해보험 수익 현황	197
<표 3-74> 손해보험회사 수익 현황	197
<표 3-75> 생명보험 자산운영비율	198
<표 3-76> 주요 생명보험회사 배상능력	199
<표 3-77> 손해보험회사 최저배상준비금과 실제배상준비금(2001)	199
<표 3-78> 중국인수보험공사 자산 및 경영 현황	200
<표 3-79> 중신증권 자산 및 경영 현황	200
<표 3-80> 핑원증권 자산 및 경영 현황	201
<표 3-81> 외국계 은행의 성장	205
<표 3-82> 주요 은행별 지점설치 현황(2001년말 기준)	205
<표 3-83> 주요국별 외국계 은행 진출 현황(2001년말 기준)	205
<표 3-84> 주요 지역별 외국계 은행 지점설치 현황(2001년말 기준) ..	206
<표 3-85> 은행부문 WTO 양허안	209
<표 3-86> 증권시장 개방일정	211
<표 3-87> 보험시장 개방일정	212
<표 4-1> 한·중·일의 은행 총자산 현황	216
<표 4-2> 한·중·일의 GDP 대비 은행자산 비율	216
<표 4-3> 한·중·일의 국내 은행 수	217
<표 4-4> 한·중·일의 은행 임직원 현황	218

<표 4-5> 한·중·일의 은행당 임직원 수	218
<표 4-6> 한·중·일 은행의 이익구성 추이	220
<표 4-7> 한·중·일 은행의 ROA 현황	221
<표 4-8> 한·중·일 은행의 ROE 현황	222
<표 4-9> 한·중·일 은행의 당기순이익 현황	222
<표 4-10> 한·중·일 은행의 당기순이익 현황	222
<표 4-11> 한·일 은행의 BIS 비율 현황	222
<표 4-12> 한·중·일 은행 해외지점 현황	224
<표 4-13> 한·중·일의 증권업 규모	224
<표 4-14> 한·중·일의 GDP 대비 증권업규모 비교	225
<표 4-15> 한·중·일 증권사와 세계 4대 증권사의 규모 비교	225
<표 4-16> 한·중·일 증권사의 이익구조	226
<표 4-17> 한·일 증권사의 이익구조 추이(2002년 기준)	227
<표 4-18> 한·중·일 증권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비교	227
<표 4-19> 한·중·일 보험사의 자산 현황	229
<표 4-20> 한·중·일 보험사의 GDP 대비 자산 현황	229
<표 4-21> 한·중·일 보험사 현황(2002년 기준)	230
<표 4-22> 한·중·일 보험사의 수익성 현황(2001)	231
<표 4-23> 한·일 생보사의 자금운영 추이(2002)	232
<표 4-24> 한·일 손보사의 자금운영 추이(2002)	233
<표 4-25> 한·중·일 투자신탁회사 비교	234
<표 4-26> 한·미·일 펀드 유형별 비교	235
<표 4-27>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242
<표 5-1> 국내 외국인 주식투자현황(2003. 8)	252
<표 5-2> 일본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253
<표 5-3> 일본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253
<표 5-4> 주요 선진국의 거래소 통합 현황	255

<표 5-5> Euroclear의 주요 결제통화	261
<표 5-6> Euroclear 결제 연계 국가	262
<표 5-7> 아시아 각국의 국제결제시스템 현황	264
<부표 1> 중국 공상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322
<부표 2> 중국 농업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323
<부표 3> 중국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324
<부표 4> 중국 건설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325
<부표 5> 교통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326
<부표 6> 중신(中信)실업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327
<부표 7> 광대(光大)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328
<부표 8> 화하(華夏)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329
<부표 9> 민생(民生)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330
<부표 10> 초상(招商)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331
<부표 11> 광둥발전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332
<부표 12> 심천발전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333
<부표 13> 복건흥업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334
<부표 14> 상해포동발전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335

그림 차례

<그림 1-1>	국내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활성화의 필요성	33
<그림 1-2>	WTO 금융서비스의 한계와 RTA의 활용	37
<그림 1-3>	적극적 RTA 금융서비스 협상과 금융서비스 경쟁력	37
<그림 3-1>	국내은행 총자산 추이	50
<그림 3-2>	국내은행의 고유계정 자산규모 추이	50
<그림 3-3>	국내은행의 신탁계정 자산규모 추이	51
<그림 3-4>	국내은행의 임직원 추이	52
<그림 3-5>	국내은행의 지점 수 추이	52
<그림 3-6>	국내 일반은행의 수익구조	54
<그림 3-7>	국내 일반은행의 이익구성 추이	55
<그림 3-8>	주요국 순이자 마진 비교(2001)	57
<그림 3-9>	국내 일반은행의 자금조달 추이	58
<그림 3-10>	국내 일반은행의 자본운영 추이	60
<그림 3-11>	주요국 은행의 자산운영 비교(2002)	61
<그림 3-12>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사무소, 현지법인 추이	62
<그림 3-13>	국내 증권회사의 자본금 추이	64
<그림 3-14>	국내 증권사와 국내 외국증권사와의 수익구조 비교	67
<그림 3-15>	국내 증권사의 수익률 추이	70
<그림 3-16>	국내 증권사의 자산운영구조 추이	71
<그림 3-17>	국내 보험사의 자산규모 추이	74
<그림 3-18>	국내 생명회사의 상품별 보험계약 추이	75
<그림 3-19>	국내 생보사의 영업이익 추이	77

<그림 3-20> 국내 손보사의 영업이익 추이	78
<그림 3-21> 국내 보험사의 자기자본수익률(ROE) 추이	79
<그림 3-22> 세계 주요 보험사의 자산운영 현황(2002)	81
<그림 3-23> 전국 은행 수	112
<그림 3-24> 은행의 예대금리차	114
<그림 3-25> 전국 은행의 대출구조	116
<그림 3-26> BIS 비율	120
<그림 3-27> 단순자기자본비율	121
<그림 3-28> 운영경비율	122
<그림 3-29> 점포·인원 수	123
<그림 3-30> 증권회사 수	124
<그림 3-31> 영업활동	126
<그림 3-32> 보험회사 수	127
<그림 3-33> 대출·예금 비율	136
<그림 3-34> 외국 증권회사의 일본내 지점 수	137
<그림 3-35> 외자계 생명보험 회사 수	140
<그림 3-36> 중국의 금융발전	154
<그림 3-37> 금융기관 대출 총액	154
<그림 3-38> 은행의 자산변동	154
<그림 3-39> 실질이자율	156
<그림 3-40> 자산규모 변동 추이	160
<그림 3-41> 직원 수 변동 추이	161
<그림 3-42> 은행의 지점 수 변동 추이	161
<그림 3-43> 은행의 수익구조	163
<그림 3-44> 국유상업은행의 수익구조	163
<그림 3-45> 주식제 은행의 수익구조	164
<그림 3-46> 영업소득 대비 이자수익비율	164
<그림 3-47> ROA 추이	165
<그림 3-48> ROE 추이	166
<그림 3-49> 순이자마진	166

<그림 3-50> 상장기업 수	176
<그림 3-51> 상해, 심천 주가지수 추이	177
<그림 3-52> 시가 총액	178
<그림 3-53> 2002년 상해, 심천 거래소의 증권거래비율	178
<그림 3-54> 증권회사 ROA 추이	182
<그림 3-55>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비중 변화	188
<그림 3-56> 생명보험의 시장점유율	190
<그림 3-57> 중국의 보험업 시장점유율	192
<그림 3-58> 보험상품별 판매 현황	193
<그림 3-59> 손해보험 영업비중	194
<그림 3-60> 보험이율, 예금이자율 차이	195
<그림 4-1> 한·중·일 상업은행과 세계 5대 은행과의 평균자산규모 비교	219
<그림 4-2> 한·중·일 3국 상업은행의 이자수익 대비 비이자수익 ..	220
<그림 4-3> 한·중·일 은행 및 세계 5대 은행의 수익성 비교	223
<그림 4-4> 한·중·일 증권사와 세계 4대 증권사의 ROE 비교(2002) ..	228
<그림 4-5> 한·중·일 보험사와 세계 4대 보험사의 평균자산규모 비교	231
<그림 4-6> 한·중·일 생보사와 세계 3대 생보사의 자산운영 비교	233
<그림 4-7> 한·중·일 손보사와 세계 3대 손보사의 자산운영 비교	234
<그림 4-8> 한·중·일 은행업 경쟁력지수	237
<그림 4-9> 한·중·일 증권업 경쟁력지수	238
<그림 4-10> 한·중·일 생명보험업 경쟁력지수	239
<그림 4-11> 한·중·일 손해보험업 경쟁력지수	239
<그림 4-12> 한·중·일 투신업 경쟁력지수	240
<그림 5-1> 일·싱가포르 FTA체제	246
<그림 5-2> 자본시장 통합방안	256
<그림 5-3> 규제 통합방안	259

제1장 서론

최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세계 각국이 FTA 체결을 통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쌍무간 활발히 진행시키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아시아, 특히 동북아에서의 FTA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FTA 협상에 있어 금융서비스 부문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아왔다. 최근 한국과 칠레의 FTA 협정에서는 금융서비스 개방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배제되고, 3년 후에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향후 우리의 다른 국가와의 FTA협상의 벤치마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서비스 부문의 제외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향후 우리와 선진국과의 FTA 체결시 서비스, 특히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항이 폭넓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실물 부문의 교역에서 FTA 체결로 인해 무역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투자 확대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 FTA 체결국간의 투자는 서비스 부문의 개방을 통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중에서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체결국간 개방요인이 커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선진국간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FTA에서는 금융서비스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NAFTA 및 일본과 싱가포르의 FTA체결 경우를 살펴보다라도, 관세인하 및 투자제한조치를 철폐하는 것은 물론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 통합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정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일 또는 한·중·일간의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항을 어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우리의 FTA 협상에서 금융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중·일 FTA에서의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내용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연구는 당연히 한·중·일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각국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도적 규제사항 및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한·중·일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국별로 금융서비스산업, 즉 크게는 은행, 증권, 보험 및 투신업 분야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근거로 하여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측정한다. 이러한 경쟁력의 측정은 다음 이유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첫째,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각 부문에서 한·중·일간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측정함으로써 무역이론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무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론과 유사하게 어떠한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한·중·일간의 금융서비스 교류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된다. 즉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각 부문별 비교우위를 측정함으로써 어떤 국가가 어떤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고,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의 수출 및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금융 서비스산업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시사점은 한·중·일 금융서비스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의 적극적인 협상은 협상대상국이 금융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을 때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상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국제적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고에서는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상대적 경쟁력을 측정함은 물론 국제적인 경쟁

력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한·중·일 FTA에서의 금융서비스 협상 주요의제를 분석하고, 이를 향후 협상의 의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한·중·일 FTA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가. 한·중·일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

FTA 체결에 있어, 금융서비스 부문의 효율적인 협상은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체결국간의 무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역 금융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상호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한·중·일 FTA 협상 타결로 무역 구조가 변하게 됨에 따라 한·일간의 무역적자폭 확대 및 한·중간의 무역흑자폭 확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 및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확대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한·중·일 3국간 직접투자 확대는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가 활발히 보장된다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각국의 금융서비스기관이 다른 체결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고, 각국의 금융시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단순히 금융서비스 제공기관간 거래의 증가뿐만 아니라 국경간 투자에 대한 하부구조와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중·일 FTA 협상 중 금융 서비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 한·중·일 FTA 체결로 인해 상품수출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매우 크다. FTA 체결을 통해 무역이 확대되는 정도를 감안할 수 있는 한·중·일 3국의 평균 관세율을 살펴보면, 농산품을 제외한 공산품 분야에서는 일본이 1.4%로 가장 낮고 한국이 6.56%, 중국이 13%로 나타나고 있다(<표 1-1> 참고). 결국 일본의 국내 공산품

시장은 이미 상당부분 개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공산품 수출은 한국의 관세율을 감안할 때 급격히 증가하여 일본에게는 많은 FTA 협상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무역불균형의 확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일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중국과의 FTA 체결에서도 한·중간의 무역불균형을 감안할 때, 한·일간 FTA에서의 한국의 입장이 한·중 FTA에서는 중국의 입장과 비슷하게 전개될 것이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거나, 중국의 한국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무역불균형구조를 최소화시키려 할 것이다.

<표 1-1> 한·중·일의 관세율 현황(단순평균실행관세율 기준)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평균관세율	13.54	12	7.7
공산품	6.56	13	1.4
농산품(어류 제외)	53.11	15.8	23.0

자료: APEC 홈페이지(Individual Action Plan, 2002.)

이러한 측면에서 한·중·일의 FTA에서 서비스 부문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은 전통적으로 서비스 무역보다는 상품무역에 치중하는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중·일의 상품수출 규모와 서비스수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중·일 3국은 상품수출 규모에 비해 서비스수출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대 서비스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미국의 경우, 1999년 730억 달러의 서비스 수지 흑자를 기록한 반면, 한·중·일 국가들은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중·일의 서비스수출은 각각 전 세계 서비스 수출의 1.8%, 1.8%, 4.5%로서 아직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한 수준이다(<표 1-2> 참고). 상품수출 대비 서비스수출의 비중도 한·중·일 각각 14.6%,

10.8%, 13%로서 전 세계 평균인 19.6%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1-3> 참고). 이는 한·중·일 3국의 서비스시장이 국내시장 중심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 부문의 폐쇄성은 한·중·일 FTA 체결로 나타날 수 있는 무역불균형의 확대 문제를 해소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표 1-2> 전세계 및 한·중·일의 서비스 무역 규모(1999)

(단위: 십억 달러, %)

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전세계	1,350	100		전세계	1,345	100
상위 5대국							
1	미국	253.4	18.8	1	미국	180.4	13.4
2	영국	101.5	7.5	2	독일	132.8	9.9
3	프랑스	82.6	6.1	3	일본	114.2	8.5
4	독일	79.3	5.9	4	영국	81.4	6
5	이탈리아	61.2	4.5	5	프랑스	63.1	4.7
한·중·일 3국							
6	일본	60.3	4.5	3	일본	114.2	8.5
14	한국	24.8	1.8	10	중국	30.7	2.3
15	중국	23.7	1.8	13	한국	26.1	1.9

자료: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2000. A Review of Statistics on Trade Flows in Services, S/C/W/27/Add. 1. October.

<표 1-3> 한·중·일의 총 무역액 중 서비스 무역의 비중(1999)

(단위: 십억 달러, %)

	수 출			수 입		
	금액	비중		금액	비 중	
		전체	상품		상업서비스	전체
전세계	6,890	80.4	19.6	6,870	80.4	19.6
한국	170	85.4	14.6	143	81.7	18.3
중국	218	89.2	10.8	189	83.8	16.2
일본	464	87	13	395	71.1	28.9

자료: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2000. A Review of Statistics on Trade Flows in Services, S/C/W/27/Add. 1. October.

더욱이 한·중·일 금융서비스 부분의 국경간 거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중·일 3국은 금융서비스의 수출보다는 수입이 크다. 금융서비스의 수출은 한·중·일 각각 세계 전체 금융서비스 수출의 0.25%, 0.51%, 2.05%로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고). 금융서비스 수입은 한·중·일 각각 세계 전체 금융서비스 수입 중 0.38%, 2.89%, 6.79%로서 한·중·일의 금융서비스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전세계 및 한·중·일의 금융(보험 포함) 서비스 교역 현황(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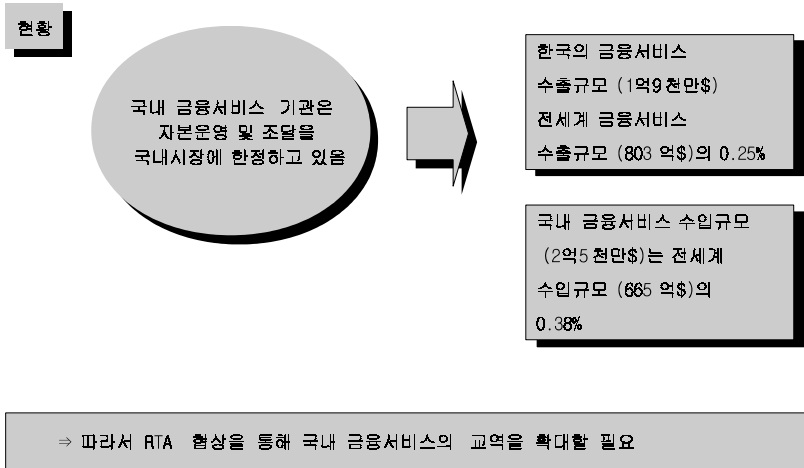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세계	80,357	100	66,580	100
한국	197	0.25	252	0.38
중국	411	0.51	1,921	2.89
일본	1,650	2.05	4,521	6.79

자료: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2000. A Review of Statistics on Trade Flows in Services, S/C/W/27/Add. 1. October.

이와 같은 서비스 분야, 특히 금융서비스 부문에 있어 한·중·일의 상대적인 폐쇄성은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불균형구조를 개선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중·일 FTA 협상 중 금융서비스 분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3국의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금융서비스 거래의 활성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 분야의 국경간 거래확대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1〉 국내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활성화의 필요성
금융서비스의 활발한 국경간 거래 촉진



나. 다자간 금융서비스협상의 한계극복 및 금융 선진화에의 기여

금융서비스 개방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된다. 직접적으로 국내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질의 개선을 초래(소비자 및 공급자 측면)한다.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 자유화는 금융하부구조의 선진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금융서비스를 중간투입재로 사용하는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가져온다. 금융서비스 교역의 증가는 또한 금융체제의 심화(financial deepening)를 가져오고 서비스 스펙트럼(spectrum of service)의 확대를 가져온다. 한편 금융서비스 자유화의 부정적인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시장 점유율 확대에 의해 국내 금융기관의 입지가 악화될 수 있다. 아울러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국내 체계적 위험도(systemic risk)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근본적으로 자국 내 금융기관의 경

쟁력이 떨어지거나 효율적인 금융감독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기에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서비스의 상호간 자유화 및 개방화는 다자간 또는 쌍무간의 협상이 가능한데, 다자간협상은 대표적으로 WTO의 GATS 협정이며, 쌍무적협상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무역협정(RTA)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을 포함하는 것이다. WTO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는 기본적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함에 따라 금융서비스 자유화를 통해 개도국의 금융산업 선진화를 촉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개방요구에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방해 왔다. 또한 WTO 금융서비스 협상은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 공급자 중심으로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금융서비스 공급의 형태를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그리고 자연인의 이동으로 나누어서 각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WTO 금융서비스 자유화는 국내 규제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고유한 감독조치는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건전성 규제조치를 이유로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접근을 막더라도 이는 WTO의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금융서비스 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건전성 규제의 오용을 막기 위해서 Understanding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Understanding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는 자본거래 자유화와 관련이 있는데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WTO의 협상영역이 아니다.

이러한 WTO의 금융서비스 협상의 문제점을 반영하듯, 한·중·일의 금융서비스 개방정도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한·중·일 3국이 1997년 WTO에 양허한 금융서비스 개방정도를 보면 일본은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양허하였으나, 한국은 Mode 1과 Mode 2를 거의 개방하지 않았다(<표

1-5> 참고). 2001년 말 WTO에 가입한 중국은 Mode 1, 2는 물론 Mode 3에 있어서도 설립형태, 영업지역, 영업형태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어 한국보다도 부문별 금융서비스의 대외개방이 미흡한 실정이다.

<표 1-5> 한·중·일의 WTO 금융서비스 분야 개방 정도(1997)

업종	mode	한국		중국		일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M1	미개방 (예외: 손보, 재보험 등)	미개방 (예외: 재보험 등)	미개방 (예외: 국제해상 보험 및 재보험 등)	개방	개방 (예외: 재보험 등)	개방
	M2	미개방 (예외: 재보험)	미개방 (예외: 재보험 등)	미개방 (예외: 중개업)	개방	개방 (예외: 재보험 등)	개방
	M3	일부제한 (예외: 보험 대리점 개방)	개방	설립형태, 영업지역 및 형태 등에 제한 있음	개방 (예외: 영업형태 등)	개방 (예외: 재보험, 보험중개 등)	개방 (전문야 기재이외)
	M4	전문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 이외의 미개방					
은행 및 은행관련 서비스	M1	미개방	미개방	미개방 (예외: 양허표기재 업종)	개방	개방 (예외: 일임형 투자관리 서비스)	개방
	M2	미개방	미개방	개방	개방	개방	개방
	M3	일부제한 (예외: 금융리스 개방)	개방	설립형태, 영업지역 및 형태 등에 제한 있음.	개방 (예외: 지역제한, 인민폐영업 제한 등)	개방 (예외: 투자신탁 관리 서비스)	개방 (예외: 예금보험)
	M4	전문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미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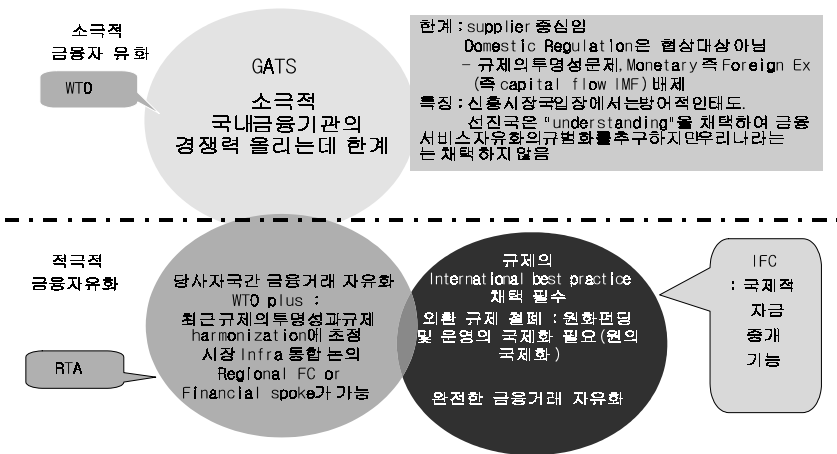
주: 1) M1=국경간 공급, M2=해외소비, M3=상업적 주재, M4=자연인 이동.
2) 중국의 경우 WTO가입(2001년) 이후 현황임.

그러나 쌍무적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를 통해 금융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적합성을 상호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금융선진화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쌍무적 FTA의 가장 큰 강점은 협상의 유연성(flexibility)이다. 즉 쌍무적 FTA는 이해당사자의 상호이해가 합치된다면, 협상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WTO 금융서비스협상 범위를 넘어서 금융감독규제의 통합화, 자본거래규제의 차별적인 예외 적용 등 그 협상 범위는 체결국 상호간에 합의로 결정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싱가포르·일본 FTA에서의 금융서비스협상에 잘 나타나 있다. 싱가포르 일본의 금융서비스 부분의 경우 WTO의 금융서비스협상 대상에서 보다는 넓은 의미의 금융서비스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양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규제감독에 관해 협력을 촉진하고, 양국 및 아시아에서의 금융시장(자본시장을 포함)을 원활하게 발전시키는 데 협력하며, 양국의 금융시장 기반을 개선하는 것을 금융서비스 협력의 주요의제로 채택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양국은 주식시장의 통합 문제를 검토하고,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엔화의 국제화와 같은 거시경제 부분에서도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최근 일본이 자본 및 금융시장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일본의 금융시장 및 감독체제를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많은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와 일본의 금융서비스 협력의 논의 의제와 상호보안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과 싱가포르는 자국의 금융시장 선진화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양국의 FTA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의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은 단순히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개방화 및 자유화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의 국제금융센터의 육성과도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는 무관하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WTO 협상, RTA 협상 그리고 국제금융센터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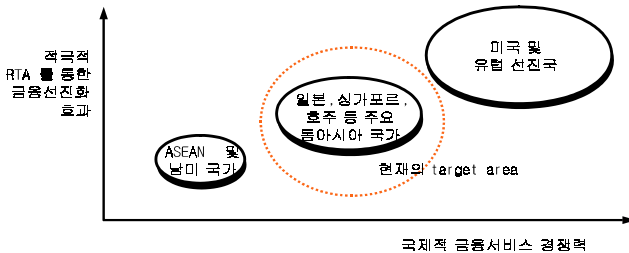
모두가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를 국내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2> WTO 금융서비스의 한계와 RTA의 활용



<그림 1-3> 적극적 RTA 금융서비스 협상과 금융서비스 경쟁력

적극적 RTA의 효과



- RTA의 금융서비스 협상 대상국이 미국과 유럽 선진국인 경우보다 Global한 금융서비스 개방효과 발생
-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동아시아 국가와의 RTA는 국내 금융선진화를 위한 second best solution.
- 이외의 개도국과의 RTA에서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보다는 대상국의 시장진출을 통한 선점 효과에 초점을 맞춤.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주요 검토사항

자유무역협정에서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를 포함시킨 최초의 시도는 1988년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상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금융서비스 자유화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시작된다. 한편 다자간 금융서비스 자유화협상은 WTO의 전신인 GATT 체제하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우루과이 라운드 막판까지 금융서비스협상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 후 1995년 GATS의 기본틀 속에서 협상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은 다른 서비스 분야의 협상과 함께 중요한 분야로 채택되고 있다.¹⁾²⁾

1. 금융서비스 부문의 설정 및 기재방식

최근 체결된 FTA들은 다음 세 가지 형태로 금융서비스 분야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포함된 FTA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조항을 다루는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독립된 조항이나 부속서의 형태로 독립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독립적 금융서비스조항이나 부속서를 채택한 경우, 다른 조항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금융서비스의 주요 이슈를 기술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전반에 대한 양자간 자유화조치를 설정

1) 자세한 내용은 WTO (1996) 참고.

2) 한국의 WTO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이장영(2000)과 김준동, 양두용(2002) 참고.

하고 있다. 둘째는 독립된 금융서비스조항을 채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서비스 및 투자관련 분야별 조항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즉 금융서비스를 서비스 및 투자조항 내에서 일반적인 분야별 규정과 함께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보다 특수한 조항을 개발하는 의무를 삽입하여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서는 의무조항은 금융서비스 관련 투자에만 적용되고, 국경간 금융서비스거래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칠레와 여러 국가들이 맺은 FTA이다. 칠레는 미국과의 FTA를 제외한 대부분의 FTA에서 금융서비스를 배제시켰는데, 한·칠레 FTA도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대부분 개도국 또는 신흥시장국간의 FTA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 접근 방식은 금융서비스를 FTA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즉 기밀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건전성 또는 국제수지 이유에 따른 규제를 제외하는 규정만 포함시키고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별도 규정은 포함시키지 않는 형태이다. 이 경우 금융서비스의 자유화 약속은 서비스와 투자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르고, 추가적인 규범 개발에 관한 의무가 없다.³⁾ 이는 대부분의 금융 후진국간의 FTA에서 나타난다.

한편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를 독립된 조항이나 부속서를 통해 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서비스의 자유화 기재방식에 따라 GATS 형태의 접근방식과 NAFTA 형태의 접근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GATS 형태의 접근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공급형태를 모두 포함하며,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상의 자유화를 약속할 분야를 기재하는 positive list approach(단, 자유화 대상 분야에서는 제한조치만을 기재)이다. 이러한 기재방식을 채택한 FTA로는 Japan-Singapore, Chile-EC, MERCOSUR 등이 있다.

NAFTA type approach의 경우는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de: modes 1, 2, 4)와 투자(mode 3)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부속서에 유보나 비합

3) CARICOM, Central America-CARICOM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치 조치로 명기되지 않으면 자유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negative list approach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기재방식을 채택한 FTA로는 US-Chile, US-Singapore, Mexico-Chile 등이 있다.

2. 주요 항목의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금융서비스 협상에서의 범위와 정의(Scope and Definitions)는 금융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NAFTA 형태의 금융서비스 chapter의 경우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와 투자에 관련된 조치에 적용된다. 투자에 대한 조치는 금융기관 및 그러한 금융기관에 투자한 투자자와 투자에 관련된 조치들을 포괄하고 있다. 여기서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은 사업권한을 취득하고 현지국의 법률하에서 금융기관으로서 규제나 감독을 받는 모든 금융중개기관(지사 포함)으로 정의된다. 현지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기관(non-regulated institution)은 일반적인 투자 및 국경간 거래 chapter에서 다루어진다. 즉 NAFTA, US-Chile, US-Singapore 등의 금융서비스 chapter에서의 투자는 투자 chapter에서와 같이 정의되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대출과 채무상품(loan or debt instrument)의 경우 현지국에 의해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금융투자로 간주된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 chapter의 보다 일반적인 규범이 적용됨).

GATS 형태의 금융서비스 chapter 또는 부속서는 네 가지 공급형태를 통한 금융서비스공급에 관련된 조치에 적용된다. NAFTA 형태의 금융서비스 chapter와는 달리 투자의 정의를 수정하지 않으므로써, 모든 채무증권이 금융서비스 chapter에도 적용된다(단, Mexico-EC의 경우는 예외). 또

한 금융서비스의 정의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정의한 NAFTA 형태의 chapter와는 달리 금융서비스를 구성하는 광범위한 행위들의 예시적 목록을 기재한 GATS의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나.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는 체결국간의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동등한 자격을 지닐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치이다. NAFTA 형태나 GATS 형태 모두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내국민대우 의무를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재언급하고 있다. GATS 형태의 경우 Chile-EC나 Mexico-EC에서와 같이 “동종 금융서비스 공급자(like financial service suppliers)”에 비해 열등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NAFTA 형태의 경우는 “동종 금융서비스 공급자” 대신에 “유사한 환경에서(in like circumstanc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내국민대우 적용대상을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 투자자의 투자까지로 확장하고 있다(국경간 거래는 GATS 형태와 NAFTA 형태 모두에서 포함).

US-Chile나 US-Singapore를 제외한 다른 NAFTA 형태의 경우 “동등한 경쟁기회(equal competitive opportunities)”를 부여하면 내국민대우 의무에 합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US-Chile와 US-Singapore나 GATS 형태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이 제외됨으로써 내국민대우 의무의 해석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

다. 최혜국대우

NAFTA 형태의 경우 금융서비스 chapter에서 내국민대우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al Treatment: MFN) 의무를 재언급하는 반면, GATS 형태에서는 Mexico-EC의 경우만 MFN 의무를 재언급하고 있

다. NAFTA 형태의 경우 “유사한 환경에서(in like circumstances)”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 투자자의 투자 및 국경간 거래에 대해 MFN 의무를 확장하고 있다. GATS 형태의 경우는 제3국의 “동종 금융서비스 공급자(like financial service suppliers)”에 관하여 타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MFN 의무를 확장하고 있다. 단, GATS 제5조에 의해 통보된 지역협정하에서 제3국에 부여된 대우는 제외된다. 그러나 그러한 협정에서 부여된 혜택을 협상하도록 타 체약국에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NAFTA, US-Chile, US-Singapore의 경우 타 체약국이나 제3국의 건전성 조치의 인정과 관련된 규범을 MFN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Mexico-EU를 제외하고는 모두 타 체약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것을 허용하고, 그러한 인정이 조화(harmonization)나 상호협정(mutual agreement)을 통해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MERCOSUR의 경우는 “Harmonization Commitment”라는 조항에서 건전성 규제의 조화와 통합된 감독, 그리고 금융서비스 분야의 정보교환측면에서 진전을 계속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통합 정도를 보다 제고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라. 시장접근

US-Chile, US-Singapore, Chile-EC 등의 경우, 시장접근(Market Access)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GATS 제16조 2항의 일반적인 시장접근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US-Chile와 US-Singapore의 경우에는 외국인지분 참여에 대한 제한금지관련규정은 제외되어 있다(내국민대우 의무에 포함). US-Chile와 US-Singapore의 경우 특정 분야에서의 시장 개방을 높이도록 하는 이슈를 추가하고 있다. US-Singapore의 경우 부속서에서 2007년 1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 3년마다 싱가포르에 설립된 은행에 대한 미국 금융기관의 지분취득상의 제한에 관해 협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미국의 비은행 신용카드회사에 대해 싱가포르 국내 은행이 운영하는 ATM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US-Chile의 경우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해 부속서 제12조 9항에서 국내에 설립된 금융기관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하고 법적 설립형태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기관이 국내법에서 허용된 금융서비스의 전 범위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단, 현지국 정부는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이나 행위를 위해 법인설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의 설립권한은 기존 금융기관의 인수를 포함하고, 특정 금융서비스나 행위를 금지할 수는 있으나, 전체 금융서비스나 은행과 같이 특정 하위 분야 전체를 금지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정조건하에서 칠레는 미국 투자자에 대해 경제적 수요 심사 신청 없이 Administradora de Fondas de Pensiones를 설립하여 연금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험 부문에서는 칠레측이 미국 보험사의 지사 설립을 협정 발효 후 4년 이내에 허용하기로 약속하였다. 단, 칠레 정부가 미국 보험기관 지사에 대해 적용할 규제 형태를 선택할 권리는 보장된다. 한편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 보험사의 지사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핵심 인력에 관해서는 NAFTA 형태나 Mexico-EC의 경우 금융기관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중 과반수(majority) 이상에 대해 국적 요건이나 거주 요건 등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US-Chile의 경우는 이사회 구성 이사 중 소수(minority) 이상에 대해 동 요건을 적용하도록 다소 완화하였다.

마. 국경간 거래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de)의 허용 여부는 대부분의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 역시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조항에서 국경 간 거래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가는 대부분의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NAFTA 형태와 Mexico-EC의 경우 국경간 거래를 별도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경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soliciting*을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는 필요한 경우 등록(*registration*)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US-Singapore 경우 *portfolio management service*, 보험서비스, 비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대해 등록과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협정문과 별도의 이면서류에 포함하였다. US-Chile와 US-Singapore의 경우 국경간 거래에 대해 내국민대우 의무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부속서에 *positive list*로 명기하고 있다. 보험서비스는 전반적으로 포함되고, 은행 및 기타서비스 부문에서는 정보전달과 자료처리(*transfers of information and data processing*)에 국한되어 있다. 싱가포르를 기업금융자문, 외환금리상품 등도 포함시켰다. 싱가포르는 또한 2006년 1월 이전에 국경간 거래의 추가적 자유화를 협의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국제해상운송, 국제항공운송, 국제교역화물에 대한 보험의 판매(*sale*)와 중개(*brokerage*)에 대해 국경간 거래를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칠레 정부가 *credit reference* 및 *analysis*에 관하여 미국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국경간 공급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향후 이러한 자유화조치를 후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US-Chile의 경우 투자자문업 분야에서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약속이 투자자문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자에 의한 자국 내에서의 증권(公)의 공모(*public offering*)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바. 투명성

투명성(*Transparency*)에 관해서는 NAFTA 형태와 GATS 형태 모두 개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NAFTA 형태, Mexico-EC, Chile-EC의 경우 체결국 정부가 새로이 채택하고자 하는 조치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허용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best endeavors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NAFTA, US-Chile, US-Singapore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는 적절한 체제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US-Chile와 US-Singapore 등 최근의 협정은 특히 새로운 규제를 채택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에 서면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 다른 NAFTA 형태의 경우는 그러한 조치에 대해 단지 상대국에 통보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US-Chile, US-Singapore, Mexico-EC, Chile-EC 등의 경우 투명성이 결여된 규제가 갖는 잠재적인 교역제한적 영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US-Singapore의 경우 각 체결국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규제체계를 증진시키도록 협의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Mexico-EC와 Chile-EC의 경우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규제 및 감독을 위해, 그리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Mexico-EC의 경우 G7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공표한 정보교환에 관한 10개 핵심원칙(Ten Key Principles of Information Exchange)을 양자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US-Chile와 US-Singapore의 경우 자체 규제기관(self-regulatory institution)의 중요성도 금융서비스 chapter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적시에 공표하고 이용가능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 분쟁해결기구

NAFTA 형태의 경우 투자자 대 정부의 분쟁과 정부간 분쟁을 별도로 다

루도록 금융서비스 chapter에서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규정을 재언급하고 있다. 투자자 대 정부의 분쟁은 금융서비스 chapter의 예외조항을 촉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 chapter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chapter상의 예외로 할 경우에는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간 분쟁은 금융서비스 chapter에서 다루어진다. 이 경우 투자 chapter에서의 분쟁해결과 다른 점은 금융서비스 전문가가 패널에 참여한다는 점과 제소국이 금융 부문에서의 혜택을 중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Mexico-EC와 Chile-EC의 경우 분쟁해결 조항은 단지 금융분야의 전문가가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NAFTA 형태에 비해 덜 광범위하다. MERCOSUR의 경우는 금융서비스 부문에 특별히 적용되는 별도의 분쟁해결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아. 신금융서비스

US-Chile나 US-Singapore 이전에 채택된 NAFTA 형태와 Mexico-EC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국내법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공급을 허용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할 것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S-Chile, US-Singapore, Chile-EC의 경우는 상기 조항 중 “유사한 형태(of a type similar to)”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들 협정의 경우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신금융서비스를 추가적인 법률제정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모든 경우에 각국은 신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법적 형태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해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승인은 건전성 이유에 근거하여서만 거부될 수 있다. US-Chile와 US-Singapore의 경우 금융서비스 chapter의 주석에서 타 계약국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양국 모두에서 공급되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승인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자. 적용대상 제외

모든 FTA 협정에서 각 체약국은 금융서비스의 건전성규제를 채택할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건전성규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prudential carve-out). NAFTA 형태, Mexico-EC, Chile-EC 등의 경우 prudential carve-out에 추가하여 safety, soundness, integrity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책임성 등을 보호(safeguard)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US-Chile와 US-Singapore의 경우 사기성이고 기만적인 관행(deceptive fraudulent practices)의 방지와 관련된 조치와 금융서비스 계약의 불이행(default)의 영향에 대응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별 고객의 금융거래와 계좌에 관한 정보 등 기밀정보의 공개는 모든 FTA 협정에서 제한된다. MERCOSUR를 제외한 모든 FTA 협정의 경우 전자적 전송수단이나 다른 형태의 데이터처리과정을 통한 정보의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US-Chile, US-Singapore, Mexico-EC, Chile-EC 등의 경우 이전되는 정보가 개인적 데이터일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safeguards)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US-Chile, US-Singapore, Chile-EC 등의 경우 정부 권한의 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외국인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예로는 법정사회보장제도나 공공퇴직연금제도 등이다. 또한 모든 FTA 협정에서 통화정책 및 외환정책에 의해 수행되는 조치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차. 신규조항

최근의 FTA 협정은 금융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의 신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US-Chile와 US-Singapore의 경우 타 체약국의 금융 기관에게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지불 및 결제 시스템(payment and clearing

systems)에 대한 접근과 정상적인 영업에서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융자기관(official funding and refinancing facilities)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단, 이러한 조항은 현지국의 최종 대부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US-Chile의 경우 투자 chapter의 부속서에서 칠레로 하여금 자본유입에 대해 미국이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기 이전 1년간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US-Singapore의 경우도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 면허를 가진 은행, 상업은행, 파이낸스회사 등의 대출을 포함하여 은행간 대출에 관하여 자본계정거래에 대한 제한을 1년간 부과하는 것(one-year buffer)을 허용하고 있다. Japan-Singapore의 경우와 같이 자본시장 통합의 논의를 FTA에 삽입하는 것도 이러한 신규조항사항을 적극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제3장 한·중·일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

1. 한국

가. 한국 금융서비스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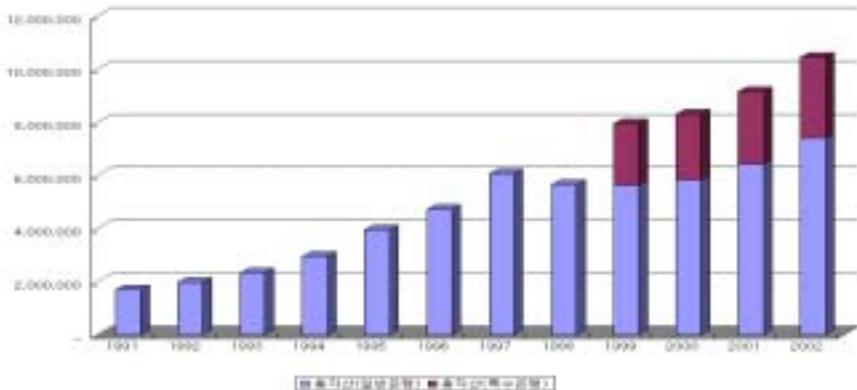
1) 은행

가) 규모

국내은행의 총 자산은 1991년 170조 원에서 2002년 1,000조 원으로 6배 정도 증가하였음(특수은행의 총자산 포함). 국내 은행의 자산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다소 축소되었으나, 199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내은행의 규모를 총 자본의 변화 및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으로 구분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 급격히 증가하던 국내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60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일부 은행의 인수합병과정을 통한 대형화가 실현되면서 개인 자산이 상당부분이 은행이라는 안전 자산을 선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림 3-1> 국내은행 총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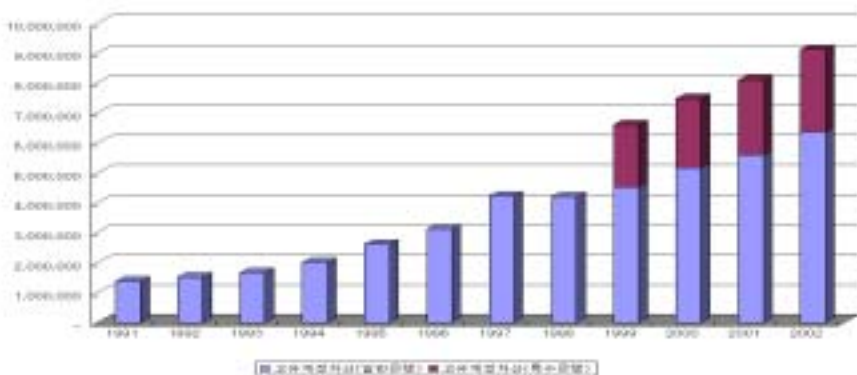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한편 국내은행의 고유계정자산규모는 1991년 137조 원에서 2002년 말 900조 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고유계정 자산은 420조 원으로 1998년 소폭상승한 452조 원을 기록하였으나, 2002년 636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0년 이후 국내 자본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안전한 은행의 예금자산으로 자본이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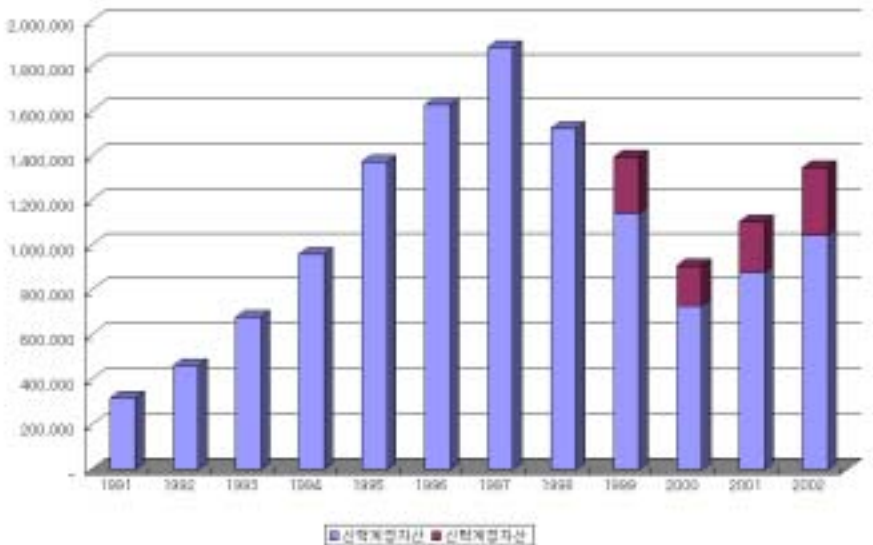
<그림 3-2> 국내은행의 고유계정 자산규모 추이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국내은행의 신탁계정 자산규모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신탁자산규모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1998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소폭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국내 일반은행의 신탁자산규모는 188조 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를 보였으나, 2000년 국내 자본시장의 불안으로 73조 원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소폭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일반은행의 신탁자산규모는 104조 원으로 국내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신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특수은행의 신탁자산규모는 상대적으로 일반 은행에 비해 적은 편이며, 2002년 30조 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3〉 국내은행의 신탁계정 자산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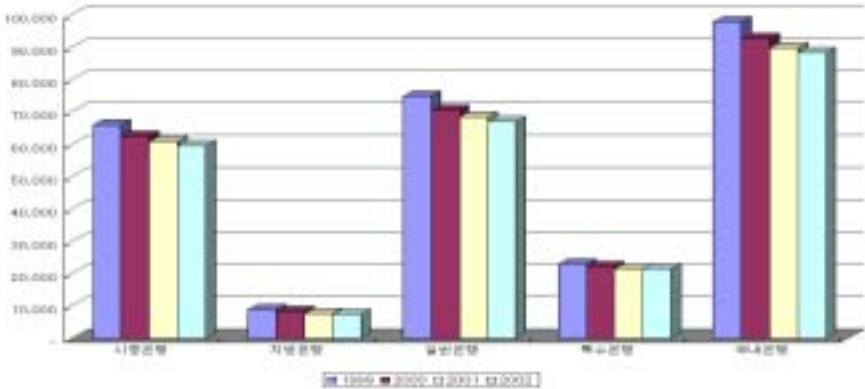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국내은행의 임직원수는 1997년 이후 금융구조조정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은행의 총 임직원수는 1999년 9만 7천 명에서 2002년 8만 8천 명으로 9천 명이 축소되었다. 국내은행 중 일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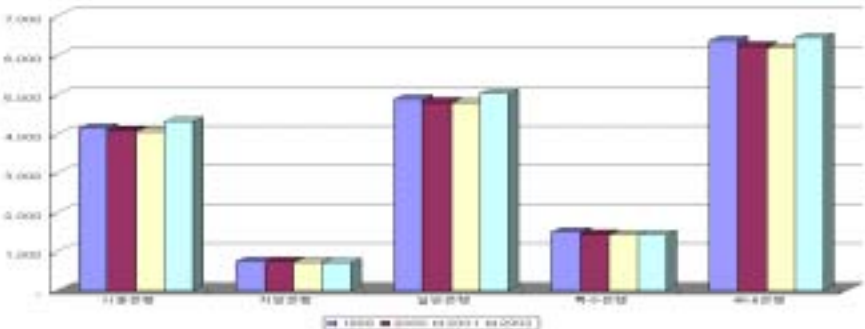
행의 임직원수 감소규모는 1999년 7만 4천 명에서 2002년 6만 6천 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임직원 감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은행의 점포수는 2002년 현재 6,441개로 1999년 이후 소폭 감소하다가 2002년 시중은행의 지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은행의 합병으로 인해 중복 지점이 일부 정리되었으나, 2002년 이후 각 은행의 영업망 확충을 위해 은행의 점포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 국내은행의 임직원 추이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그림 3-5> 국내은행의 지점 수 추이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나) 영업활동 및 업무영역

국내은행의 영업업무 범위는 은행법과 관련 재경부 고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국내은행의 은행업무는 크게 고유업무와 부수업무, 그리고 겸영업무로 나뉘는데, 고유업무와 부수업무는 별도의 인가 없이 영위할 수 있으며, 겸영업무를 직접 겸영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겸영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법 제27조와 제28조는 은행의 영업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유업무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외국환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편 은행의 부수업무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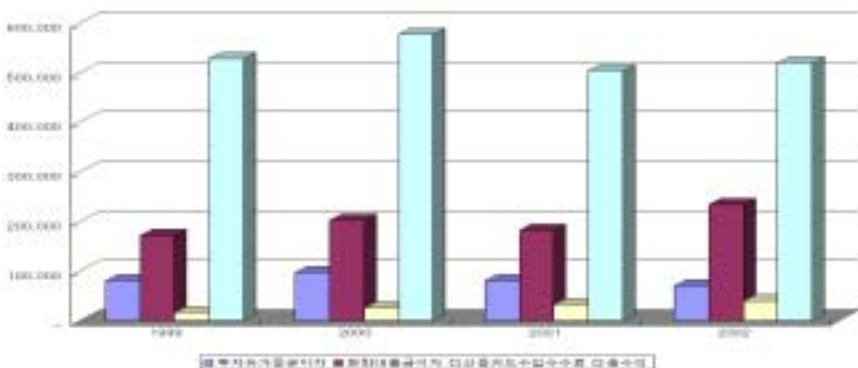
〈표 3-1〉 국내 은행의 업무범위

구분	업무 내용	근거 조항
고유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내·외국환 	
부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상호부금 - 유가증권 투자 및 대여·대출 -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채 증권의 매매 - 화매조건부채권매매 - 국공채 창구매매, 수익증권 판매 - 팩토링 - 보호예수 - 수납 및 지급대행 -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 - 기업합병 및 매수(M&A)의 단순중개 - 지급형주화의 수탁판매, 금지급의 판매대행 - 신용정보 서비스, 경영상담 및 자문 - 부동산 임대 -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 대행 -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투자 	은행법 제27조 및 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지침(재경부 고시)
겸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업 - 신용카드업 	은행법 제28조

무증서의 발행과 내·외국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금감위의 인가를 요하는 은행의 겸영업무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와 기타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영업업무는 1950년 은행법 제정 당시에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였으나, 1970년대까지 국내은행의 주업무는 예금 및 대출업무 위주였다. 그러나 1980년대 국내 금융수요가 다양해지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더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은행의 자금증가기능 위축(disintermediation)이 확대되면서 은행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은행의 업무영역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국내은행 수익의 많은 부분이 은행 고유업무, 그 중에서도 대출업무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일반은행의 2002년 총 수익(50조 원) 중 대출금 이자수입은 전체 수익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투자유가증권 이자수익(13%), 그리고 신용카드수입 수수료(7.7%)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금 이자수익은 1999년 전체 수익(52조 원)의

<그림 3-6> 국내 일반은행의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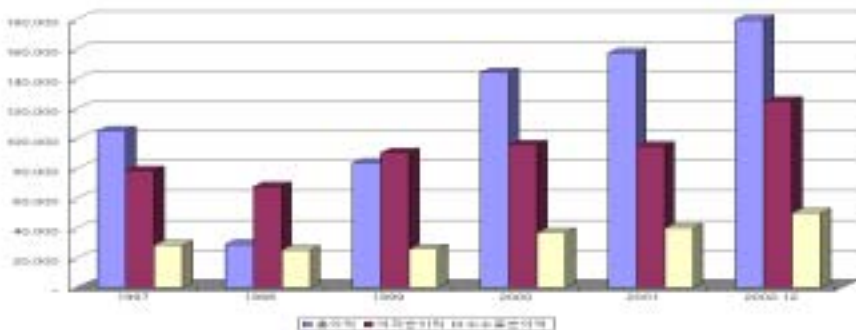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32%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2002년에는 은행 총 수익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직접금융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은행은 개인대출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주택대출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외환관련 수익은 1999년 총 수익의 9.2%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 말 3.2%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신용카드수입 수수료는 1999년 전체 수익의 3.2%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7.7%를 기록하였다.

이상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일반은행은 이자수입에 치우치는 경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일반은행의 2002년 총수익 중 이자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69%로 국내은행은 수익의 많은 부분을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수료 수익이 규모면에서 소폭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 이자수익의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즉 국내은행에 다양한 영업영역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고유업무로 규정된 대출에 많이 치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범위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국내은행의 업무영역이 한정적이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상업은행의 영역은 선진국 특히 유럽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투자은행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림 3-7> 국내 일반은행의 이익구성 추이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다) 수익성

수익성은 은행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과거 금융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가 결과적으로 은행의 수익성 하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2000년까지도 은행의 당기순이익, ROA, ROE 등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은행의 수익성지표를 보면, 1990년대 금리자유화 및 금융개방,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등에 따라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국내 수익성 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총여신 대비 무수익여신 비율은 1999년 자산기준이 강화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무수익 여신비율의 하락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최근 크게 향상되어 세계 5대 은행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5대 은행의 2002년 평균 ROA는 0.85인데, 국내 일반은행의 ROA는 2001년 0.8과 2002년 0.6을 기록하면서 세계 유수은행보다는 못하지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BIS 비율에 있어서도 2002년 10.5를 기록하면서 세계 5대 은행의 평균인 11.8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향상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은 1998년 이후 은행의 금융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은행의 지속적인 부실채권의 처리는 이러한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내 일반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국내 일반은행이 세계 5대 은행의 평균인 3.25%보다 낮은 1.9%를 기록하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노력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는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은행의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순이자 마진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내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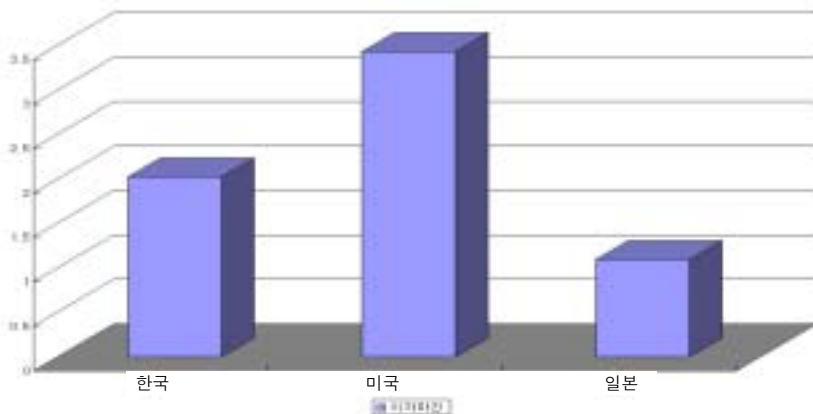
〈표 3-2〉 국내 일반은행의 수익성 추이

(단위: %, 억 원)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ROA	0.4	0.3	0.3	-0.9	-3.3	-1.3	-0.6	0.8	0.6
ROE	6.1	4.2	3.8	-14.2	-52.5	-23.1	-11.9	15.9	11.7
당기순이익	-	8,680	8,470	-39,199	-12,5106	-59,960	-28,405	35,723	33,532
BIS 비율	10.6	9.3	9.1	7.0	8.2	10.8	10.5	10.8	10.5
무수익 여신 비율	5.5	5.2	4.1	6.0	7.4	8.3	6.6	2.9	1.9

내은행의 평균 순이자 마진은 2.02%로 미국은행의 평균순이자마진 3.4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2.88%의 3/4 수준이다. 일본은행의 순이자마진은 1.09%로 국내 은행과 비교해보아도 낮은 수준인데, 이는 일본 은행의 장기불황과 은행의 구조조정의 미흡으로 인해 무수익 여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내은행은 그동안의 구조조정 성과로 부실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있었으나, 향후 안정적인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는 순이자 마진이 더욱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8〉 주요국 순이자 마진 비교(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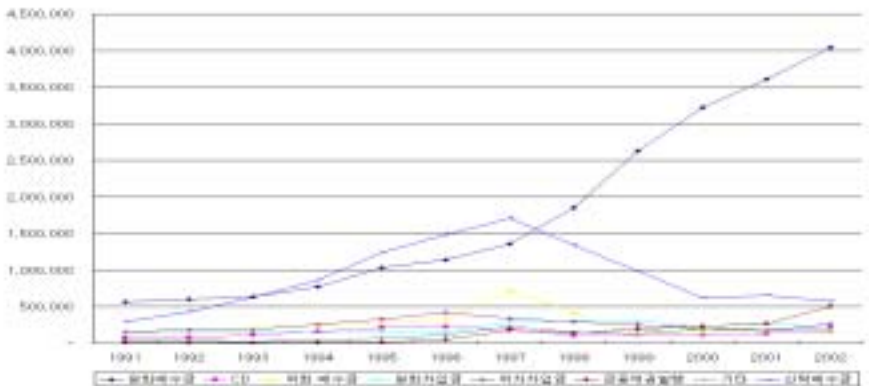
자료: Bank Profitability, OECD, 2002.

라) 자금조달 및 운영

(1) 자금조달

국내 일반은행의 자금조달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던 전통적인 자금조달수단인 원화 예수금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 은행의 총 자금조달 규모는 615조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65% 이상을 원화예수금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신탁예수금(총 자본조달의 9%)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 추세를 나타냄으로써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안전자산으로의 도피현상(flight to quality)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1995년 이전에는 거의 없던 금융채권의 발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여 2002년에는 전체 자본조달규모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10% 이상을 차지하던 외화차입금의 경우 2002년 4%대로 하락하였고, 이와 동시에 외화예수금도 2%대로 축소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달러화 수요가 급격히 축소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국내의 높은 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달러 표시 해외차입을 선호하였던 기업은 국내 금리와 달러표시 해외

<그림 3-9> 국내 일반은행의 자금조달 추이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표 3-3〉 국내 일반은행의 자금조달 추이

(단위: %)

	원화 예수금	CD	외화 예수금	원화 차입금	외화 차입금	금융채권 발행	기타	신탁 예수금	총 자금조 달규모 (조 원)
1991	39.8	4.8	10.7	9.6	11.1	0.6	3.0	20.5	140
1992	35.8	5.0	10.2	10.0	11.0	0.5	2.0	25.4	168
1993	32.0	6.0	10.8	8.5	9.6	0.3	1.4	31.3	200
1994	30.8	6.3	9.9	6.1	10.4	0.3	1.7	34.5	251
1995	30.7	6.4	8.5	4.8	9.9	0.6	2.0	37.0	337
1996	29.1	5.6	8.4	3.9	10.8	1.4	2.9	37.8	392
1997	27.0	4.0	14.3	6.0	6.8	3.5	4.6	33.9	504
1998	40.0	2.3	9.1	6.7	6.5	3.2	3.3	28.9	463
1999	55.4	2.4	2.9	6.4	5.3	4.1	2.8	20.8	474
2000	64.7	2.3	3.2	4.7	4.0	4.7	3.9	12.5	498
2001	65.9	2.4	3.2	5.0	3.1	4.9	3.5	12.0	547
2002	65.6	3.5	2.8	3.5	4.4	8.2	2.7	9.4	615

차입금리의 괴리가 축소되어 기업의 입장에서도 은행 외화차입보다는 직접적인 해외기채를 선호하게 된 점에 기인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의 외국은행 지점 및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본점 차입금을 포함한 외화차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1년 국내의 외은지점 자금조달 형태를 살펴보면, 원화차입, 금융채권발행, 신탁예수금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원화예수금(28.7%)과 외화차입금(62%)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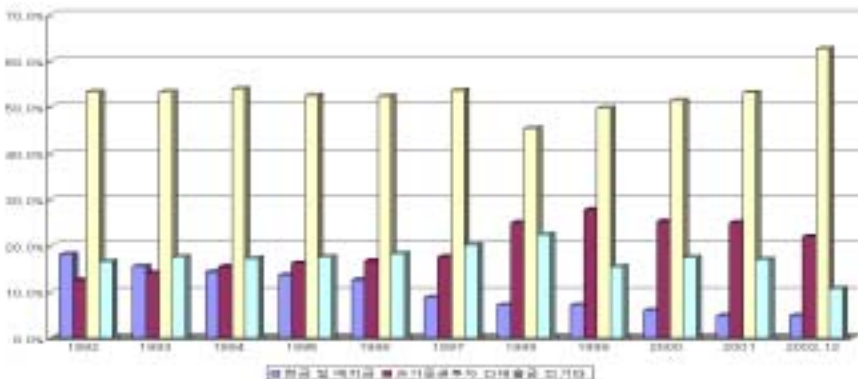
〈표 3-4〉 국내 외은지점의 자본조달 형태(2001)

	원화 예수금	CD	외화 예수금	원화 차입금	외화 차입금	금융채권 발행	기타	신탁 예수금	총 자금조달 규모 (조 원)
국내 외국은행	28.7	2.6	5.9	0	62.0	0	0	0.5	30

(2) 자산 운영

최근 들어서 국내은행의 자산운영구조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이전까지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대출에 의존했던 국내 일반은행은 금융위기 직후에는 급격하게 대출금비중이 축소되었다. 1990년대 초반 하더라도 현금 및 예치금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1997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전체 자산의 4.8%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일반은행의 유가증권 비중은 1990년 초 이후 점진적으로 높아졌으며, 최근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외 국내 은행의 자산 운영은 원화 및 외화 콜론, 어음매입, 신용카드 채권, 매입외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은행의 자산운영 변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1997년 위기 이후 대규모 도산 및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기업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은행이 도매금융에 치중한 과거의 영업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위한 시장여건도 불충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은행이 자산운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대출비중을 높이게 된다. 2002년에는 전체 자산 운영의 62%를 대출에 의존하는 자본운영형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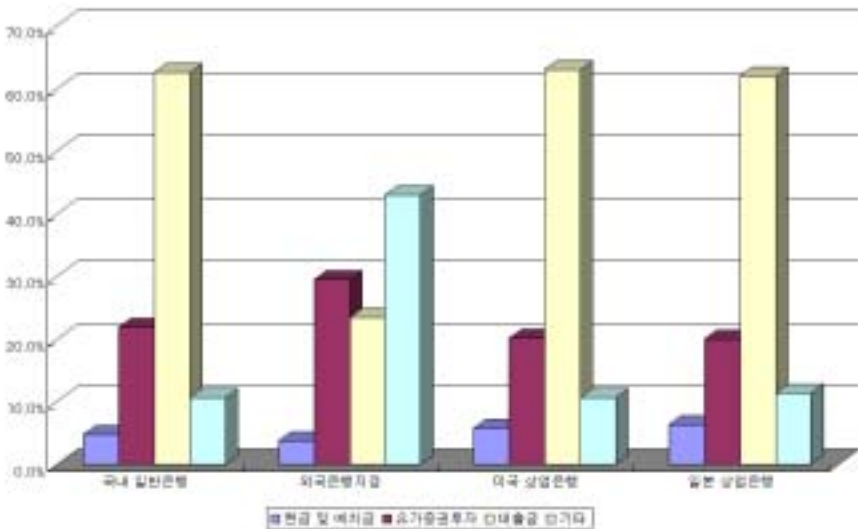
<그림 3-10> 국내 일반은행의 자본운영 추이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이러한 최근의 변화는 다른 선진국 상업은행과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유사한 자산운영 및 조달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 은행의 현금 및 예치금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미국과 일본의 상업은행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산운영의 측면에서도 대출금의 비중도 높아져 선진국과 비슷한 60% 이상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대출비중(23%)은 상대적으로 낮고, 유가증권투자(30%)는 높은 편이며, 많은 부분을 콜론, 외환매입, 지급보증대지급, 고정자산 등과 같은 기타자산(43%)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주요국 은행의 자산운영 비교(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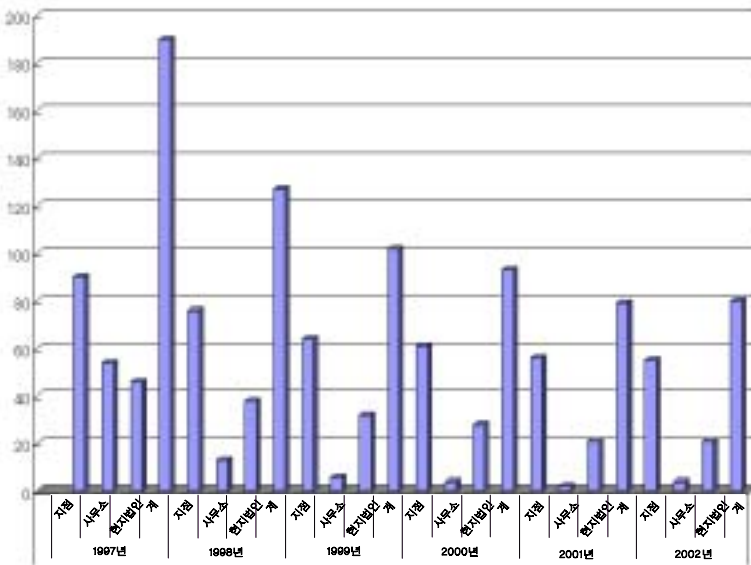
자료: *Bank Profitability*, OECD, 2002.

마) 국제영업

일반적으로 국내은행의 해외영업은 국내 해외진출기업의 현지금융 및 수출입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한적인 영업에 치중되어 있었

다. 국내은행은 대부분 선진국에 지점,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이들 국가에서 선진 은행과의 경쟁력 차이로 인해 본격적인 현지영업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은 급격히 축소되어 해외영업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총 190개에 달하던 국내은행의 지점, 사무소, 및 현지법인은 2002년 현재 80개로 축소되었다. 국내은행의 해외영업소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지점은 1997년 90개에서 2002년 55개로 축소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사무소는 철폐되었는데 1997년 54개의 사무소에서 2002년 4개로 축소되었다. 현지법인도 1997년 46개에서 2002년 21개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2>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사무소, 현지법인 추이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2) 증권회사

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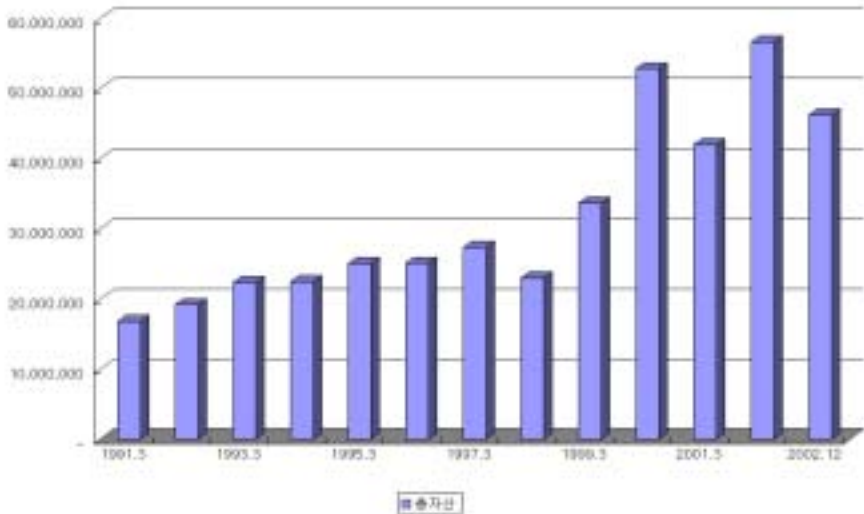
국내 증권회사의 총 자산규모는 2002년 12월 현재 46조 원이며, 2001년 총 자산규모는 56조 원으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2002년 주식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다. 국내에 등록된 국내 증권회사수는 2002년 12월 현재 44개사로 2000년 이후 증가하였다. 국내 증권회사의 자본금규모는 1991년 3.3조 원에서 2002년 17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사당 평균 자본금은 2002년 3,9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3-5> 국내 증권사 주요지표(규모)

	증권회사 수	총 자본금 (백만 원)	1사당 평균	점포 수	임직원 수
1991	31	3,320,421	107,110	677	26,054
1992	32	3,470,421	108,451	701	25,618
1993	32	3,470,421	108,451	737	26,828
1994	32	3,687,267	115,227	803	28,582
1995	32	3,783,535	118,235	868	28,675
1996	33	3,984,575	120,745	1,080	28,397
1997	34	4,086,125	120,180	1,261	25,271
1998	31	4,657,125	150,230	1,108	22,352
1999	32	6,867,515	214,610	1,358	32,005
2000	43	16,641,746	387,017	1,800	36,708
2001	45	17,404,757	386,772	1,694	34,985
2002	44	17,166,670	390,152	1,736	33,323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그림 3-13> 국내 증권회사의 자본금 추이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국내 증권사는 규모면에서 국제적인 증권사와 비교해서 매우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권사와 세계 우수 증권사와의 규모에 대한 비교는 국내 증권사가 국내 영업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세계 우수 증권사는 국제적 업무와 다양한 투자은행 서비스 제공 등 평면적인 비교는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대한 단편적인 비교를 통해 본 국내 증권사의 평균 자산규모(8.75억 달러)는 세계 4대 증권회사⁴⁾의 평균(4,079억 달러)의 0.2%에 불과하다. 한편 직원 1인당 대비 자산규모는 국내 증권사 1.15백만 달러인 데 비해 세계 4대 증권사의 평균 직원 1인당 자산 규모는 1천 2백만 달러로 1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국내 증권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2002년 세계 4대 증권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Goldman Sachs, Lehman Brothers 순임.

<표 3-6> 국내 증권사와 세계 4대 증권사의 규모 비교

	국내 증권사(A)	세계 4대 증권사(B)	(A)/(B)
평균 총자산 규모(백만 달러)	875	407,679	0.002
평균 직원 수	750	34,122	0.02
총자산/직원 수(백만 달러)	1.15	11.9	0.09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세계 4대 증권사 Annual Report 각호.

나) 영업 활동 및 업무 영역

국내 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은 크게 고유업무와 부수업무, 그리고 겸영 가능업무로 나누어진다. 고유업무는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증권회사의 업무로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그리고 인수주선 업무(underwriting)로 규정되어 있다. 부수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수업무를 말하는데, 주식 및 지분의 평가, 기업 매수 합병의 중개, 주선, 대리 등 다양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겸영업무는 중

<표 3-7> 증권회사의 업무영역

고유 업무	자기매매(dealing)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brokerage)	-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 유가증권의 중개 또는 대리 -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인수주선 (underwriting)	-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부수 업무		- 증권업과 관련된 업무: 주식지분의 평가, 기업 매수, 합병의 중개, 주선, 대리, CD의 매매, 매매의 중개, 사채 모집의 수탁, 외국인을 상대로한 상임 대리인, 기업에 대한 경영 상담
겸영 가능 업무	법률에 명시된 업무	- 신용 공여 - 증권저축 업무
	금감위 인가 업무	- 회사채 지급보증 - 증권금융의 공모주 청약예금예치금 수납 대행 - 해외증권업무

권거래법에 신용공여업무와 증권저축업무를 겸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통해 회사채 보증업무, 해외증권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다.

국내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요건은 증권회사의 영업범위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인수업무를 포함한 모든 증권업을 영위하는 종합증권업의 경우에는 최저 자본금이 5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억 원 이상, 위탁매매업만을 하는 경우는 3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의 단일업무에 대해서는 최소 2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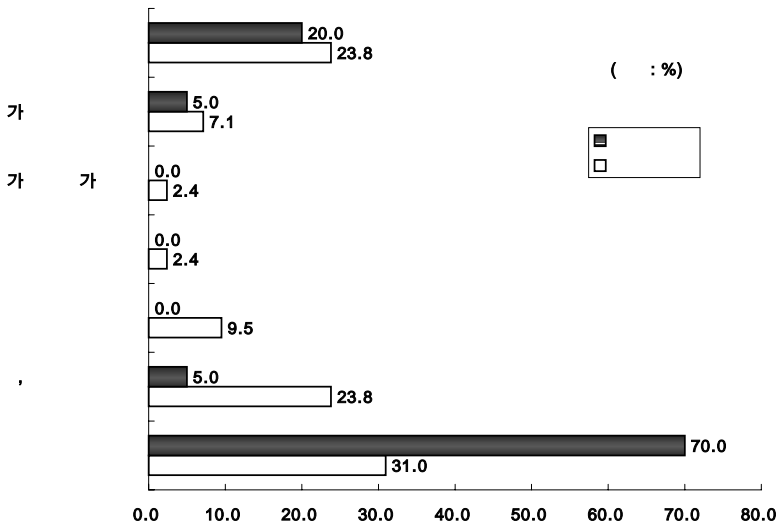
국내 증권사는 전통적으로 위탁매매업무의 비중이 매우 높다. 1990년대 초 이후 증권회사의 수수료수입은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유지해왔다. 특히, 수수료 수입 중 많은 부분이 위탁매매(brokerage)에 의존하였다. 반면, 자기매매 수익은 1994년 전체 수익의 30%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2년에는 전체 수익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내 증권사가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최근 특이한 사항은 기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수익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증권사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과 2002년 사이의 증권사 영업수익의 가장 증가추세가 있는 것은 위탁수수료(31%)와 파생상품거래이익(22%)이다. 상품유가증권 매매이익(6.5%)과 평가이익(1.6%), 이자수익(1.6%)은 증가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증권사들의 경우 위탁수수료 수익 부문(70.0%)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와 같이 국내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에 의존도가 높은 원인 중의 하나는 최근 자본시장상황이 위탁매매 이외의 수수료수익이 증권사 전체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지급보증업무와 수익증권판매 영업 역시 수수료수익에 일부분 기여한 바 있으나, 업체 부실화로 인한 사채원리금 대지급, 수익증권 손실부담 등으로 대규모 대손상각, 평가손을 반영함으로써 증권사 수지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 바 있다. 상품자산운

<표 3-8> 국내 증권사의 이익구조 추이

	총수입(조 원)	수탁수수료	인수수수료	기타수수료	자기매매	이자수익	기타
1991	2.8	20.1	25.7	6.6	10.5	27.3	0.0
1992	3.1	29.6	9.8	8.6	17.7	33.2	0.0
1993	4.3	38.5	7.7	2.7	29.7	21.5	0.0
1994	4.4	41.3	5.8	2.7	30.8	19.4	0.0
1995	3.3	35.0	10.8	3.5	21.9	28.7	0.1
1996	4.1	33.3	18.4	3.4	16.3	25.0	3.2
1997	5.3	31.6	14.0	3.9	17.7	23.3	9.2
1998	8.1	29.2	6.5	14.3	21.7	16.8	11.3
1999	18.7	37.1	2.0	19.9	16.6	9.7	14.8
2000	12.7	19.5	2.4	27.6	16.3	14.7	19.5
2001	12.1	21.7	2.2	23.8	12.7	13.9	20.9
2002	8.5	31.9	2.6	11.2	7.6	15.8	227.4

<그림 3-14> 국내 증권사와 국내 외국증권사와의 수익구조 비교



자료: 증권업협회, 2002.

용(파생상품거래포함) 부문 역시 증시 침체에 손실규모를 더욱 확대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국내 증권사들은 높은 위탁수수료수입 의존도와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로 인해 수익규모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최근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자산관리업무, 장외파생상품 등의 신규사업은 인력 및 시스템 정비, 시장 성숙 등의 인프라 구축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외파생상품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단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용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여전히 시장상황에 의존적인 수익패턴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다.

더욱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증권사의 자본규모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증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규모가 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증권사는 세계적 증권사들에 비해 사업의 다각화 측면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다. 즉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구조는 투자은행 부분이 취약한 반면 위탁수수료가

<표 3-9> 삼성증권과 메릴린치의 운영업수익 구성비(%)

삼성증권	비중	메릴린치	비중
수탁수수료	50.0	수탁수수료	24.2
자산운용이익	15.7	자산운용이익	16.0
투자은행 부분	2.5	투자은행 부분	13.6
인수업무	2.5	인수업무	9.8
기타부분	0.1	전략자문	3.8
수익증권 취급수수료	22.9	자산운용 및 투자자문 수수료	25.8
이자부분	8.2	순이자 수익	16.0
기타	0.7	기타	4.4

주: 1) 삼성증권의 손익계산서를 메릴린치 양식으로 전환.

2) 가장 비슷한 항목을 중심으로 분류.

3) 삼성증권은 FY01(2001. 4~2002. 3), 메릴린치는 2002년 01H(1~6월) 수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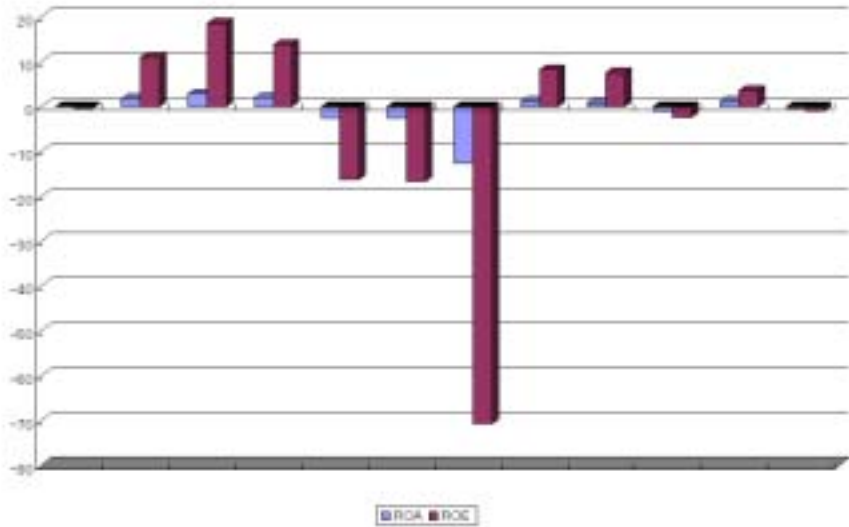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증권업협회, 2002 재인용.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국내 최대 증권사인 삼성증권과 세계적인 증권사인 메릴린치의 수익구조를 비교해보면, 삼성증권이 총 수익 중 수탁수수료의 비중이 50%를 차지하는 반면, 세계 유수 증권사 중 개인 투자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메릴린치 증권사의 수탁 수수료는 24%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투자은행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인수 업무의 비중은 삼성증권이 2.5%에 그친 반면, 메릴린치 증권사는 9.8%를 차지하고 있다.

다) 수익성

국내 증권사의 수익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국내 증권사의 수익은 1990년대 이후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국내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1991년, 1994년, 1995년, 1996년, 2000년, 그리고 2002년의 경우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이익률(ROA)이 각 해 연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ROE가 -70%를 기록하였으며, 동년도의 ROA는 -12%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 증권사의 낮은 수익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증권사의 규모가 소규모이고, 경쟁이 치열하며, 수익의 많은 부분을 시장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의존하고 있어 변동성이 높다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를 통해 다양한 수익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서 기존의 위탁매매업무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위험자산의 투자 및 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보다 투자은행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3-15> 국내 증권사의 수익률 추이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라) 자산운영 및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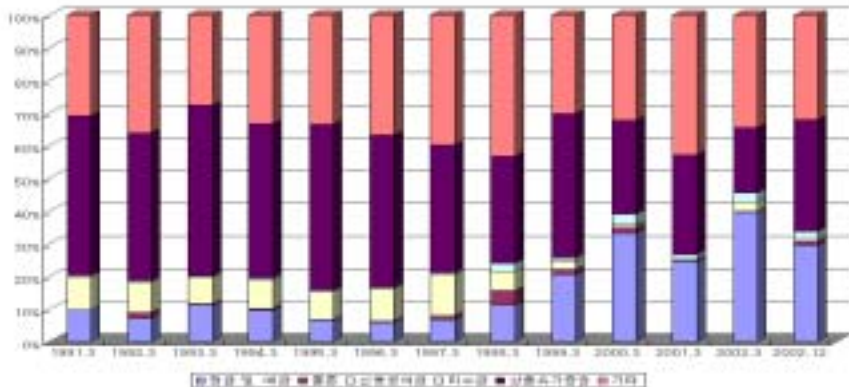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중개기능을 고유업무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2년말 국내 증권사의 총 자산운영규모는 46조 원으로 1991년 13조 원에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내 증권사의 자본운영구조를 살펴보면, 상품유가증권이 가장 높은 비중(34%)을 차지하고 있고, 상품유가증권 비중과 현금, 예금 및 예치금의 비중(29%)은 서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현금 및 예치금 비중이 높은 원인 중의 하나는 고객의 투자 기간이 단기 위주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10> 국내 증권사의 자본운영 추이

연월말 End of	유 동 자 산 Current Assets								총자본 운영규모
	계 Sub-total	현금,예금 예치금등 Cash & Bank Deposits	콜론 Call Loans	신용공여금 Broker's loans	미수금 Accounts Receivable	상품유가 증권 Trading Securities	기타 Others	기타 자산	
1991.3	12,736,472	1,337,611	-	1,412,871	62,435	6,728,988	3,194,567	1,037,404	13,773,876
1992.3	14,520,315	1,113,852	283,898	1,440,442	96,604	7,099,499	4,486,020	1,156,731	15,677,046
1993.3	16,983,408	2,044,486	70,206	1,487,360	91,126	9,565,068	3,725,162	1,279,618	18,263,026
1994.3	16,325,566	1,722,908	104,770	1,536,919	127,441	8,475,289	4,358,239	1,595,453	17,921,019
1995.3	18,182,035	1,298,311	50,900	1,709,006	102,896	10,174,427	4,846,495	1,860,276	20,042,311
1996.3	17,306,737	1,160,215	76,100	1,901,451	94,824	9,053,720	5,020,427	2,082,721	19,389,458
1997.3	19,072,437	1,438,425	267,709	2,672,734	130,282	8,356,707	6,206,580	2,297,593	21,370,030
1998.3	12,628,989	1,670,196	684,869	857,226	368,959	4,923,574	4,124,165	2,316,786	14,945,775
1999.3	21,539,695	5,084,478	437,227	561,649	312,095	10,972,969	4,171,277	3,309,502	24,849,197
2000.3	38,062,960	17,577,974	933,025	386,850	1,777,789	15,212,116	2,175,206	14,812,409	52,875,369
2001.3	25,538,163	10,319,628	147,800	151,346	605,742	12,856,887	1,456,760	16,495,176	42,033,339
2002.3	39,658,861	22,506,779	61,902	1,599,271	1,646,229	11,386,223	2,458,457	16,991,857	56,650,718
2002.12	33,425,812	13,693,345	501,505	401,010	1,043,503	15,793,756	1,992,692	12,826,709	46,252,521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그림 3-16> 국내 증권사의 자산운영구조 추이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국내 증권사의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면, 1990년대 전반적으로 콜머니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0년으로 들어서면서, 예수금이 증권사의 중요한 자금조달로 전환하였다. 한편 2002년으로 들어서면서 증권사의 자본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2002년 증권사의 자본금 규모가 증가한 중요한 요인은 기존의 투신사중 일부 대형 투신사가 증권업무 부분을 분사하여 증권사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표 3-11> 국내 증권사의 자본조달 추이

	총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Short-term Borrowings	콜머니 Call Money	고객예수금 Customers' Deposits	수입담보금 Guarantee Deposits	기타 Others	고정부채	자본금	잉여금
1991.3	8,443,366	3,084,990	-	1,409,740	38,922	3,909,714	310,265	2,870,921	5,242,042
1992.3	9,811,627	1,168,362	2,600,820	1,452,888	66,180	4,523,377	656,849	3,320,421	5,424,270
1993.3	12,498,271	2,906,582	3,247,437	2,422,000	84,276	3,837,976	634,544	3,470,421	5,777,637
1994.3	11,465,764	3,476,152	934,356	2,960,626	98,248	3,996,382	1,076,059	3,565,421	6,377,802
1995.3	13,216,436	5,210,434	1,815,955	2,036,890	109,381	4,043,776	1,560,821	3,727,137	6,773,327
1996.3	13,971,671	5,654,908	2,141,798	1,902,712	114,800	4,157,453	1,565,433	3,863,535	5,976,172
1997.3	16,480,982	5,293,559	2,171,146	3,175,163	173,384	5,667,730	1,772,943	4,074,575	5,310,270
1998.3	12,149,540	1,906,646	2,467,578	3,113,418	89,750	4,572,148	3,976,313	4,946,110	2,398,183
1999.3	21,318,718	2,421,023	6,916,268	6,764,416	77,674	5,139,337	4,697,356	5,494,915	2,860,813
2001.3	37,478,252	6,109,461	7,108,130	14,558,070	70,649	9,631,942	3,030,339	8,088,582	5,098,946
2002.3	27,666,391	4,900,117	3,943,315	8,618,668	45,788	10,158,503	3,517,690	17,124,084	-4,111,762
2002.12	33,866,483	3,939,759	5,813,000	10,289,051	47,296	13,777,377	1,370,156	17,166,670	-4,638,603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표 3-12> 국내 증권사의 자본조달비중 추이

	총 유동 부채	단기차입금 Short-term Borrowings	콜머니 Call Money	고객예수금 Customers' Deposits	수입담보금 Guarantee Deposits	기타 Others	고정 부채	자본금	잉여금
1991.3	33.4	12.2	-	5.6	0.2	15.4	1.2	11.3	20.7
1992.3	33.8	4.0	9.0	5.0	0.2	15.6	2.3	11.4	18.7
1993.3	35.8	8.3	9.3	6.9	0.2	11.0	1.8	9.9	16.6
1994.3	33.8	10.2	2.8	8.7	0.3	11.8	3.2	10.5	18.8
1995.3	34.3	13.5	4.7	5.3	0.3	10.5	4.1	9.7	17.6
1996.3	35.5	14.4	5.4	4.8	0.3	10.6	4.0	9.8	15.2
1997.3	37.4	12.0	4.9	7.2	0.4	12.8	4.0	9.2	12.0
1998.3	34.1	5.4	6.9	8.7	0.3	12.8	11.2	13.9	6.7
1999.3	38.3	4.3	12.4	12.1	0.1	9.2	8.4	9.9	5.1
2001.3	41.1	6.7	7.8	16.0	0.1	10.6	3.3	8.9	5.6
2002.3	38.5	6.8	5.5	12.0	0.1	14.1	4.9	23.8	-5.7
2002.12	41.5	4.8	7.1	12.6	0.1	16.9	1.7	21.0	-5.7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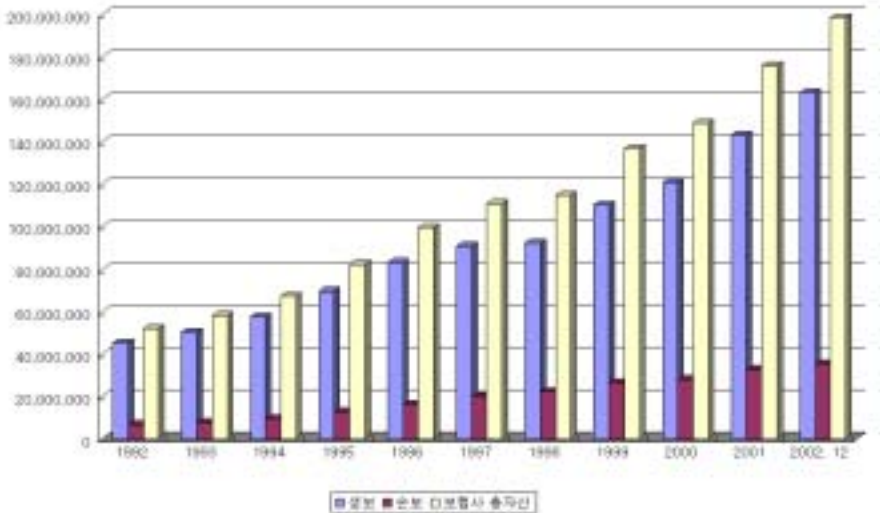
3) 보험회사

가) 규모

2002년 12월 현재 국내 보험사는 총 자산규모 200조 원에 달하면서, 아시아에서 2번째로 큰 보험시장을 지니고 있다. 1992년 국내 보험사의 총 자산규모는 51조 원이었으나, 2002년 현재 198조 원에 달해 10년간 4배 정도로 자산 규모가 증가하였다. 국내 보험사 중 생명보험사의 자산규모는 손해보험사의 규모에 비해 4배 이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2월 현재 국내 보험회사수는 47개로 생명보험사 23개와 손해보험사 24개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보험사는 국내 보험사가 11개, 합작사가 3개 그리고 외국보험사가 9개이며, 손해보험사는 국내보험사가 14개, 외국사가 10개로 국내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02년 현재 국내 보험사의 총 임직원수는 4만 7천명이며, 모집인수는 21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3-17> 국내 보험사의 자산규모 추이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표 3-13> 국내 보험사 현황(2002)

		회사수	임직원수	모집인수	점포수	대리점수
생보	일반사	11	21,095	118,630	4,025	4,580
	합작사	3	1,600	11,586	374	117
	외국사	9	3,890	25,330	741	2,359
	생보사계	23	26,585	155,546	5,140	7,056
손보	국내사	14	20,430	53,415	2,126	51,558
	외국사	10	338	1,843	13	508
	손보사계	24	20,768	55,258	2,139	52,066
합계		47	47,353	210,804	7,275	59,122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나) 영업활동 및 업무영역

(1)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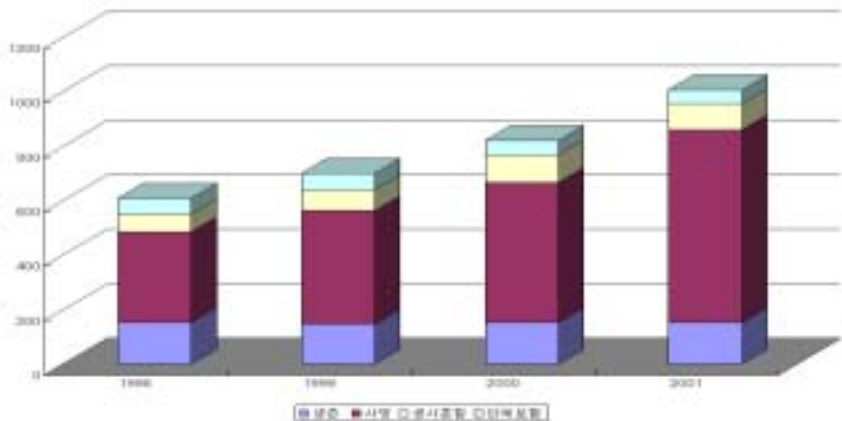
국내 생명보험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구분

하고 개인보험은 다시 보험금의 지급조건에 따라 사망보험, 생존보험, 그리고 생사혼합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중에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며,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성 기능이 강한 보험이다. 생사혼합형 보험은 생존보험의 저축기능과 사망보험의 보장기능을 겸비한 절충형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애를 당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생존시에는 생존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의 보험이라 할 수 있다. 단체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의 구성원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데, 고용주가 보험기간 중 피고용자의 사망 또는 질병 그리고 퇴직 등과 같은 손해발생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 수단이다.

국내 생명보험은 개인보험의 비중(95.1%)이 단체보험의 비중(4.9%)보다 월등히 높으며,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을 지닌 사망보험의 비중이 높다. 국내 생명보험의 계약 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계약금액의 대부분이 개인보험이다. 한편 개인보험 중 과거에는 저축성 기능이 강한 생존보험

<그림 3-18> 국내 생명회사의 상품별 보험계약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보장성 보험의 비중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저축성 기능과 보장성 기능을 함께 지닌 생사혼합형 보험의 비중도 축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생명보험의 저축성 기능이 상대적으로 다른 저축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손해보험

국내 손해보험사의 업무영역은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에 따라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연금, 장기저축성 및 해외원보험의 8가지로 나누어진다. 이중 보증보험은 신원보증, 계약이행보증, 할부판매보증 및 납세보증 등이 있으며, 특종보험은 상해보험, 도난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원자력보험 등이 포함된다. 장기저축성보험은 장기화재, 장기상해, 장기종합보험 등이 있으며,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은 연금보험에 해당한다. 해외원보험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손해보험사가 외국인과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국내 손해보험사의 수입보험료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손보사가 자동차 보험과, 장기저축성 보험에 편중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

<표 3-14> 국내 손해보험사 상품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천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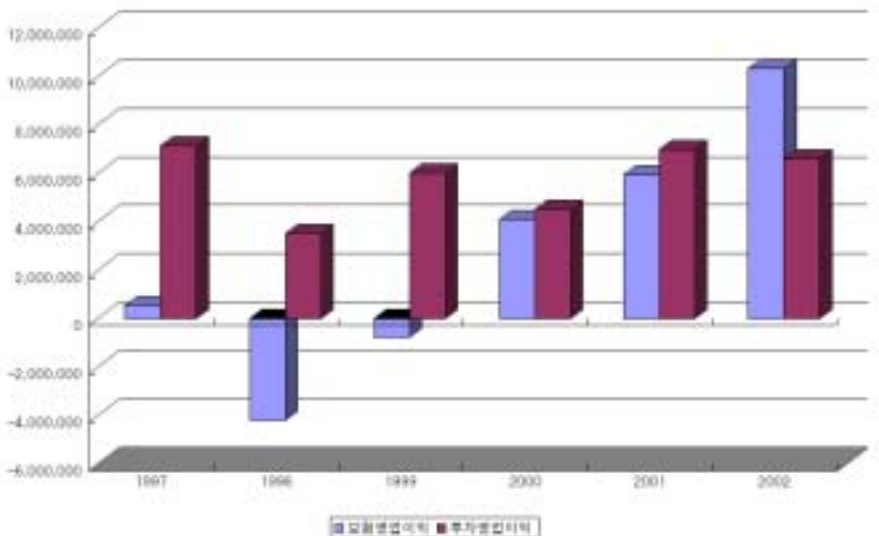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장기	개인연금	합계
1992	2.9	3.1	27.4	3.7	3.1	17.2	-	57.8
1993	3.1	3.5	32.9	4.6	3.7	19.9	-	67.8
1994	3.4	4.3	40.5	6.4	4.7	19.9	3.6	83.1
1995	3.7	4.5	50.1	7.0	6.0	30.5	7.1	109.2
1996	3.5	4.1	60.3	6.4	7.6	43.7	8.7	134.6
1997	3.2	3.9	61.7	12.9	9.2	63.0	9.0	163.1
1998	2.7	3.7	52.8	6.1	9.9	60.4	6.7	142.5
1999	2.6	4.5	55.3	5.7	9.8	60.3	6.0	144.5
2000	2.7	4.3	64.9	6.0	11.1	69.3	6.1	164.7
2001	3.0	5.2	74.9	7.1	14.4	72.9	6.6	184.1

다. 2001년 손보사의 총 수입보험료는 18.4조 원인데, 이 중 자동차 보험과,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8%와 39%로 전체 손해보험 상품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다) 수익성

국내 생보사의 수익구조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7년에서 2001년까지의 총이익 중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이익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998년과 1999년의 경우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보험영업이익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2년으로 들어서면서 생보사의 보험영업이익은 투자영업이익을 5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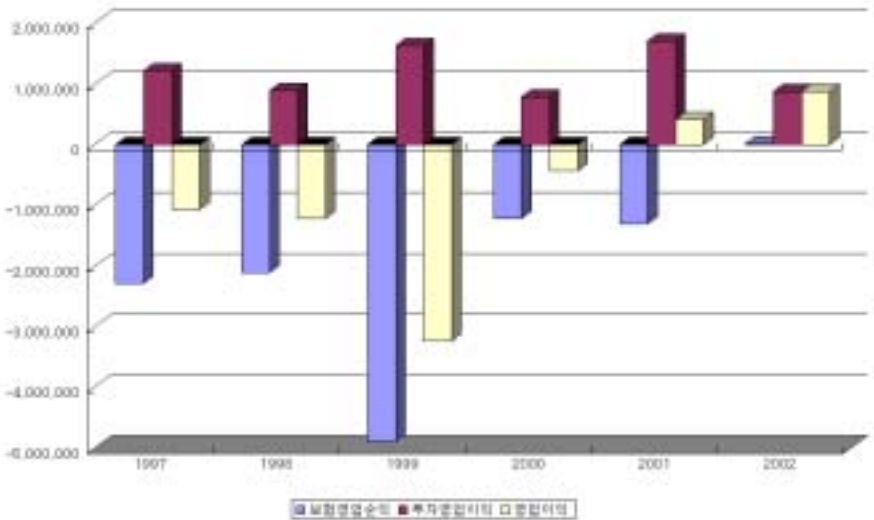
<그림 3-19> 국내 생보사의 영업이익 추이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과거 손보사들은 보험영업에서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이를 보상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보험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투자영업이익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시현되었다. 더욱이 현재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과거와 같은 고수익의 자산운영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영역구조의 안정화를 통해 수익성 안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20> 국내 손보사의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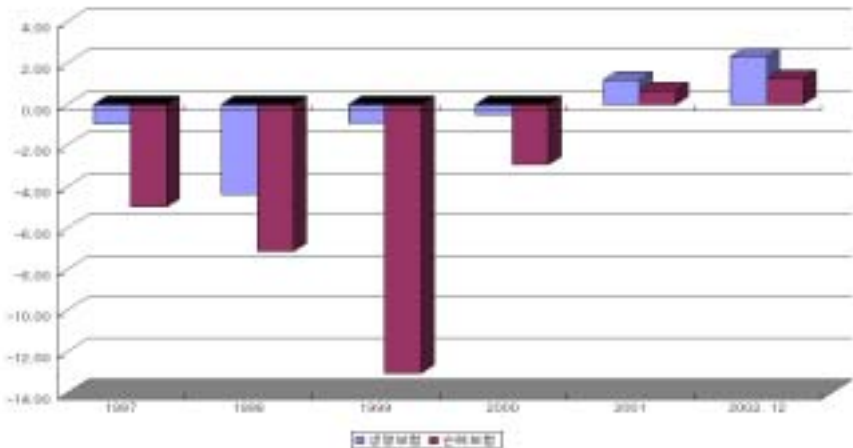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국내 보험사의 자기자본수익률은 1997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 생명보험사의 자기자본수익률은 -4.36%를 기록하였으며, 1999년 손보사의 자기자본수익률은 -13.0%를 기록하였다. 2000년 이후 생보사와 손보사의 자기자본수익률은 플러스로 돌아섰으나, 2002년말 기준으로 생보사의 자기자본수익률은 2.33%, 손보사의 자

기자본수익률은 0.67%를 기록하는 등 세계 우수 보험사⁵⁾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1> 국내 보험사의 자기자본수익률(ROE) 추이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라) 자금운영

국내 생보사의 자금운영⁶⁾ 구조를 살펴보면, 1998년 이전까지 대출채권에 의존하던 자금운영 형태에서 장기적인 유가증권투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02년 총 자산규모가 163조 원에 이르는 생보사는 총자산의 41%를 투자유가증권으로 운영하고 있다. 1997년 금융위기 직후 급격히 증가하던 보험해지로 인해 현금 및 예치금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2년 현재 총자산의 2.1%를 기록하였다.

- 5) 세계 최대 보험사인 ING사의 경우 2002년 자기자본수익률이 24%를 기록하였으며, 일본의 최대 보험사이자 세계 3대 생명보험사인 Nippon Life Insurance사의 경우, 2002년 자기자본수익률이 7.1%를 기록함.
- 6)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조달이 보험수험료로 구성되어 있어 자금조달 관련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음.

〈표 3-15〉 국내 생보사의 자금운영 추이

	현금과 예치금	상품유가 증권	투자유가 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총자산 규모 (조 원)
1997	14.9	25.8	-	45.9	8.1	90.9
1998	7.1	7.7	27.3	38.4	9.4	92.3
1999	4.7	14.3	26.5	32.0	8.7	110.2
2000	3.1	8.9	31.1	31.8	7.9	120.3
2001	1.9	5.6	39.0	28.4	6.5	143.0
2002. 12	2.1	5.1	41.8	26.3	5.6	163.2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국내 손보사는 생보사와 달리 보험금 지급이 단기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아 자산운영도 상대적으로 단기에 치중되어 있다. 손보사의 경우 현금과 예치금이 전체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6.0%로 상대적으로 높다. 유가증권의 투자에 있어서도 비교적 단기인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투자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및 부동산에 대한 자산운영비중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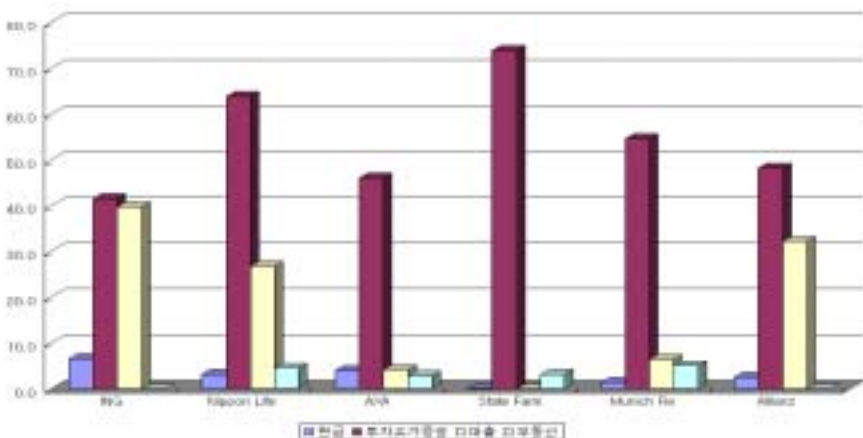
〈표 3-16〉 국내 손보사의 자금운영 추이

	현금과 예치금	상품유가 증권	투자유가 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총자산 규모 (조 원)
1997	18.6	32.1	0.0	22.4	8.8	19.9
1998	12.3	37.6	4.6	15.8	10.5	22.4
1999	11.0	29.8	15.3	13.7	9.7	26.4
2000	10.0	28.5	16.6	13.6	10.2	28.0
2001	6.6	23.3	29.3	14.0	9.5	32.7
2002. 12	6.0	18.8	33.9	15.2	8.8	35.2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세계 주요 보험사와 국내 보험사의 자금운영구조를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 국내 보험사의 자금운영이 단기적인 자산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세계 우수 보험사의 경우에는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세계 우수 보험사들의 현금 보유 비중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ING를 제외하면),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산의 구성에 있어서도 각 국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보험사인 **State Farm Insurance**의 경우 총자산의 73%를 유가증권 투자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산운영의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보험사 특히 생명보험사는 상대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관투자자로서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보험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국내 보험사에서는 미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22> 세계 주요 보험사의 자산운영 현황(2002)



자료: 각 보험사 Annual Report.

4) 투자신탁회사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

로 자금 등을 수입하는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투자신탁업은 기능별로 위탁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투자신탁제도는 1969년 증권투자신탁법이 제정되면서 한국투자공사가 한국신탁은행을 수탁회사로 하여 영업을 시작하면서 탄생하였다. 과거 국내 투자신탁업은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위의 투자신탁업 업무를 모두 영위하는 회사를 말하며, 수익증권의 판매 업무를 하지 않는 회사를 투자신탁운영회사라 정의하였다. 1995년 증권투자신탁업의 개정으로 투자신탁회사의 운영조직과 판매조직을 분리하여 판매조직을 증권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00년 상반기에 국내 3대 투자신탁사가 위탁업을 전문으로 투자신탁운영회사와 증권회사로 분리되면서 국내 투자신탁회사는 기존 투자신탁운영회사와 기존 투신사에서 분리된 투자신탁운영회사가 합친 위탁회사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가) 규모 및 유형

국내 투자신탁회사는 2000년 24개사에서 2002년 말 현재 31개사로 증가하였다. 2003년 3월 현재 총 설정펀드규모는 160조 원이며, 총 자산은 1.3조 원, 자기자본은 1.2조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7> 국내 투자신탁운영사의 주요지표

(단위: 억 원)

	회사수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	설정잔액
2000.3	24	-648	13,738	7,791	1,630,641
2001.3	29	1,193	11,721	10,244	1,511,719
2002.3	30	1,800	13,146	11,382	1,642,563
2003.3	31	1,730	13,763	12,748	1,609,286

국내 투신업은 수탁고규모 등 양적인 면에서나 펀드의 영세성과 초단기성 등 질적인 면에서 모두 선진국의 투신업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다. 2003년 7월 현재 국내 수익증권 수탁고는 1,322억 달러(158조 원)으로 세계에서 투자신탁업이 가장 잘 발달한 미국의 수익증권 수탁고 6조 7천억 달러의 약 50분의 1 수준이다. 한편 펀드수에 있어서 미국의 8,253개와 비슷한 6,632개의 펀드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결국 펀드당 운영자산규모는 국내 펀드의 경우 평균적으로 2천만 달러인 데 비해 미국 펀드의 경우에는 8억 1천 달러로 국내 펀드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펀드의 유형별 설정액을 비교해보면, 국내 펀드가 주식형(7.1%)보다는 채권형(40.7%)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펀드는 주식형(44.1%)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8> 한국과 미국의 펀드 유형별 비교

	한국				미국			
	설정액(A)	펀드수(B)	A/B	비중(%)	설정액(A)	펀드수(B)	A/B	비중(%)
주식형	9.5	476	0.020	7.1	2,958.5	4,712	0.628	44.1
채권형	53.9	2,513	0.021	40.7	1,238.9	2,051	0.604	18.5
혼합형	36.5	3,047	0.012	27.6	365.8	492	0.743	5.5
MMF	32.2	596	0.054	24.3	2,141.1	998	2.145	31.9
총	132.2	6,632	0.020	100	6,704.3	8,253	0.812	100

주: 한국은 2003년 7월 기준, 미국은 2003년 5월 기준임.

자료: 한국투신협회, 미국투신협회.

나) 영업활동 및 업무영역

투자신탁업 위탁회사의 업무는 크게 투자신탁자산의 운영과 수익증권 판매업무로 나뉜다. 투자신탁운영업무는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신탁자산

의 투자 및 운영지시. 기타업무로 정의된다. 수익증권 판매업무는 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 수익증권의 매각 및 환매 등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1992년 이후 중단되었던 위탁회사의 투자자문업이 1996년 이후 허용되었다.

5) 소결

국내 금융기관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금융시장의 변화 뿐만 아니라 금융 하부구조, 규제 및 감독 등의 변화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수익성 추구 및 다양한 업무영역 확보 등의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세계 우수 금융기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국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영업에 한정된 업무영역을 고수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금융서비스 기관들의 당면한 문제는 아래와 같다.

<표 3-19> 국내 금융기관 경쟁력 평가

	은행	증권	보험	투신
규모	- 총 1,000조 원 자산(100조 원 신탁) - 세계 5대 은행 평균의 1/19 수준	- 총 46조 원 자산 - 세계 4대 증권사 평균 1/500 수준	- 총 200조 원 자산 - 생보사가 4배 이상의 자산 보유 - 세계 4대보험사의 1/300 수준	- 펀드 규모 총 160조 원 - 평균 펀드 운영 규모 미국 펀드의 1/50
업무영역	- 고유업무 (예대업무)에 치중	- 위탁매매 위주 - 최근 파생상품 거래 확대 추세 - 투자은행업무 미흡	- 생명보험은 개인보험 위주 - 손해보험은 자동차 및 장기보험 위주	-
수익성	- 최근 수익성 개선 - 무수익 여신 대폭 감소	- 수익성 미흡 - 안정적인 수익구조 결여	- 수익성 미흡	- 수익성 미흡
자산운영 및 조달	- 원화 예수금 및 대출비중 확대	- 자산운영 및 조달 단기적 성향 강함	- 생보사 상대적으로 장기운영 - 손보사 단기 운영성향 강함	- 단기투자 경향이 강함 - 채권 투자에 치중
국제영업	- 한정적	- 한정적	- 한정적	- 한정적

가) 대형화 및 겸업화 미흡

국내 금융기관은 전반적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증권, 보험의 경우 모두, 규모면에서 세계 우수 기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⁷⁾ 특히, 손보사와 투자운영사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은 수는 많으나 자본금 규모 및 운영자산 규모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규모의 경제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겸업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 구현에 있어서도 국내 금융기관은 세계 우수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은행은 은행법이 정한 고유업무 이외에도 부수업무 및 겸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신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한편 증권사의 경우에는 위탁매매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높다. 이는 증권사의 규모가 작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비슷한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됨으로써 각 개별 금융기관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franchise value**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 방카슈랑스나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면서 범위의 경제 및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구조가 새로운 상품개발이나 영역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보다 경쟁적인 금융환경을 보장하면서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시장규제 및 감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7) 물론 은행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적정자산규모가 50조 원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등 현 시점에서 대형화에 대한 과점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대형화를 통한 겸업화를 구현함으로써 선도은행의 적극적인 국제 업무 영역 확대 등과 같은 국내은행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낮은 수익성

전반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낮다. 은행의 경우 최근 수익성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증권 및 보험 등에서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금융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수익성 향상의 가장 큰 원인은 무수익여신비율이 급격히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1999년 8.3%에 달하던 무수익여신비율이 2002년 1.9%로 낮아지면서 2001년과 2002년 연속적으로 국내은행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수익률과 자산수익률이 개선되고, BIS 비율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증권 및 보험사의 경우에는 과거 부실자산에 대한 정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함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낮은 상태로 남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제고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 고위험투자의 회피

대형화 및 겸업화의 미흡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영업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 및 증권의 자산운영 및 영업 형태를 보면, 위험한 투자를 꺼리고 안정적인 투자에 아직도 치중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투신업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채권투자 펀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국내 금융기관의 위험 기피현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이 위험에 대한 기피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수익성 개선 및 위험관리체제의 필요성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종 및 이종업계간의 경쟁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모두 안정적인 영업에만 치중한다면 개별 금융기관의 차별화 및 경쟁력제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규제 현황

본 절에서는 국내 금융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외 금융서비스 국내 진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과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한·중·일 FTA의 금융서비스 협상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금융서비스 기관들은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내 금융서비스기관들은 해외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현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진국의 국내 금융기관 진출의 경우, 대부분 국내 현지법인 및 지사에 대한 영업이 대부분이며, 진출국 국내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인 참여자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확대되어 각 금융기관들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따라 국내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 및 제한조치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1) 국내 외국 금융기관 진출현황 및 대외개방현황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협상과 1997년 IMF 긴급자금지원협상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서비스산업의 대외개방이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4월에는 외국인 주식투자와 채권투자가 제한 없이 자유화되었으며 은행서비스와 증권서비스 부문의 경우 그간 금지되었던 현지법인의 설립까지 허용됨으로써 서비스 공급기업의 법적 형태에 관한 제한은 대부분 철폐되었다. 이어서 1999년 1월에는 금융서비스의 Mode 2인 ‘해외소비’가 증권업과 선박보험업에 대해 허용되었으며, 선박보험업의 경우 금융서비스의 Mode 1인 ‘국경간 서비스 공급’까지 허용되었다. 은행업 중 외환업무에 관한 각종 제한(예: 선물환 외환매매시 실수요원칙 및 실수요증명 요건이 적용)도 1999년 4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실

시로 폐지되었으며 외환거래의 해외소비가 허용되었다. 또한 신용정보업·신용평가업·투자자문업의 경우에도 국경간 공급 및 해외소비가 최초로 허용되었다. 본 절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및 투신업 등 주요 금융서비스산업의 외국금융기관의 진출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은행

1950년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설립이 허용되면서 국내 은행의 외국 은행이 법적으로 가능하였으나, 1967년 시티은행이 국내 지점을 설립하면서 국내 은행업의 외국 금융기관 진출이 시작되었다. 1985년 외국은행의 국내 은행과의 합작법인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은 제한적이었다.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이 점진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한다. 1994년에는 경제적 수요 심사제가 폐지되었고, 1997년에는 세계 500대 이상 은행에 한정된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치 허용제도가 폐지되었다. 1998년에는 현지법인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외국 은행에 대한 국내 은행업 진출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지분소유제한도 철폐되어서 국내 투자가와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다. 시중은행 지분 4%, 지방은행 지분 15%까지는 신고 없이 은행의 지분소유가 가능하다. 한편 은행의 지분 10%(지방은행의 경우 15%) 이상 초과시에도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지분소유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지점 및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한 외국 은행은 16개국의 40개 은행이며, 이들은 61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10개국 17개 은행이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국내 외국은행의 시장 점유율도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2000년 1.6%에서 2002년 말에는 2.2%로 증가하였고 2003년 외환은행이 외국 투자자본에 인수되는 등 은행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인수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나) 증권

국내 증권업에 대한 외국 증권사의 진출은 1990년 11월 국내 지점 및 합작법인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시작되었다. 1991년 10월 최초로 JP Morgan이 국내 지점을 설립하면서 세계 주요 증권사의 진출이 시작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증권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제한조치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는데, 1995년 5월에는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의 최소영업기금기준이 축소되었고, 지점설치에 대한 사무소 전치주의가 폐지되고, 외국 증권사의 복수지점 설치가 허용되었으며, CD 매매 및 증개업무 취급이 허용되었다. 1996년에는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진출에 대한 경제적 수요심사제가 폐지되었다. 1997년 1월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기존 국내증권사에 대한 지분참여비율제한(10%)이 폐지되었고, 국내 사무소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1998년 4월에는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면서 대부분의 외국증권사의 제한조치가 철폐되었다.

2002년 말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 증권사는 4개 현지법인과 16개 지점 그리고 7개 사무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외국 증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997년 3.6%에서 2001년에는 11.8%로 급증하였다. 외국 증권사의 국내시장점유율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지닌 이들 증권사의 상대우위가 더욱 부각되면서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다) 보험

국내 보험업에 대한 시장개방은 1987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손해보험업은 1945년에 이미 지점설립이 허용되었으나, 생명보험업은 1987년까지 지점설립이 허용되지 않았다. 1987년 생명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지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 설립이 허용되면서 이후 국제적 생명보험사가 국내에 진출하게 된다. 1995년에는 수입적하보험, 항공보험에 대한 국경간 공급이 허용되었다. 1996년 5월 외국인의 국내 생보사에 대한 49% 지분소유제한이 폐지되었고, 1997년 1월에는 외국 보험사의 국내법인 설립에

대한 경제적 수요심사제도가 폐지되고, 생명보험업의 국경간 공급 서비스가 허용되었다. 또한 손해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장기상해·여행선박보험의 국경간 공급이 허용되었다. 1999년 2월에는 외국 보험사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제도가 폐지되었다. 현재 국내 보험업에 외국인 진출에 대한 잔존하는 제한 조치는 외국 보험사업자는 본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국내 보험회사와의 합작법인 설립이 금지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소유 제한은 없다.

2002년 말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 보험사는 생명보험업의 경우 현지법인 형태의 진출회사는 7개이며, 지점형태로 진출한 외국 보험사는 3개로 총 10개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업의 경우 현지법인은 1개, 지점은 9개로 대부분 지점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외국 보험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1997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1997년 말 4.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던 외국 보험사는 2002년 말 6.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라) 투자신탁업

국내 투자신탁업에 대한 외국 투신사의 진출은 1996년 12월 투지신탁업 지점설치 및 외국인 지분 50% 미만의 합작법인 신설이 허용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 1월에는 외국 투신사 국내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고, 1997년 12월에는 기존 투신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제한이 폐지되었고, 1998년 5월에는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동년 12월에 외국인에 대한 50% 이상 합작법인 설립이 허용되었다.

현재 활동 중인 외국계 투자운영회사는 5개로, 2000년 이후 급격히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외국 투자운영사의 시장 점유율은 0.6%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말 현재 5.9%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3-20> 국내 외국계 금융회사 진출 현황

		67~75	76~80	81~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은행	지점	9	33	69	70	73	74	72	71	67	68	66	62	62	62	62
	사무소	7	19	24	23	23	24	23	25	24	23	23	23	24	21	16
증권	현지법인과 지점	0	0	0	-	-	-	-	14	-	22	21	22	21	20	20
	사무소	-	-	24	-	-	-	-	23	-	9	6	5	8	8	7
보험	생보사	-	-	-	-	-	-	-	-	-	12	10	9	7	9	10
	손보사	-	-	-	-	-	-	-	-	-	3	4	4	4	8	11
투신 운용사		-	-	-	-	-	-	-	-	-	-	1	1	1	3	5

자료: 금융감독원.

<표 3-21> 외국계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 추이

	1997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은행 ¹⁾	-	1.6	2.1	2.2
증권 ²⁾	3.6	6.5	11.8	-
보험 ³⁾	4.0	4.0	6.0	8.1
투신운용사 ⁴⁾	-	0.6	1.1	5.9

주: 1) 국내 상업은행에 대한 외은의 예수금(은행+신탁) 평잔기준.

2) 연중 거래대금 누계액 기준.

3) 생손보의 수입보험료 누계액 기준.

4) 외국인 지분 50% 이상의 투신운용사에 대한 펀드설정액 기준.

<표 3-22> 국내 금융서비스의 대외개방 현황

구분	증권	투신	투자자문	은행	보험(생보)	보험(손보)
지점	○ (90.11)	○ (96.12)	○ (95.12)	○ (50.5)	○ (87)	○ (45)
현지법인 신설	○ (98.4 허용)	○ (98.5)	○ (97.12)	○ (98.4)	○ (87)	○ (97.1)
합작법인 신설	○ (90.11)	○ (96.12)	○ (97.12)	○ (83.1)	○ (87) (기존보험 사와 합작불허)	○ (97.1) (기존보험사와 합작불허)

<표 3-22> 계속

구분	증권	투신	투자자문	은행	보험(생보)	보험(손보)
기존사 지분참여	1사 한도 97.1, 전체 한도 98.5페이지	1사 한도 96.12 , 전체 한도 97.12 페이지	1사 한도 97.1, 전체 한도 98.5페이지	동일인 지분 한도범위 내 허용	외국 49% 초과제한 폐지 (96.5)	○
ENT기준	폐지 (96)	폐지 (97.1)	없음	폐지 (93)	폐지 (97.1)	폐지 (97.1)
관련 금융업영위 최소기간 요건	영위사실만 존재하면 됨	10년	영위사실만 존재하면 됨	없음	영위사실만 존재하면 됨	영위사실만 존재하면 됨
지점설치시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 (95.5)	폐지 (98.12)	폐지 (97.1)	폐지 (96.8)	없음	없음
국경간 거래	×	×	○ (98.12 허용)	△	○ (97.1 허용)	수출적하(93) 수입적하(95) 항공(95) 장기상해, 여행, 선박(97.1) 재보험(97.4)

자료: 재정경제부.

2) 외국 금융기관의 주요 국내 진출 및 영업 제한

최근의 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몇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바, 이는 크게 시장접근제한조치와 국내에 진출한 해외금융기관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에 대한 제한조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폐되었으나, 아직도 해외금융기관의 국내진출에 대한 일부 제한조치가 남아 있으며, 대부분의 해외금융기관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폐지되었으나, 건전성 및 모니터링 차원에서 차별적 조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해외금융기관들의 국내시장에 대한 국경간 공급이나 해외소비의 형태로 공급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한조치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은행업 중 예금 및 대출 관련업무와 생명보험업, 손해사정, 보험계리, 보험중계, 보험대리업의 경우 국경간 공급이나 해외소비의 형태로 공급될 수 없다. 본장에서는 국내에 남아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접근제한조치와 일부 차별적 조치에 대해 살펴보자.

가) 은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국내 은행업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외국계 은행의 본점 자본금 인정이다. 현재 국내은행법은 외국은행지점의 본점 자본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국은행의 본점이 우리 정부의 감독권 밖에 위치하여 본점 자본금에 대한 청구권 행사가 곤란하므로 예금자 보호차원에서 본점 자본금을 외은지점 자본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데 근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제도는 각국의 금융산업 규모·발전정도 등 금융현실을 반영하여 운용되고 있다. 바젤위원회의 은행감독 핵심준칙(Basle core principles)에서도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상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대만 등 많은 국가들이 외은지점에 대해서 지점자본금제도(branch capital system)를 운용하고 있다. 본점자본금을 인정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외국계 은행들은 일정 산식에 따라 예탁금(Pledge Asset)을 Banking Department Superintendent가 인정하는 은행들에 예치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예를 들면, 뉴욕주의 경우 지점 총 부채의 5% 또는 백만 US 달러 중 큰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는 외은지점이 일정금액 이상의 소매예금 수취를 제한(미국)하거나, 아예 금지하고(호주)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국내은행과는 달리 외국은행의 경우 영업활동상 필요한 재원의 조달이나 운용(예: 신용공여, 유가증권투자, 부동산투자)상 한도가 본점

자본금이 아닌 지점자본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정부는 외은지점의 영업상 애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외은지점의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영업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점자본금 제도의 철폐는 외국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향후 국내 예출금의 국경간 거래 및 해외소비가 허용될 경우, 자본금 인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외국은행의 자본금 변경은 금감위의 허가가 필요하다.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의거 외국은행은 자본금을 변경(갑지금의 감액 또는 증액)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동 규제에 대해 우리 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도모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한 취지가 있다고 설명해왔으나, 국내은행의 경우 자본금을 감자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받게 되어 있어 외국은행의 지점자본금 증액과 그에 따른 영업력 제고를 인위적으로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높다.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도 외국은행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인식될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일정비율(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이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중소기업이 금융이용시 신용 및 담보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도입·운영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은행 및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자산운영을 제한하고, 특히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미미한 외국은행에 대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외환거래법은 원화의 투기적 공격을 막기 위해서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편딩을 제한하고 있다. 즉 외국환은행은 비거주자에 대해

동일인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의 원화대출만 가능하고 10억 원 초과시 재정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다(규정 제2-7조). 동 규제의 취지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과도한 원화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외환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 가능성(예: 원화매도/달러매입으로 원화절하 유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내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의 외국인 공급과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도 제한되어 있다. 외국환 거래규정상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증 및 담보제공 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요하도록 되어 있다(규정 제2-7조). 이는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우발채무 부담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채무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라는 점에서 건전성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채무자인 거주자와 채권자인 비거주자의 거래에 관하여 비거주자에 대하여 하는 외화표시보증은 과도한 외화차입으로 국내기업의 채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 규제가 외화 자산 조달 측면에서 국내 금융기관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해외금융기관의 비교우위를 억제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로 작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증권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 또는 등록유가증권 및 거래소 또는 코스닥의 상장을 위해 모집, 매출하는 유가증권의 최초 취득 또는 처분시 인적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동 제도는 외국인 투자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목적이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 교란을 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의 마찰비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분노출을 꺼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국내 투자를 꺼려하거나 이에 대한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외국 증권사 국내 지점 자산의 국내 보유 및 결손보존조치는 외국증권사의 경쟁우위를 제한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외국사 국내지점은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이를 60일 이내에 보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제의 배경에는 국내 고객 및 채권자 보호가 주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조치가 외국 증권사의 자산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로 여겨질 수 있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을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상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가 해외증권 취득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재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규정 제7-35조). 동 규제의 취지는 무분별한 해외투자자와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는 시장접근상 제한의 일종인 해외소비에 대한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비거주자의 국내증권거래시 상장 및 협회등록 증권에 대해서는 장내 거래를 의무화하고 있어 외국 투자자의 다양한 증권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보험

외국 보험사의 국내지점 및 법인설립에 있어,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 사업자의 상업적 주재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외국 보험사의 진출에 있어 전문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외에 외국 보험사업자가 국내에 지점, 자회사, 합작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국내사와 차별하는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외국 보험사의 영업기금은 3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 국내 보험사와 합작하여 보험사를 설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물론 이는 국내 보험사에도 적용되는 제한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보험업의 과도한 독점 및 과점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작법인 설립금지

조치가 외국 보험사의 국내 상업적 주재에 대한 제한조치로 인식될 수 있으며, 과연 이러한 조치가 국내 보험업의 육성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라) 투자신탁 및 자산운영업

『증권거래법』(제28조)·『증권투자신탁업법』(제9조)·『증권투자회사법』(제33조)은 외국인이 국내에 상업적 주재 없이 내국인을 상대로 증권업이나 증권투자신탁업 또는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즉 투자신탁업과 자산운영업의 국경간 공급상의 제한을 하고 있다. 단, 외국 법령에 의해 외국에서 발행된 주식의 경우 상업적 주재 없이 국내 판매가 허용되어 있으며(단 국내 판매회사가 판매 대행), 구조조정기금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운용업무는 국내에 상업적 주재가 없는 자산운용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외국 투자신탁에 대해 국내 판매회사가 대행해야 하므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어 외국수익증권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한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 외국 위탁회사가 국내에서 지점설립 시 별도의 허가기준(영업기금 30억 원, 전문인력 5인, 증권투자신탁업 영위필요)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 보호 및 증권투자제도 건전성 확보 차원의 규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의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설립기준보다 국내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자유로운 회사 설립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다. 최근 일본은 투자신탁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1억 엔으로 하향조정하였는데 이는 투자신탁회사의 경쟁을 촉진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외국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규

제의 차별적 규제는 상당부분 철폐되었으나, 아직도 외국 금융기관과의 차별적 조치는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금융규제 중,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융규제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진입을 억제하고, 경쟁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영 및 조달을 억제하는 조치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금융선진화 및 국제금융 중심지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규제는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다.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규제의 경우, 시장진입규제, 영업제한 및 자산운 영제한 등이 국내외 금융기관 차별 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제적 기준보다 엄격하거나 시장진입제한조치로 분류될 수 있는 조치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투신사 설립자본금인데, 국제기준에 비해 아직도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자본금 요건을 국제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과거 높은 자본금 요건으로 인해 거대 산업자본이 제2금융권 대부분을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자본금 요건 축소는 국내외 금융전문가의 금융 창업을 촉진시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영업범위의 제한 및 자산운영 및 조달에 대한 제한 조치는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국내 금융관련법규가 각 금융기관 권역별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해당 금융기관의 종합적인 위험지표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개별자산 및 부채에 대한 한도 및 비율을 제한하거나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의 차별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경영방식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개발 및 거래 기업도 지나치게 표준화되는 경향을 낳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및 영업과 관련된 차별적 조치는 해외 금융기관이 지니는 건전성 규제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나,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억제하는 조치도 존재한다. 해외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는 국내 상업적 주재를 전제하고 있어(일부 보험상품 제외), 국경간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내규제대상이 아닌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투자자 및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나,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확대하는 측면도 강하다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 지점 및 현지법인을 설립한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상의 제한, 외국 증권사의 국내지점 자산의 국내 보유 및 결손보조 등과 같은 비경쟁적 조치가 존재하고 있어, 외국 금융서비스기관의 국내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은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국내 금융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은 국내 금융규제의 선진화 및 금융 하부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의 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가능할 것이나, 일부 자본거래 제한조치와 감독체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국내 금융규제 및 감독 기관의 규제 영역을 서비스 제공자 기준, 즉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과 서비스 제공 지역으로 나누어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한한다고 판단되는 감독 및 규제 조치를 분류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23> 국내 규제의 영역 및 제한사항

		금융서비스 제공 지역	
		국내	국외
금융 서비스 제공자	국내 금융기관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금융기관 차별 없이 국내 금융규제로 분류되는 조치 - 국내 금융서비스진입규제: 자본금 제한 - 영업 제한(고유업무 및 부수 업무) - 자금운영 및 조달제한	<input type="checkbox"/>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제한조치 및 해외 금융시장접근제한조치 - 대부분의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 금융시장 진출 제한은 자유화됨 - 외화표시 채권의 해외시장 발행 자유화, 단 원화표시 채권은 허가사항
	국외 금융기관	<input type="checkbox"/>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영업과 관련 차별적 규제 - 자본금 증자 규제 - 증권사의 국내 자산보유 의무	<input type="checkbox"/> 역외 금융시장 미발달 초래 - 국내 원화 국제화와 관련된 규제

2. 일본

가. 일본 금융산업의 현황

1) 일본 금융산업의 개관

가) 간접금융 우위의 자금 흐름

일본에서는 은행 중심의 금융중개기관을 경유하는 간접금융이 우위에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자금순환계정표를 보면, 국내 비금융부문의 자금조달잔고 가운데 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버블 붕괴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때문

에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90년 3월말에는 대출이 국내 비금융부문의 자금조달잔고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점차 그 비율이 감소하여 2002년 3월말에는 대출비율이 55%까지 하락하였다(<표 3-24> 참고).

<표 3-24> 국내시장을 통한 국내 비금융부문의 자금조달잔고
(기업간 신용 제외)

(단위: 억 엔)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12,390,810	15,129,966	15,502,570	15,951,604	16,133,905	16,701,462	17,018,580	17,267,798	17,238,257
	구성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대출		8,614,429	10,058,504	10,122,229	10,300,639	10,235,901	10,157,996	10,019,920	9,911,262	9,531,545
	구성비(%)	69.52	66.48	65.29	64.57	63.44	60.82	58.88	57.40	55.29
증권	합계	3,776,381	5,071,462	5,380,341	5,650,965	5,898,004	6,543,466	6,998,660	7,356,536	7,706,712
	구성비(%)	30.48	33.52	34.71	35.43	36.56	39.18	41.12	42.60	44.71
등	주식 이	2,789,181	3,889,044	4,171,098	4,409,062	4,640,115	5,245,782	5,621,533	5,932,535	6,250,561
	외 증권									
	구성비(%)	22.51	25.70	26.91	27.64	28.76	31.41	33.03	34.36	36.26
	주식·	987,200	1,182,418	1,209,243	1,241,903	1,257,889	1,297,684	1,377,127	1,424,001	1,456,151
대출금	구성비(%)	7.97	7.82	7.80	7.79	7.80	7.77	8.09	8.25	8.45

주: 각년도 3월 기준.

자료: 일본은행 자금순환계정표.

나) 금융기관·금융시스템의 기능저하

일본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1990년대의 버블붕괴 이후 부실채권의 증가에 따라 대차대조표(balance sheet)가 악화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악화는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를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대출이 기피되면서 신용경색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악화로 간접금융 우위인 일본의 금융시스템 전체가 기능저하 상태에 빠져 있다.

다)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의 열위

전술한 금융기관·금융시스템의 기능저하로 인해 일본의 국내 금융기관·금융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금융시스템에 대한 평가 저하에 따라 일본의 금융기관은 자금조달과 관련해 리스크 프리미엄(Japan premium)을 요구받게 된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곤란한 시기도 있었다. 한편 일본의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가 악화되면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국제은행으로부터의 용자를 축소하고 있다.

라) 동경 금융시장의 공동화

금융기관·금융시스템의 기능저하와는 별도로, 1980년대 후반의 버블기부터 일본 국내의 발행기관과 국내 기관투자가가 동경 금융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유로채 시장을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동경 금융시장의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이나 런던의 금융시장과 비교해 동경 금융시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최근, 유로화로의 통화통합에 성공한 EU는 증권시장의 통합에 의해 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규모와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편 동경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이러한 시장의 효율성·규모·유동성의 측면에서 EU의 금융시장과 비교하여 열세에 있기 때문이다.

2) 일본판 금융 빅뱅

가) 일본판 금융 빅뱅의 3대 원칙

일본 정부는 1996년 11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일본의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 일본판 금융 빅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본판 금융 빅뱅은 자유(Free), 공정(Fair), 국제화(Global)라고

하는 3대 원칙에 근거해 국내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판 금융 빅뱅은 2001년까지 스케줄에 따라 일단 완료되었다.

먼저 3대 원칙 가운데 자유(Free)란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자유로운 시장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증권·보험 분야에의 진입을 촉진한다.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서비스(장·단기 분리 등에 기초한 상품규제의 철폐, 증권·은행의 업무영역 확대)를 자유화한다. 다양한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수수료를 자유화한다.

다음으로, 공정(Fair)이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규정의 명확화·투명화 및 투자가의 보호가 포함된다. 자기 책임원칙의 확립을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정을 명확히 한다. 이와 함께 공시(disclosure)를 충실하고 철저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화(Global)란 국제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시장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글로벌화에 대응한 법정비, 회계제도, 감독체제의 정비가 포함된다. 파생상품(derivative) 등의 확대에 대응한 법제도의 정비나 회계제도의 국제표준화를 도모한다. 또한 글로벌한 감독 협력체제를 확립한다.

나) 각 분야에서의 금융개혁

일본판 금융 빅뱅에 의하여 금융(은행) 분야에 있어서는 1998년 3월에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었다. 1999년 10월에는 전문금융기관제도에 관련된 규제가 철폐되어 은행·증권·신탁 자회사의 업무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 또한 은행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1998년 12월에 은행에 의한 투자신탁판매가 허가되었고, 2000년 10월에는 은행에 의한 보험회사의 자회사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2001년 4월에는 은행에 의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인정되었다. 한편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조기사정조치가 도입되었다.

증권 분야에서는 1998년 12월에 증권업·투자위탁업이 면허제에서 등

록제로 바뀌었다. 또한 이 시기에 투자신탁의 상품이 다양화되었고, 증권 회사의 자기자본의 비율 유지가 의무화되었다. 한편 1999년 10월에는 주식매매위탁수수료가 완전 자유화되었다.

<표 3-25> 일본 금융빅뱅의 진전상황

	1997	1998	1999	2000	2001	비고
상품 자유화·다양화						
투자신탁의 상품 다양화		→				1998년 12월 실시
증권종합계좌의 도입		→				1998년 12월 실시
유가증권장외파생상품의 해제		→				1998년 12월 실시
ABS 등 채권 등의 유통화		→				1998년 9월 실시
전자화폐·전자결제의 실현					→	검토중
업무·조직형태의 자유화·다양화						
은행·증권·신탁 사회사의 업무제한원칙 폐지			→			1999년 10월 실시
보험회사의 은행자회사화 해제			→			1999년 10월 실시
은행의 투자신탁 판매		→				1998년 12월 실시
보통은행의 보통사채 발행 해제			→			1999년 10월 실시
증권업·투자위탁업의 면허제에서 등록제로의 이행		→				1998년 12월 실시
주식매매 위탁수수료 자유화			→			1999년 10월 실시
여신전문금융기관(Nonbank)의 사채·CP 발행 해제			→			1999년 5월 실시
은행의 보험회사 자회사화				→		2000년 10월 실시
은행의 보험판매					→	2001년 4월 실시
보험상호회사의 주식회사화				→		2000년 6월 실시
시장·거래 인프라 및 규정 정비						
외환법 개정		→				1998년 4월 실시
상장주권 등 거래소집중 의무철폐		→				1998년 12월 실시
주식 상장승인의 사후신고제로의 이행		→				1998년 12월 실시
파생상품거래의 일괄청산넷팅 도입		→				1998년 12월 실시
금융상품판매법 제정					→	2001년 4월 실시
세제·회계제도						
유가증권거래세·거래소세 폐제			→			1999년 3월 실시
연결재무제표 제도 개선			→			1999년도 결산부터

자료: 일본 전국은행협회 금융조사부(2003)에서 발췌.

보험 분야에서는 업체간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은행에 의한 보험회사의 자회사화가 인정됨과 동시에, 보험회사에 의한 은행의 자회사화도 1999년 10월에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전술한 것처럼 은행의 보험판매도 인정되었다. 한편 1998년 12월에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조기시정조치가 도입되었다.

외환 분야에서는 1998년 4월에 「외환 및 외국무역 관리법」(구 외환법)이 개정되어 「외환 및 외국무역법」(신 외환법)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외환공인은행에만 외환업무를 허용하던 ‘환은주의’가 철폐되고, 외환업무에의 진입규제가 철폐되어 자유화되었다. 또한 거주자가 해외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자유화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거주자가 해외은행의 예금계좌를 통한 국경간(cross-border) 결제도 가능해졌다. 외국과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사전허가제나 사후신고제가 폐지되어 사후보고제로 되었다. 아울러 기업이 비거주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으로 파생상품(derivative) 거래를 실시할 경우도,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바뀌었다.

3) 일본 금융환경의 변화

가) 금융감독체제의 재편

① 금융감독기관의 재편

일본의 금융감독과 관련해서는 일본은행이 결제 시스템의 원활한 시행을 확보함으로써 신용질서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고, 금융청(1998년까지는 대장성)이 은행법 등에 규정된 감독권한에 근거하여 금융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행정은 금융감독기관의 재량에 의하는 측면이 많았다. 한편 그 판단기준을 금융기관 경영의 안정성 확보에 둬으로써 은행

등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호송선단방식’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 대장성이 지금까지 담당해온 금융제도의 기획·입안 업무와 민간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금융감독청 설치법이 1997년 6월에 성립되었다. 이것은 1998년 6월에 시행됨으로써 금융감독청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구 대장성이 그때까지 시행하고 있던 금융기관의 검사·감독업무가 금융감독청으로 이관되었다. 더욱이 일본의 행정개혁·중앙부처 재편의 움직임이 있던 와중에, 2001년 7월에 금융감독청은 금융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금융청은 금융에 관한 검사·감독업무에 더하여, 구 대장성 금융기획국이 소관하고 있던 국내 금융에 관한 기획·입안업무도 관장하게 되었다. 아울러 2001년 1월에는 금융재생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1998년 10월 이래 동 위원회가 담당해 온 금융기관의 파탄처리·위기관리가 금융청으로 이관되었다(鹿野嘉昭 2001).

② 조기시정조치

1998년에는 조기시정조치가 각종 금융기관에 도입되었다. 은행 등의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조기세제(早期稅制) 조치는 1998년 4월에 도입되었다. 증권회사의 자기자본비율 유지의 의무부여와 보험회사의 조기세제 조치는 1998년 12월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조기시정조치는, 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 미리 정한 시정조치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다. 조기시정조치에 의해 i)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을 객관적인 지표로 파악해 적시에 시정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확보와 경영파탄의 미연방지를 도모하는 것, ii) 시정조치의 발동규정을 명확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이바지하는 것, iii)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이 파탄했을 경우, 파탄처리코스트의 억제에도 연결되는 것 등이 기대된다.

<표 3-26a>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조기시정조치

구분	자기자본비율		시정조치의 내용
	국제기준	국내기준	
제1구분	8% 미만	4% 미만	경영개선계획(원칙적으로 자본증강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의 제출·실시 명령
제2구분	4% 미만	2% 미만	자본증강에 관련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획의 제출·실시, 배당·임원상여의 금지 또는 억제, 총자산의 압축 또는 억제 등
제2구분의 2	2% 미만	1% 미만	자기자본의 충실, 대폭적인 업무의 축소, 합병 또는 은행업의 폐지 등의 조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다음, 해당 선택에 관련된 조치를 실시
제3구분	0% 미만	0% 미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지 명령

자료: 일본 금융청.

<표 3-26b>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비율

자기자본 규제비율	증권회사의 대응	감독당국의 대응
140% 미만 ~ 120% 이상	140%를 밑도는 경우, 이하의 서류를 총리에게 신고 · 자기자본규제비율에 관한 신고 등 · 자기자본규제비율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에 관한 계획서	

<표 3-26b> 계속

자기자본 규제비율	증권회사의 대응	감독당국의 대응
120% 미만 ~ 100% 이상	120%를 밑도는 경우, 이하의 서류를 총리에게 신고 · 자기자본규제비율에 관한 신고 등 · 자기자본규제비율의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계획서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도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필요의 한도에 있어서 업무방법의 변경을 명령하고, 재산의 供託과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00% 미만	상동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도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필요의 한도에 있어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날에 자기자본규제비율이 계속해서 100%를 밑돌고, 그리고 자기자본규제비율의 상황이 회복될 조짐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료: 일본 금융청.

<표 3-26c> 보험회사의 조기시정조치 제도

보험금 등 지불능력의 충실 상황		조치 내용
비대상 구분	보험금 지불여력(solveny margin) 비율 200% 이상	
제1구분	보험금 지불여력 비율 100% 이상 200% 미만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개선계획제출의 요구 및 그 실행의 명령

<표 3-26c> 계속

보험금 등 지불능력의 충실 상황		조치 내용
제2구분	보험금 지불여력 비율 0% 이상 100% 미만	다음과 같은 보험금 등의 지불능력의 충실을 위한 조치에 관련된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 등의 지불능력의 충실에 관련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획의 제출 및 그 실행 · 배당 또는 임원상여의 금지 또는 그 금액의 억제 · 신규계약의 예정이율의 변경 · 리스크가 높은 투자행동의 억제 · 사업비의 억제 · 일부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업무 축소 · 자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 기타 금융청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3구분	보험금 지불여력 비율 0% 미만	기한을 정해놓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자료: 일본 금융청.

나) 대외환경의 변화

IT의 발달로 인해 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전함에 따라 각국의 금융기관을 비롯한 경제주체가 국경을 뛰어넘는 금융거래를 실시하면서, 각국의 금융시장간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국경의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99년 EU에 공동통화인 유로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EU 제국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의 글로벌화 및 국경의 자유화는 선진 각국에서의 금융 분야의 규제완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도 세계적인 규제완화의 조류 속에서 금융의 자유화·국제화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EU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유니버설 은행제도가 일반적으로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은행의 증권업무·보험업무에의 진출이 규제완화에 의해 가능해짐으로써, 1999년에는 금융지주회사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외국의 금융기관은 일본 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규제완

화에 편승하여 일본의 금융시장에 참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한편 수익을 증시하여 다른 아시아 금융시장과 일본 금융시장간의 냉정한 비교를 통해 일본 금융시장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 또한 볼 수 있다. 외국 금융기관의 일본 금융시장에의 참가는 국내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일부 분야에서 경쟁력이 열세에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국 금융기관의 일본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철수는 일본 금융시장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금융시장의 공동화를 진행시키게 되어 문제가 우려된다.

4) 분야별 금융산업서비스의 현황

가) 은행

① 은행수

일본의 은행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 일변도에 있다(<표 3-27> 참고). 그 원인으로는 버블 붕괴 후 대량의 부실채권을 떠안아 경영파탄에 빠진 은행이 정리·통합되어왔던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규모가 큰 도시은행이 메가뱅크를 목표로 하여 합병을 추진해온 것도 은행수를 감소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1998년 3월에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해금되어 은행지주회사 아래 은행이나 증권회사, 혹은 보험회사를 갖는 종합금융그룹의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시은행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형태를 이용한 조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 9월에 다이이치칸쿄(第一勧業)은행과 후지(富士)은행, 일본흥업은행이 합병하여, 은행지주회사인 ‘미즈호 홀딩스’를 설립하였다. 이 은행지주회사는 그 산하에 미즈호 은행과 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과 미즈호 신탁은행으로 재편되었다.

<표 3-27> 전국 은행의 자산구조

(단위: 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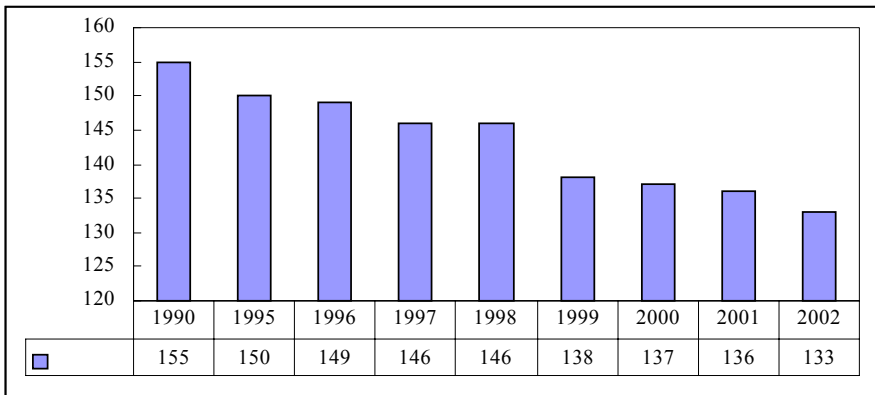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자산	9,435,697	8,450,012	8,482,014	8,559,608	8,479,609	7,563,460	7,372,333	8,042,906	7,560,833
현금예치금	1,553,895	876,242	731,552	625,026	496,668	312,708	386,079	393,324	489,080
콜 론	266,712	135,451	110,115	98,335	144,069	10,792,156	88,615	107,546	90,413
買現先계정	NA	NA	NA	NA	NA	NA	NA	43,045	11,177
매입어음	16,917	3,615	12,250	18,715	63,015	50,396	31,095	29,049	NA
매입금전채권	33,060	15,287	11,233	14,041	12,337	17,926	15,141	16,181	17,177
특정거래자산	NA	NA	NA	NA	175,644	147,164	151,099	200,360	167,197
상품유가증권	30,274	33,884	17,496	16,358	164,910	2,818	1,810	3,197	2,784
금전의 신탁	74,335	68,373	64,472	63,641	51,424	32,548	25,729	20,654	14,036
유가증권	1,326,462	1,284,149	1,311,084	1,320,498	1,309,971	1,215,949	1,362,079	1,765,208	1,569,927
투자손실충당금	NA	NA	NA	NA	NA	NA	-2,519	-1,056	-1,270
대출금	4,962,342	5,385,282	5,542,500	5,615,287	5,386,730	4,870,403	4,746,289	4,745,188	4,563,184
외환	121,464	56,073	57,665	58,925	53,915	40,149	33,323	33,582	34,872
기타 자산	380,001	135,531	148,233	216,628	250,940	218,408	161,798	288,410	242,950
동사부동산	51,226	67,885	67,772	66,632	105,459	97,183	94,428	92,142	88,461
채권이연자산	NA	1,803	765	555	304	190	102	110	42
이연세금자산	NA	NA	NA	NA	NA	88,861	82,283	72,639	106,764
재평가 관련 이연세금자산	NA	NA	NA	NA	NA	NA	NA	NA	55
지불승인대출차금	619,002	386,429	406,870	444,963	427,478	360,728	314,700	338,939	291,343
대손충당금	NA	NA	NA	NA	NA	NA	-119,630	-105,510	-127,302
투자손실충당금	NA	NA	NA	NA	NA	NA	-94	-107	-63

자료: 일본 전국은행협회.

2001년 4월에는 동경 미쓰비시(三菱) 은행과 미쓰비시 신탁은행 및 일본신탁은행이 은행지주회사인 ‘미쓰비시 동경 파이낸셜 그룹’을 설립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미쓰비시 신탁은행과 일본신탁은행이 합병하였다. 2001년 4월에는 산와(三和)은행과 토카이(東海)은행 및 토교(陶業)신탁은행이 합병하여 UFJ 은행과 UFJ 신탁은행이 되었고, 이들은 은행지주회사인 ‘UFJ 홀딩스’를 설립하였다. 더욱이 2001년 4월에 스미토모(住友)은행과 사쿠라이은행이 합병한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이 2002년 12월 은행지주회사인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을 설립하였다.

2003년 3월에는 다이와(大和)은행과 긴키-오사카(近畿-大阪)은행과 나라(奈良)은행에 의한 ‘다이와 은행 홀딩스’가 아사히 은행과 함께 ‘리소나 홀딩스’를 설립하여 리소나은행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그림 3-23> 전국 은행 수



주: 각년도 3월 기준(이하 은행통계에서 다른 언급이 없으면 해당년도의 3월 기준임.)

자료: 일본 전국은행협회.

② 자산 구조

일본의 은행 총 자산은 버블 붕괴 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90년 3월 말에 일본의 은행은 943조 엔의 총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2년 3월 말에 756조 엔까지 총 자산이 감소했다. <표 3-27>에서 보듯이, 은행의 자산 구조는 주로 대출금과 유가증권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3월말에는 대출금이 총 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유가증권이 총 자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대출금의 비중은, 1997년 3월말에 정점인 66%에 이르렀지만, 그 후 저하되고 있다. 한편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유가증권의 비중은 1999년 3월말까지는 15~16%의 추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다.

③ 대출·예금의 상황

전국 은행의 대출액은 1997년 3월말의 562조 엔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2년 3월말에는 456조 엔까지 감소하고 있다(<표 3-28> 참고).

전국 은행의 예금액은 1990년 3월말의 657조 엔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2년 3월말에는 557조 엔까지 감소하고 있다. 예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기예금이며, 예금액 전체의 46%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예금액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이러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이 예금액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8> 전국 은행의 대출·예금상황

(단위: 억 엔)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대출	할인어음	283,437	191,290	193,062	164,542	150,312	111,306	106,311	113,398	91,502
	어음대부	1,385,093	1,240,722	1,180,320	1,067,201	981,065	804,069	751,119	732,620	660,887
	증서대부	2,709,832	3,077,631	3,295,511	3,480,254	3,370,343	3,106,147	3,005,217	3,053,013	3,036,612
	당좌대월	583,978	875,637	873,606	903,288	885,007	848,879	883,640	846,155	774,181
	합계	4,962,340	5,385,280	5,542,498	5,615,284	5,386,728	4,870,401	4,746,287	4,745,186	4,563,182
예금	당좌예금	286,551	223,671	251,925	223,048	201,833	205,354	224,628	260,545	281,690
	보통예금	644,999	703,475	785,807	842,895	902,694	982,099	1,160,752	1,261,111	1,892,300
	저축예금	NA	35,008	86,645	113,694	137,838	144,707	141,343	134,153	118,798
	통지예금	432,553	297,005	301,371	306,108	259,560	179,446	190,918	204,189	132,262
	정기예금	3,900,856	3,776,699	3,472,859	3,427,099	3,282,877	3,021,049	2,919,386	2,966,527	2,537,631
	정기적금	43,343	38,290	37,146	35,293	33,305	30,330	28,458	26,303	22,462
	기타예금	888,415	486,457	515,591	519,478	432,238	321,709	266,872	267,297	250,206
	양도성예금	372,621	264,760	397,075	451,021	454,711	432,299	412,664	481,144	332,455
	합계	6,569,338	5,825,365	5,848,418	5,918,636	5,705,057	5,316,993	5,345,020	5,601,269	5,567,804

자료: 일본 전국은행협회

④ 이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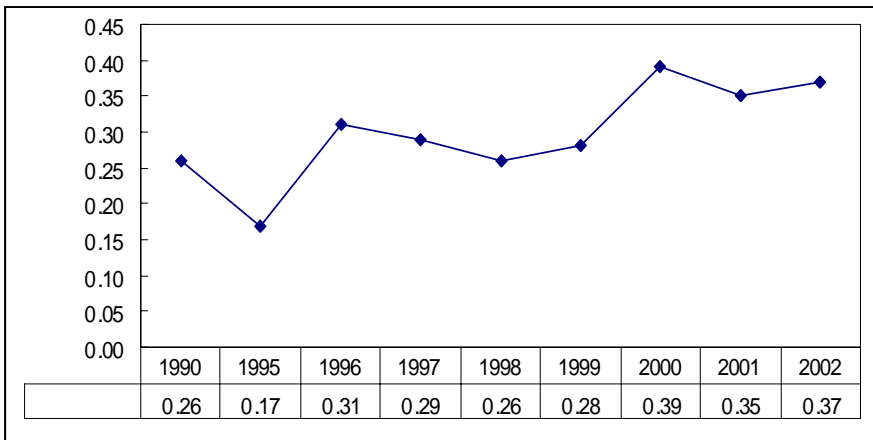
일본 경제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1990년대 후반 이후 저금리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1999년 2월 부터 일시적으로 해제되기는 하였지만, 일본은행에 의해 제로금리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90년대 전반과 1990년대 후반 이후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불연속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4>는 자금운용 수익에서 자금운용 계정평균잔고를 빼서 자금운용 이윤을 도출하고, 자금조달비용과 영업계통을 합한 것에서 자금조달계정 평균잔고를 빼어 자금조달 원가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자금운용이윤과 자금조달원가율의 차이에 의해 총자금차익을 도출하여 예대금리차로 하였다. 이 예대금리차를 보면, 1990년대 전반은 극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저금리 시대에서는 예대금리차가 0.3% 대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예대금리차의 상승은 일본 은행에 의한 저금리정책의 영향이 크다.

<그림 3-24> 은행의 예대금리차

(단위: %)



주: 1) 총자금이자차액=자금운용이윤-자금조달원가율.

2) 자금운용이윤=자금운용수익÷자금운용계정평균잔.

3) 자금조달원가율=(자금조달비용+영업경비)÷자금조달계정평균잔.

자료: 일본 전국은행협회.

⑤ 부실채권

일본의 은행은 부실채권의 계산을 1993년 3월기 결산부터 시작하였다. 이 시점에서는 파탄처채권액과 연체채권액의 합계를 부실채권액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그 후 1995년 9월 중간결산 때부터 금리감면 등 채권액을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98년 3월기 결산부터는 종래에 부실채권에서 제외되고 있던 i) 이자의 지불이 3개월 이상 미루어져 있는 대출금과 ii) 변경 후의 대출금리가 재할인율수준을 웃돌고 있는 금리감면채권도 공표되는 부실채권에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 은행의 부실채권액은 시기와 계열에 따라 불연속적이지만, <표 3-29>에 나타나듯이 2002년 3월말까지 증가하고 있다.

<표 3-29> 전국 은행의 부실채권액

(단위: 억 엔)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신기준	NA	NA	NA	NA	NA	297,580	296,270	303,660	325,150	420,280
舊기준	NA	NA	NA	285,040	217,890	NA	NA	NA	NA	NA
	85,649	108,402	122,334	230,072	284,939	219,846	NA	NA	NA	NA

주: 1) 신기준: 리스크관리채권(파탄채권+연체채권(종래기준)+3개월 이상 연체채권+대출조건완화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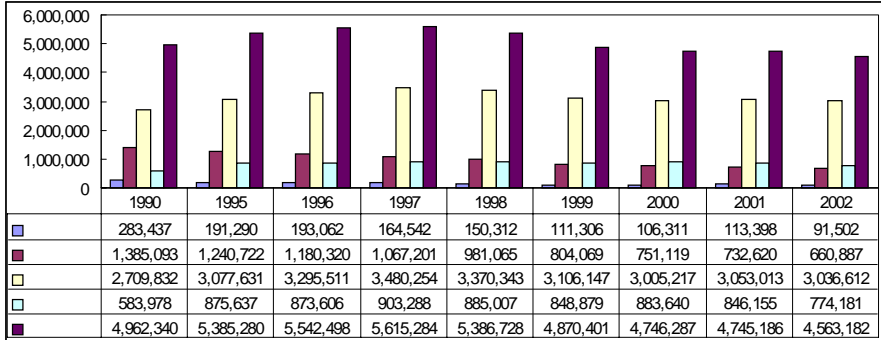
2) 부실채권액(상단: 전국은행협회 조사, 하단: NEEDS 조사).

⑥ 대출구조

대출구조에 있어서는 <그림 3-25>에 나타나고 있듯이 증권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2002년 3월말에 66%에 이르고 있다. 그 다음에 당좌대월과 어음대출이 각각 17%와 14%를 차지한다. 할인어음은 2%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 3-25> 전국 은행의 대출구조

(단위: 억 엔)



자료: 일본 전국은행협회

⑦ 정부계 금융기관의 비율

일본에는 일본 우정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우편저금과 간이보험과 정책금융(융자)을 실시하는 정부계 금융기관이 존재한다.

우편저금은 개인을 위한 소규모 저축수단이며, 보통저금·적립저금·정액저금·정기저금·주택적립저금·교육적립저금 등이 제공되고 있다. 우편저금의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엔까지이며, 원리금의 지불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정부가 보증하고 있다. 우체국저금자금은 전액이 일본 우정공사에 의해 자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002년 3월말 우편저금의 자산은 296조 엔으로, 중앙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총자산에 있어서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편저금 잔고는 239조 엔에 이르러, 개인 예·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이르고 있다(<표 3-30> 참고).

간이보험은 의사에 의한 건강상태의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간단한 수속으로 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는 보험·연금 상품이다. 간이보험은 양로보험·학자보험·중신보험·정기보험·부부보험·연금보험·생애보증보험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간이보험에도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1인당 최고 1,000만 엔까지이다. 2002년 3월말 간이보험의 총자산은 123조 엔으

로, 중앙은행을 제외한 전금융기관의 총 자산에 있어서 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3-30> 참고).

정부계 금융기관은 정책금융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출자·설립된 특수법인의 금융기관이다. 현재, 일본정책투자은행·국제협력은행·국민생활금융공고·주택금융공고·농림어업금융공고·중소기업금융공고·공영기업금융공고·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 등의 2개 은행, 6개 公庫가 존재한다. 이것들은 민간금융기관에 의해 금융을 양적·질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예산·결산 등에서 국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계 금융기관은 채투기관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직접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에서는 주택금융공고를 5년 이내에 폐지하고, 증권화 지원업무를 실시하는 독립행정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되었다. 정부계 금융기관의 총자산은 2002년 3월말 193조 엔이며, 중앙은행을 제외한 전금융기관의 총자산에 있어서 7%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3-30> 참고).

<표 3-30> 정부계 금융기관의 자산

(단위: 억 엔, %)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우편저금	1,436,154	2,318,277	2,538,372	2,718,611	2,935,539	3,143,341	3,234,037	3,097,563	2,957,835
간이보험	472,324	842,030	941,864	1,007,720	1,075,151	1,132,296	1,172,683	1,226,321	1,226,835
정부계 금융기관	1,211,721	1,793,026	1,820,265	1,896,904	1,942,202	2,001,517	2,034,477	2,029,150	1,931,693
금융기관 - 중앙은행	22,604,520	25,742,747	26,894,139	27,296,837	28,647,229	28,884,641	29,351,273	29,693,214	28,538,218
우편저금의 구성비(%)	6.35	9.01	9.44	9.96	10.25	10.88	11.02	10.43	10.36
간이보험의 구성비(%)	2.09	3.27	3.50	3.69	3.75	3.92	4.00	4.13	4.30
정부계금융기관 구성비(%)	5.36	6.97	6.77	6.95	6.78	6.93	6.93	6.83	6.77

자료: 일본은행

⑧ 정책대출의 비율

정부계 금융기관의 정책대출은 1990년 3월말 일본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총대출액에 있어서 9%의 비중이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오랜 불황 속에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고, 민간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대로 인해 민간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려하고 있으므로, 최근에는 정책대출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2002년 3월말에 일본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총 대출액에 대한 정책대출은 12%를 상회하고 있다(<표 3-31> 참고).

정책대출은 주택금융공고에 의한 주택용자, 국제협력은행에 의한 해외 경제협력용자,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사회자본 정비촉진용자, 중소기업 금융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전용 용자, 국민생활금융공고에 의한 국민대중(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용자 등이 행해지고 있다.

<표 3-31> 정책대출의 비율

(단위: 억 엔, %)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우편저금	6,172	10,829	11,218	10,763	10,019	9,785	9,789	8,199	7,239
간이보험	179,068	295,252	308,938	301,723	304,872	305,786	301,627	313,402	304,074
정부계 금융기관	1,112,719	1,648,924	1,655,788	1,728,541	1,785,360	1,835,345	1,858,393	1,855,789	1,811,120
금융기관 - 중앙은행	12,389,316	14,687,092	15,060,429	15,166,009	15,958,399	15,656,530	15,160,863	15,173,009	14,647,050
우편저금의 구성비(%)	0.05	0.07	0.07	0.07	0.06	0.06	0.06	0.05	0.05
간이보험의 구성비(%)	1.45	2.01	2.05	1.99	1.91	1.95	1.99	2.07	2.08
정부계금융기관 구성비(%)	8.98	11.23	10.99	11.40	11.19	11.72	12.26	12.23	12.37

자료: 일본은행

⑨ 부채구조

전국 은행의 총 부채액은 1990년 3월말 915조 엔이었지만, 그 후 계속 감소하여 2002년 3월말에는 727조 엔이 되었다(<표 3-32> 참고). 2002년

3월말 총 부채액의 77%는 예금·양도성 예금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예금·양도성예금에 일부 은행자금조달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금융채」라고 불리는 채권을 더하면, 그 비율은 79%에 이른다. 자금이 남아도는 지방은행으로부터 자금이 부족한 도시은행으로의 은행들 사이에 단기 자금을 유통해온 콜 시장의 거래에 있어서는, 1990년 3월말 콜 머니가 총 부채액의 5.8%였지만, 금융기관의 경영파탄으로 콜 시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2002년 3월말에는 그 비율이 2.7%까지 하락하였다.

<표 3-32> 전국 은행의 부채구조

(단위: 억 엔)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부채 합계	9,150,381	386,429	8,203,108	8,273,845	8,239,045	7,259,491	7,019,836	7,676,137	7,267,808
예금	6,196,720	5,560,610	5,451,347	5,477,620	5,250,350	4,916,538	4,932,360	5,120,129	5,235,354
양도성예금	372,621	264,760	397,075	451,021	454,711	432,299	412,664	481,144	332,455
채권	460,414	552,118	533,252	514,885	434,262	248,942	244,804	218,120	180,814
콜 머니	533,376	425,127	416,331	403,212	337,946	274,860	222,664	281,916	196,567
買現先계정	NA	NA	NA	NA	NA	NA	NA	93,698	75,205
매도어음	173,165	56,846	88,278	52,213	50,068	8,030	16,535	74,907	151,135
CP	NA	NA	NA	NA	NA	NA	NA	47,477	27,535
특정거래부채	NA	NA	NA	NA	95,480	73,137	54,136	89,870	78,536
차용금	82,628	237,705	238,091	267,191	300,048	222,356	212,116	197,826	174,237
외환	37,952	9,648	11,952	16,766	11,878	13,332	13,353	11,500	17,481
사채	NA	NA	NA	NA	9,930	15,281	28,560	51,482	72,615
전환사채	21,250	6,748	6,266	6,485	8,786	6,621	8,450	6,628	6,069
신탁계정차입	163,312	347,789	321,072	271,945	223,564	173,342	181,344	157,040	106,927
기타 부채	441,334	192,285	183,579	234,351	390,767	306,910	315,707	468,154	286,740
대손충당금	34,990	73,049	134,688	122,993	181,644	148,312	NA	NA	NA
상여충당금	NA	NA	NA	NA	NA	NA	NA	NA	1,072
퇴직급부충당금	10,441	10,556	10,505	10,440	10,337	9,638	9,940	10,802	9,403
기타 충당금	26	10	303	6,187	10,406	14,975	16,768	11,158	11,887
특별법상의 충당금	3,144	3,411	3,493	3,567	2	2	2	2	2
이연세금부채	NA	NA	NA	NA	NA	NA	NA	2,001	733
재평가 관련 이연背金부채	NA	NA	NA	NA	NA	NA	14,202	13,340	11,694
지불승인	619,002	386,429	406,870	444,963	427,478	361,767	314,700	338,939	291,343
재평가차액	NA	NA	NA	NA	40,385	155	NA	NA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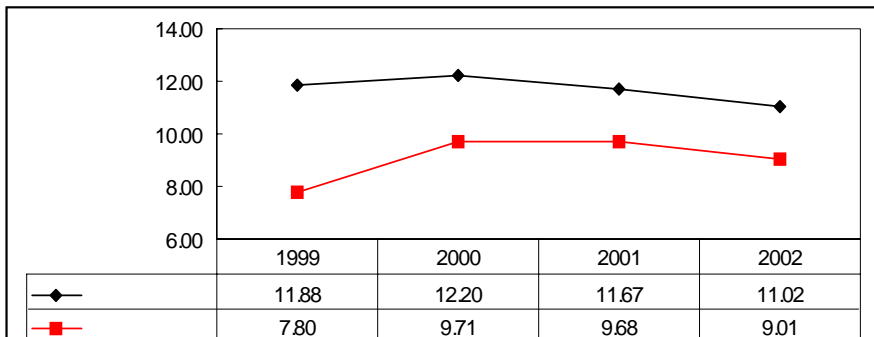
자료: 일본 전국은행협회

⑩ BIS 비율

자기자본비율의 국제통일기준인 BIS 비율은, 해외에 영업거점을 갖고 있는 은행에 적용된다. 국제통일기준이 적용되는 은행의 BIS 비율은, <그림 3-26>에 나타나 있듯이 2000년 3월말에 12.20%까지 상승했지만, 그 후 저하하여 2002년 3월말에는 11.02%까지 저하했다. 한편 해외에 영업 거점을 갖지 않은 은행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국내기준은,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을 4% 이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3-26>에 나타나 있듯이 2000년 이후 국내기준이 적용되는 은행의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은 9%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 3-26> BIS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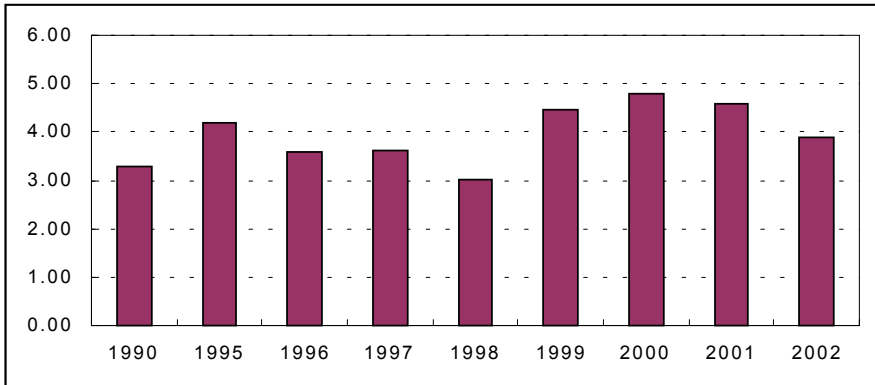
자료: 일본은행

⑪ 단순자기자본비율

BIS 비율과 같이 위험자산(risk asset)에 위험가중을 두지 않고, 총자산액을 그대로 분모에 넣어 계산한 단순자기자본비율은 1990년대부터 2002년에 걸쳐 3%대에서 4%대로 변화하고 있다(<그림 3-27> 참고).

<그림 3-27> 단순자기자본비율

(단위: %)



주: 데이터(전국은행협회)에 기초해 계산.
 단순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⑫ 외화차입비율

일본의 은행부문의 외화기준채무는 <표 3-33>에서 보듯이 1990년 3월 말 5,990억 달러에 이르러, 채무 전체의 12%였다. 그러나 그 후 외화기준채무는 감소하여, 2002년 3월말에는 2,948억 달러로 구성비에서는 6%까지 감소했다. 그 원인으로서는 일본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대차대조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외화기준 채무를 부담하는 능력이 저하된 점과, 일본의 은행부문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부가되는 재팬 프리미엄(Japan premium)이 시사하듯이 외국으로부터의 일본 은행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3-33> 외화기준 차입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은행부문의 외화채무	599,006	444,316	435,913	448,507	403,173	307,374	252,850	319,654	294,801
은행부문의 채무	4,993,982	8,248,850	6,702,262	5,784,793	5,128,867	5,110,229	5,768,074	5,208,239	4,808,731
외화 채무 구성비(%)	11.99	5.39	6.50	7.75	7.86	6.01	4.38	6.14	6.13

자료: 데이터(일본은행)에 기초하여 계산.

⑬ 금융상품

국내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주요 금융상품으로는 예금취급 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요구불예금(보통예금·당좌예금·저축예금·통지예금·납세준비예금), 정기성예금(정기예금·기일지정 정기예금·변동금리정기예금·적립정기예금), 외화예금, 비거주자 엔(円)예금, 양도성예금 등이 있다. <표 3-28>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예금 가운데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이 예금액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은행 중에는 금융채의 발행이 인정되고 있는 은행이 있다. 현재, 신생은행, 아오조라은행, 미즈호은행, 미즈호 코퍼레이트은행, 농림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 신금(信金)중앙금고가 발행하고 있다. 금융채는 이자부금융채(상환기한 1년, 2년, 3년, 5년)와 할인금융채(상환기한 1년)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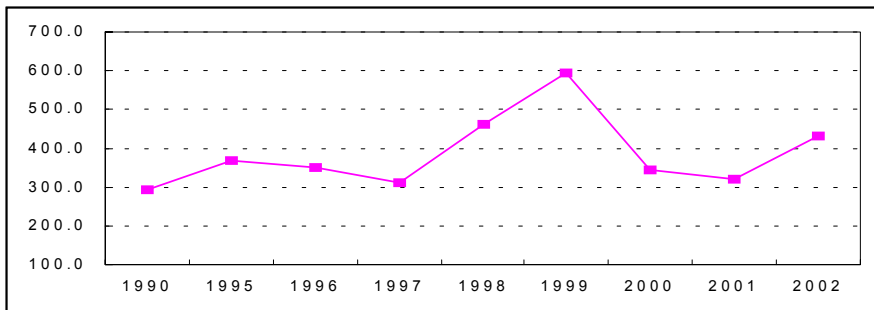
전술한 것처럼, 일본판 금융 빅뱅에 의해 1998년 12월에 은행이 투자신탁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1년 4월에는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표 3-25).

⑭ 운영경비율

<그림 3-27>에 나타나고 있듯이 은행의 운영경비율=[(영업비용+경상

<그림 3-28> 운영경비율

(단위: %)



주: 수치는 (운영경비+경상비용)÷업무순익×100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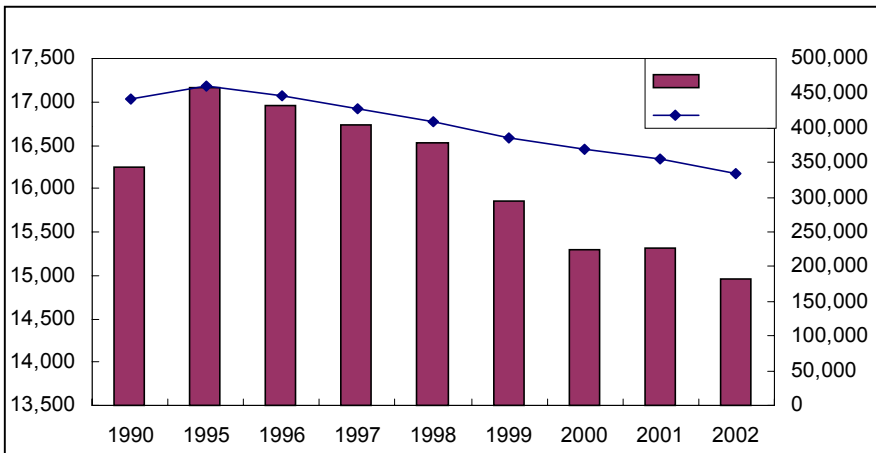
자료: 데이터(전국은행협회)에 기초해 계산.

비용)÷업무이익]은 2002년 3월말 431.2%가 되고 있다. 1990년 3월말의 300%미만의 수치와 비교하면, 운영경비율은 최근 상승하고 있다.

⑮ 점포·인원 수

은행의 점포 수와 인원 수는 은행부문의 정리통합(은행의 합병) 및 각 은행의 업무재정리나 축소에 수반하여 감소하고 있다. 점포 수는 1994년 3월말의 17,159개 점포를 정점으로, 2002년 3월말에는 14,952개 점포로 감소하여 정점 때의 87%까지 감소했다. 인원 수는 같은 1994년 3월말 46.7만 명을 정점으로, 2002년 3월말에는 33.5만 명으로 감소하여 정점 때의 72%까지 감소했다.

<그림 3-29> 점포·인원 수



주: 인원 수 = 임원 수 +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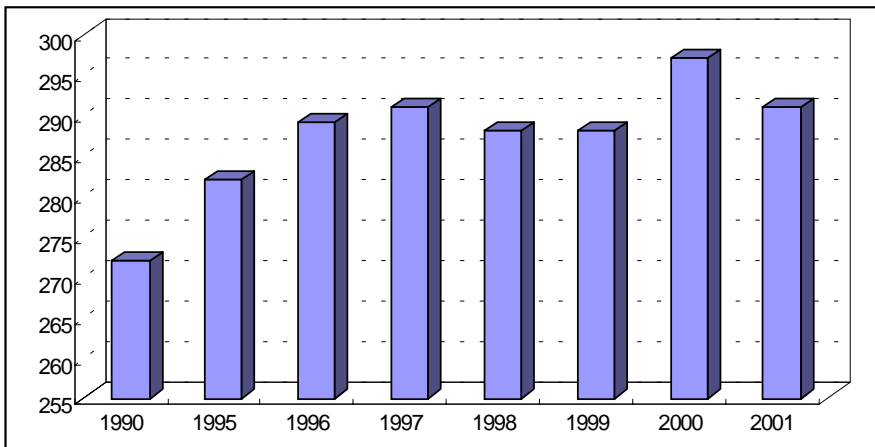
자료: 일본 전국은행협회.

나) 증권

① 증권회사 수

증권회사 수는 1990년 12월말 272개사였다. 그 후 1990년대 후반에 걸쳐 몇 개 회사가 참가하여 2001년 현재 291개사로 증가해왔다(<그림 3-30> 참고).

<그림 3-30> 증권회사 수



주: 연말 기준임(이하 증권통계 동일).

자료: 일본 증권업협회.

② 주식시가총액과 회전율

동경 증권거래소의 주식시가총액은 버블 붕괴 후 변동은 있지만, 감소 경향에 있다. 1989년 12월말에는 주식시가 총액이 630조 엔이었지만, 2002년 12월말에는 251조 엔까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한편 동경 증권거래소의 회전율은 1990년대에 감소했지만(1992년 12월말 23.90%), 2000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 2002년 3월말에는 65.81%까지 상승했다(<표 3-34> 참고).

<표 3-34> 주식시가 총액·회전을

(단위: 억 엔,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9	2000	2001	2002
주식시가총액	630,121,926	393,594,933	391,985,551	299,275,743	335,522,755	466,215,385	364,747,313	300,630,862	251,000,881
회전을	81.35	44.01	31.60	23.90	29.06	48.06	53.59	61.21	65.81

자료: 동경 증권거래소.

③ 금융상품의 종류

증권회사에서 취급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주식, 채권(국채·공채·사채·금융채·외국채), 투자신탁(MMF, 공사채투자신탁, 주식투자신탁, 외국 투자신탁) 등이 있다. 최근에는 주가지수 연동형 상장투자신탁(ETF)이나 부동산 투자신탁(일본형 REIT)이 증권회사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외에도 생명보험회사의 변액연금보험이 증권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④ 외국인의 비율

일본의 증권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의 비율에 대해 증권회사, 주주, 외국인 보유금액이라는 점에서 살펴보자(<표 3-35> 참고).

일본에서 외국 증권회사의 비율은 1990년 말 19.1%였는데, 2001년 말에는 17.2%로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1990년 이후 17~19%의 폭으로 비교적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동경 증권거래소의 전체 주주수에서 외국인 주주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전반은 0.7%였지만, 2001년 말에는 0.5%로 다소 감소하고 있다.

또한 동경 증권거래소의 주식시가 총액에서 외국인 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율에서는 1990년 말의 4.2%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0년 말에는 18.8%까지 상승했다. 2001년 말에는 약간 저하하여 18.3%가 되고 있다. 외국인 주주 수가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 보유액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주주 1인당 주식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35> 외국인의 비율

(단위: %)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증권회사 수	19.1	18.1	19.7	19.9	19.1	19.8	16.8	17.2
주주수	0.7	0.7	0.7	0.6	0.6	0.6	0.5	0.5
보유금액	4.2	10.5	11.9	13.4	14.1	18.6	18.8	18.3

주: 1) 증권회사 수 = 외국증권회사의 지점 수(1사를 1지점으로 계산) ÷ 증권회사 총수.

2) 주주 수 = 외국인 주주 수 ÷ 전체 주주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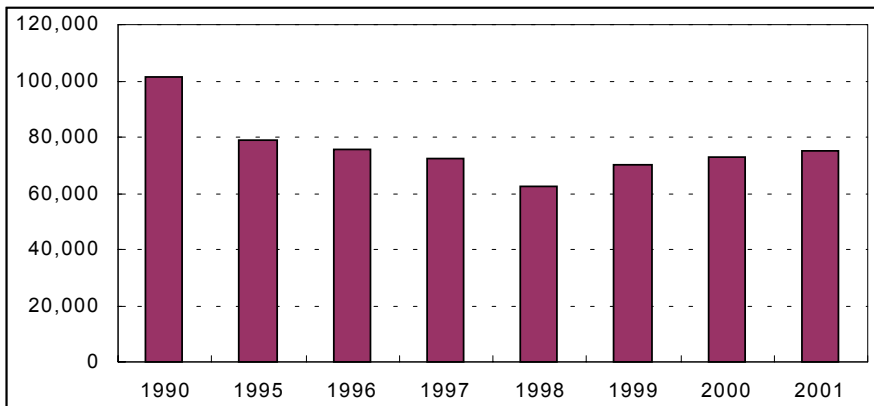
3) 보유금액 = 외국인보유금액 ÷ 시가 총액.

자료: 동경 증권거래소.

⑤ 영업활동(인원 수)

일본의 증권시장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증권회사의 종사원수를 보면(<그림 3-31> 참고), 1990년 12월말에 10만 명의 종사원이 있었지만, 2001년 12월말에는 7.5만 명까지 감소하고 있다. 앞서 증권회사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그림 3-30> 참고), 증권회사 1사당 종사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림 3-31> 영업활동



자료: 일본 증권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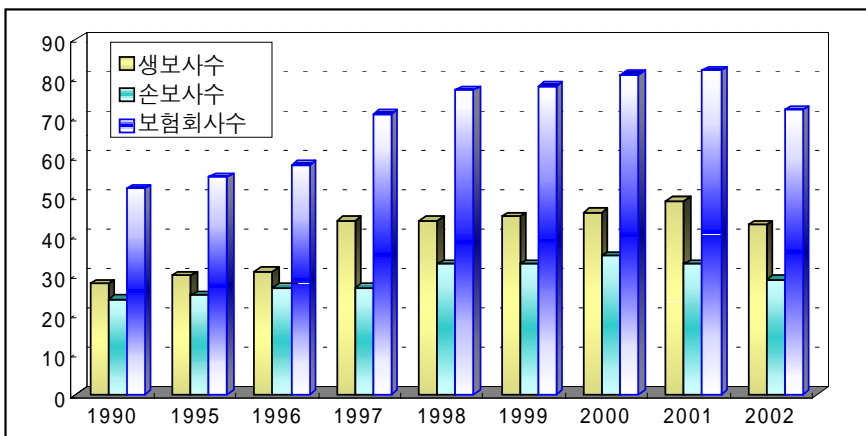
다) 보험

① 보험회사 수

일본의 보험회사 수는, 1990년부터 1996년 3월말까지는 변화가 없었지만, 1996년에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서로 자회사 방식에 의해 업무 분야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 자회사 6개사를 설립하고,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자회사 11개사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 말에는 생명보험회사가 49개사, 손해보험회사가 33개사가 되었다.

그러나 버블 붕괴 후의 오랜 저금리 시대로 인해 파탄한 보험회사의 흡수합병이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합병에 의해, 2002년도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도 감소하여 각각 43개사와 29개사로 되었다 (<그림 3-32> 참고).

<그림 3-32> 보험회사 수



주: 각년도 3월 기준(이하 보험통계 동일).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② 보험금 총액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총액은 1996년 3월말이 정점으로, 보험계약준비금이 182조 엔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후 생명보험회사의 경영과탄으로 인해 감소하여 2002년 3월말에는 167조 엔까지 보험계약준비금이 감소하였다. 한편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총액은 1998년 3월말을 정점으로, 보험계약준비금이 25.1조 엔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2002년 3월말까지 22.7조 엔으로 감소하였다(<표 3-36> 참고).

<표 3-36> 보험금 총액

(단위: 억 엔)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계약준비금	1,297,996	1,967,383	2,064,897	2,053,860	2,035,981	2,019,542	1,997,067	1,963,964	1,896,443
책임준비금	1,227,819	1,871,136	1,969,426	1,960,650	1,943,852	1,930,681	1,910,724	1,879,260	1,863,435
보험금총액	122,970	230,857	254,222	331,717	353,782	331,188	331,426	292,963	326,603
생명보험									
보험계약준비금	1,102,556	1,730,784	1,820,046	1,804,239	1,784,713	1,771,922	1,745,994	1,730,762	1,669,710
책임준비금	1,048,821	1,653,948	1,744,856	1,732,314	1,714,202	1,704,466	1,681,034	1,668,580	1,662,211
보험금 등 지불금	96,129	192,596	216,387	292,465	313,912	290,085	288,262	250,510	284,930
손해보험									
보험계약준비금	195,440	236,599	244,851	249,621	251,268	247,620	251,073	233,202	226,733
책임준비금	178,998	217,188	224,570	228,336	229,650	226,215	229,690	210,680	201,224
元受 正味 보험금	26,841	38,261	37,835	39,252	39,870	41,103	43,164	42,453	41,673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③ 보험상품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대분류하면, 개인보험, 개인연금보험, 단체보험, 단체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등이 있다. 2002년 3월 말에는 개인보험이 가장 유력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분야이다. 개인보험은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으로 분류되지만, 사망보험이 개인보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개인보험의 사망보험 가운데 정기부종

신보험이 사망보험의 61%를 차지한다(<표 3-37a> 참고).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은 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의 강제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으로 분류된다. 손해보험의 가장 유력한 보험상품은 자동차보험이며, 2002년 3월 말에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더하면, 그 합계액은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그리고 상해보험(19%)과 화재보험(18%)이 그 뒤를 잇고 있다(<표 3-37b> 참고).

<표 3-37a> 생명보험 상품

(단위: 억 엔)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사망 보험	정기보험	607,375	1,016,546	1,134,379	1,167,325	1,148,423	1,117,818	1,125,331	1,170,528	1,319,559
	정기특약	661,821	881,169	963,244	824,651	641,973	NA	NA	NA	NA
	종신보험	5,229,989	936,336	974,941	901,951	882,627	916,158	923,928	915,428	896,717
	정기부종신보험	NA	8,663,851	8,823,427	9,363,361	9,425,167	9,023,717	8,572,599	7,938,099	6,606,584
	이율변동형적립 종신보험	NA	NA	NA	NA	NA	NA	NA	NA	890,645
	종신특약	NA	2,612	2,791	3,352	3,823	NA	NA	NA	NA
	변액보험(종신형)	94,554	87,302	81,005	81,587	77,733	74,906	74,499	69,528	72,653
	連生보험	NA	117,443	162,691	186,952	208,110	NA	NA	NA	NA
	질병보험	22,427	60,886	63,995	67,217	69,010	NA	NA	NA	NA
	개호보험	NA	8,341	7,911	14,568	14,460	NA	NA	NA	NA
	해외여행생명보험	45	31	24	21	3	NA	NA	NA	NA
기타 사망보험	703	11	88	89	7,950	991,658	996,509	1,002,625	989,579	
		6,616,914	11,774,528	12,214,496	12,611,074	12,479,279	12,124,257	11,692,866	11,096,208	10,775,737
개인 보험	양로보험	769,130	763,355	748,059	717,726	641,725	578,109	525,639	477,717	430,231
	양로특약	NA	2,368	2,354	2,221	2,095	NA	NA	NA	NA
	정기부양로보험	1,367,041	770,512	710,401	643,426	588,884	521,038	535,542	458,977	385,228
	생존급부금부정기보험	429,301	528,161	513,112	493,021	466,239	NA	NA	NA	NA
	생존급부금부정기특약	NA	36,759	42,784	45,805	46,606	NA	NA	NA	NA
	변액보험(有期型)	9,717	7,771	6,418	5,378	3,948	3,395	3,031	2,589	2,785
	연생보험	636	157	132	127	119	NA	NA	NA	NA
	어린이보험	159,963	256,399	261,631	256,951	245,823	NA	NA	NA	NA
	기타 생사혼합보험	152,492	151,326	141,486	126,142	101,490	811,255	841,219	1,034,075	1,115,511
		2,888,280	2,516,808	2,426,377	2,290,797	2,096,929	1,913,797	1,905,431	1,973,358	1,933,755
생존 보험	어린이보험	26,130	28,139	28,606	29,978	30,079	NA	NA	NA	NA
	저축보험	22,000	19,787	19,546	20,618	17,721	NA	NA	NA	NA
	기타 생존보험	2,204	2,697	3,563	4,364	4,536	NA	NA	NA	NA
		50,334	50,623	51,715	54,960	52,336	52,097	49,219	50,359	46,739
	9,555,528	14,341,959	14,692,588	14,956,831	14,628,544	14,090,151	13,647,516	13,119,925	12,756,231	

<표 3-37a> 계속

(단위: 억 엔)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개인연금보험	310,788	812,953	883,315	871,023	826,612	816,367	778,737	740,962	695,931	
단체 보험	단체정기보험	3,391,712	4,606,970	4,622,886	4,466,340	2,678,290	1,586,346	1,568,742	1,525,324	1,463,148
	단체신용보험	770,956	1,175,582	1,286,429	1,394,086	1,489,055	NA	NA	NA	NA
	소비자신용단체보험	NA	34,463	41,411	49,091	58,220	NA	NA	NA	NA
	단체중신보험	1,118	947	928	910	855	822	NA	NA	NA
	심신장애자부양자생명보험	NA	2,743	5,265	5,056	4,826	4,600	NA	NA	NA
	단체양로보험	7,882	1,101	1,116	1,099	944	NA	NA	NA	NA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NA	NA	NA	NA	NA	998,727	945,964	923,586	882,106
	단체신용생명보험	NA	NA	NA	NA	NA	1,529,127	1,580,099	1,628,617	1,660,630
	소비자신용단체생명보험	NA	NA	NA	NA	NA	64,818	70,770	75,430	77,265
	연금특약	145	579	736	905	1,070	1,239	1,404	1,542	NA
	기타 단체보험	NA	NA	NA	NA	NA	NA	5,589	5,360	5,145
	4,171,813	5,822,385	5,958,771	5,917,487	4,233,260	4,185,679	4,172,568	4,159,859	4,088,294	
단체 연금 보험	단체연금보험	7	0	0	0	0	0	0	0	
	기업연금보험	143,765	98,764	42,059	16,933	8,776	6,519	6,165	5,539	3,561
	새기업연금보험	NA	132,433	156,574	157,297	155,299	150,658	145,369	141,434	136,016
	기술형기업연금보험	NA	42,025	91,537	121,940	131,783	137,990	137,597	138,583	136,121
	연금복지사업단보험	14,218	51,446	41,038	NA	NA	NA	NA	0	0
	별액연금복지사업단보험	3,300	21,980	25,550	27,070	25,450	19,088	15,442	13,701	9
	후생연금기금보험	69,932	143,387	158,027	155,079	153,416	147,708	136,971	132,090	114,535
	후생연금기금연합회보험	2,723	3,576	3,745	1,906	1,754	687	411	385	344
	국민연금기금보험	NA	454	524	581	549	499	571	544	428
	국민연금기금연합회보험	NA	2,086	2,941	2,230	2,611	3,119	2,814	0	0
	단체생존보험	16,996	56,089	49,937	33,639	26,991	22,868	15,288	13,762	10,885
	확정거출연금보험(기업형)	NA	NA	NA	NA	NA	NA	NA	NA	14
	확정거출연금보험(개인형)	NA	NA	NA	NA	NA	NA	NA	NA	0
기타 단체연금보험	NA	NA	NA	NA	NA	NA	827	2,031	2,040	
	250,941	552,240	571,932	516,675	506,629	489,136	461,455	448,069	403,953	
재형 보험	재형저축보험	4,744	7,713	8,391	8,946	9,342	9,644	9,759	9,700	9,192
	재형주력저축적립보험	1,718	3,099	3,271	3,317	3,359	3,359	3,250	3,107	2,933
	재형금부금보험	37	86	94	108	115	125	141	147	71
	재형기금보험	0	0	0	0	0	0	0	0	0
	6,499	10,898	11,756	12,371	12,816	13,128	13,150	12,954	12,196	
재형 연금 보험	재형연금보험	872	772	709	676	629	593	558	499	451
	재형연금적립보험	2,190	4,985	5,493	5,866	6,129	6,340	6,408	6,417	6,284
	3,062	5,757	6,202	6,542	6,758	6,933	6,966	6,916	6,735	
의료 보장 보험	개인형	1	1	1	1	1	1	1	1	1
	단체형	29	53	56	58	60	63	64	66	67
	30	54	57	59	61	64	65	67	68	
취업 불능 보장 보험	취업불능보장보험	NA	0	0	0	0	0	0	0	0
	장기취업불능보장보험	NA	7	7	7	4	3	2	1	1
	단체취업불능보장보험	NA	NA	110	151	733	781	720	649	569
	NA	7	117	158	737	784	722	650	570	
합계	14,298,661	21,546,253	22,124,738	22,281,146	20,215,417	19,602,242	19,081,179	18,489,402	17,963,978	

자료: 『일본 생명보험 Fact Book』.

<표 3-37b> 손해보험상품

(단위: 억엔)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화재보험	18,189	18,545	18,534	19,027	19,017	17,741	17,443	15,836	15,075	
자동차보험	22,337	34,449	35,358	36,491	36,889	35,721	35,999	36,500	36,765	
自賠償보험	11,599	10,052	10,343	10,630	9,706	9,556	9,805	9,878	9,866	
상해보험	25,998	26,197	27,306	28,930	26,668	22,954	20,498	18,313	16,253	
개호비용보험	545	684	675	685	453	488	408	440	281	
동산종합보험	803	1,123	1,185	1,231	1,249	1,190	1,185	1,224	1,219	
배상책임보험	1,782	2,488	2,758	2,949	3,090	3,042	3,051	3,097	3,327	
노동자재해보증책임보험	688	1,070	1,245	1,284	1,175	1,034	948	984	852	
신종보험	도난보험	143	206	228	250	268	284	276	283	263
	유리보험	30	35	35	35	33	30	27	24	22
	항공보험	144	158	168	188	196	120	137	146	385
	풍수해보험	1	2	2	2	2	2	3	3	2
	보증보험	36	109	93	146	136	142	144	134	167
	신용보험	79	72	75	80	79	95	145	201	256
	보일러터보세트보험	22	28	27	29	28	28	27	27	26
	동물보험	27	26	26	25	29	28	29	29	27
	기계보험	234	383	395	404	425	398	375	371	362
	선객상해배상책임보험	12	12	12	12	12	11	11	10	8
	건설공사보험	309	394	383	418	388	356	355	353	353
	원자력보험	112	127	123	122	122	115	112	110	103
비용이익보험	43	72	79	77	529	584	512	589	467	
	1,192	1,624	1,646	1,788	2,247	2,193	2,153	2,280	2,441	
선박보험	802	1,052	975	922	781	683	597	570	631	
화물해상보험	1,464	1,360	1,439	1,611	1,638	1,470	1,279	1,285	1,241	
운송보험	559	639	654	674	678	644	639	649	635	
적립보험	31,912	29,685	30,446	31,663	28,811	24,749	21,923	18,543	15,619	
합계	117,870	128,968	132,564	137,885	132,402	121,465	115,928	109,599	104,205	

자료: 『일본 손해보험 Fact Book』.

④ 자산운용상황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해 자산운용 총액은 1998년 3월 말에 정점으로 187조 엔을 기록하고 있다. 그 후 보험계약고의 감소에 따라 자산운용 총액이 감소하여 2002년 3월 말에는 179조 엔까지 감소했다. 생명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에의 투자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2002년 3월 말에 자산운용 총액의 62%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대출금이 많아 자산운용 총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다(<표 3-38a> 참고).

<표 3-38a>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단위: 억 엔)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예저금	72,946	106,120	93,824	65,703	80,973	78,409	71,798	45,212	28,601
콜 론	4,350	34,704	41,240	34,772	56,105	49,742	44,633	57,089	34,204
매입금전채권	1,027	1,533	1,712	3,234	8,909	18,363	12,557	36,636	28,861
금전의 신탁	40,193	51,812	43,245	45,536	38,183	25,552	28,701	35,862	35,875
투자유가증권	547,783	794,014	896,410	956,655	951,366	1,001,395	1,049,934	1,104,148	1,110,206
대부금	410,671	669,845	673,349	652,954	635,168	591,259	547,613	499,973	470,561
부동산	65,520	94,751	97,651	97,270	98,595	97,188	91,503	81,589	79,749
합계	1,142,490	1,752,779	1,847,431	1,856,124	1,869,299	1,861,908	1,846,739	1,860,509	1,788,057

자료: 『일본 생명보험사업개황』, 『생명보험 Fact Book』.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해 자산운용 총액은 2001년 3월 말이 정점으로, 31.5조 엔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자산운용 총액이 감소하여 2002년 3월 말에는 29.2조 엔이 되었다.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에의 투자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2002년 3월말 자산운용 총액의 71%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대출금이 많아 자산운용 총액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생명보험회사와 비교해 대출금이 적고 유가증권이 많아지고 있다(<표 3-38b> 참고).

〈표 3-38b〉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단위: 억 엔)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예저금	25,133	18,129	18,250	18,511	15,087	14,594	14,849	17,591	19,868
콜 론	3,059	8,229	10,031	10,105	11,270	8,385	10,390	8,357	5,551
매입금전채권	1,767	2,889	2,735	2,570	4,428	8,497	3,737	4,919	2,760
금전의 신탁	10,473	9,832	9,720	9,575	8,167	6,727	5,514	3,839	3,418
투자유가증권	103,946	139,212	148,111	155,977	161,518	163,883	168,652	218,666	206,436
대출채금	61,827	65,749	65,522	65,587	66,635	62,713	54,888	44,522	38,330
부동산	11,083	18,220	18,177	18,468	18,257	18,170	17,913	16,913	15,429
합계	217,288	262,260	272,546	280,793	285,362	282,969	275,943	314,807	291,792

자료: 『일본 손해보험 가이드북』.

라) 기타

① 단자회사

단자(短資)회사는 단기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있어서, 주로 거래의 중개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으로는 콜 거래, 어음 매매거래 등의 은행간시장 이외에, 양도성 정기예금(CD), 정부단기증권(FB), 정부증권(TB), 상업어음(CP)에 대해서도 그 거래의 중개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단자회사에는 우에다(上田)단자, 야기(八木)단자, 도쿄단자, 야마네(山根)단자, 일본단자, 나고야(名古屋)단자의 6개사가 있었지만, 2001년 4월에 야마네단자, 일본단자 및 나고야단자가 합병하여 센트럴 단자가 되고, 2001년 8월에는 우에다단자와 야기단자가 합병하여 우에다-야기단자가 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센트럴 단자와 우에다-야기단자와 동경단자의 3사가 되고 있다.

② 신용판매회사

신용판매(信用販賣)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서비스를 할부구입할 때 소비자와 판매업자 사이에서 할부구입을 담당하고 있다. 신용판매회사의 본래 업무는 신용카드업무와 할부채권 매입업무가 있다. 이 외에도 최근에 신용판매회사는 소비자 금융업무(카드·cashing 등의 무담보융자)나 신용보증업

무(자동차 론이나 주택용자의 신용보증)를 실시하고 있다. 1998년도의 신용 판매회사(44개사) 취급고는 19조 엔에 이르고 있다(鹿野 2001).

나. 분야별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과 계획

1) 은행

가) 외국은행의 참가 수

2002년 10월말 기준으로 일본에 지점을 개설하고 있는 외국은행은 72개가 있다(전국은행협회 조사부 편 2003).

나) 자금조달 상황

외국은행의 자금조달은 <표 3-39>에서 보듯이 그 총액은 증가 경향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 3월 말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자금조달 총액의 5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전년도인 2001년 3월 말에는 콜머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47%에 달하고 있다. 외국은행은 주로 예금과 콜머니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국내은행과 비교하여 외국은행은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예금의 비율이 낮은 점과 콜머니의 비율이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표 3-39> 외국은행의 자금조달

(단위: 억 엔)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예금	51,551	39,712	58,434	93,052	94,008	71,519	77,961	81,866	102,521
양동성예금	2,863	800	427	468	613	566	1,844	1,920	3,578
콜머니	60,244	49,048	34,168	41,805	107,343	92,055	46,785	97,850	63,951
매도어음	9,891	1,561	1,090	341	4,369	861	998	9,511	23,742
차용금	28,168	27,364	25,222	30,691	26,192	19,393	31,265	15,707	11,993
합계	152,717	118,485	119,341	166,357	232,525	184,394	158,853	206,854	205,785

자료: 일본은행.

가) 자산운용상황

외국은행의 자산운용 총액은 1998년 3월 말 33조 엔에 이르렀지만, 그 후 감소 경향으로 전환되어 2002년 3월 말에는 22조 엔까지 감소하고 있다. 자산운용 내역은 2002년 3월말 대부금이 자산운용 총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유가증권이 자산운용 총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표 3-40> 참고). 국내은행과 비교하여 대부금의 비율이 낮고 유가증권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표 3-40> 외국은행의 자산운용

(단위: 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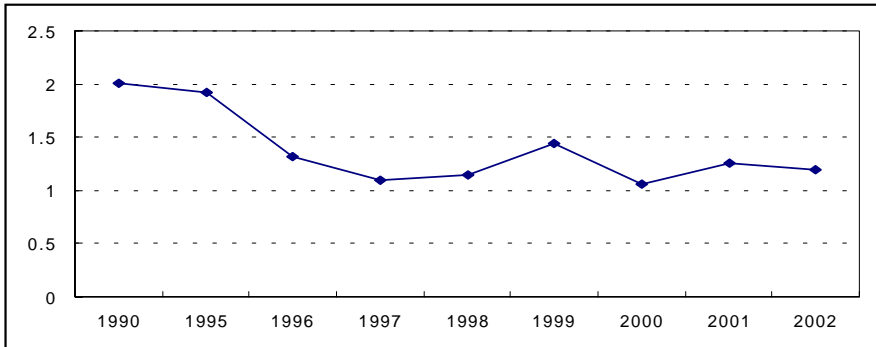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현금예치금	58,200	33,839	40,601	50,519	44,285	28,509	31,171	23,752	23,510
콜 론	25,955	14,492	23,344	20,811	28,886	38,022	9,560	17,394	16,083
매입어음	4,390	691	2,298	33,965	99,979	30,948	636	104	0
유가증권	15,113	25,844	43,266	36,022	47,209	68,689	64,727	103,121	54,586
대부금	103,555	76,064	77,225	101,275	107,444	103,009	82,939	103,505	122,006
합계	207,213	150,930	186,734	242,592	327,803	269,177	189,033	247,876	216,185

자료: 일본은행.

나) 대출·예금 비율

외국은행의 대출·예금비율은 1990년 3월 말 2.01배였지만, 그 후 저하하여 2002년 3월 말에는 1.19배까지 낮아졌다(<그림 3-33> 참고). 이러한 저하는 대출이 1990년 3월 말의 10조 엔에서 2002년 3월 말의 12조 엔으로 20% 증가한 것에 대해, 예금이 1990년 3월 말의 5조 엔에서 2002년 3월 말의 10조 엔으로 두 배나 증가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3-33> 대출·예금 비율



주: 수치는 대부금/예금임.

자료: 일본은행.

다) 주요 활동영역

외국은행은 법률상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법」 상의 은행으로 위치를 부여받고 있으며, 지점마다 총리의 면허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외국은행의 업무범위는 기본적으로 국내은행과 같고 예금·대출·외환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일반 예금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retail banking*)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시티뱅크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매금융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은행도 있다. 일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티뱅크는 개인용으로 일반적인 은행업무 이외에도 외화예금이나 투자신탁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3억 엔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금융(*private banking*)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용으로는 용자, 외환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라) 국내은행과의 경쟁 및 협력상황

시티뱅크처럼 소매금융업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은행이 적기 때문에 외국은행과 국내은행이 소매금융업무로 경합하는 일은 많지

않다. 또한 시티뱅크도 미국의 은행이라는 특색을 강조한 은행업무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지점망을 확립한 국내금융기관과는 경합 상태에 있지 않다. 단, 외화예금에 있어서는 일부 은행과 경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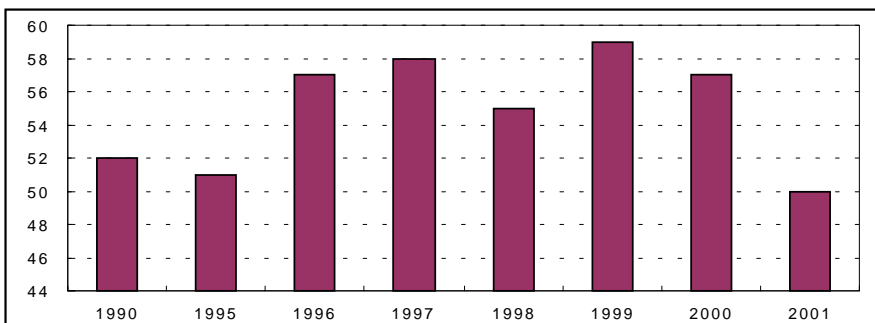
은행업무에 있어서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도매금융(wholesale banking) 업무나 스왑(swap) 등의 파생상품(derivative) 업무 또는 국제은행(國際銀行) 업무이다. 그러나 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업무는 일본내의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사이의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가 아니라, 일본 은행의 본점과 구미 은행의 본점 사이의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로 되고 있다.

2) 증권

가) 외국 증권회사의 참가 수

외국 증권회사의 참가 수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 1996년에 전년도 51개사에서 57개사로 증가하였고, 1999년 말에는 59개사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감소해 2001년 말에는 50개사가 되고 있다(<그림 3-34> 참고).

<그림 3-34> 외국 증권회사의 일본내 지점 수



주: 외국 증권회사의 일본내 지점 수(1사를 1지점 수로 계산).

자료: 일본 증권업협회.

나) 자금조달상황

외국 증권회사의 자금조달은 대부분이 유가증권담보 차입금에 의한 것이다. <표 3-41>에서 나타나듯이, 유가증권담보 차입금은 자금조달 총액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트레이딩 상품과 단기차입금에 의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표 3-41> 외국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단위: 억 엔)

	2001	2002
트레이딩 상품	75,744	67,497
신용거래부채	1,786	2,768
유가증권 담보차입금	220,137	178,071
단기차입금	27,695	59,984

주: 동경 증권거래소 외국종합거래 참가자.

자료: 동경 증권거래소.

다) 자금운용상황

외국 증권회사의 자금은 대부분이 유가증권담보 대출금에 쓰이고 있다. <표 3-42>에서 알 수 있듯이, 유가증권담보 대출금은 자금운용 총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트레이딩 상품에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표 3-42> 외국 증권회사의 자금운용

(단위: 억 엔)

	2001	2002
현금·예금	4,760	3,945
트레이딩 상품	125,870	108,377
신용거래자산	2,609	2,905
유가증권담보대부금	209,300	214,171
단기대부금	2,115	186

주: 동경 증권거래소 외국종합거래 참가자.

자료: 동경 증권거래소.

라) 주요 활동영역

외국 증권회사는 국내 증권회사와 거의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동경 증권거래소에서도 외국 증권회사는 국내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외국 증권회사는 지점망에 있어서 국내 증권에 대해 열위에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보다 법인이 주요 거래대상이 되고 있다.

마) 국내 증권회사와의 경쟁과 협력상황

동경 증권거래소에서는 외국 증권회사가 트레이더로서 매우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 증권회사가 매우 우세한 주가지수 재정거래와 같은 특정 분야를 포함하여 외국 증권회사가 동경 증권거래소 거래액의 35~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나머지인 3분의 2는 250개사 이상의 일본 증권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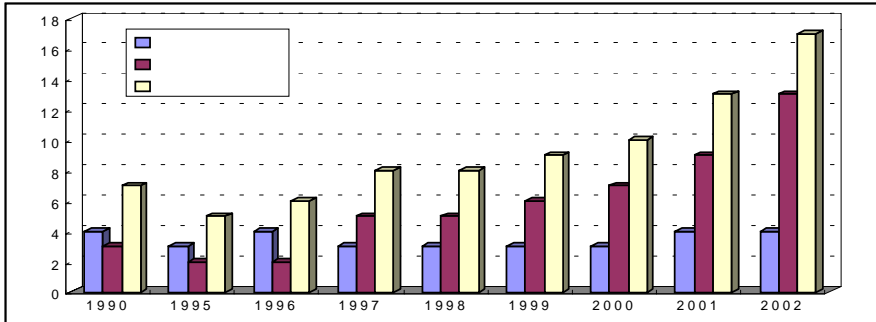
외국 증권회사는 동경 증권거래소에 있어서 매우 큰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일본의 증권회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일본의 증권회사는 손실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 증권회사는 동경에서의 영업활동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외국 증권회사가 법인거래 또는 자기매매(자기 계정에 의한 주식매매) 업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국내 증권회사의 상당수는 개인투자자로부터의 매매수수료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주가가 하락·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이 국내 증권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3) 보험

가)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의 참가 수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의 참가 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3월 말에는 17개사가 일본의 생명보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그림 3-35> 참고).

<그림 3-35> 외자계 생명보험 회사 수



주: 기타 외자계 - 일본 국내회사 중 외자가 50%를 초과하는 자회사.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Fact Book』, 각사 홈페이지.

나) 자산운용상황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총액은 외자계 생명보험회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2002년 3월 말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총액은 14조 엔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그 총액의 80%가 유가증권에 운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총액의 15%가 대부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회사와 비교하면, 외자계 생명보험회사는 유가증권에의 자산운용비율이 높고, 대부금에의 자산운용비율은 낮다.

<표 3-43>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단위: 억 엔)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예저금	1,283	359	306	439	362	1,155	12,483	4,037	4,935
콜 론	652	448	367	456	279	148	560	5,478	1,999
매입금전채권	65	20	0	0	65	0	217	255	763
금전의 신탁	133	62	41	34	20	10	32	11,635	18,608
투자유가증권	10,668	22,259	26,881	30,540	34,655	40,175	49,847	66,019	126,176
대부금	76	1,476	1,841	2,235	2,385	2,664	8,940	15,636	27,423
부동산	12,878	24,625	29,437	33,704	37,766	44,153	72,079	103,060	179,903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사업개황』.

다) 주요 활동영역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의 생명보험 상품의 금액추이는 <표 3-44>에 나타나 있다. 생명보험상품별로 보면, 2002년 3월 말에는 개인보험이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의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체보험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보험 가운데 사망보험(정기보험, 정기부 종신보험, 종신보험)이 개인보험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라) 국내 보험회사와의 경쟁 및 협력상황

외국 생명보험회사는 마케팅정책면에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성숙화·경쟁격화가 진행되는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서 성장해 왔다. 마케팅정책면에 있어서는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대량의 외판원을 이용한 외판원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획득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 생명보험회사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에 의해 보험계약을 획득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구미 각국에서는 일본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볼 때 생명보험시장, 특히 연금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이 계속되리라는 견해가 많아, 앞으로도 일본의 생명보험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생명보험업계 내의 경쟁이 더욱더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생명보험 문화연구소 1990).

<표 3-44> 외자계 생명보험회사

(단위: 백만 엔)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개인 보험	사망 보험	정기보험	2,564,655	3,659,108	4,038,831	4,766,287	5,432,245	6,707,788	9,588,205	16,314,911	31,464,667
		정기특약	92,422	4,266,510	5,552,792	6,459,942	7,570,777	10,746,391	NA	NA	NA
		종신보험	1,359,345	4,021,302	5,004,646	6,018,008	7,170,690	8,933,626	12,441,192	15,563,849	18,163,041
		정기부 종신보험	NA	0	0	0	0	0	1,117,099	1,315,196	25,281,408
		이월변동형적립 종신보험	NA	NA	NA	NA	NA	NA	NA	NA	482,402
		종신특약	NA	30,551	46,018	48,505	50,389	51,705	NA	NA	NA
		변액보험(종신행)	1,748,619	1,767,950	1,776,723	1,816,710	1,807,599	1,785,671	1,847,663	2,507,577	2,798,999
		連生보험	NA	57,657	57,265	16,698	60,446	66,244	NA	NA	NA
		질명보험	30,892,235	2,925,891	3,067,507	880,385	111,771	171,770	NA	NA	NA
		개호보험	20,945	752,598	697,411	34,506	402	378	NA	NA	NA
		해외여행생명보험	0	0	0	0	0	0	NA	NA	NA
		기타 사망보험	585,288	677	623	531	412	389	23,650,671	23,012,583	25,077,196
		37,263,509	17,482,244	20,241,816	20,041,572	22,204,731	28,463,962	48,644,830	58,714,116	103,267,713	

<표 3-44> 계속

(단위: 백만 엔)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개인 보험	생사 혼합 보험	양로보험	44,836	1,014,040	973,968	944,081	912,792	948,725	1,535,295	2,242,714	4,019,482
		양로특약	NA	2,701	1,174	1,106	1,118	1,164	NA	NA	NA
		경기부 양로보험	0	0	0	0	0	0	284,798	323,981	2,919,597
		생존급부금특기보험	0	0	0	0	0	0	NA	NA	NA
		생존급부금특기특약	NA	0	0	0	0	21,436	NA	NA	NA
		변액보험(有期型)	239,368	47,786	241,273	210,483	178,302	124,495	140,229	145,543	183,872
		연생보험	0	633	754	1,235	2,278	0	NA	NA	NA
		어린이보험	0	676	1,955	5,297	9,620	9,299	NA	NA	NA
	기타 생사혼합보험	21,423	48,943	114,508	186,898	244,029	319,306	855,991	722,934	1,751,199	
	생존 보험	어린이보험	305,627	1,114,779	1,333,632	1,349,100	1,348,139	1,424,425	2,816,313	3,435,172	8,874,150
		저축보험	0	0	0	0	0	0	NA	NA	NA
		기타 생존보험	67,284	28,523	26,171	24,285	17,800	16,938	NA	NA	NA
			0	55,072	103,416	192,857	247,806	330,031	NA	NA	NA
		67,284	83,595	129,587	217,142	265,606	346,969	412,010	419,226	532,122	
개인연금보험		37,636,420	18,680,618	21,705,035	21,607,814	23,818,476	30,235,356	51,873,153	62,568,514	112,673,985	
단체 보험	단체정기보험	1,045	838,410	1,103,304	5,024	18,078	90,538	1,464,096	3,630,123	5,912,304	
	단체신용보험	987,030	1,793,007	1,799,628	1,891,197	1,735,221	7,928,219	9,004,353	17,749,957	19,880,998	
	소비자신용단체보험	216,776	NA	NA	NA	NA	NA	NA	NA	NA	
	단체충신보험	NA	NA	NA	NA	NA	NA	NA	NA	NA	
	실신장애자부양자생명보험	0	0	0	0	0	0	NA	NA	NA	
	단체양로보험	0	0	0	0	NA	NA	NA	NA	NA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NA	NA	NA	NA	NA	7,928,219	1,908,068	1,918,110	3,349,903	
	단체신용생명보험	NA	477,360	555,333	581,112	615,896	643,141	1,586,784	4,884,347	7,137,642	
	소비자신용단체생명보험	NA	0	0	0	0	0	150,281	697,070	1,431,310	
	연금특약	9	13	26	34	53	57	766	5,586	6,442	
	기타 단체보험	NA	NA	NA	NA	NA	NA	648	44,683	78,523	
		1,203,815	2,270,380	2,354,987	2,472,343	2,351,170	16,499,636	12,650,900	25,299,753	31,884,818	
단체 연금 보험	단체연금보험	0	0	0	0	0	0	0	0	4	
	기업연금보험	0	0	0	0	0	0	908	2,493	31,899	
	新기업연금보험	0	0	0	0	0	0	73,869	666,645	933,604	
	거주형기업연금보험	0	0	0	0	0	14,255	99,245	389,637	685,247	
	연금복지사업단보험	0	0	0	NA	NA	NA	NA	NA	NA	
	변액연금복지사업단보험	0	0	0	0	0	0	0	0	0	
	후생연금기금보험	0	0	0	0	0	0	25,321	31,619	87,810	
	후생연금기금연합회보험	0	0	0	0	0	0	0	0	0	
	국민연금기금보험	0	0	0	0	0	0	149	138	311	
	국민연금기금연합회보험	0	0	0	0	0	0	0	0	NA	
	단체생존보험	0	0	0	0	0	0	0	0	0	
	확정기금연금보험(개인형)	NA	NA	NA	NA	NA	NA	NA	NA	0	
	확정기금연금보험(개인형)	NA	NA	NA	NA	NA	NA	NA	NA	0	
기타 단체연금보험	NA	NA	NA	NA	NA	NA	0	0	0		
		0	0	0	0	0	14,255	199,492	1,090,532	1,738,875	
계 형 보 험	계형저축보험	0	0	0	0	0	127	4,377	4,126	9,045	
	계형수대저축적립보험	0	0	0	0	0	53	4,038	3,993	9,365	
	계형급부금보험	0	0	0	0	0	0	6	7	116	
	계형기금보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0	8,421	8,126	18,526	
계 형 연 금 보 험	계형연금보험	0	0	0	0	0	0	1,165	49,915	5,581	
	계형연금채립보험	0	0	0	0	0	0	4,423	641,722	14,646	
		0	0	0	0	0	0	5,588	691,637	20,227	
의 보 험 보 험	개인형	0	0	0	0	0	0	0	158	0	
	단체형	6	9	10	9	18	26	96	0	288	
		6	9	10	9	18	26	96	158	288	
취 업 불 능 보 장 보 험	취업불능보장보험	NA	0	0	0	0	0	0	0	0	
	장기취업불능보장보험	NA	0	0	0	0	0	0	0	0	
	단체취업불능보장보험	NA	0	0	0	0	0	325	261	181	
		0	0	0	0	0	0	325	261	181	
합 계		38,841,286	21,789,417	25,163,536	24,085,190	26,187,742	46,839,991	66,202,071	93,289,104	152,249,204	

자료: 『생명보험사업 개요』.

1) 기타

가) 단자회사

일본의 단자회사는 현재 센트럴단자와 우에다-야기단자, 동경단자의 3개사만이 운영되고 있고, 외국의 단자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신용판매회사

신용판매회사의 각종 업무에는 외자계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업무에서는 대표적인 외자계 기업으로서 씨티 코프 카드서비스나 GE 컨슈머 파이낸스(consumer finance)주식회사 등이 있다.

2) WTO(GATS)에서의 금융서비스의 약속

일본은 GATS하에서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해 자유화를 약속(commitment)하고 있다. 일본의 유일한 자유무역협정인 싱가포르와의 「日本 싱가포르 經濟連携協定(JSEPA)」에서도 GATS와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해 자유화를 약속하고 있다. 무역자유화의 약속을 하고 있는 모든 금융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와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표 3-45>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금융 분야는 WTO(GATS) 규정하에서 완전하게 개방되어 있다.

<표 3-45> 일본 금융서비스의 약속 분야

		GATS	JSEPA
A. 모든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a.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질병보건의 서비스	○	○
	b. 생명보험 이외의 보험 서비스	○	○
	c. 재보험	○	○
	d. 보험에 관련된 서비스	○	○

<표 3-45> 계속

		GATS	JSEPA
B.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보험제외)	a. 공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기타 재지불자금수입	○	○
	b. 대출	○	○
	c. 파이낸셜 리스	○	○
	d. 지불·송금 서비스	○	○
	e. 보증 서비스	○	○
	f. 스스로의 또는 고객을 위해 실시하는 다음 것의 거래	○	○
	g. 증권발행	○	○
	h. 자금중매개업	○	○
	i. 자금관리	○	○
	j. 결제서비스	○	○
	k. 기타 금융 관련 서비스	○	○
	l. 금융 데이터 서비스	○	○
C. 기타		○	○

자료: 일본 외무성.

6) 분야별 외국 금융기관의 제도상의 애로사항

가) 은행

WTO(GATS)에 있어서 일본정부는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자유화예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상세한 내용은 <표 3-45> 참고).

일본 국내의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 있어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과의 차이는 이하와 같지만, 외국은행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내용은 아니다.

① 영업·해산·폐업·합병

외국은행의 영업면허는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총리로부터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단, 외국은행은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 이는 다른 금융기

관의 형태에도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산·폐업에 대해서는 국내 은행의 경우에는 총리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만, 외국은행은 신고만으로도 된다. 합병에 대해서는 국내은행의 경우에는 총리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만, 외국은행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② 지점 설치

지점의 설치에 대해서는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총리의 허가가 필요하다. 지점의 위치변경은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외국은행도 총리에의 신고가 필요하다.

③ 자본금의 변경

국내은행이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는 총리의 인가를 필요로 하나, 외국은행은 자본금을 변경한 경우 신고만으로 충분하다.

나) 증권

WTO(GATS)에 있어서 일본정부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자유화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상세한 내용은 <표 3-45> 참고).

일본 국내의 증권거래법 및 외국증권회사에 관련된 법률에 있어서 국내증권회사와 외국증권회사와의 차이는 이하와 같다. 그러나 허가업무(파생상품의 매매와 유가증권의 元引受와 전자거래)에 있어서 일정기간의 경험의 필요성과 준비금의 적립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조건에 있어서 외국 증권회사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내용은 아니다.

① 조직

국내 증권회사는 주식회사여야만 하나, 외국 증권회사는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된다. 즉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고, 또한 은행이

어도 상관 없다. 단,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법인은 주식회사여야 한다.

② 영업의 등록·인가

국내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외국 증권회사는 상호·자본금·임원·본점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총리에게 제출하고, 총리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일부 영업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인가업무로는 파생상품의 매매와 유가증권의 元引受(primary underwriting)와 전자거래이다. 이들의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국내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외국 증권회사를 취급하며, 그 인가 신청서는 마찬가지로 조건에서 행할 수 있다.

인가의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증권회사와 거의 같은 기준(자본금, 순재산액, 손실을 회피하는 체제의 정비 등)에서 외국 증권회사도 인가를 받기 위해 심사를 받는다. 단, 외국 증권회사는 외국에서 인가받으려고 하는 업무에 대해 政令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업무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 증권업자로서 등록을 받지 않은 외국 증권업자는 국내에서는 증권업을 증권회사 이외의 자에 대해 영위할 수 없지만, 元引受業은 총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게 된다. 이 규정은 국내 증권회사에 비교해서 외국 증권업자와 외국 증권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③ 준비금

준비금과 관련해 국내 증권회사는 증권거래 책임준비금을 거래금액에 상응해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 증권회사의 경우는 이것에 더하여 손실준비금을 영업이익의 10%까지의 범위에서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외국의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손실준비금과 부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서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보험

WTO(GATS)에 있어서 일본 정부는 모든 보험서비스 및 보험관련 서비스에서 자유화에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상세한 내용은 <표 3-45> 참고).

일본 국내의 생명보험업에 있어서 국내 보험회사와 외국 보험회사와의 차이는 이하와 같다. 외국 보험회사는 공탁과 자산의 국내 보유의무에 있어서 국내 보험회사에 없는 조건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일본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외국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는 일본의 거주자·재산·선박·항공기에 관련된 보험계약은 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다.

① 면허

외국 생명보험회사는 국내 생명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생존·사망·질병·상해의 보험 및 이들의 재보험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외국 손해보험회사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우연의 사고, 질병, 상해의 보험 및 이들의 재보험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일본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외국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는 일본의 거주자·재산·선박·항공기에 관련된 보험계약은 할 수 없다.

면허 신청시에 국내 보험회사는 상호·자본금·임원명·면허의 종류·본점 소재지를 기재한 면허신청서를 총리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는 본국의 국명·상호·일본에서의 대표자·면허의 종류·일본에서의 주된 점포를 기재한 면허신청서와 해당 외국 보험업자의 보험업의 개시 또는 해당 보험업자에 관련된 법인의 설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 및 해당 면허를 받아 행하려고 하는 일본 내에서의 보험업과 동종의 보험업을 본국에서 적법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본국의 권위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각각 총리에게 제출한다.

외국 보험회사는 외국통화표시의 보험계약을 政令에서 정하는 계약상대방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만 면허가 교부된다. 국내 보험회사에 관해 이

러한 종류의 조건은 없다.

② 공탁

외국 보험회사는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공탁소에 공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조건은 없다.

③ 자산의 국내보유 의무

외국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지불준비금·공탁금·자기자본 각각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일본 국내에서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 기타

① 단자회사

단자회사는 콜자금의 대부 또는 그 대차의 매개 및 거래에 따르는 受渡업무를 업무의 핵심으로 하는 전문적 업체이다. 그러나 이 단자업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금업의 규제와 관련해 현행 대금업법에서는 政令에 의해 대금업에서 적용제외를 받은 다음 舊 출자법의 부분적용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에의 신고·보고·현장조사 등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단자회사의 증권업무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증권거래법에 기초해 체계적인 감독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 법률에서는 국내 단자회사와 외국 단자회사의 구별이 없다. 또한 증권거래법에서는 전술한 것처럼 외국 증권회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② 신용판매회사

신용판매회사는 할부판매법에 기초해 할부구입알선업자로서 경제산업성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경제산업성에 구비된 할부구입알

선업자 등록부에 등록된 법인이 아니면, 신용카드업무(종합알선업무)를 포함해 할부구입알선업무를 할 수 없다. 이 할부판매법에서는 국내 신용판매회사와 외국 신용판매회사의 구별이 없다.

3. 중국

가.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과정

1)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최근 20여 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금융발전의 과정을 개괄하여 본다. 이는 최근까지 금융산업에 내재되어 온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중국 정부의 금융개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1978년부터 시작된 경제체제의 개혁과정에서 중국의 금융산업은 규모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동시에 금융산업체제, 금융관리시스템 등에 있어서도 매우 큰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3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는 개혁개방의 이전 단계로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단일은행체제 시대이다. 두 번째 단계는 현대적 금융제도가 구축된 1979년부터 1993년까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프트 금융개혁이 이루어진 1994년 이후를 의미한다. 시대별로 금융발전의 상황을 차례로 검토하여보기로 한다.

개혁개방 이전(1978년 이전)의 중국 인민은행 단일금융체제 시기에 금융기관은 오직 중국 인민은행이 존재하였으며 중국 인민은행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일금융체제를 갖고 있었다. 당시 중국 인민은행은 일종의 정부기관으로서 다른 정부부처와 함께 세금징수 및 예금동원을 통해 자원을 모으고 이를 국가의 전략적 목표에 따

라 재배분하였다. 즉 중앙은행은 화폐발행, 현금통화관리는 물론 정부계좌를 관리하고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 중국 인민은행은 본점과 지점, 성(省)급 지점과 시(市)급 지점간에 수직관계가 형성되었고 특히 지방의 중국 인민은행 지점은 북경의 본점과 지방정부로부터 이중적 통제를 받았다.

개혁개방 이후 1993년까지의 시기를 제1차 금융개혁의 시기라고 부르며 이 시기에는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여 다양한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현대적 금융제도의 골격을 만들었다 (<표 3-46> 참고). 이 시기 중요한 제도의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먼저 중국 인민은행 혹은 재정부로부터 4개 국유상업은행이 독립하여 설립되었다. 즉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분리된 이원적 금융제도의 틀이 마련되었다. 신탁투자공사(1979년), 보험회사(1983년), 농촌신용협작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설립되었다. 또한 국유상업은행과 경쟁하는 10개 주식제 상업은행이 설립되었다. 한편 직접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상해 증권거래소(1990), 심천 증권거래소(1991)가 설치되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중국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B주식 발행을 허용하였다(1992).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제2차 금융개혁의 시기에는 이미 형성된 금융기관체제를 기초로 하여 이들 금융기관의 효율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감독체제의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즉 이미 구축된 다양한 금융기관의 틀을 기초로 하여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소유지배구조 및 관리감독시스템의 개선에 중점을 둔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경영 및 소유지배구조, 관리시스템에 역점을 둔 개혁에 새로이 박차를 가한 이유는 국유기업과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유상업은행이 지배적인 기존 금융제도의 틀 안에서는 금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위험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대 국유상업은행이 정책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럴해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개발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3개 정책은행을 설립하여 정책금융을 전담하게 하였다(1994). 또한 최초로 중국 인민은행법이 제정되어 중국 인민은행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1995). 중국 인민은행의 지방정부로부터의 행정적 간섭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의 중국 인민은행 성(省)급 지점을 9개로 통합하였다(1997). 한편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2,700억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 국유상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였다(1998). 또한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정리를 위하여 부실채권처리를 전담하는 4개 국유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였다(1999).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이 시기에 직접적인 '대출총액관리제도'를 폐지하고 간접적 통화량 관리제도로 전환하여 통화정책의 현대화를 꾀하였다.

<표 3-46> 중국의 금융기관체제(2001년 말 현재)

금융기관 분류	현 황
중앙은행(1)	中國人民銀行
정책은행(3)	中國農業開發銀行, 國家開發銀行, 中國輸出入銀行
국유상업은행(4)	中國工商銀行, 中國建設銀行, 中國銀行, 中國農業銀行
주식제은행(10)	交通銀行, 中信實業銀行, 中國光大銀行, 華夏銀行, 廣東發展銀行, 深圳發展銀行, 招商銀行, 福建興業銀行, 上海浦東發展銀行, 民生銀行
지방은행(109)	도시상업은행(109), 농촌신용합작사(38,153), 도시신용합작사(1,049)
외국계은행(181)	외국은행중국법인(159), 외국은행중국지점(8), 중외합작은행(7), 외자독자은행(7), 외국은행사무소(214)
신탁투자회사(239)	국유신탁투자회사(21), 지방신탁투자회사(218)
기타(85)	재무공사(71), 리스회사(13)

자료: 『중국금융연감』(2002).

상술한 바와 같은 금융기관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은 실물부문의 성장을 초과하는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룩하였다(<표 3-47> 참고).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1978년~2001년 기간에 3,624.1억 위안에서 95,933.3억 위안으로 약 26.5배 증가한 반면, 동 기간 총 통화량은 188.5배, 개인저축잔고는 350.2배 증가, 금융기관대출총액은 1,850억 위안에서 112,341.7로 60.7배 증가하여 금융부문의 성장이 실물부문의 성장을 크게 앞질렀다. GDP 대비 M3의 비율도 1978년 0.246에 머물던 것이 2001년 1.63으로 크게 증가하여 금융심화가 지속적으로 제고되었다.

여러 실증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금융부문의 성장은 자본스톡의 증가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부문의 성장이 자원배분 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매우 제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출총액에서 상당 부분이 정책성 대출이 차지하고, 이러한 부분이 자원배분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개혁개방 이후 금융산업이 급속히 발전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9.8%의 고도성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실물경제의 고도성장은 금융산업 발전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저축률을 들 수 있다. 1995년 이후 평균저축율이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저축률은 금융자산 축적을 가속화시켜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을 통한 화폐화과정(Monetization)으로 인하여 화폐수요가 증가하여 금융수요의 증가를 촉발하였다. 네 번째 요인으로는 시장경제로의 개혁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독점적인 자금배분이 감소하고 자금배분 주체의 다양화가 증대되어 금융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1986년 ‘기업소요자금을 재정지출에서 금융기관대출로 전환하는 개혁’을 통하여 금융부문 성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국의 금융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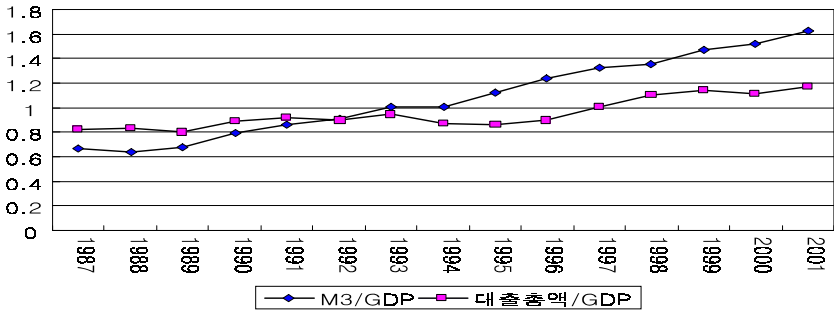
<표 3-47>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

연도	GDP	금융기관 대출총액	정책성 대출총액	M3/GDP	대출총액/GDP
1978	3,624.1	1,900.0	n.a.	0.246	0.524
1979	4,038.2	2,090.0	11.9	0.329	0.518
1980	4,517.8	2,490.0	333.6	0.370	0.551
1981	4,862.4	2,960.0	432.3	0.407	0.609
1982	5,294.7	3,300.0	525.4	0.428	0.623
1983	5,934.5	3,750.0	569.2	0.457	0.632
1984	7,171.0	5,120.0	1,266.2	0.502	0.714
1985	8,964.4	6,310.0	1,857.7	0.544	0.704
1986	10,202.2	8,158.9	2,340.4	0.622	0.800
1987	11,962.5	9,803.8	2,776.8	0.665	0.820
1988	14,928.3	12,449.9	3,286.8	0.643	0.834
1989	16,909.2	13,504.2	4,251.2	0.674	0.799
1990	18,547.9	16,579.4	5,459.2	0.792	0.894
1991	21,617.8	19,852.6	6,781.7	0.860	0.918
1992	26,638.1	24,069.5	7,410.9	0.913	0.904
1993	34,634.1	32,943.1	9,609.5	1.003	0.951
1994	46,759.4	40,810.1	11,449.2	1.003	0.873
1995	58,478.1	50,538.0	12,372.0	1.121	0.864
1996	67,884.6	61,152.8	15,439.5	1.234	0.901
1997	74,462.6	74,914.1	16,601.2	1.330	1.006
1998	78,345.2	86,524.1	16,124.8	1.355	1.104
1999	82,067.4	93,734.3	19,308.5	1.470	1.142
2000	89,403.5	99,371.1	22,229.8	1.520	1.111
2001	95,933.3	112,314.7	19,885.9	1.630	1.171

주: 1978~1985년의 금융기관 대출총액은 국유은행과 농촌신용협작사의 대출총액임. 기타 금융기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 금융기관의 대출총액의 합계는 대략적으로 경제 전체의 여신규모를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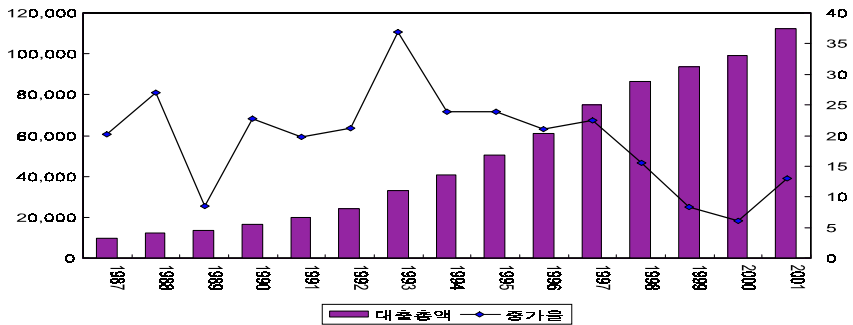
자료: 『중국금융연감』, 각 년호, 『중국통계연감』, 각 년호.

<그림 3-36> 중국의 금융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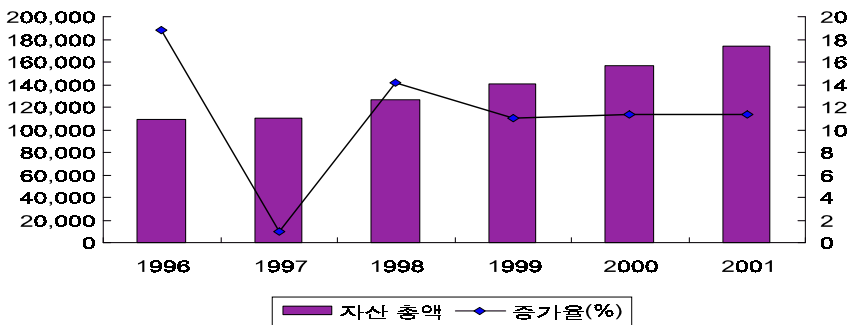
<그림 3-37> 금융기관 대출 총액

(단위: 억 위안, %)



<그림 3-38> 은행의 자산변동

(단위: 억 위안, %)



2) 중국 금융산업의 특징

중국의 금융산업은 다른 자본주의국가에서 보기 힘든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계획경제의 특성에서 연유한 측면도 있고 중국 금융산업 본연의 질적 후진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중국 금융산업의 특징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유 금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은행, 보험, 증권, 신탁 등 각 영역에서 국유 금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경우 4대 국유 상업은행이 자금배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금융기관들은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에 대규모 대출을 해줌으로써 대량의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심각한 부실채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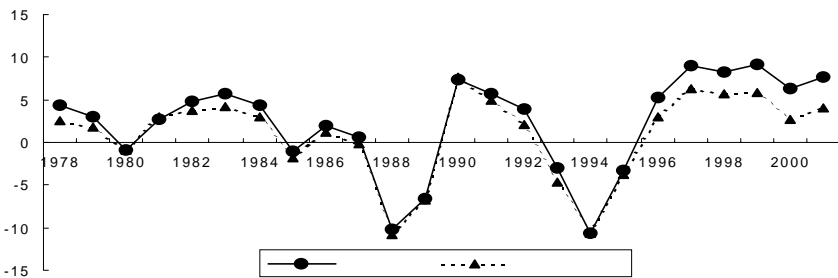
중국 금융산업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체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아시아권 국가들이 대부분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구조를 갖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더욱 간접금융의 의존도가 높다. 1990년대 들어서 직접금융시장이 급속히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직 중국의 금융시장은 은행 위주의 간접금융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실례로 1991년 상해, 심천 주식거래소가 개장한 이래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 1991~2002년 기간에 거래량 890배, 상장회사 시가총액은 400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1년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총액은 금융기관 대출총액의 1.2%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 금융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철저한 업무상 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회사는 업무상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 단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광의의 겸업은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상 겸업금지조치 때문에 국내은행들이 WTO 개방으로 진입하는 외국의 겸업화 외자은행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금융시장의 특징으로는 이자율 통제를 들 수 있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이자율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상당기간 동안 음의 실질이자율을 기록하며 금융억압이 심하게 존

재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양의 실질금리가 유지되어 음의 실질금리 형태의 금융억압은 상당 정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금리자유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리자유화를 진행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리인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유기업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2000년 7월 중국 인민은행장 다이상룡은 향후 3년 정도의 기간 내에 이자율 자율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금리자유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예금금리는 중앙은행이 고시한 기준금리로 고정되어 금융기관별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예금금리는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대출금리는 상하 10%의 변동폭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상 30%, 하 10%, 농촌신용합작사의 경우 상 40%, 하 10%의 변동폭을 허용하고 있다. 외화표시 예대금리는 2000년 9월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져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300만 달러 이상의 예금금리는 고객과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고, 300만 달러 이하의 예금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통일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림 3-39> 실질이자율



주: 예금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연평균 실질이자율, 대출이자율은 1년 만기 유동자금 대출의 연평균 실질이자율.

〈표 3-48〉 예대금리차

(단위: %)

연도	대출금리 ¹	예금금리 ²	예대금리차
1978	5.04	3.24	1.80
1979	5.04	3.78	1.26
1980	5.04	5.04	0
1981	5.04	5.40	-0.36
1982	6.66	5.67	0.99
1983	7.20	5.76	1.44
1984	7.20	5.76	1.44
1985	7.74	6.99	0.75
1986	7.92	7.20	0.72
1987	7.92	7.20	0.72
1988	8.28	7.68	0.60
1989	11.15	11.12	0.03
1990	9.43	9.71	-0.28
1991	8.64	7.80	0.84
1992	9.36	7.56	1.80
1993	10.13	8.59	1.54
1994	10.98	10.98	0
1995	11.52	10.98	0.54
1996	11.34	9.16	2.18
1997	9.80	7.13	2.67
1998	7.60	5.03	2.57
1999	6.09	2.92	3.17
2000	5.85	2.25	3.60
2001	5.85	2.25	3.60

주: 1) 1년 만기 유동자금대출의 연평균 명목이자율.

2)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연평균 명목이자율.

자료: 『중국금융연감』, 각 년호.

3) 금융감독

과거(1998년 이전)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형태를 가졌으나 1998년 보험감독기구의 설립으로 분업주의에 입각한 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이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을,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증권부문을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보험회사를 각각 감독,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에는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가 설립되어 기존의 중국 인민은행의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한 완전한 분업감독시스템을 유지하며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에만 주력하는 감독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금융감독이나 금융정책에 관련된 장기 정책방향은 전국금융공작회의(全國金融工作會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회의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 국무원 총리, 경제관련부처장관들이 참여하는 비상설회의로 금융관련정책의 장기방향을 결정한다. 또한 중공중앙금융공작위원회(中共中央金融工作委員會)가 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 계열의 금융산업 총괄기관으로 금융관련 주요 정책노선을 결정하고, 금융안전조사 및 주요 금융기관장의 인사를 담당하는 사실상의 금융관련 최상위 권력기관이다. 이 위원회에는 국무원 부총리가 서기를 겸임하고, 중국 인민은행,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 중국보험관리감독위원회, 국유 상업은행, 정책성 은행, 교통은행, 중국인민보험공사 당 부서기가 위원으로 참가한다.

한편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라 중국의 금융감독정책이 큰 변화를 겪었다. 즉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총액제한의 직접관리방식에서 금융자산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간접관리감독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하게 퇴출시켰는데, 1997~2001년에 427개 경영부실 중소 금융기관 및 22,588개의 농촌기금회를 퇴출시켰다.

금융기관 관리감독시스템의 정비 및 강화를 촉발시킨 주 요인은 중국

금융산업의 심각하게 내재된 문제 중 하나로 금융기관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이다.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정확하지 않지만 2000년 총대출 중 약 3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부실채권이 많은 중요한 이유는 상업은행들이 국유기업 및 경제구조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정부를 대신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 1997~2000년 4대 국유상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 파산, 합병의 과정에서 대략 1,829억 위안을 손실처리하였다. 또한 4대 국유상업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위하여 1998년 재정부가 2,700억 위안 특별국채를 발행하였다. 앞으로는 매년 부실채권 비율을 2~3%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제시하여 2001년 말 4대 상업은행의 경우 대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부실채권의 비율이 25.37%로 전년대비 3.81% 감소하였다.

나.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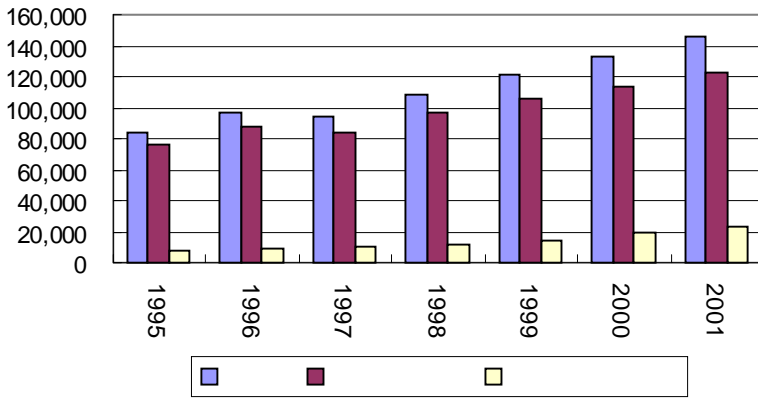
1) 은행

가) 규모

중국의 상업은행은 기본적으로 국유상업은행(4개 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10개 은행), 도시상업은행(109개 은행) 그리고 도시 및 농촌신용협작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유상업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이들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기로 한다. 국유상업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의 자산 총규모는 1995년 83,034억 위안에서 2001년 144,195억 위안으로 1.7배 증가하였다. 4대 국유은행의 자산규모는 1995년 75,608억 위안에서 122,076억 위안으로 1.6배 증가하는 데 그친데 반해, 주식제 상업은행의 자산은 1995년 7,426억 위안에서 2001년

22,119억 위안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림 3-40> 자산규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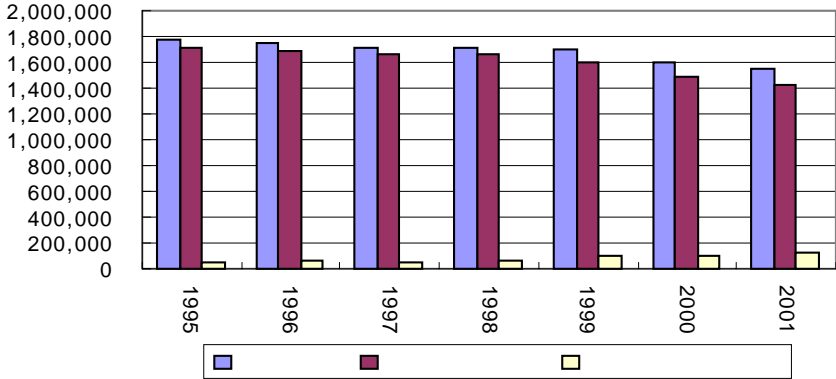


다음으로 은행의 직원 수는 1995년 1,770,738명에서 2001년 1,546,188명으로 약 12% 감소하였다. 특히 국유상업은행의 직원 수는 1995년 1,717,332명에서 2001년 1,421,566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유상업은행들이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점포 및 인원을 대폭적으로 정리한데 기인한다. 반면 주식제 상업은행의 직원 수는 1995년 53,406명에서 124,62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식제 상업은행의 영업망 확대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점 수의 총수는 1995년 157,808개에서 2001년 113,632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국유상업은행의 지점 수는 155,207개에서 109,222개로 30%나 감소한 데 반해, 주식제 상업은행의 지점 수는 2,601개에서 4,410개로 약 2배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국유상업은행의 구조조정 결과 국유상업은행의 지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반면 주식제 상업은행은 영업망 확대를 위해 지점 수를 증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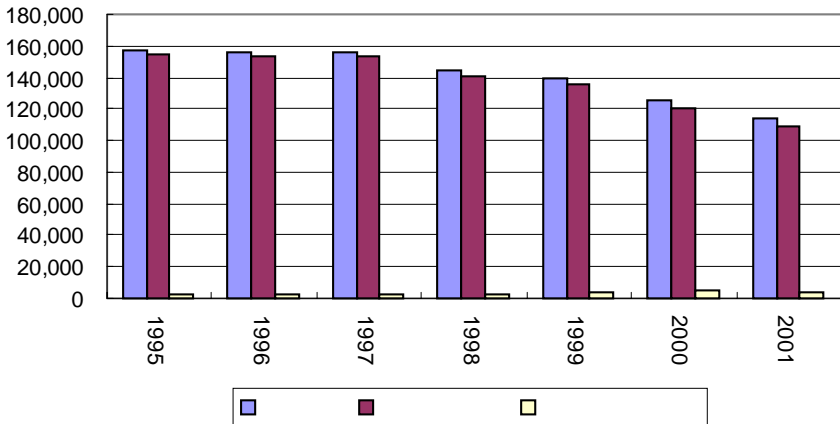
<그림 3-41> 직원 수 변동 추이

(단위: 명)



<그림 3-42> 은행의 지점 수 변동 추이

(단위: 개)



나) 영업활동 및 업무영역

은행의 업무영역은 상업은행법 및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유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49>와

같다. 고유업무로는 예금과 대출업무 및 이 과정에서의 결제업무이다. 부수업무로는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채권의 발행이나 정부의 금융대행업무를 들 수 있는데 이에에는 정부채권의 대리발행, 대리상환 및 수탁판매, 정부채권의 매매 등이 있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의 허가를 얻은 대상에 대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표 3-49> 은행의 업무영역

구분	업무내용
고유업무	1. 예금의 수입 2. 대출 3. 국내외 결제업무 4. 어음의 할인
부수업무	5. 금융채권의 발행 6. 정부채권의 대리발행, 대리상환 및 수탁판매 7. 정부채권의 매매 8. 금융기관 상호간의 자금대여 9. 외화의 매매 및 대리매매 10. 신용장 업무 또는 그 담보제공 11. 대금수령대행 및 보험업무의 대리 12. 대여금고 13. 중국 인민은행의 허가를 얻은 기타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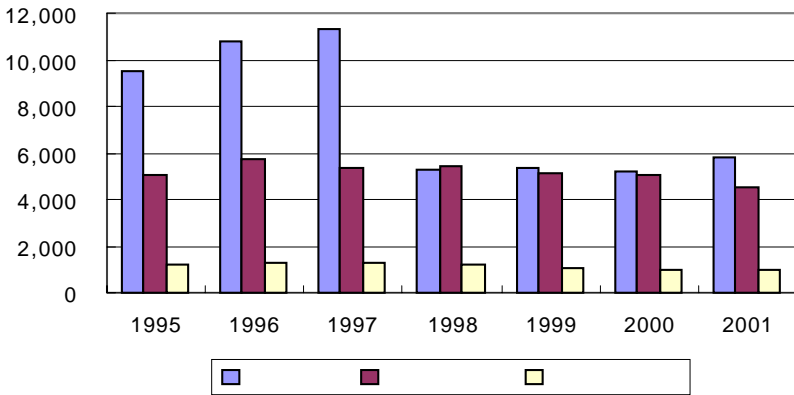
자료: 중국상업은행법

은행의 업무활동을 수익구조를 통하여 살펴보면 주로 이자수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1년에는 영업수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77%에 달하고 있다(<그림 3-30> 참고). <그림 3-30>에서 볼 수 있듯이 1998년부터 영업수익이 크게 감소하였는 데 이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라 금융기관 간 차입을 억제한 데 기인한다. 한편 수수료 수익은 1998년 16%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7.7%에 머무르고 있어 다른 선진국의 30%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수수료수익이 낮은 이유는 은행관련 서비스가 매우 취약하여 범위의 경제를 누리지 못하

고 있는데 기인한다. 수수료 수익비율은 주식제 상업은행의 경우 2001년 2.5%인 데 반해 국유상업은행의 경우에는 8.8%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식제 상업은행의 점포수가 작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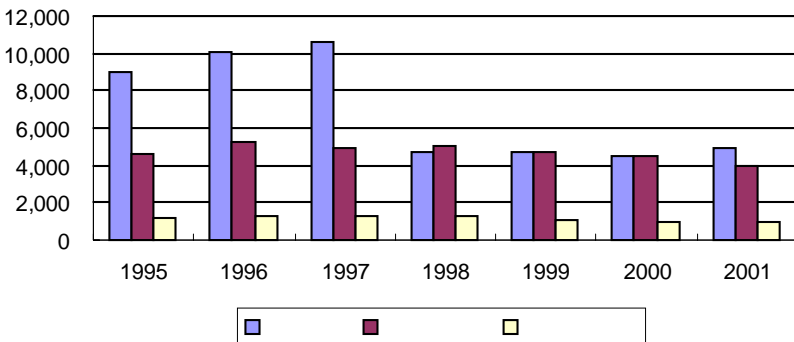
<그림 3-43> 은행의 수익구조

(단위: 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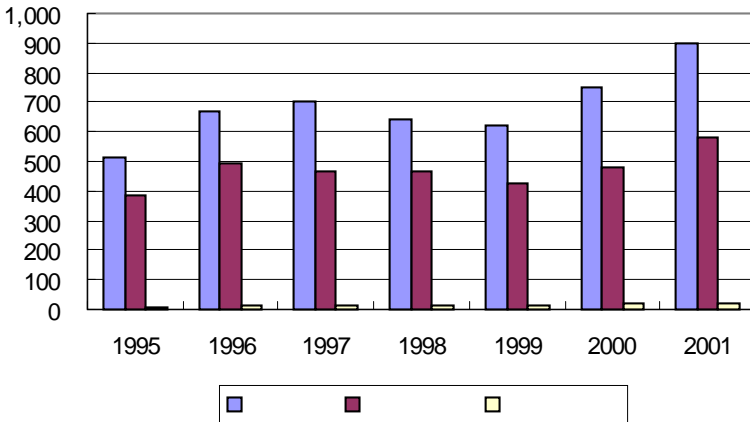
<그림 3-44> 국유상업은행의 수익구조

(단위: 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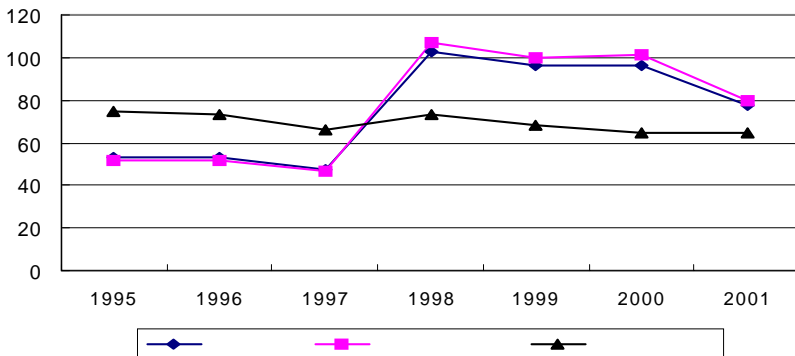


<그림 3-45> 주식제 은행의 수익구조

(단위: 억 위안)



<그림 3-46> 영업소득 대비 이자수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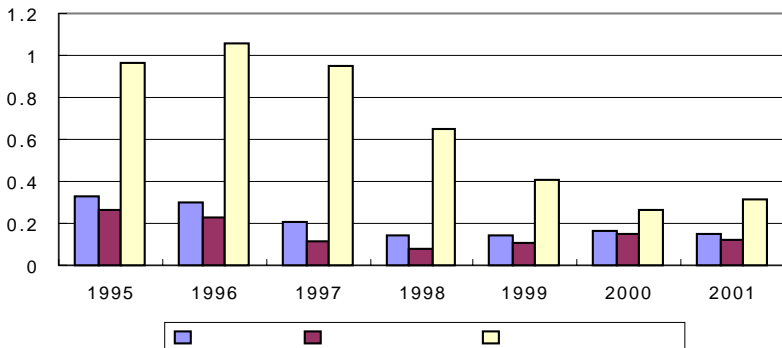
다) 수익성

국유상업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의 ROA는 1995년 0.33%에서 2001년 0.1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 절대적 수준도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ROA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부실채

권비율이 높은 데 기인한다. 중국은행의 부실채권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2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은행 자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공상은행의 경우 2001년 총 대출에서 부실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5.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식제 상업은행의 ROA는 국유상업은행의 ROA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1년 주식제 상업은행의 ROA는 0.31%인 데 반해 국유상업은행의 ROA는 0.12%에 불과하다. 이렇게 국유상업은행의 ROA가 주식제 상업은행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은 과거 국유상업은행이 국유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과생된 막대한 규모의 부실채권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국유상업은행과 같은 국유소유제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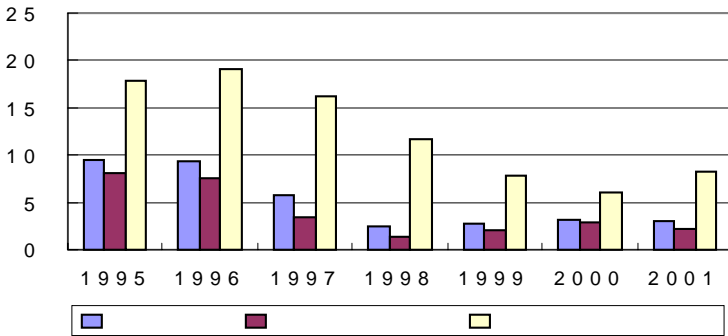
BIS 비율은 전체적으로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2001년 말 4대 상업은행의 BIS비율은 5.07%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자기자본비중이 4~6%로, 일반적으로 BIS비율이 단순자기자본비율의 2배 정도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국의 BIS비율은 단순자기자본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중국 금융기관들이 위험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47> RO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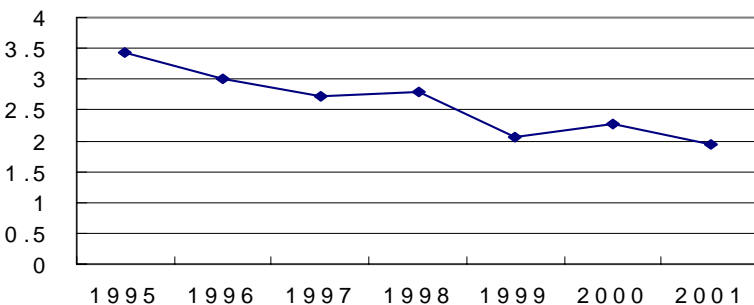
다음에는 ROE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전체 은행의 ROE는 1995년 9.54%에서 2001년 2.95%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국유상업은행의 ROE는 주식제 상업은행의 ROE에 비해 크게 낮다. 국유상업은행의 ROE는 1995년과 2001년 각각 8.15%, 2.24%인 데 반해 주식제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각각 17.9%, 8.3%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3-48> ROE 추이



한편 순이자마진은 1995년 3.5%에 이르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49> 순이자마진



라) 자금조달 및 운영

(1) 자금조달

중국은행의 자금조달은 대부분 예금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자금조달 중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에는 98%에 이르고 2001년에는 약간 떨어졌으나 아직도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미미하여 2001년 4.2%에 머물고 있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도 매우 미미하여 2001년 0.32%에 머무르고 있다.

〈표 3-50〉 자금조달 추이

(단위: 억 위안, %)

	예금(위안)	비중(%)	금융채	비중(%)	국제금융기관 (외국은행포함)	비중(%)
1991	18,079.0	98.08	168.7	0.92	184.7	1.00
1992	23,468.0	98.02	237.4	0.99	236.0	0.99
1993	29,627.0	98.62	196.1	0.65	217.0	0.72
1994	40,472.5	97.44	845.0	2.03	217.3	0.52
1995	53,862.2	96.31	1,683.6	3.01	382.4	0.68
1996	68,751.2	96.12	2,477.1	3.46	295.3	0.41
1997	82,390.3	98.74	855.6	1.03	196.5	0.24
1998	95,697.9	98.08	1,696.2	1.74	174.4	0.18
1999	108,778.9	97.15	2,833.7	2.53	371.9	0.33
2000	123,804.4	96.49	4,129.4	3.22	368.3	0.29
2001	143,617.2	95.48	6,312.5	4.20	484.5	0.32

자료: 『중국금융연감』, 각 년호.

(2) 자산운영

은행의 자산운영상태를 살펴보면 대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자산 중 대출의 비중이 1991년 94%에 이르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01년에도 대출비중이 86%에 이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외화자산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2001년에는 그 비중이 14%에 이르고 있다. 자산에서 신탁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거나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투자신탁회사의 난립과 경영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와 영업제한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2001년 10월 「투자신탁법」이 도입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부터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신탁업무 영업허가증을 신규 발급받아야만 신탁업무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은행의 경우 자산운영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51> 자금운영 추이

(단위: 억 위안, %)

	대출	비중	외화 구입	비중	대외국제금융기관	비중
1991	21,337.0	93.47	1,228.1	5.38	262.0	1.15
1992	26,322.9	94.95	1,102.0	3.97	298.4	1.08
1993	32,943.1	94.90	1,431.8	4.12	336.8	0.97
1994	40,810.0	89.29	4,503.0	9.85	392.7	0.86
1995	50,538.0	87.33	6,774.0	11.71	555.1	0.96
1996	61,152.0	85.80	9,578.0	13.44	541.4	0.76
1997	74,914.1	84.25	13,467.2	15.15	534.4	0.60
1998	86,524.1	85.91	13,724.3	13.63	461.8	0.46
1999	93,734.3	85.89	14,792.3	13.55	604.1	0.55
2000	99,371.1	86.99	14,291.1	12.51	576.3	0.50
2001	112,314.7	85.79	17,856.4	13.64	754.2	0.58

주: 중국 인민은행, 3대 정책성 은행, 4대 국유상업은행, 우체국,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 도시 및 농촌 신용협작사, 투자신탁회사, 재무공사, 리스회사 포함.

<표 3-52> 4대 국유은행 + 주식제 상업은행

(단위: 억 위안)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	83,317.69	96,273.28	94,691.64	10,8348.9	120735.6	132,494.2	145,396.8
자기자본	2,857.05	3,094.53	3,350.21	6,239.62	6440.8	6,801.76	7512.1
지점수	15,7795	155,920	156,671	1,44433	140002	125,599	113,618
직원수	17,70311	1,748,210	1,714,194	1,721680	1697075	1,597,291	1,543,964
영업수익	9,489.79	10,776.66	11,300.8	5,311.75	5354.37	5,229.92	5,843.11
이자료수익	5,042.45	5,718.29	5,380.76	5,460.78	5156.07	5,027.87	4,535.63
수수료수익	1,193.4	1,295.27	1,292.45	1,244.86	1041.81	1,001.06	976.57
영업비용	9,193.4	10,488.81	11,125.33	5,195.82	5055.64	4,826.59	5,483.66
이자비용	3,904.15	4,535.64	4,055.35	3,824.31	3851.63	3,500.34	2,952.98
수수료비용	920.67	1002.02	949.36	836.45	612.47	535.22	423.13
영업이익	463.76	507.39	324.19	261.19	647.22	723.55	768
세전 수익	234.16	322.48	195.14	248.31	338.18	353.95	287.37
당기순이익	272.69	289.53	194.87	153.62	174.58	218.74	221.86
ROA	0.327289	0.300738	0.205794	0.141783	0.144597	0.165094	0.152589
ROE	9.54446	9.356187	5.81665	2.462009	2.710533	3.215932	2.953369
단순자기자본비율	3.429104	3.214319	3.538021	5.75882	5.334633	5.13363	5.16662

마) 국제영업

2001년 말 현재 중국 은행의 해외 영리성 영업기구는 452개이며 지역적으로는 홍콩과 마카오에 대다수인 374개가 설립되어 있다. 또한 해외 영업지점의 98.9%인 447개 지점은 4대 국유상업은행의 영업기구이다. 해외 영업기구의 총자산규모는 1,514.71억 달러이며 이중 홍콩, 마카오 지점의 총자산규모는 1,172.6억 달러이며 4대 상업은행의 해외 영업기구의 자산규모는 전체 자산의 95.2%인 1,444.0억 달러이다. 따라서 중국 은행의 국제영업은 지역적으로는 홍콩, 마카오에 편중되어 있으며 은행별로는 주로 국유상업은행에 의한 국제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고객의 측면에서는 해당지역의 중국계 기업에 대한 국제영업에 국한된 제한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제고와 현지화를 위하여 중국 내 본사와 독립적인 독자법인의 설립, 현지 우량은행의 M&A 등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상은행은 2000년 8월 홍콩의 상장은행인 홍콩 우련은행을 매수하여 중국 공상은행의 자회사로서 중국 공상은행(亞洲)을 설립, 2001년 7월 기존의 공상은행 홍콩 지점의 자산을 중국 공상은행(亞洲)에 흡수 통합시킴으로써 경쟁력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행은 2001년 10월 기존의 중국은행집단에 속해 있는 10개 은행을 합병하여 중국은행(홍콩)을 설립하였으며 이 은행은 현재 홍콩의 3개 발권은행 중 하나이다.

<표 3-53> 중국 은행별 자산 및 시장비중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4대 은행	75,608.2 (81.9)	87,547.1 (76.1)	84,242.0 (76.1)	96,602.1 (76.5)	106,347.8 (75.8)	113,754.3 (72.8)	122,076.6 (70.2)
공상	31,075.0 (33.7)	36,295.7 (33.1)	29,367.8 (26.5)	32,387.4 (25.6)	35,398.7 (25.2)	39,737.4 (25.4)	43,180.7 (24.8)
농업	12,309.5 (13.3)	14,669.5 (13.4)	15,739.5 (14.2)	20,224.3 (16.0)	22,758.4 (12.6)	21,848.9 (14.0)	25,279.9 (14.5)
중국	19,706.1 (21.4)	20,820.0 (19.0)	22,317.1 (20.2)	24,753.9 (19.6)	26,180.1 (18.7)	26,851.1 (17.2)	25,966.4 (14.9)
건설	12,517.6 (13.6)	15,761.9 (14.3)	16,817.6 (15.1)	19,236.5 (15.2)	22,010.7 (15.7)	25,317.0 (16.2)	27,649.6 (15.9)
주식제 상업은행	7,426.4 (8.0)	8,426.0 (7.7)	10,136.6 (9.2)	11,352.9 (9.0)	13,948.7 (10.0)	18,139.8 (11.6)	22,118.9 (12.7)
교통	3,328.5 (3.6)	3,978.8 (3.6)	4,497.5 (4.1)	4,839.2 (3.8)	5,380.5 (3.8)	6,281.8 (4.0)	6,690.7 (3.8)
중신	864.9 (1.0)	1,086.7 (1.1)	1,258.2 (1.1)	1,336.1 (1.1)	1,573.4 (1.1)	2,346.4 (1.5)	3,004.0 (1.7)
광대	282.6 (0.3)	470.5 (0.4)	609.2 (0.6)	747.3 (0.6)	1,678.9 (1.2)	2,042.0 (1.3)	2,654.1 (1.5)
화하	122.6 (0.1)	226.5 (0.2)	401.3 (0.4)	498.7 (0.4)	611.3 (0.4)	951.1 (0.6)	1,366.4 (0.8)
광동발전	547.2 (0.6)	758.4 (0.7)	890.0 (0.8)	1,069.3 (0.8)	1,208.4 (0.9)	1,489.4 (1.0)	1,389.0 (0.8)
심천발전	203.1 (0.2)	300.2 (0.3)	313.0 (0.3)	394.0 (0.3)	439.1 (0.3)	600.1 (0.4)	1,201.3 (0.7)
초상	648.0 (0.7)	925.8 (0.8)	1,190.1 (1.1)	1,380.8 (1.1)	1,624.8 (1.2)	2,195.1 (1.4)	2,663.2 (1.5)

<표 3-53> 계속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포동발전	435.7 (0.5)	649.7 (0.6)	816.4 (0.7)	873.4 (0.7)	1016.4 (0.7)	1297.4 (0.8)	1736.9 (1.0)
복건흥업	196.9 (0.2)	243.6 (0.2)	290.6 (0.3)	355.8 (0.3)	491.8 (0.4)	856.1 (0.5)	1248.4 (0.7)
민생	n.a.	85.9 (0.1)	183.4 (0.2)	252.4 (0.2)	363.1 (0.3)	680.6 (0.4)	1366.4 (0.8)
도시상업 은행	646.5 (0.7)	2141.9 (2.0)	2744.8 (2.5)	3723.1 (2.9)	4516.8 (3.2)	6998.2 (4.5)	8730.4 (5.0)
농촌신용 합작사	6971.0 (7.4)	8706.6 (7.9)	10122.0 (9.1)	11431.1 (9.0)	12392.4 (8.8)	13930.6 (8.9)	16108.0 (9.3)
외자은행	1588.6 (1.7)	2483.4 (2.3)	3147.4 (2.8)	2836.9 (2.2)	2638.6 (1.9)	2847.7 (1.8)	3725.5 (2.1)
합계	92263.8 (100.0)	109605.2 (100.0)	110705.8 (100.0)	126340.0 (100.0)	140283.4 (100.0)	156270.7 (100.0)	173960.6 (100.0)

주: 1) 일관적인 금융기관 자산총액 통계자료 부족으로 시장비중은 예금금융기관의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음.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았음.

2) 2000년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융기관 자산총액은 197,890.7억 위안이며 4대 국유상업은행의 자산비중은 57%임.

자료: 『중국금융연감』 2002年, 中國人民銀行統計季報, 2002年 第2期.

<표 3-54> 중국 은행별 대출 및 시장비중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4대 은행	30,922 (61.2)	36,253 (59.3)	44,824 (59.8)	53,611 (62.0)	57,456 (61.3)	58,830.7 (59.2)	70,478.9 (62.8)
공상	14,054.1 (27.8)	16,331.3 (26.7)	19,092.8 (25.5)	21,705.5 (25.1)	23,334.9 (24.9)	23,936.4 (24.1)	25,756.0 (22.9)
농업	6,553.8 (12.97)	7,712.9 (12.61)	9,809.2 (13.09)	13,666.1 (15.79)	15,527.5 (16.57)	14,497.2 (14.6)	16,045.9 (14.3)
중국	4,179.3 (8.3)	4,751.5 (7.8)	5,630.0 (7.5)	6,503.8 (7.5)	7,318.2 (7.8)	7,291.3 (7.3)	14,338.4 (12.8)
건설	6,135.3 (12.1)	7,457.2 (12.2)	10,291.7 (13.7)	11,735.6 (13.6)	11,275.6 (12.0)	13,105.8 (13.2)	14,338.4 (12.8)
주식제 상업은행	2,311 (4.6)	3,124.7 (5.1)	3,879.4 (5.2)	4,856.3 (5.6)	5,848.2 (6.2)	8,423.6 (8.5)	11,462.6 (10.2)

<표 3-54> 계속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교통	1,210.9 (2.4)	1,486.6 (2.4)	1,824.2 (2.4)	2,148.7 (2.5)	2,435.3 (2.6)	2,913.1 (2.9)	3,291.1 (2.9)
통신	154.4 (0.3)	244.0 (0.4)	374.5 (0.5)	459.6 (0.5)	607.9 (0.7)	969.8 (1.0)	1,271.9 (1.1)
광대	66.4 (0.1)	159.9 (0.3)	235.3 (0.3)	297.0 (0.3)	366.8 (0.4)	886.8 (0.9)	1,357.6 (1.2)
화하	39.8 (0.1)	83.5 (0.1)	125.4 (0.2)	201.4 (0.2)	267.6 (0.3)	463.2 (0.5)	616.4 (0.5)
광동발전	220.2 (0.4)	266.1 (0.4)	310.7 (0.4)	413.3 (0.5)	500.9 (0.5)	632.62 (0.6)	921.1 (0.8)
심천발전	76.9 (0.2)	102.8 (0.2)	128.7 (0.2)	177.9 (0.2)	210.9 (0.2)	333.47 (0.3)	489.7 (0.4)
초상	285.2 (0.6)	414.0 (0.7)	366.9 (0.5)	493.7 (0.6)	618.6 (0.7)	851.0 (0.9)	1,178.2 (1.0)
포동발전	154.8 (0.3)	231.2 (0.4)	341.8 (0.5)	415.6 (0.5)	479.9 (0.5)	666.5 (0.7)	882 (0.8)
복건홍업	102.5 (0.2)	116.7 (0.2)	121.7 (0.2)	150.4 (0.2)	210.0 (0.2)	331.0 (0.3)	719.0 (0.6)
민생	n.a.	19.7 (0.03)	50.4 (0.07)	98.8 (0.11)	150.3 (0.16)	375.9 (0.4)	735.6 (0.6)
도시 상업은행	202.2 (0.4)	779.8 (1.3)	1,491.3 (2.0)	2,193 (2.5)	2,704 (2.9)	3,480.9 (3.5)	4,257.73 (3.8)
농촌신용 합작사	5,234.2 (10.4)	6,364.7 (10.4)	7,326.1 (9.8)	8,340.2 (9.6)	9,225.6 (9.8)	10,489.3 (10.6)	11,971.2 (10.7)
외자은행	1,058.3 (2.1)	1,612.7 (2.6)	2,280 (3.0)	2,126.2 (2.5)	1,782 (1.9)	1,542.4 (1.6)	1,539.0 (1.4)
합계	50,538 (100.0)	61,153 (100.0)	74,914 (100.0)	86,524 (100.0)	93,734 (100.0)	99,371.1 (100.0)	112,314.7 (100.0)

<표 3-55> 중국 각 은행별 예금 및 시장비중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4대 은행	32,875 (61.0)	42,122 (61.4)	51,221 (62.2)	60,379 (63.1)	69,325 (63.7)	78,844.7 (63.7)	87,510.6 (60.9)
공상	14,443.0 (26.8)	17,974.6 (26.2)	21,611.7 (26.2)	25,032.1 (26.2)	28,335.1 (26.1)	32,447.6 (26.2)	33,829.7 (23.6)
농업	6,939.3 (12.9)	8,950.1 (13.1)	11,189.4 (13.6)	13,348.6 (14.0)	15,492.2 (14.2)	17,515.9 (14.1)	20,244.5 (14.1)
중국	3,904.2 (7.3)	4,864.3 (7.1)	5,864.3 (7.1)	7,308.8 (7.6)	8,652.2 (8.0)	9,904.2 (8.0)	11,871.3 (8.3)
건설	7,588.9 (14.1)	10,333.3 (15.1)	12,555.2 (15.2)	14,689.4 (15.4)	16,845.5 (15.5)	18,977 (15.3)	21,565.0 (15.0)
주식계 상업은행	3,480.4 (6.5)	4,830.8 (7.0)	5,904.9 (7.2)	7,111.3 (7.4)	8,512.2 (7.8)	11,996.9 (9.7)	16,565.3 (11.5)
교통	1,824.2 (3.4)	2,277.4 (3.3)	2,698.3 (3.3)	3,014.6 (3.2)	3,385.1 (3.1)	4,045.6 (3.3)	4,725.1 (3.3)
중신	337.1 (0.6)	540.4 (0.8)	692.8 (0.8)	790.5 (0.8)	938.2 (0.9)	1,289.2 (1.0)	1,847.5 (1.3)
광대	133.8 (0.3)	248.8 (0.4)	300.7 (0.4)	411.6 (0.4)	565.6 (0.5)	1,307.3 (1.1)	1,805.0 (1.3)
화하	55.6 (0.1)	140.7 (0.2)	239.2 (0.3)	339.3 (0.4)	442.1 (0.4)	711.8 (0.6)	1,013.8 (0.7)
광동발전	298.0 (0.55)	362.0 (0.5)	475.5 (0.6)	614.8 (0.6)	698.1 (0.64)	981.4 (0.8)	1,388.8 (1.0)
심천발전	107.4 (0.2)	164.1 (0.2)	182.1 (0.2)	249.5 (0.3)	308.8 (0.3)	445.7 (0.4)	789.4 (0.5)
초상	357.4 (0.7)	521.0 (0.8)	500.1 (0.6)	673.3 (0.7)	904.7 (0.8)	1,277.9 (1.0)	1,801.3 (1.3)
포동발전	228.3 (0.4)	371.8 (0.5)	522.5 (0.6)	632.7 (0.7)	722.7 (0.7)	939.5 (0.8)	1361 (0.9)
복건홍업	138.7 (0.3)	168.8 (0.3)	170.3 (0.2)	224.2 (0.2)	286.1 (0.3)	471.4 (0.4)	793.8 (0.6)
민생	n.a.	35.9 (0.1)	123.5 (0.2)	160.8 (0.2)	260.8 (0.2)	527.2 (0.4)	1,039.8 (0.7)
도시 상업은행	506.2 (0.9)	1,470.6 (2.1)	2,536.7 (3.1)	3,629.5 (3.8)	4,387.4 (4.0)	5,325.6 (4.3)	6,816.7 (5.0)
농촌신용 합작사	7,172.8 (13.3)	8,793.6 (12.8)	10,324 (12.9)	12191 (12.7)	13358 (12.3)	15,129.4 (12.2)	17,263.5 (12.0)
외자은행	260.6 (0.5)	323.7 (0.5)	371.8 (0.5)	373.1 (0.4)	431.6 (0.4)	539.2 (0.4)	640.9 (0.4)
합계	53,862 (100.0)	68,571 (100.0)	82,390 (100.0)	95,698 (100.0)	108,779 (100.0)	123,804.4 (100.0)	143,617.2 (100.0)

<표 3-56> 중국 4대 국유상업은행의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억 위안)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총액	75,608.19	87,547.11	84,242.03	96,602.09	106,347.8	113,754.4	12,2076.6
자기자본	2,440.74	2,609.35	2,739.13	5,587.46	5,696.86	5,977.45	6,628.57
예금총액	32,875.37	42,122.3	51,220.54	60,378.87	69,324.95	78,844.68	87,510.53
대출총액	30,922.56	36,252.89	44,823.75	53,611.06	57,456.16	58,830.71	70,478.78
지점수	155,207	153,070	153,708	141,149	135,691	120,909	109,222
직원수	1,717,332	1,687,883	1,656,699	1,657,784	1,601,370	1,493,630	1,421,566
영업수익	10,152.96	11,414.12	11,823.17	3,216.25	2,843.01	2,680.09	2,477.19
이자수익	4,643.73	5,179.18	4,902.76	4,985.58	4,717.21	4,529.22	3,929.69
수수료수익	23.6	57.32	71.67	81.2	85.16	130.59	81.41
기타	5,024.97	5,988.8	6,848.74	568.79	394.11	394.32	1406.52
영업수익							
영업비용	9,880.42	11,152.19	11,726.57	3176.3	2,728.45	2,507.15	2,341.17
이자비용	3,411.2	3,903.84	3,375.63	2480.5	3,182.36	2,871.32	2,190.94
수수료비용	69.77	93.73	125.24	70.65	82.91	20.24	9.89
기타영업비용	6,141.91	6,913.94	8225.7	1,362.57	981.64	1,426.4	1,196.14
법인세 차감전 수익	147.18	210.9	85.38	95.31	282.46	320.78	242.64
당기순이익	174.64	179.58	93.91	33.97	116.38	169.04	148.58
ROA	0.23098	0.205124	0.111476	0.035165	0.109433	0.148601	0.12171
ROE	7.155207	6.882174	3.428461	0.607969	2.04288	2.827962	2.241509
대출/예금	0.9406	0.860658	0.875113	0.887911	0.828795	0.74616	0.805375
단순자기 자본비율	3.228142	2.98051	3.2515	5.783995	5.356818	5.254699	5.429844
자산총액/직원	0.044027	0.051868	0.050849	0.058272	0.066411	0.07616	0.085875
당기순이익/직원	0.000102	0.000106	0.000057	0.00002	0.00007	0.000113	0.000105

<표 3-57> 중국 10대 주식제 상업은행의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억 위안,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총액	7,629.53	8,726.2	10,449.6	11,746.86	14,387.82	18,739.86	23,320.18
자기자본	402.32	485.4	611.16	652.14	744.03	856.73	887.73
예금총액	3,480.41	4,830.83	5,904.91	7,111.29	8,512.23	11,996.91	16,565.26
대출총액	2,310.96	3,124.46	3,879.44	4,856.33	5,848.23	8,423.62	11,462.61
지점수	2,601	2,710	2,788	2,864	4,328	4,705	4,410
직원수	53,406	57,148	53,221	60,082	97,694	105,637	124,622
영업수익	516.7	670.46	702.21	641.85	623.49	747.84	900.87
이자수익	351.96	447.67	463.79	468.32	426.67	481.97	581.37
수수료수익	8.74	11.48	16.37	11.75	10.86	17.08	22.55
기타	97.88	132.07	210.86	152.6	162.15	227.74	276.89
영업수익							
영업비용	418.63	561.06	598.37	582.31	541.96	635.25	749.68
이자비용	255.3	332.91	333.97	302.51	267.64	276.24	315.03
수수료비용	4.1	5.47	7.3	6.29	5.88	5.7	6.02
기타영업비	111.07	152.88	215.93	249.15	235.88	324.43	394.48
세전 수익	110.84	140.52	154.22	115.45	84.4	99.79	116.34
당기순이익	76.37	96.67	104.44	80.95	63.32	57.25	82.5
ROA	1.00%	1.11%	1.00%	0.69%	0.44%	0.31%	0.35%
ROE	18.98%	19.92%	17.09%	12.41%	8.51%	6.68%	9.29%
대출/예금	0.66	0.65	0.66	0.68	0.69	0.7	0.69
단순자기 자본비율	5%	6%	6%	6%	5%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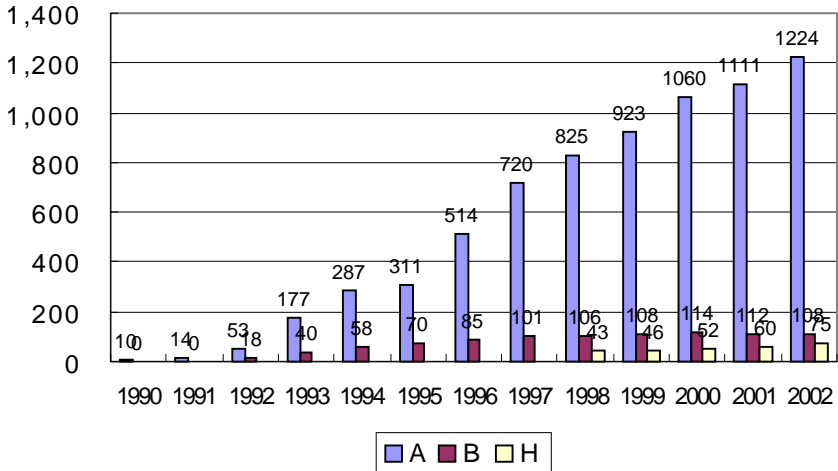
2) 증권

가) 주식시장 발전 및 현황

중국의 주식시장은 국유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주식시장 육성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여, 1990년 12월 상해 증권거래소와 1991년 7월 심천 증권거래소가 개장되었다. 그 이후 10여 년간 중국의 주식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2002년 말 A주 상장회사수는 1,224개이고, B주

상장회사수는 108개이다.

<그림 3-50> 상장기업 수



상해증권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1990년의 100에서 2002년말 현재 1,357.7로 13배 상승하였고, 심천증권거래소는 2002년말 현재 388.8로 3.8 배 상승하였다.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0년 후반부터 주식시장의 침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의 침체로 2001년 거래대금은 상해, 심천 시장에서 각각 27.6%, 49.6%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주식시장의 침체는 증권회사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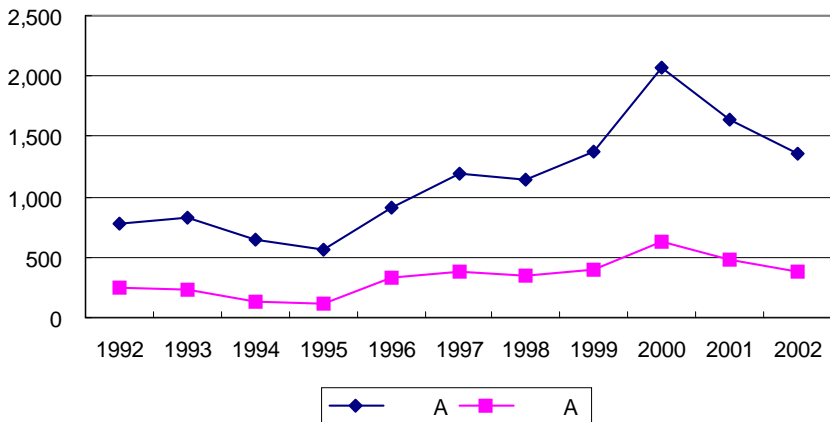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투자자 주체에 따라 A주와 B주로 구분되는데 A주는 내국인 투자전용으로 위안화로 거래되고 B주는 외국인 투자전용으로 미 달러(상해 거래소)와 홍콩 달러(심천 거래소)로 거래된다. 주식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A주, B주가 통합되리라 예측되며 그 전단계로 2001년 2월 내국인의 B주 투자를 허용하였다.

상해, 심천 증권거래소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2001년말 현재 각각 2조 7,951억 위안과 1조 5,932억 위안으로 GDP의 28%, 16%이다. 이중 대략 33%가 유통가능주식이며 나머지는 유통이 불가능한 국유주, 법인주이다. 유통가능주식은 전체 주식 중 국유주, 법인주를 제외한 33%에 불과하여 M&A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더욱이 외국인에 의한 M&A는 전체 상장주의 5%에 불과하여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실태는 국유자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달성할 수 있지만 사유기업이나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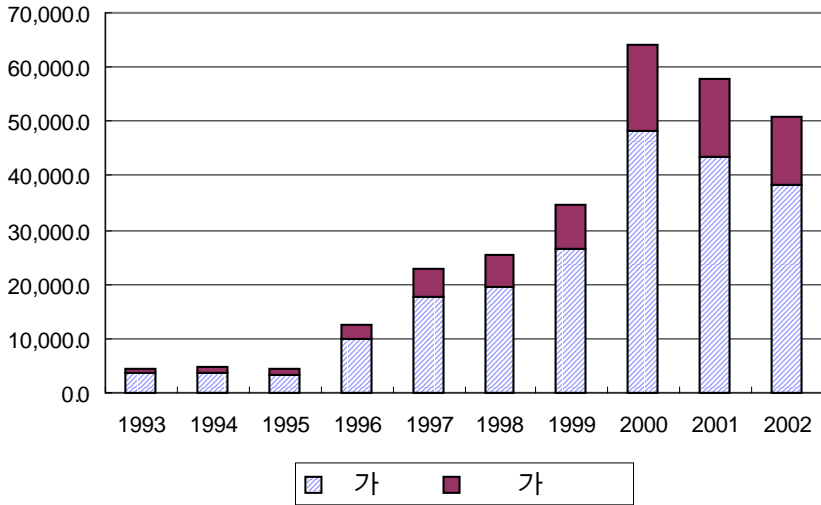
주식투자자는 개인투자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 비중은 9%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상당부분은 위장된 기관투자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PER의 추세를 보면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로 2000년 12월 상해 59.14, 심천 58.75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 12월 상해 34.50, 심천 38.22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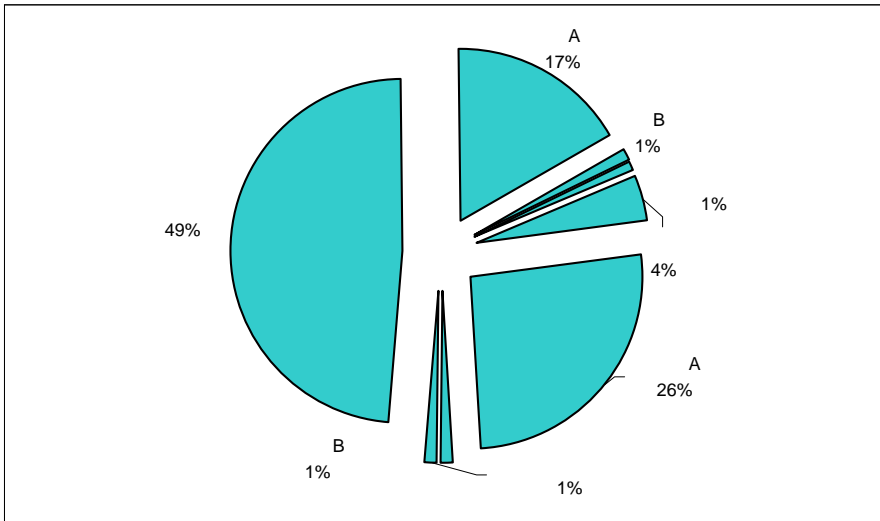
<그림 3-51> 상해, 심천 주가지수 추이



<그림 3-52> 시가 총액



<그림 3-53> 2002년 상해, 심천 거래소의 증권거래비율



중국의 주식시장은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아직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국유주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국유주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정부 간섭이 심하고 중국 정부와 상장기업 간의 특수한 상호의존 관계가 존재하여 주가가격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유주의 지분감소를 위하여 2001년 6월 <국유주 지분감소를 통하여 조성된 사회보장기금관리의 임시 규칙>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물량부담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동년 10월 국유주 지분감소방안의 시행을 잠정 중지하였으며 2002년 6월 상기 규칙의 시행을 완전 중단하였다.

한편 상장기업의 회계불투명성이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많은 개도국에서도 회계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더욱 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상장기업은 정보를 조작하거나, 주요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유언비어를 살포하여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의 신뢰성도 담보되지 않고 있어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증권관련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1998년 12월에 처음으로 <증권법>을 제정, <회계법>, <공사법> 등 증권시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국제관례와 국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법규간의 충돌, 중복 등으로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제한하는 동시에 증권시장 감독 시스템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증권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불공정행위에 대해 위법소득의 몰수 및 그 소득의 1~5배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투자자 권익보호제도도 불충분한 상황이다. 현재 중국 법원은 증권 관련 분규, 주식 양도 분쟁, 주식매매 사기사건 등 관련 판례를 정리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나) 규모

증권회사의 자산은 1998년 2,271억 위안에서 2002년 6,413억 위안으로 2.8배 이상 증가하여 연평균 70%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 성장속도는 2000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는 2000년 이후 주식시장의 침체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

증권회사 수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1999년 90개에서 2002년 130개가 되었다. 이렇게 증권회사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0년과 2001년 신탁회사에 대한 정리정돈 과정에서 신탁회사의 증권영업부가 독립하여 증권회사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의 침체와 함께 자산규모 상위 증권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2년 상위 5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4.46%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개 대형증권회사가 국내 주식의 인수 및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58> 증권회사 규모 및 수익 현황

(단위: 억 위안)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자산	2,271.4	3,081.0	5,733.0	6,110.0	6,413.0
부채	1,918.5	2,595	5,101	n.a.	5,324.1
순자산	352.9	485.0	652.0	n.a.	1,088.9
등록 자본금	223.4	347.0	n.a.	n.a.	1,111.77
회사수	n.a.	90	100	111	130
(주인수 허가)	20	20	32	57	70
영업점포수	2,412	n.a.	n.a.	n.a.	2,895
당기순이익	61.0	63.9	165.0	37.7	-26.0
ROA	2.7%	2.1%	2.9%	0.6%	-0.4%

자료: 『중국증권보』(2003년 7월 15일)

다) 영업활동 및 업무영역

1999년 7월 1일 공포, 실시되는 「증권법」에서는 증권회사를 종합증권회사와 중개형증권회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종합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중개업무, 자기매매업무, 증권인수업무, 그리고 기타 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업무(증권투자자문, 수탁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개형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증권중개업무만 가능한데 증권대리매매, 대리증권의 이자지급, 대리증권의 보관, 검증 그리고 대리증권장부를 개설할 수 있다.

<표 3-59> 증권회사 업무영역

설립기준	종합증권회사	등록자본금 5억 위안 이상
	중개증권회사	등록자본금 5천만 위안 이상
업무영역	종합증권회사	증권거래중개업무 자기매매업무 증권인수업무 기타 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업무(증권투자자문, 수탁투자업무)
	중개증권회사	증권중개업무만 가능. - 증권대리매매 - 대리증권의 이자지급 - 대리증권의 보관, 검증. - 대리증권장부 개설
영업제한	종합증권회사	순자본 2억 위안 미만 규제 순자산은 부채의 8% 이하 불허 부채는 순자산의 9배 이상 불허
	중개증권회사	순자본 2천만 위안 규제 순자산은 부채의 8% 이하 불허 부채는 순자산의 9배 이상 불허

자료: 중국증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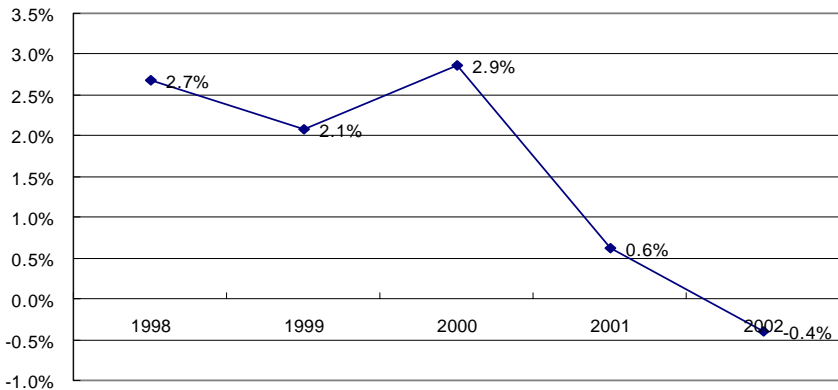
라) 수익성

증권회사의 수익률은 2000년 이후 급감하고 있다. 2000년 ROA가 2.9%이던 것이 2001년에는 0.6%로 떨어지고 2002년에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익률 급감의 주요인은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여 중개수수료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권회사의 수익에서 중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80%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증권회사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자와 벤처회사에 대한 투자로 대량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증권회사의 수익을 감소시킨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실제 중국 증권회사의 경영상황은 공식발표에 비하여 훨씬 심각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2001년 98개 증권회사(투자신탁에서 분리된 20개 증권회사 미포함)의 부실채권 총액은 460억 위안으로 순자산 대비 부실채권 비율이 50%에 달한다(2002년 7월 중국 국제금융세미나,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리감독국 국장 발표). 2002년 증권업계 전체의 적자액은 400억 위안으로 이미 많은 증권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1998년 적자 증권회사가 1개인 데 반하여 2002년 130개 증권회사 중 경영적자인 증권회사가 51개가 달하고 있다.

<그림 3-54> 증권회사 ROA 추이



마) 자산운영 및 조달

증권회사의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비증권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증권회사 총자산 중 미수금, 고정자산, 장기투자, 건설 중 항목 등 비증권자산이 876.88억 위안으로 전체 자산의 28.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비증권자산 중 증권매매 등 경영활동과 상관 없는 미수금, 장기투자, 건설 중 항목이 662.78억 위안으로 전체 비증권 자산의 75.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증권회사가 비증권자산이 많고 특히 부동산관련자산이 많은 것은 중국의 증권회사가 1990년대 초반 증권시장의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투자붐에 편승하여 대량의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표 3-60〉 증권회사 대차대조표(1999)

(단위: 억 위안)

자산항목	금액	부채 및 자본	금액
현금, 예금	1,457.73	담보차입	3.80
고객예탁금	1,423.44	차입금	92.00
거래보증금	17.08	역RP	199.12
자기매매증권	328.52	대리매매증권	1,680.07
대여금	34.02	대리발행증권	36.65
RP	45.30	수탁자금	115.51
미수금	501.26	기타 유동부채	52.28
수탁자산	76.40		
기타유동자산	46.38		
유동자산 합계	2,705.58	유동부채 합계	2,540.66
장기투자	117.08	장기부채	54.83
고정자산	138.15	부채합계	2,595.49
건설 중 항목	44.44	납입자본금	347.09
기타 장기자산	75.95	자본 합계	485.71
자산합계	3,081.2	부채 및 자본 합계	3,081.2

<표 3-61> 중신증권(中信證券)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만 위안)

연도	2000	2001	2002
자산총액	186.40	186.67	235.66
자기자본	41.54	29.05	34.11
영업수익	22.78	19.00	8.26
수수료수익	5.50	4.80	2.64
증권매매수익	110.4	4.87	0.32
증권발행수익	13.12	1.85	2.07
당기순이익	11.29	6.30	1.10
ROA	6.1%	3.4%	0.5%
ROE	27.2%	21.7%	3.2%

<표 3-62> 광원증권(宏源證券)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만 위안)

연도	2000	2001	2002
자산총액	5.09	57.28	58.46
자기자본	2.59	2.12	2.29
영업수익	3.12	3.25	3.43
수수료수익	1.75	1.02	1.01
증권매매수익	1.24	1.57	0.48
증권발행수익	0.057	0.062	0.14
당기순이익	0.76	0.38	0.40
ROA	14.9%	0.7%	0.7%
ROE	29.3%	17.9%	17.5%

3) 보험

가) 규모

(1) 성장과정 및 현황

과거 20여 년간 중국 보험시장은 초고속 성장을 하였으며 향후 성장잠재력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 수를 살펴보면 1980년 1개 보

험회사에서 현재 54개 보험회사, 170개 보험중개기관, 7만개의 보험대리점으로 성장하였다. 수입보험료는 1978년의 4.9억 위안에서 2002년 3,053.14억 위안으로 623배 증가, 연평균 34.4% 증가하였다. 한편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국내총생산)는 1980년 0.1%에서 3.0%로 크게 증가하였다. 보험밀도(1인당 평균 보험료지출)는 1980년의 0.47 위안에서 2002년 237.6 위안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계평균 보험밀도 2,977 위안, 보험침투도 7%를 고려하면 중국의 보험시장은 아직 저발전단계에 있으며 그만큼 중국 보험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보험산업 또한 초기의 국유 보험회사의 독점체제에서 다양한 보험회사의 설립을 통한 경쟁체제로 전환하였다. 1980년 중국 인민보험공사 설립 이래 상당기간 국유보험회사의 독점체제였으나 1988년 평안보험회사의 설립으로 국유 및 비국유 보험회사간의 경쟁체제가 시작되었다. 또한 1995년까지는 생명, 손해보험의 겸업체제를 유지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인민보험공사도 1996년 중국인수보험공사(中國人壽保險公司, 생명보험사), 중국인민보험공사(中國人民保險公司, 손해보험사), 중국재보험공사(中國再保險公司, 재보험사), 중국보험주식유한공사(중합보험) 등 4개의 국유독자회사로 분리되었다. 2002년 말 현재 55개 보험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5개 국유 독자보험회사, 15개 주식제 보험회사, 21개 중외합자 보험회사, 14개 외자독자 보험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보험회사가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2002년말 현재 중국인수보험공사가 수입보험료의 56.6%를 점유하고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중국인민보험공사가 수입보험료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 보험의 특징으로는 생명보험 비중의 급속한 증대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손해보험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1997년 이후 생명보험의 비중이 손해보험을 추월하기 시작하여 2002년 현재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전체 수입보험료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 시장점

유율 하락은 국유기업개혁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으로 과거 강제가입 대상이 선택가입으로 전환된 것이 주 원인이다. 손해보험 중에도 강제가입 대상인 자동차보험이 61.3%를 차지하고 있다.

<표 3-63> 중국 보험시장의 성장

(단위: 억 위안, %)

연도	수입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1980	4.6	-	-	-	0.10	0.47
1981	7.8	69.6	-	-	0.16	0.78
1982	10.3	32.1	-	7.5	0.20	1.01
1983	13.2	28.2	-	10.0	0.23	1.28
1984	20.0	38.4	-	14.3	0.29	1.92
1985	33.1	64.6	-	21.3	0.42	3.16
1986	45.8	56.8	-	30.7	0.65	4.95
1987	71.1	46.4	-	43.7	0.67	7.33
1988	109.5	38.3	-	60.5	0.72	9.30
1989	142.4	30.0	-	82.9	0.77	12.80
1990	179.0	24.6	49.1	107.0	0.85	15.52
1991	239.0	33.0	63.2	146.5	0.90	22.02
1992	386.0	55.9	93.9	241.3	1.00	31.40
1993	406.0	29.0	86.0	370.9	0.98	42.00
1994	498.0	22.7	143.1	233.3	1.13	41.53
1995	615.7	23.6	160.9	292.4	1.06	50.83
1996	758.0	23.1	214.8	349.2	1.10	61.93
1997	1,087.4	43.5	390.5	480.7	1.45	87.66
1998	1,247.3	14.7	750.2	499.6	1.56	99.94
1999	1,393.2	10.2	879.0	521.1	1.70	110.60
2000	1,595.9	14.5	990.0	598.4	1.80	127.70
2001	2,109.36	32.2	1,425.1	688.0	2.20	168.8
2002	3,053.14	44.0	2,274.8	778.3	3.00	267.6

자료: 『중국보험연감』, 각 년호.

<표 3-64> 중국의 보험회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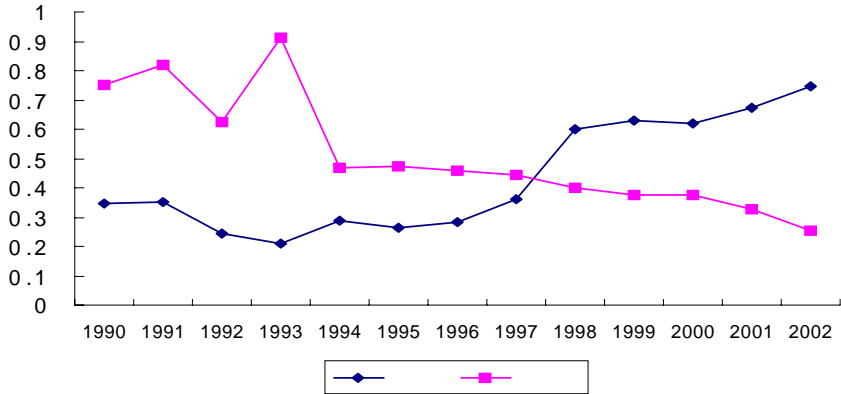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 유	4	4
비국유	8	7
외자합자	14	0
외자독자	6	12

<표 3-65> 중국 보험회사의 경영 현황(보험업 전체)

(단위: 억 위안)

	1999	2000	2001	2002
수입보험료	1,393.22	1,595.86	2,109.35	3,053.14
손해보험	521.12	598.39	685.39	778.30
생명보험	872.10	997.47	1,423.96	2,274.84
상해	67.26	80.82	74.84	78.71
건강	36.54	68.48	61.55	122.45
생명	768.30	851.17	1,287.58	2,073.69
보험금지불	510.26	527.36	598.25	706.73
손해보험	280.24	305.89	332.93	403.92
생명보험	230.00	221.47	265.33	301.81
상해	26.73	32.36	29.00	26.73
건강	11.00	12.92	33.52	49.94
생명	192.27	176.19	202.80	225.14
영업비용	182.73	216.61	258.36	314.37
자산운용				
은행예금	925.98	1,235.38	1,930.60	3,026.27
투자	891.42	1,303.22	1,712.59	2,504.06
국채	678.49	955.95	795.83	1,109.85
증권투자기금	14.79	133.54	208.99	307.78
자산총액	2,604.09	3,373.89	4,591.34	6,494.07

<그림 3-55>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비중 변화



<표 3-66> 중국의 보험업 자산규모

(단위: 억 위안)

	1999	2000	2001	2002
수입보험료	1,393.22	1,595.86	2,109.35	3,053.14
손해보험	521.12	598.39	685.39	778.3
생명보험	872.1	997.47	1,423.96	2,274.84
상해	67.26	80.82	74.84	78.71
건강	36.54	65.48	61.55	122.45
생명	768.3	851.17	1,287.58	2,073.69
보험금지불	510.24	527.36	598.25	706.73
손해보험	280.24	305.89	332.93	403.92
생명보험	230	221.47	265.33	301.81
상해	26.73	32.36	29	26.73
건강	11	12.92	33.52	49.94
생명	192.27	176.19	202.8	225.14
영업비용	182.73	216.61	258.36	314.37
자산총액	2,604.09	3,373.89	4,591.34	6,494.07

(2) 생명보험

2002년 중국의 보험회사 총자산규모는 6,494.07억 위안(784억 달러)으로 1999년 2,604억 위안에 비해 2.5배 성장하였다. 생명보험의 경우 2001년 보험료수입의 95.3%를 차지하는 중국인수보험공사, 태평양보험공사, 평안보험공사의 자산총액은 3,447.7억 위안(416.4억 달러)을 기록하여 1995년 941억 위안에 비해 3.7배 증가하였다. 특히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중국인수보험공사의 2001년 자산규모는 2,209.7억 위안(266.9억 달러)으로 전체 생명보험회사 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규모 2위, 3위인 평안보험공사(생명, 손해 미분리, 기업집단총자산), 태평양생명보험공사의 2001년 자산규모는 각각 948.3억 위안(114.5억 달러), 286.7억 위안(34.6억 달러)으로 1위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3개 생명보험회사의 평균자산규모는 1,149.2억 위안(138.8억 달러)로 세계 4대 보험회사의 평균 자산규모 3,639억 달러에 비하여 매우 적다. 현재 29개 생명보험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이 중 4개는 국유독자 보험회사이고 8개는 주식제 보험회사이다. 또한 14개는 합자보험회사이고 6개는 외자보험회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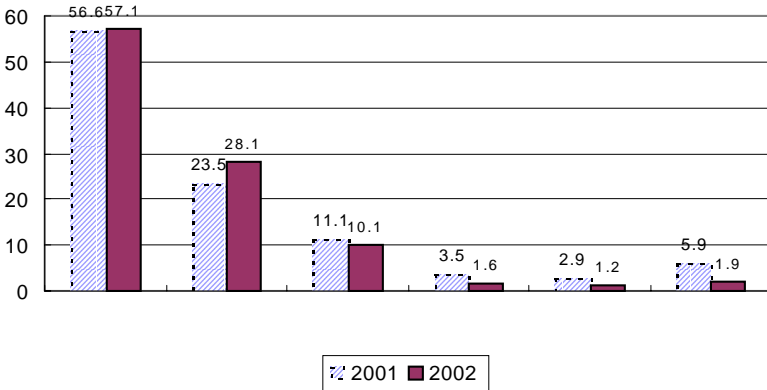
〈표 3-67〉 중국의 생명보험업 규모

(단위: 명, 억 위안)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	940.8	1428.5	1736.2	n.a	2,004.2	2,565.0	3,447.7
자본금	161.9	229.3	203.4	n.a	131.6	159.1	177.6
직원수	n.a	96,795	n.a	n.a	n.a	49,046	42,779

주: 중국인수보험, 태평양생명, 평안생명의 합계임.

<그림 3-56> 생명보험의 시장점유율



<표 3-68>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성격 및 점유율(2001)

(단위: 억 위안, %)

회사명	보험료수입	점유율	성격	설립시기
中國人壽	812.4	57.05	국유독자, 전국규모	1949.10
平安保險	400.6	28.13	주식제, 전국규모	1988
太平洋人壽	143.5	10.07	주식제, 전국규모	1991.4
新華人壽	23.2	1.63	주식제, 전국규모	1996.9
泰華人壽	16.6	1.17	주식제, 전국규모	1996.38
AIA상해	14.1	0.99	외자	1992.9
AIA광주	6.0	0.42	외자	1995.12
AIA심천	0.66	0.05	외자	1999.10
中宏	2.43	0.17	합자(Manulife+중국대외경 제무역투자신탁공사)	1996.11
太平洋安泰	2.09	0.15	합자(ING+태평양보험)	1998.10
安聯大衆	0.56	0.04	합자(알리안츠+대중보험)	1998.10

(3) 손해보험

시장점유율 75%인 중국인민보험공사의 자산규모는 529.9억 위안(6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2002년말 현재 23개 손해보험회사가 영업 중인 데 그 중 11개는 중국 국내보험회사이고 12개는 외자 보험회사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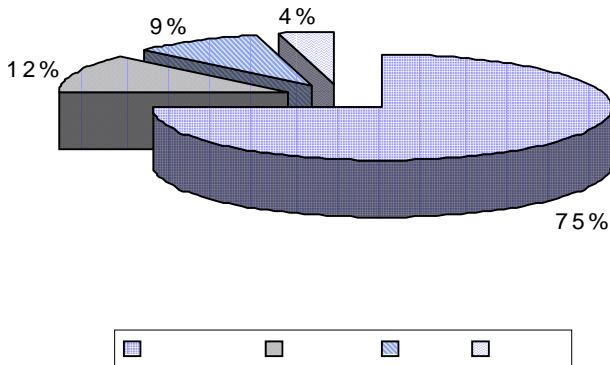
중 중국인민보험공사는 시장점유율이 75%로, 가격선도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민보험공사는 태평양손해보험, 평안보험을 포함한 3대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96%에 이르러 손해보험시장의 독과점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3대 보험회사의 독점적 지위는 상당부분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지역제한 및 영업제한(특히 자동차 및 제3자 책임 보험 영업 불허)에 기인한다. 외자보험회사의 영업이 자유로운 심천의 경우 중국인민보험공사 시장점유율 50%에 불과하고 3대 보험회사 이외의 기타 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16%에 달하고 있다.

<표 3-69> 주요 손해보험회사

(단위: 억 위안)

회사명	성격	자본금	영업지역	설립시기
中國人民保險公司	국유	77	전국	1949.10
太平洋	주식제	10	전국	1991. 4
平安	주식제	22.2	전국	1988. 3
天安	주식제	5	화동	1994.10
大衆	주식제	4.2	화동	1995. 1
華泰	주식제	13.33	전국	1996. 8
華安	주식제	3	화남	1996.10
永安	주식제	3.1	서북	1996. 8
新兵疆團	국유	5.4	신강	1986. 8
太平	국유	5	전국	2001.12
중국수출입신용	국유	40	전국	2001.10
AIU상해	외자	1	상해	1997.12
AIU광주	외자	1	광주	1995
AIU심천	외자	1	심천	1999. 9
동경해상	외자	1.04	상해	1994. 9
홍콩人民海口	외자	0.03	해구	1988. 9
홍콩人民심천	외자	1.06	심천	1982. 1
Wintertuur상해	외자	1.5	상해	1997
Royal&sunalliance상해	외자	1	상해	1998.10
Chubb	외자	1	상해	2000. 8
스미토모(住友)	외자	1	상해	2001. 5
삼성화재	외자	-	상해	2001. 4

<그림 3-57> 중국의 보험업 시장점유율



나) 영업활동 및 업무영역

(1)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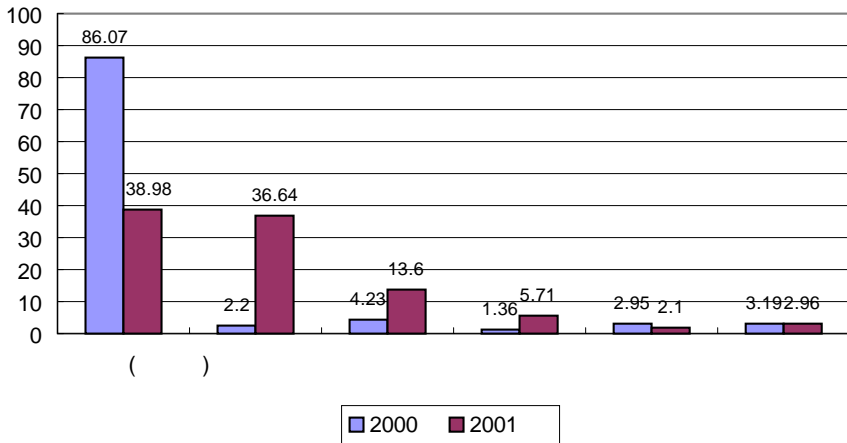
생명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등의 영업활동을 하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업은 금지되어 있다.

1993년까지는 주로 단체생명보험, 단체사고보험에 대한 영업에 치중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종신보험, 사망보험, 생존보험, 정기보험이 판매되었고 특히 교육보험이 증가하였다. 1997년부터의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율 역마진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을 압박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1998년부터는 이자율 연동형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6월에는 중국보험관리감독 위원회가 예정이자율 2.5%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보험회사간의 과당경쟁으로 높은 예정이자율 상품이 보험사의 부실경영 위험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99년 10월 투자연동형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하였고 배당형, 만능보험도 판매되었다. 예정이자율 하락에 대응하여 배당형, 투자연동형 상품의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수

익형 보험상품 수입보험료는 1,211.7억 위안으로 전체 생명보험수입보험료의 49.3%를 차지하였다.

<그림 3-58> 보험상품별 판매 현황

(단위: %)



1980년대 이래로 생명보험의 비중은 손해보험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초기에 손해보험의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으로 역전하여 최근에는 손해보험의 비중이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전체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274.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9.85% 증가하였다. 한편 주요 보험회사는 주로 북경, 상해 등 동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보험모집인에 의한 상품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02년 전국적으로 120만명의 보험판매인이 활동 중에 있으며 이들 개인 모집인에 의한 수입보험료는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은행을 통한 판매방식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2001년 6월 신화생명은행, 건설은행, 북경시 상업은행, 공상은행, 우체국을 이용한 대리판매로 1년간 약 3.4억 위안을 판매하고 있다.

(2) 손해보험

손해보험회사는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재보험업무를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겸업할 수 없는데 단, 보험관리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으면 단기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은 영업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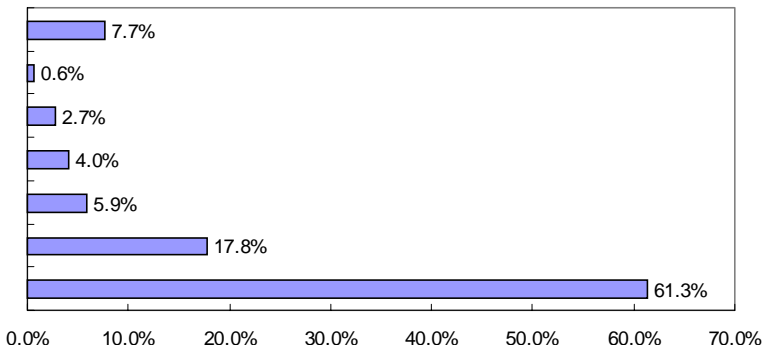
구체적인 영업활동을 살펴보면 자동차 및 제3자 책임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8~2001년 기간 동안 동 보험의 보험료수입 비중은 80%에 이르고 있다. 기업손해보험은 대략 20% 정도이고 화물운송보험은 대략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손해보험은 대략 2%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70> 손해보험 상품판매 현황

(단위: 억 위안)

	기업손해	개인손해	자동차	화물운송	농업	기타
1995	57.53	9.34	189.72	20.83	5.74	11.24
1996	78.48	9.98	210.50	33.27	n.a	n.a
1997	108.64	12.33	267.18	44.76	n.a	n.a
1998	112.64	12.17	280.98	38.60	n.a	n.a
1999	112.98	12.26	306.42	35.28	n.a	n.a
2000	118.00	13.00	373.00	36.00	n.a	n.a
2001	126.05	18.88	420.80	40.29	4.16	74.34

<그림 3-59> 손해보험 영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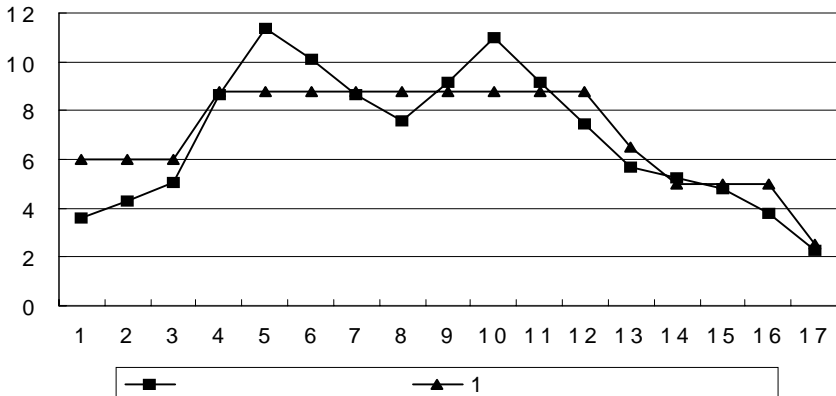


다) 수익성

2001년, 2002년 보험업계 전체 평균 투자수익률(세전이윤/총자산)은 각각 4.3%, 3.14%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생명보험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2001년 생명보험업계는 전체적으로 적자경영 상태이며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수익률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특히 영업이익은 평안보험을 제외한 모든 회사가 (-)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상황은 과당경쟁과정에서 예정이율을 높이고 중간대리인에게 과도한 중개료를 지불한 결과이다. 1996~2002년 기간 동안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10.98%에서 2.25%로 하락한 데 반해 같은 기간 보험상품의 약정이자율 하락속도는 시장이자율의 하락속도에 뒤쳐졌다. 또한 1995년 공포, 시행된 「보험법」에서 대부분 자산을 은행예금으로 운영하게끔 규정하여 자산운영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결과 역마진현상은 심화되었고 그 결과 많은 금융기관들이 음의 수익률을 보이고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수정, 시행되는 새로운 「보험법」에서는 기존에 금지되었던 콜시장, 신용등급 A+ 이상의 기업회사채 매매, 증권거래소의 채권매매 참여, 증권투자기금투자 등을 허용하였다.

<그림 3-60> 보험이율, 예금이자율 차이



<표 3-71> 2001년 주요 생명보험회사 수익률

(단위: 억 위안, %)

	자산	자본	영업이윤	투자수익	이윤총액	당기순이익	ROA	ROE
중국인수	2,290.65	79.41	-11.01	24.61	7.46	7.54	0.33	9.50
평균	948.3	64.5	22.90	16.62	22.65	17.6	1.86	27.29
태평양	286.8	-21.1	-36.90	6.13	-31.07	-31.07	-10.83	
신화생명	59.9	14.2	-2.40	2.16	0.21	0.207	0.35	1.46
태강생명	53.7	14.9	-2.56	1.87	-0.59	-0.587	-0.95	-3.41
합계	3,639.35	151.91	-29.97	51.39	-1.34	-6.231	-0.17%	-4.10%

<표 3-72> 2001년 주요 생명보험회사 수익 현황

(단위: 억 위안, %)

회사명	보험료수입	투자수익	영업이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수입보험료
中國人壽	812.4	24.61	-11.01	7.46	0.92
平安保險	400.6	16.62	22.90	22.65	5.65
太平洋人壽	143.5	6.13	-36.90	-31.07	-21.66
新華人壽	23.2	2.16	-2.40	0.21	0.90
泰華人壽	16.6	2.38	-2.34	0.04	0.24
AIA상해	14.1	1.64	-2.27	-0.09	-0.64
AIA광주	6.0	0.29	-0.76	-0.47	-7.83
AIA심천	0.66	0.05	-0.29	-0.26	-39.39
中宏	2.43	0.12	-0.49	-0.38	-15.64
太平洋安泰	2.09	0.15	-0.63	-0.52	-24.88
安聯大眾	0.56	0.04	-0.27	-0.27	-48.21

손해보험회사의 수익률은 생명보험회사의 수익률에 비해 나은 상태인데 2001년 손해보험회사 영업수입 대비 이윤율은 4.74%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 2대 손해보험회사인 태평양손해보험회사의 ROA는 2.9%를 기록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73〉 2대 손해보험 수익 현황

	자산	자본	영업이익	투자수익	세전이윤	당기순이익	ROA	ROE
중국인민	525.9	77.0	15.27	0.25	-	-	-	-
태평양손해	286.7	18.41	8.32	0.53	8.41	8.41	2.9	445.7

〈표 3-74〉 손해보험회사 수익 현황

(단위: 백만 위안, 명, %)

회사명	직원수	자산	세전이윤	보험료수입	영업수입	세전이윤/ 영업수입
中國人民保險公司	70,109	50,773	1,527	5,735	38,574	3.01
太平洋	10,638	7,509.4	840.98	8,513.2	12,306	11.2
平安	26,256	7,9561	2,265	46,457	46,527	2.85
天安	882	1,240.5	30.38	368.65	497.86	2.45
大眾	670	835.7	3.12	398.01	406.8	4.56
華泰	898	5,063.7	119.16	634.78	1,195.4	2.35
華安	777	525.8	4.33	354.04	464.9	0.82
永安	379	657.8	18.73	162.19	224.55	2.85
新兵疆團	643	1,031.5	31	471	753	3.01
太平		493	-12	0.2	0.1	-2.43
수출입신용		2,964.1	-41.02	543.94	1,524.9	-1.38
AIG상해	206	226.3	20.12	149.4	208.15	8.89
AIG광주	197	116.7	-0.6	46.15	73.28	-0.51
AIG심천	80	111.3	0.16	18.13	19.99	0.14
동경해상	50	260.5	26	57	124	11.28
홍콩人民海口	12	20.1	0.16	3.72	5.54	0.80
홍콩人民심천	36	226.6	36.65	162.15	259.28	16.32
Wintertuur상해	76	183.2	4.83	37.35	82.7	2.64
Royal&sunalliance상해	46	117.8	-6.41	12.88	49.35	-5.44
Chubb	20	100.4	-6.48	3.16	3.83	-6.45
스미토모(住友)	29	108.9	4.59	6.19	12.63	4.21
합계		152,094	4,900.67	109,134	103,313	4.74

라) 자산조달 및 운영

초기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제한조치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은 매우 단조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자산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회사채, 증권투자기금에 대한 투자제한이 해제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자산운영에서 예금이 53%를 차지하고 국채가 22%를 차지하여 이들의 비중이 75%를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운영구조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수익구조는 이자율에 매우 민감하게 하였으며 또한 1997년 이후 중국의 이자율 하락에 따라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이 급속히 감소하여 경영압박의 주 요인이 되었다. 보험회사의 증권투자기금에의 투자는 전체 운영자산의 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2년 보험업계 전체의 증권투자기금 투자액은 312.46 억 위안 정도이다. 그런데 2002년 주식시장의 침체로 30%의 기금만이 이윤을 달성하여 2002년 보험업계의 투자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5년 「보험법」에서 보험회사의 증권투자기금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켰다(「보험법」의 직접적 표현은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이며 이는 사실상 증권투자금지라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1999년 총자산의 5% 한도에서 보험회사의 증권투자기금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고 이는 후에 다시 15%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새로운 「보험법」에서는 기존의 20% 재보험 가입비율을 폐지하고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여 자산운영의 폭을 확대시켰다.

<표 3-75> 생명보험 자산운영비율

(단위: %)

	은행예금	국채	증권투자기금	금융채	기업채	환매채	기타
비율	53	22	5	4	2	11	3

보험회사의 경영위험을 보기 위하여 각 보험회사의 배상능력을 살펴보면 3대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배상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6> 주요 생명보험회사 배상능력

(단위: 억 위안)

	실제배상준비금	법정최저배상준비금
중국인수	-362.5	7,438.5
평안생명	4,676.5	7,500
태평양생명	-3,000	1,480
신 화	685.4	152.9
태 강	696.9	99.5
AIG상해	-33.2	126.8

<표 3-77> 손해보험회사 최저배상준비금과 실제배상준비금(2001)

(단위: 백만 위안)

회사명	최저배상 준비금	자산	부채	실제배상 준비금	차이
中國人民	6,112.28	48,452	43,188	5,624.0	-848.28
太平洋	77.7.15	5,108.48	5,668.4	-559.92	-1,667.07
平安	771.99	93,177.7	88,280	4,897.7	4,125.7
天安	32.58	1,586	1,121.8	464.18	431.60
大衆	25.11	780.91	324.57	456.34	431.23
華泰	90.14	4852.6	3672.2	1,180.41	1,091.27
華安	27.00	424.94	233.2	191.74	164.74
永安	439.93	816.98	505.26	311.72	-128.21
新兵疆團	55.92	901.9	652	249.9	193.98
太平	0.03	489.8	5	484.8	484.77
수출입신용	82.07	2,673.26	1,456.4	1,216.89	1,134.82
AIG상해	16.65	197.59	76.24	121.35	104.70
AIG광주	1.76	117.26	22.15	95.11	93.35
AIG심천	1.11	88.13	15.81	72.32	71.21
홍콩人民海口	0.91	18.94	3.01	15.93	15.02
홍콩人民심천	24.07	167.54	129.08	38.46	14.39
Wintertuur상해	7.19	136.77	58.78	77.99	70.80
Royal&sunalliance상해	0.85	93.05	40.67	52.38	51.53
Chubb	0.45	97.24	6.54	90.70	90.25
스미토모(住友)	1.48	104.09	9.6	94.49	93.01

<표 3-78> 중국인수보험공사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개, 억 위안)

	1999	2000	2001
자산	1,315.07	1,597.69	2,209.65
자본금	52.61	69.95	79.41
직원수	-	44,334	51,880
영업수익	1,493.92	1,830.26	2,333.74
보험료수익	607.46	651.64	813.13
재보험수익	0.004	0.001	0.01
투자수익	13.38	14.73	24.61
보험금지출	31.68	35.37	46.14
영업이익	-7.24	-2.66	-11.01
법인세차감전이익	5.01	0.1	7.46
당기순이익	4.8	9.23	7.55

<표 3-79> 증신증권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만 위안)

	2000	2001	2002
자산총액	186.40	186.67	235.66
자기자본	41.54	29.05	34.11
영업수익	22.78	19.00	8.26
수수료수익	5.50	4.80	2.64
증권매매수익	110.4	4.87	0.32
증권발행수익	13.12	1.85	2.07
당기순이익	11.29	6.30	1.10
ROA	6.1%	3.4%	0.5%
ROE	27.2%	21.7%	3.2%

〈표 3-80〉 톈원증권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만 위안)

	2000	2001	2002
자산총액	5.09	57.28	58.46
자기자본	2.59	2.12	2.29
영업수익	3.12	3.25	3.43
수수료수익	1.75	1.02	1.01
증권매매수익	1.24	1.57	0.48
증권발행수익	0.057	0.062	0.14
당기순이익	0.76	0.38	0.40
ROA	14.9%	0.7%	0.7%
ROE	29.3%	17.9%	17.5%

4) 투자신탁회사

가) 현황

1978년 중국국제투자신탁(CITIC)의 설립을 시작으로 1998년 최대 1,000여개의 투자신탁회사가 난립하였다. 이들 투자신탁회사 대부분은 사실상 해당 지방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금줄 역할을 하였으며 해외자금 및 정부자금을 남용하여 부동산투자, 증권투자 등 각종 탈법행위를 하였다.

1998년말 투자신탁회사수가 239개로 그 중 전국망을 가진 것이 21개, 지방 투자증권회사는 218개였다. 당시 장부가격 총자산규모는 4,403억 위안에 달하였다. 1998년 광둥국제투자신탁의 파산(자산 215억 위안, 부채 362억 위안)을 계기로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작업을 시작하였다. 1999년 2월 국무원은 「투자신탁회사 정리방안」을 발표하여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이 구조조정은 당시 모든 투자신탁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자격요건 심사를 통하여 재등록시키고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는 퇴출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당시의 재등록 자격요건은 등록시 해외채무 및 개인채무가 없어

야 하며 회계심사 후의 자기자본이 3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는 매우 강한 조건이었다.

상기 구조조정 방안을 통하여 모든 신탁투자회사에 대한 심사 및 재설립 과정이 진행되었는데 2001년 8개 회사의 재등록이 이루어졌다. 2002년말 현재 42개 신탁투자회사가 재설립되었고 2003년 6월 현재 50개 투자신탁회사가 설립되었다. 신탁투자회사의 본격적인 업무는 2003년에서야 재개되었다.

신탁관련 법규도 제정되었는데 2001년 10월 「신탁법」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신탁관계의 명확화, 투자자 이익보호 등 기존의 상업은행법, 증권법, 보험법 등에서 혼재되어 있던 신탁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상기 법안에서는 투자신탁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투자신탁회사의 업무영역은 자금신탁, 유가증권신탁, 동산, 부동산신탁, 금융신탁상품의 설계, 사회보장기금, 리스크기금, 산업기금 및 펀드회사의 설립에 대한 업무 등임을 명시하고 있다.

5) 소결

은행, 보험, 증권 등 중국 금융기관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양적인 성장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영효율성의 제고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제약한 요인으로는 국유금융기관에 의한 시장 독점, 관리시스템, 법체도의 미비, 주요 고객인 국유기업의 부실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은행의 경우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4대 국유상업은행에 의한 독점적 체제와 주요 고객이 국유기업이라는 체제적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은행업 전반의 수익성 저하, 부실채권의 누적 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금조달 및 운영에 있어서 저축 및 대출에 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업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신탁업의 정리과정에서 많은 증권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증권회사의 편법경영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2000년대 들어 증권업 경영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와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적자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의 경우에도 국유보험회사의 독점적 시장지배구조를 아직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국유 보험회사의 경영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격화된 보험회사간의 경쟁과 지속적인 금리인하의 추세속에서 이자율 역마진 현상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및 규제 현황

1)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진출현황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진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험업의 중국진출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은행업의 경우에는 WTO 가입 이후 최근 몇 년간의 개방조치로 인하여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증권업의 경우 가장 진출속도가 더딘 것으로 파악된다. 증권업의 개방은 중국의 자본시장개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에 중국정부의 입장은 최대한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리라 예측된다. 그러나 천문학적 규모의 국유상업은행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외국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제한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자본시장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은행

외국계 은행은 1981년 심천을 포함한 5개 도시에 설치된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은 2001년말 현재 사무소 214개, 지점 158개이다. 2001년말 현재 외국계 은행의 중국 내 자

산규모는 452억 달러, 외화대출규모는 14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속도가 빠른데 동 기간에는 지점수, 사무소의 증가속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산규모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국계 은행이 중국 내 지점을 새롭게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출지역의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WTO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진출과 중국 내 영업에 가장 적극적인 은행은 HSBS, The Bank of East Asia, Standard Chartered Bank, BNP PARIBAS, Citibank, Sumotomo Mitsui Banking Co., Overseas-Chinese Banking Co.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은행은 홍콩계 은행이다. 홍콩의 경우 중국 내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22%인 데 반하여 무역비중은 11.0%에 불과하다. 이는 홍콩계 기업이 주로 중국에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가공 무역 혹은 중국이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콩계 은행의 경우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혹은 중국 금융시장을 목표로 한 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일본계 은행의 경우 일본기업의 자금조달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미국계 은행의 경우 모은행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그대로 살려 은행별로 특화된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계 은행은 수출입대금결제, 무역금융 등 중개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개인대상 소매금융보다는 기업금융 특히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에 대한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지역별로 중서부지역 등의 저소득 지역진출 및 전국적인 영업망 건립에는 관심이 없으며 주로 동부연안지역의 지역적인 거점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계 은행의 중국 진출시 중국 국내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과의 합자를 통한 진출을 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1건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는 중국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3-81> 외국계 은행의 성장

(단위: 개, 억 달러)

	1993	1995	1999	2001
사무소	208	n.a.	247	214
지점	82	120	156	158
자산총액	75.8	171.4	317.9	451.8
예금총액	21.1	31.4	52.0	77.5
대출총액	41.6	127.5	214.7	186.1

<표 3-82> 주요 은행별 지점설치 현황(2001년말 기준)

은행명	지점수	지점개설 도시
HSBC	9	상해(2), 심천, 하문, 천진, 북경, 대련, 광주, 청도
Standard Chartered Bank	7	상해, 심천, 하문, 천진, 북경, 주해, 남경
The Bank of East Asia	7	상해, 심천, 하문, 천진, 대련, 청도, 서안
Sumotomo Mitsui Banking Co.	5	상해, 천진, 광주, 소주, 양포
BNP PARIBAS	5	상해, 심천, 천진, 북경, 광주
Overseas-Chinese Banking Co.	4	상해, 천진, 하문, 성도
Citibank	4	상해, 심천, 북경, 광주
Hang Seng Bank	3	상해, 심천, 광주
Credit Lyonnais	3	상해, 심천, 하문

<표 3-83> 주요국별 외국계 은행 진출 현황(2001년말 기준)

(단위: 개, 억 달러)

	일본	홍콩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한국
사무소	53	33	15	13	16	12	6	4
지점	27	38	13	7	17	7	11	9
투자규모	278.0	1,602.9	1,702.9	87.5	44.3	58.5	170.6	103.3
투자비중	11.5	66.2	12.4	3.6	1.8	2.4	7.0	4.3
무역규모	878.9	559.2	805.2	103.0	77.9	234.5	109.3	359.4
무역비중	17.2	11.0	15.8	2.0	1.5	4.6	2.1	7.0

자료: 『중국금융연감』, 2002년, 中國人民銀行統計季報, 2002年 第2期.

<표 3-84> 주요 지역별 외국계 은행 지점설치 현황(2001년말 기준)

구분	상해	심천	북경	광주	천진	대련	하문	청도	기타
지점수	46	23	18	15	14	10	10	3	19

자료: 『중국금융연감』, 2002年.

나) 증권

외국 증권사에 대한 개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외국 증권사의 중국진출 또한 매우 적은 실정이다. 1993년 8월 이후 외국 증권사의 B주 거래를 허용하였으나 B주 상장기업수가 적고 시장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유동성도 낮아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저조한 실정이다. 거래금액이나 시가총액에 있어서도 B주시장은 A주시장의 1%에 불과하다. 외국 증권사가 딜러나 거래주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 증권사와 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다) 보험

기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중국 시장에서의 진입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다. 1980년 AIG 상해사무소 설립을 시작으로 1992년 AIG 상해 지점이 설립되었고 2001년말 현재 19개 보험회사 지점과 200여개의 사무소가 설립되어 영업하고 있다. 이처럼 빠른 보험시장의 개방과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교적 활발한 진출의 이면에는 중국 정부의 자국 내 보험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즉 현재 중국 보험회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방에 대비하여 비교적 완벽하게 법적 준비를 정비하고 있어 개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AIG상해를 시작으로 현재 20개 생명보험회사가 영업허가를 획득하여 활동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대부분이 합자형태로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캐나다의 Manilife Finanacial과 중국진출충

공사(中国進出總公司)가 합자한 중광인수보험공사(中宏人壽保險公司)는 최초의 합자생명보험회사로 상해에서 영업을 시작하여 3%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Aetna International, 독일의 알리안츠, 프랑스의 AXAUAP도 합자 형태로 중국 보험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WTO 가입 양허안에 따르면 중국진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합자형태로만 진입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독자회사로 인가받은 것은 AIG(AIG상해, AIG심천, AIG광주)와 영국의 Royal & Sun Alliance Insurance Group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1.5%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로 상해와 광주를 들 수 있으며 상해에서 외국계 보험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4%에 달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2002년 2월 현재 12개 손해보험회사 진출하고 있는데 모두 외자 독자 보험회사이다. 대부분이 상해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가장 성장성이 큰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방일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2)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및 영업제한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의 영업제한은 크게 기존의 중국이 제한조치와 WTO 양허안을 살펴봄으로써 분석이 가능하다. 기존의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계 금융기관 관리조례 및 시행세칙(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實施細則)>에 의거하고 있는데 개정된 안이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기 조례 및 시행세칙은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과 영업행위를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고객, 지역, 업무제한, 인허가 신청자격제한의 완화 등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2년 2월부터 외국계 금융기관은 매우 활발히 중국 내의 영업허가를 신청, 획득하고 있다. 상기 조례의 주

요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첫째, 외국계 금융기관의 설립지역은 국무원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취소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영리기관의 설치에 대한 지역제한을 없애 WTO 개방일정에 따른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역제한 폐지를 가능케 하고 있다. 둘째, 외국계 금융기관의 외화업무에서 고객제한을 취소하고 있다. 셋째, 외국계 금융기관의 인민폐 업무 인허가에 대한 기존의 자산규모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은 영업허가 신청요건을 3년 이상 중국에서 영업, 2년 연속 영업이익을 실현한 경우로 단순화하고 있다. 넷째, 합자은행, 합자 종합금융회사 설립시의 중국측 합자파트너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중국측 출자자가 금융기관일 필요가 없으며 어떤 종류의 영리주체라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의 인민폐 업무의 서비스 대상과 업무범위에 대하여 중국 인민은행이 심사 결정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개방일정과 관련하여 중국 행정당국은 행정적 규제를 통하여 실제 개방속도를 일정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약속된 개방일정과 외국계 금융기관의 실제적 영업에는 많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제한이 취소되어 일부 지역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개방된 모든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은 행정적 규제에 의하여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업무제한이 철폐되어도 새로운 금융상품의 설계 및 개발과정에서 상품별로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가) 은행

은행부문의 경우 WTO 가입에 따른 개방조치로 지역제한, 고객제한이 완화되면서 외국계 은행의 고객잡식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강소성 최대 외자기업인 남경 Ericsson은 2002년 3월 공상은행 및 교통은행의 대출 19.9억 위안을 조기상환하고 대신 Citibank 상해 지점에서 동일금액의 대출을 받았다. 이는 상해지역 외국계 은행의 인민폐 업무의

지역범위가 감소성, 절감성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향후에도 외국계 은행의 시장잠식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리라 예측되며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중국 국내시장의 10% 이상을 잠식하리라 예측되고 있다. 은행부문의 WTO 양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85>에 나타나 있다.

<표 3-85> 은행부문 WTO 양허안

시간	내용
WTO 가입 즉시	① 지역제한 - 외화업무에 대하여 지역제한 폐지 - 인민폐업무에 대하여 上海, 심천, 天津, 大連 개방 ② 고객제한 - 외화업무에 대하여 고객제한 폐지. ③ 인가 : 경제적 수요조사, 인가은행수에 상관 없이 심사 후 - 은행, 중금사의 독자회사 설립요건 신청서 제출 전년도의 연말 총자산규모 100억 달러 초과 - 은행지점 설립요건 신청서 제출 전년도에 연말 총자산규모 200억 달러 초과 - 은행, 중금사의 독자회사 설립요건 신청서 제출 전년도에 연말 총자산규모 100억 달러 초과 - 인민폐업무 영업 자격조건 3년 이상 중국 내 영업, 신청 전 연속 2년간 흑자 ※ 자동차구매 신용대출은 가입 즉시 가능
1년 이내	① 지역제한 : 인민폐 업무 廣州, 珠海, 青島, 南京, 武漢 개방
2년 이내	① 지역제한 : 인민폐 업무 濟南, 福州, 成都, 重慶 개방 ② 고객제한 : 중국기업에 대한 인민폐업무 허용
3년 이내	① 지역제한 : 인민폐 업무 昆明, 北京, 廈門 개방
4년 이내	① 지역제한 : 인민폐 업무 汕頭, 寧波, 沈陽, 西安 개방
5년 이내	① 지역제한 : 인민폐 업무 지역제한 폐지 ② 고객제한 : 모든 고객제한 폐지. 인민폐영업 허가증 타 지역에서도 유효 ③ 인가 : 소유권 형태, 법률형태 등 차별적 심사요건 폐지

자료: 중국 WTO가입 의정서 부속서 9 『서비스무역에 관한 양허안』.

나) 증권

증권부문의 개방 및 영업제한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조치는 2002년 외국기관투자자자격조건법(QFII)이며 이 조치를 근거로 하여 외국 금융기관의 제한적인 중국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는 외국기관투자자자격조건법을 제정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A주 증권시장에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법규는 일정자격조건을 갖춘 외국 증권회사는 A주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고 나아가 인민폐 특별계정, 자산의 보관, 외화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QFII의 자격조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30년 이상증권업에 종사하고 자본금이 10억 달러 이상이며 현재 관리하는 증권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30년 이상 보험업에 종사하고 자본금이 10억 달러 이상이고 현재 경영하는 증권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은행의 경우에는 총자산기준으로 세계 100대 은행에 속해야 하고, 최근 1년간 관리하는 증권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QFII를 취득한 외국계 금융기관은 A주 주식, 국채, 전환사채, 회사채 등을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1개 QFII의 1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투자비율은 상장주가 총액이 10%를 초과할 수 없다. 둘째, QFII 전체의 1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투자비율은 당사 상장주가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셋째, QFII의 투자총액은 5,000만 달러 이상, 8억 달러 이하여야 한다. 넷째, 폐쇄형 펀드의 매니저들은 최초 3년간 자금인출이 금지되고 그 밖의 투자자들은 최초 1년간 자금인출이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QFII 참여 기관들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연례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를 거부하거나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국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

2003년 5월 현재 QFII를 취득한 외국계 증권회사는 6개 회사로 노무라 증권, 도이체뱅크, 스위스 은행, 모건스탠리, 시티뱅크, 골드만삭스이다.

은행으로는 HSBC, 시티뱅크, 스탠다드 차터즈 뱅크 등이다. 한편 외국기관은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증권투자기금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외자비율은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설립된 3년 후에는 49%까지 확대 가능하다. 또한 WTO 가입 3년 후에는 외국 증권사는 중국 국내 증권사와 공동으로 증권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외자비율이 1/3을 초과할 수 없다. WTO 가입에 따른 증권시장의 개방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86> 증권시장 개방일정

시간	내용
WTO가입 즉시	- 외자 증권회사 직접 B주 매매 허용 - 합자증권관리회사 설립 가능. 단, 외자 지분 33% 초과할 수 없음.
3년 이내	- 합자증권관리회사의 외자지분 49% 초과할 수 없음. - 합자증권회사 설립 가능. 단, 외자 지분 33%초과할 수 없음. - 합자증권회사는 A, B, H 주의 인수업무에 참여 허용 - 기금설립 가능, 국채 및 회사채 거래 허용

자료: 중국 WTO 가입 의정서 부속서9 <서비스무역에 관한 양허안>.

다) 보험

외국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외자 보험회사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관련기업과 재보험 위탁 및 수탁업무, 자산매매 및 기타 거래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때 관련기업은 주식 및 출자에 의하여 통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주식 및 출자에 의하여 제3자에게 통제받는 경우, 이익 측면에서 기타 상호관계를 가진 경우 등의 관계를 가진 회사를 지칭한다.

현재 중국에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우 독자기업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하고 합자 형태로만 진입 가능하다. 2001년 12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합자파트너로 恒安, 東方, 生命, 民生 등 4개 보험회사를 신설하였으나 외국계 보험회사는 이들에 대하여 관심이 적다.

그 이유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우 합자파트너 선정과 관련하여 외국계보험회사의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 보험회사보다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금력, 정치적 배경이 좋은 타산업의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계 보험회사가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충분히 활용하는 동시에 파트너를 통한 저비용의 네트워크 구축을 전략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3-87> 보험시장 개방일정

시간	내 용
WTO 가입 즉시	① 기업형태 - 손해보험의 경우 자회사, 합자회사 설립허용 - 생명보험의 경우 지분 50% 이내의 합자회사 설립허용. 합자파트너는 자율적으로 선택 - 대형기업형 보험중개업, 재보험중개, 국제해운, 항공, 운수보험과 그 재보험의 경우 지분이 50% 이내의 합자회사 설립허용 ② 지역제한: 이미 개방된 상해, 광주 이외에 심천, 대련, 불산(佛山) 추가 개방 ③ 업무제한: -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대형기업에 대한 일괄보험 허용 - 역외 기업에 대한 보험, 역내 외자기업에 대한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허용 - 합자, 독자, 자회사의 형태로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재보험 허용 ④ 인가: 경제적 수요조사, 보험회사수에 상관 없이 인가 - 외국계 보험회사 중국 진입 자격 ㉠ WTO 회원국으로 30년 이상 보험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 ㉡ 연속 2년 이상 중국에 사무소 설립 ㉢ 신청서 제출 전년도 연말총자산규모 50억 달러 초과(보험중개업 예외) ㉣ 보험중개업의 경우 총자산 5억 달러 이상(1년 이내 4억 달러, 2년 이내 3억 달러, 가입 4년 이내 총자산 2억 달러 이내 규정 완화). ⑤ 투자제한: 외자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은 다음의 항목에 국한됨; 중국 금융회사의 예금, 정부채권 매입, 투자총액 10% 미만의 회사채 매입, 금융채권 매입, 투자총액 15% 미만의 주식투자
2년 이내	① 기업형태: 손해보험의 경우 독자회사 설립허용, 기업형태에 대한 제한 폐지. ② 지역제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중개업의 경우 북경, 성도, 중경, 복주, 소주, 하문, 영파, 심양, 무한, 천진 추가개방 ③ 업무제한: 손해보험에 대한 고객제한 폐지, 대형기업보험 허용, 내외국인 대상 개인(비단체)보험 허용
3년 이내	① 기업형태: 대형기업형 보험중개업, 재보험중개, 국제해운, 항공, 운수보험과 그 재보험의 경우 합자회사의 지분 51%를 초과허용(5년 이내에 독자회사 설립가능.) ② 지역제한: 폐지 ③ 업무제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단체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 허용

자료: 중국 WTO 가입 의정서 부속서 9 <서비스무역에 관한 양허안>.

3) 소결

중국 국내 금융기관의 취약한 경쟁력으로 인하여 개혁개방 이후 현재 까지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WTO 가입에 따른 대외개방일정으로 중국의 금융기관은 향후 3~5년 내에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WTO 양허안에 따른 개방일정을 주어진 조건으로 상정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취할 정책결정의 여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첫째,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개혁조치를 통하여 중국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적,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동시에 관리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 주식회사제로의 개조를 달성하고 상장가능한 회사의 상장을 통하여 국유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막대한 규모의 부실채권의 처리를 가속화하고 추가부실의 발생을 방지한다. 둘째, 실제적인 행정적 규제를 통하여 경쟁취약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금융기관의 진입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국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개방정책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리라 판단된다.

제4장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 비교

본 장에서는 한·중·일 금융서비스기관 중 앞장에서 언급한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투자신탁업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경쟁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제공기관의 경쟁력을 국가별로 비교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경쟁력은 단순히 기관 자체의 경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금융구조, 즉 금융규제 및 감독, 시장 인프라, 소득 정도, 그리고 사회체제 및 법률체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가의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단순히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자체의 경쟁력보다는 이를 둘러싼 금융환경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즉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발달정도 및 금융구조, 금융규제 및 감독, 시장 인프라, 소득정도, 그리고 사회체제 및 법률체제 등 다양한 요인을 상호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금융 서비스 경쟁력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금융변수를 한·중·일간에 비교해봄으로써 각국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각 국 금융기관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검토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중국과 일본의 금융기관의 국내진출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서 한·중·일 3국의 상대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의 비교를 통해 이들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양자간(bilateral) FTA라는 것이 다른 비체결국에 대해 체결국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별적인 우대

조치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금융서비스의 차별적 우대조치는 체결국의 금융기관이 보다 선진적인 기관인 경우에는 차별적인 우대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금융서비스협상을 통해 차별적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선진체결국의 금융기관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다자간 협상을 통한 비차별적인 우대조치로 인해 무분별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을 통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금융기관이 보다 선진적인 금융기관일수록 한국의 입장에서는 차별적 우대조치를 부여할 요인이 커지는 반면, 그렇지 못하다면 차별적 우대조치를 부여할 요인이 작아진다. 결론적으로 본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상대적 우위는 어떤가 하는 것이고, 또한 차별적 우대조치를 제공할 요인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동종 금융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1. 한·중·일 금융기관별 경쟁력 비교

가. 은행

1) 규모

은행규모의 평가는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한·중·일 은행의 총자산을 비교해 보면, 규모면에서 일본의 은행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중국 그리고 한국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은행의 총자산은 2002년 기준으로 6조 3천만 달러로 한국의 8,700만 달러, 중국의 1억 7천만 달러(2001년)에 비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경제규모에 따른 은행자산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GDP 대비 국내은행 자산규모를 비교해보면, 한·중·일 모두 경제규모에 비해 은행자산 규모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자산규모 150%로 집계되었으며, 중국은 이보다 조금 많은 152%, 그리고 한국은 130%로 나타났다.

<표 4-1> 한·중·일의 은행 총자산 현황

(단위: 억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5,107	5,598	3,578	4,693	6,981	6,571	6,967	8,794
일본	82,175	73,121	65,868	73,353	74,006	64,163	61,024	63,059
중국	10,008	11,602	11,436	13,088	14,582	16,007	17,567	-

주: 1) 한국은 1998년까지는 일반은행 기준이며, 1999년 이후는 특수은행을 포함한 총자산임.

2) 일본은 전국은행 기준.

3) 중국은 4대 국유은행 + 10대은행 기준임.

4) 달러 환산시 환율은 연도말 기준(IFS).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2003년』. 일본 전국은행협회.

<표 4-2> 한·중·일의 GDP 대비 은행자산 비율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한국	104.8	117.3	143.4	143.2	128.5	121.7	130.1
일본	169.7	164.9	163.2	163.4	144.6	137.9	150.0
중국	142.3	150.1	135.7	144.1	149.9	152.3	-

자료: 상동, IFS.

국내은행 수는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퇴출 및 합병으로 국내은행의 수가 축소되어 2002년 현재 19개 은행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의 은행 수는 각각 133개와 177개로 많은 은행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경우 소규모 지방은행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은행기관이 한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

위 7대 상업은행이 전국 상업은행 자산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소형 도시상업은행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4대 국유 상업은행, 3개 정책성 은행, 10대 주식제 상업은행의 숫자는 변화가 없으나 소형 도시상업은행의 수가 많고 1997년 이후 도시상업은행의 증가로 인해 전체 은행 수가 증가한 것이다.

<표 4-3> 한·중·일의 국내 은행 수

(단위: 개)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33	26	23	22	20	19
일본	146	146	138	137	136	133
중국	88	105	117	117	117	117

주: 1) 한국은 연도말 기준, 일본은 3월말 기준.

2) 중국의 경우 은행수의 변화는 4대 국유상업은행, 3개 정책성은행, 10대 주식제 상업은행의 숫자는 변화가 없으나 소형 도시상업은행의 숫자 변화에 주로 의함(중국 인민은행 불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2003년』. 일본 전국은행협회.

은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2002년말 기준, 한국은 8만 8천 명, 일본은 33만 명, 중국은 150만 명을 넘고 있어, 한국의 은행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의 은행당 평균 임직원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은행당 평균 4,446명, 일본의 평균 임직원수는 2,516명, 중국은 13,215명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은행당 평균 임직원수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의 상업은행이 국내 은행업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은행의 임직원수는 지나치게 많아 은행의 수익성이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표 4-4> 한·중·일의 은행 임직원 현황

(단위: 명)

	1999	2000	2001	2002
한국	97,736	92,560	89,746	882,771
일본	385,683	368,657	354,893	334,637
중국	1,699,064	1,599,267	1,546,188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일본 전국은행협회.

<표 4-5> 한·중·일의 은행당 임직원 수

(단위: 명)

	1999	2000	2001	2002
한국	4,239	4,207	4,487	4,646
일본	2,795	2,691	2,610	2,516
중국	14,522	13,669	13,215	-

주: 중국의 경우 은행은 4대 국유상업은행, 3개 정책성은행, 10대 주식제 상업은행, 소형 도시상업은행의 합계임(중국 인민은행 불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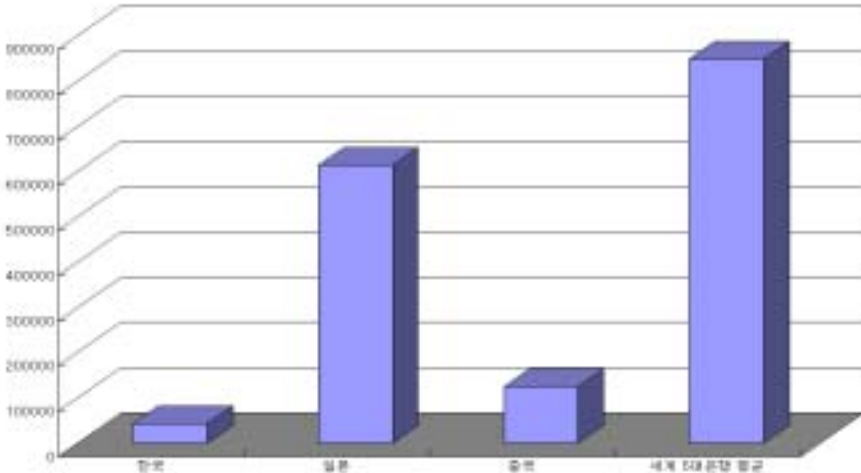
자료: 상동.

한·중·일 상업은행의 은행당 평균자산규모와 세계 5대 은행⁸⁾의 평균 자산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상업은행의 자산규모가 매우 작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세계 5대 은행의 2002년 평균자산규모는 8,482억 달러로 국내 일반은행 평균자산규모인 440억 달러는 세계 5대 평균의 5% 수준이다.⁹⁾ 일본의 7대 상업은행의 평균자산규모는 6,148억 달러로 규모면에서는 일본의 상업은행이 상당히 대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4대 국유은행과 10대 주요은행의 평균자산규모는 1,254억 달러로 나타났다.

8) 세계 5대 은행은 2002년 Banker 지가 선정한 Citigroup, Bank of America, Mizuho Financial Group, JP Morgan Chase, HSBC Holdings 등이다.

9) 물론 세계 5대 은행은 일반적인 은행 고유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유럽은행의 경우에는 universal banking이 허용됨에 따라 투자는 행업무 등도 제공하고 있어 직접적인 자산규모의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림 4-1〉 한·중·일 상업은행과 세계 5대 은행과의 평균자산규모 비교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1, 세계 5대 은행 annual report 각호.

2) 영업형태 및 활동

은행의 업무영역이 단순한 예금업무에 치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중·일 3국의 상업은행의 이익구조를 비교해보았다. 은행의 이익구성 중에서 이자이익에 대한 수수료이익 또는 비이자이익의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의 업무가 단순예금업무보다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상업은행의 경우, 이자수익 대비 수수료수입이 40%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35%, 중국은 2%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이자수익 대비 수수료수익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 은행은 절대적으로 이자수익에 치우치는 경향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상업은행은 규모의 경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의 상업은행은 규모의 경제 정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6> 한·중·일 은행의 이익구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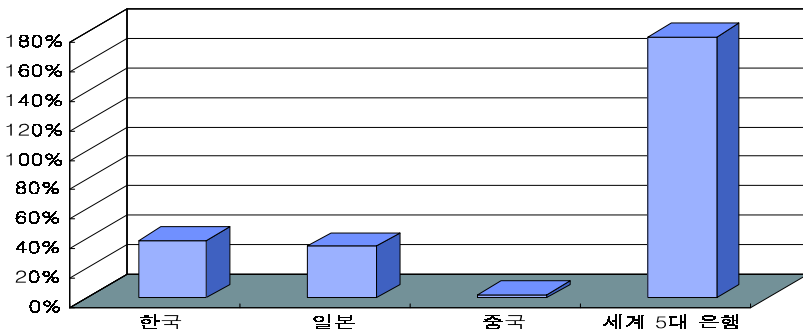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총이익	62	24	74	114	120	152
	이자순수익	46	56	79	76	72	106
	수수료순수익	17	21	23	29	30	42
일본	총이익	454	439	371	398	351	383
	이자순이익	1,034	1,096	1,239	1,018	904	1,054
	비이자순이익	593	711	555	735	447	371
중국	영업수익	1,513	466	419	414	408	-
	이자수익	648	659	621	605	545	-
	수수료수익	11	11	12	18	13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일본은행.

그러나 한·중·일 3국 은행의 예대금업무비중 정도는 세계 5대 은행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예금업무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5대 은행의 평균이자수익 대비 수수료수입은 177%로 비이자수익이 이자수익보다 많다. 이들 은행의 이자수익은 전체 수익의 36%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세계 5대 은행은 대부분 상업은행 업무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일부는 투자은행의 업무에도 상당부분 진출하고 있어 단순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은행이 예금 업무에 치중

<그림 4-2> 한·중·일 3국 상업은행의 이자수익 대비 비이자수익



되어 있음으로써 경기변동이나 외부적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범위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이는 한·중·일 은행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3) 수익성

한·중·일 3국 은행의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상업은행 수익성은 매우 저조하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일본은 2002년을 비롯해 1995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가 4번이나 되며, 2002년 ROA는 -0.6으로 나타났다. 중국 은행은 평균적으로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나, ROA나 ROE가 매우 낮다. 더욱이 중국 은행의 회계기준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불투명하므로 중국 은행의 수익성지표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 은행의 BIS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BIS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한·중·일 은행의 ROA 현황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0.3	0.3	-0.9	-3.3	-1.3	-0.6	0.8	0.6
일본	0.0	-0.4	0.0	-0.5	-0.6	0.1	0.0	-0.6
중국	0.3	0.3	0.2	0.1	0.1	0.2	0.2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일본 전국은행협회.

<표 4-8> 한·중·일 은행의 ROE 현황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4.2	3.8	-14.2	-52.5	-23.1	-11.9	15.9	11.7
일본	-37.3	182.6	-13.4	-7.2	19.6	-179.0	-6.1	-
중국	8.8	8.9	5.9	1.8	2.8	3.3	3.1	-

주: 일본의 ROE는 124개 일반 상업은행의 Total net capital resources/Profit before tax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OECD(2002), *Bank Profitability*.

<표 4-9> 한·중·일 은행의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11.2	10.0	-23.1	-103.9	-52.7	-22.5	27.2	28.3
일본	17.0	-317.5	21.5	-371.5	-432.5	81.4	-10.4	-409.8
중국	30.2	33.3	23.9	13.9	21.7	27.3	27.9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일본은행.

<표 4-10> 한·중·일 은행의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 원, 억 엔, 억 위안)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8,680	8,470	-39,199	-125,106	-59,960	-28,405	35,723	33,532
일본	1,750	-36,830	2,790	-42,940	-44,200	9,350	-1,370	-49,140
중국	251	276	198	115	180	226	231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일본은행.

<표 4-11> 한·일 은행의 BIS 비율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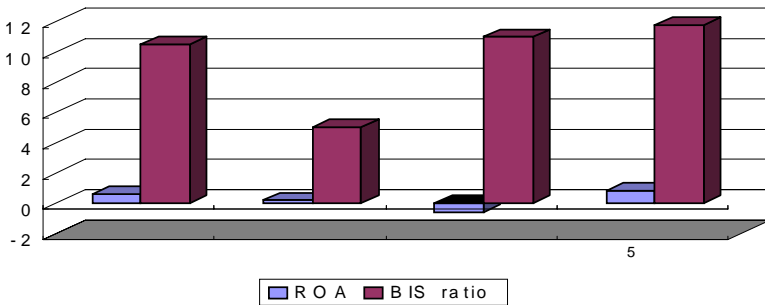
	1999	2000	2001	2002
한국	10.8	10.5	10.8	10.5
일본	11.9	12.2	11.7	11.0
중국	-	-	5.07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일본은행.

세계 5대 은행의 평균 수익성과 한·중·일 3국 은행의 수익성을 비교

해보면, 한국 상업은행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상업은행의 수익성은 최근 크게 향상되어 세계 5대 은행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5대 은행의 2002년 평균 ROA 0.85인데, 국내 일반은행의 ROA는 2001년 0.8과 2002년 0.6을 기록하면서 세계 우수은행보다는 못하지만 최근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 은행의 ROA는 2000년말 기준으로 -0.6으로 나타났다으며, 중국 상업은행의 ROA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4-3> 한·중·일 은행 및 세계 5대 은행의 수익성 비교



4) 국제영업

한·중·일 3국 은행의 국제영업 정도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각국의 은행 해외지점수를 살펴보았다. 한국과 일본은 최근 은행의 해외지점이 급속히 감소하여 국제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국제 영업은 대부분 홍콩과 마카오의 해외지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2001년 중국은행 영리성 해외지점 452개 중에서 홍콩과 마카오에 설립된 해외지점은 374개이다. 더욱이 4대 국유 은행의 해외지점 451개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4대 국유 은행의 해외 지점 자산규모는 1,443억 달러로 전체 해외지점 자산규모(1,514억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2> 한·중·일 은행 해외지점 현황

(단위: 개)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190	127	102	93	79	80
일본	427	404	300	243	226	185
중국	-	-	-	456	452	-

주: 1) 한국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사무소, 현지법인의 합계임.

2) 일본은 지점 및 출장소의 합계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일본 전국은행협회.

나. 증권업

1) 규모

한·중·일 증권업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일본 증권사의 총자산규모는 2002년말 기준 2천억 달러로 한·중·일 3국 중 가장 크며, 이어서 중국이 739억 달러, 그리고 한국이 47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증권회사 수에 있어 2002년말 현재 한국은 44개, 일본은 291개, 중국은 130개로 나타

<표 4-13> 한·중·일의 증권업 규모

(단위: 개, 억 달러,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증권회사수	32	33	34	31	32	43	45	44
	총자산	323	298	162	191	296	418	320	478
	직원수	28,675	28,397	25,271	22,352	32,005	36,708	34,985	33,323
일본	증권회사수	277	282	289	291	288	288	297	291
	총자산	2,040	2,153	2,225	2,637	2,818	2,360	2,029	-
	직원수	130,533	121,621	115,806	110,602	97,360	94,136	96,879	98,792
중국	증권회사수	-	-	-	-	90	100	111	130
	총자산	-	-	-	274.3	372.1	692.4	737.9	774.5
	직원수	-	-	-	-	-	-	-	-

주: 총자산은 각년도 3월기준.

자료: 『금융통계월보』, (2003. 1), 금감원. 일본 증권협회.

<표 4-14> 한·중·일의 GDP 대비 증권업규모 비교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한국	6.6	6.3	6.5	5.8	7.7	11.1	8.5
일본	4.2	4.9	5.5	5.9	5.5	5.1	5.0
중국	-	-	-	3.0	3.8	6.6	-

자료: 상동, IFS.

났다. 그러나 GDP 대비 증권사 총자산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8.5%로 가장 높고, 중국은 6.6%, 일본은 5%를 보이고 있다.

세계 4대 증권사와 한·중·일 3국의 증권사의 평균자산규모를 비교해보면, 한·중·일 3국의 증권사 평균은 한국이 8억 7천만 달러로 가장 낮았으며, 중국은 5.9억 달러, 일본은 68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4대¹⁰⁾ 평균 407억 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의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물론 한·중·일 3국의 증권사들이 세계 우수 증권사와의 비교해서 국제적 업무와 다양한 투자은행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절대 열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한편 직원 1인당 대비 자산 규모는 한국 증권사의 경우 1.15백만 달러인 데 비해 세계 4대 증권사의 평균 직원 1인당 자산규모는 1,200만 달러로 10배 수준이며, 일본은 2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표 4-15> 한·중·일 증권사와 세계 4대 증권사의 규모 비교

	한국(A)	중국	일본	세계 4대 증권사	(A)/(B)
평균총자산규모(백만 달러)	875	596	6831	407,679	0.002
평균 직원 수	750	-	339	34,122	0.02
총자산/직원수(백만 달러)	1.15	-	20.1	11.9	0.09

자료: 『금융통계월보』, (2003. 1), 금감원. 세계 4대 증권사 Annual Report 각호.

10) 2002년 세계 4대 증권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Goldman Sachs, Lehman Brothers 순임.

2) 영업활동 및 업무영역

한·중·일 증권사의 영업형태를 비교해보면, 위탁매매 및 이자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초 이후 증권회사의 수수료수입은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유지해 왔다. 특히, 수수료수입 중 많은 부분이 위탁매매(brokerage)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매매수익은 1990년대 중반에는 전체 수익의 30%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2년에는 전체 수익의 7.6%를 차지하고

<표 4-16> 한·중·일 증권사의 이익구조

(단위: 백만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영업수익	4,894	3,132	6,793	16,471	10,105	9,271	6,959
	수수료수익	2,699	1,551	3,399	9,717	4,997	4,424	3,183
	이자수익	1,225	731	1,140	1,592	1,490	1,287	1,096
	유가증권매매이익	800	554	1,474	2,730	1,647	1,179	528
	유가증권평가이익	-	-	-	375	258	414	119
	기타 영업수익	-	-	-	548	649	100	79
일본	영업수익	17,906	15,256	12,614	14,493	18,448	11,502	7,766
	수수료수익	12,556	11,173	8,892	9,740	14,104	7,496	4,451
	이자수익	2,184	1,886	2,122	1,780	931	892	785
	유가증권매매이익	3,087	1,771	330	198	407	80	-
	유가증권평가이익	-69	-422	-52	-13	-15	-1	-
	기타 영업수익	-	-	-	-	157	201	897
중국	영업수익	-	-	-	-	3.1	2.7	1.4
	수수료수익	-	-	-	-	0.9	0.7	0.4
	이자수익	-	-	-	-	-	-	-
	유가증권매매이익	-	-	-	-	1.6	0.8	0.1
	유가증권평가이익	-	-	-	-	1.5	0.2	0.3
	기타 영업수익	-	-	-	-	-	-	-

주: 1) 한국의 경우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이며, 2002년도는 12월까지임.

2) 중국 증권사의 수익구조는 상장증권회사인 중신증권과 흥원증권을 합한 값임(단위: 백만 위안). 이들 증권회사는 상대적으로 우량한 증권회사라는 점에서 자료선정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금융통계월보』, (2003. 1), 금감원. 일본 NEEDS.

<표 4-17> 한·일 증권사의 이익구조 추이(2002년 기준)

(단위: 억 달러, %)

	총수입(억 달러)	수탁수수료	인수수수료	기타수수료	자기매매	이자수익	기타
한국	8.5	31.9	2.6	11.2	7.6	15.8	27.4
일본	77.7	31.1	3.0	23.2	NA	10.1	NA

자료: 『금융통계월보』, (2003. 1), 금감원. 일본 NEEDS, IFS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수수료수익과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세계 우수 증권사가 인수업무와 자기매매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비교된다.

3) 수익성

한·중·일 3국의 증권사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전체 증권사의 2002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정확한 자료가 부재한 관계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한·중·일 증권사의 낮은 수익성은 앞에

<표 4-18> 한·중·일 증권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영업이익	92	- 1,174	1,300	1,336	- 34	930	123
	당기순이익	- 787	- 1,703	321	459	- 305	481	- 137
일본	영업이익	1,572	992	- 578	560	8,031	2,775	260
	당기순이익	622	- 5,664	-1,832	- 6,376	4,123	1,464	- 2,292
중국	영업이익	-	-	-	-	25.9	22.25	11.69
	당기순이익	-	-	-	-	12.05	6.68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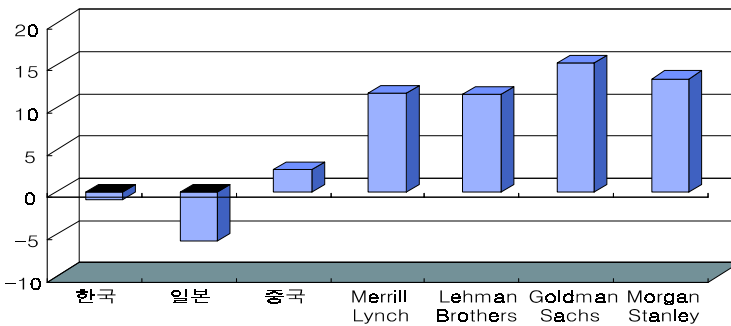
주: 중국 증권사의 수익구조는 상장증권회사인 중신증권과 흥원증권을 합한 값임(단위: 백만 위안). 이들 증권회사는 상대적으로 우량한 증권회사라는 점에서 자료선정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금융통계월보』, (2003. 1), 금감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사의 규모가 소규모이고, 경쟁이 치열하며, 수익의 많은 부분을 시장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

세계 4대 증권사의 수익성과 한·중·일 증권사의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한·중·일 3국의 증권사 수익의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림 4-4> 한·중·일 증권사와 세계 4대 증권사의 ROE 비교(2002)



다. 보험회사

1) 규모

한·중·일 3국의 보험산업을 비교해보면, 한·중·일 3국 모두 생명보험업이 손해보험업보다 규모면에서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중·일 3국 중 가장 큰 보험시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02년 총 1.8조억 달러의 보험시장 중 1.5조억 달러가 생명보험업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600억 달러의 보험사 전체자산 중 1,300억 달러가 생명보험사의 자산이다. 중국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01년 전체 보험사 자산 규모는 555억 달러이고 이 중 417억 달러가 생명보험사의 자산이다. 경제규모에 따른 보험사 자산을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은 전체 GDP의

0.3~0.4%의 보험자산규모를 지니고 있는 반면, 중국의 전체 보험사 자산은 0.01%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향후 중국 경제의 발전과 함께 보험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9> 한·중·일 보험사의 자산 현황

(단위: 억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생보자산	536	767	969	955	1,089	1,377
	손보자산	118	186	233	222	249	297
	총자산	654	953	1,202	1,177	1,338	1,674
일본	생보자산	14,518	16,446	18,764	16,539	14,547	15,377
	손보자산	2,336	2,692	3,016	2,630	2,603	2,762
	총자산	16,854	19,137	21,780	19,169	17,150	18,139
중국	생보자산	210	-	242	310	417	-
	손보자산	-	-	-	-	85	-
	총자산	-	-	315	408	555	784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일본 생보협회·손보협회.

<표 4-20> 한·중·일 보험사의 GDP 대비 자산 현황

		1997	1998	1999	2000	2001
한국	생보자산	0.2	0.2	0.3	0.3	0.3
	손보자산	0.0	0.1	0.1	0.1	0.1
	총자산	0.3	0.3	0.3	0.3	0.4
일본	생보자산	0.4	0.4	0.4	0.4	0.4
	손보자산	0.1	0.1	0.1	0.1	0.1
	총자산	0.4	0.4	0.4	0.4	0.4
중국	생보자산	0.0	-	0.0	0.0	-
	손보자산	-	-	-	-	-
	총자산	-	-	0.0	0.0	-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일본 생보협회·손보협회. IFS.

한·중·일 3국의 보험사의 1사당 평균자산규모와 세계 4대 생보사와 손보사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 2002년 세계 4대 생명보험사의 평균자산규모는 4,675억 달러인데, 일본의 생명보험사의 평균자산규모는 338억 달러이며, 국내 생보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56억 달러이며, 중국은 13억 달러로 규모면에서는 세계 4대 보험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의 차이가 더욱 크다. 세계 4대 손보사의 평균자산규모는 90억 달러, 한국은 12억 달러, 그리고 중국은 3억 달러로 한·중·일 3국의 손보사의 자산규모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1> 한·중·일 보험사 현황(200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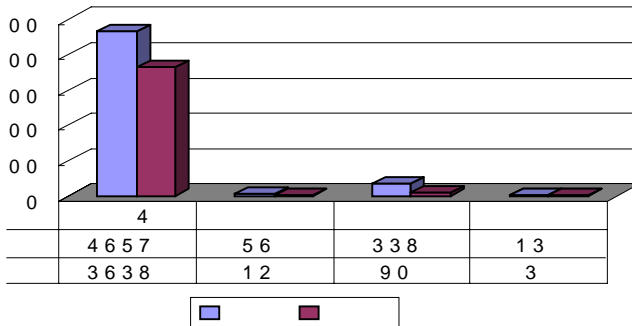
(단위: 개, 명)

		회사수	임직원수	모집인수	점포수	대리점수	
한국	생보	일반사	11	21,095	118,630	4,025	4,580
		합작사	3	1,600	11,586	374	117
		외국사	9	3,890	25,330	741	2,359
		생보사계	23	26,585	155,546	5,140	7,056
	손보	국내사	14	20,430	53,415	2,126	51,558
		외국사	10	338	1,843	13	508
		손보사계	24	20,768	55,258	2,139	52,066
		합계	47	47,353	210,804	7,275	59,122
일본	생보사수	손보사수	보험사 합계	점포수*	임직원수		
	43	29	72	22,418	1,836,203		
중국	생보사수	손보사수	보험사 합계	점포수	임직원수		
	32	29	51	-	-		

주: 일본 보험사의 점포 수는 1997년 기준임.

11) 세계 4대 생명보험회사는 2001년 매출기준으로 ING, AXA, Nippon Life, Avia 사 등임. 동일한 기준으로 세계 4대 손해보험사는 Allianz, AIG, State Farm Insurance, Munich Re 등임.

<그림 4-5> 한·중·일 보험사와 세계 4대 보험사의 평균자산규모 비교



2) 수익성

한·중·일 3국 보험사의 수익성은 매우 취약하다. 2001년 기준 한국의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13억 달러, 중국은 7천 5백만 달러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일본은 24억 달러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자산 수익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 생보사의 2001년 자산수익률은 1.2%, 손보사는 0.67%를 기록하였으며, 일본은 생보사의 경우 0.17%, 손보사의 경우 0.3%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생보사의 경우 -0.17%, 손보사의 경우 1.03%를 기록하였다.

<표 4-22> 한·중·일 보험사의 수익성 현황(2001)

(단위: 억 달러, %)

		한국	중국	일본
당기순이익	생보	13.1	-0.75	24.1
	손보	1.7	1.01	7.9
ROA	생보	1.20%	-0.17%	0.17%
	손보	0.67%	1.03%	0.30%

주: 중국의 경우, 생보사는 상위 5개 생보사, 손보사는 상위 2개사 집계임.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일본 생보협회·손보협회.

3) 자금운영

한·중·일 3국 보험사의 경쟁력을 추정하는 변수로 자금운영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보험업의 특성상 업무영역 및 활동이 비슷한 관계로 이를 통해 경쟁력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자산관리능력을 비교함으로써 보험사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생명보험업에 있어 한국과 중국의 자금운영형태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현금 및 예치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유가증권투자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대출과 부동산 투자순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현금과 예치금 비중이 전체 자산운영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자산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보험사들이 대부분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자산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한 이익 창출에 대한 동기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손해보험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자산운영 패턴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으며, 대출순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표 4-23> 한·일 생보사의 자금운영 추이(2002)

		현금과 예치금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총자산 규모
한국	억 달러	23	68	471	343	78	1,206
	비중(%)	1.9	5.6	39.0	28.4	6.5	100.0
일본	억 달러	240	NA	9,259	3,925	665	15,377
	비중(%)	1.6	NA	60.2	25.5	4.3	100.0
중국	억 달러	220.68	41.61	162.38	-	-	416.38
	비중(%)	53	5	39	-	-	-

주: 한국의 경우 2002년 12월말, 일본의 경우 2002년 3월 기준임. 중국의 경우 2001년말 기준임.

자료:『금융통계월보』, (2003. 1), 금감원. 일본 생보협회·손보협회.

12) 중국 손보사의 자산운영 형태는 자료의 부족으로 비교하지 못하였음.

〈표 4-24〉 한·일 손보사의 자금운영 추이(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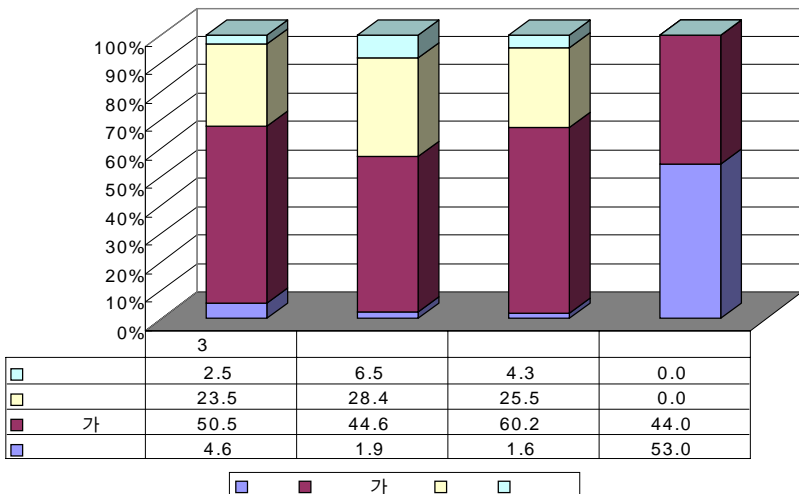
		현금과 예치금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총자산 규모
한 국	억 달러	18	64	81	39	26	276
	비중(%)	6.6	23.3	29.3	14.0	9.5	100.0
일 본	억 달러	166	NA	1,722	320	129	2,762
	비중(%)	6.0	NA	62.3	11.6	4.7	100.0

주: 한국의 경우 20202년 12월말, 일본의 경우 2002년 3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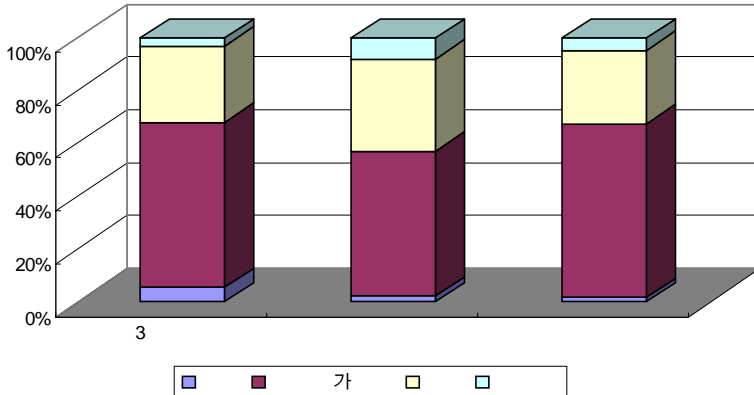
자료: 『금융통계월보』, (2003. 1), 금감원. 일본 생보협회·손보협회.

이와 같은 한·중·일 3국 보험사의 자산운영패턴과 세계 3대 보험사의 자산운영패턴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세계 3대 보험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일본은 오히려 세계 3대 보험사보다 높은 유가증권 투자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현금 및 예치금 비중이 매우 높아 효과적인 자산운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4-6〉 한·중·일 생보사와 세계 3대 생보사의 자산운영 비교



<그림 4-7> 한·중·일 손보사와 세계 3대 손보사의 자산운영 비교



라. 투자신탁회사

1) 규모

한·중·일 3국 투자신탁회사의 수는 2002년 3월 기준 한국이 30개, 일본이 84개, 중국이 42개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투자신탁사 자기자본 규모는 4,100억 달러로 가장 크며, 한국은 10억 달러로 일본에 비해 자본규모가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한·중·일 투자신탁회사 비교

(단위: 개, 억 달러)

	회사수 ¹⁾			자기자본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일본 ²⁾
2000. 3	24	76	-	7	4,120
2001. 3	29	87	8	9	NA
2002. 3	30	94	42	10	NA

주: 1) 중국의 경우는 신탁회사수(신규영업증 획득기준, 연말 기준임. 2003년 6월 현재 50개임.

2) 일본의 경우 납입자본금임.

자료: 『금융통계월보』, (2003. 1), 금감원. 일본 투자신탁협회.

2) 유형

한국과 일본의 펀드 규모 및 운영형태에 있어 투신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 비해 열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3년 7월 현재 한국의 수익증권수탁고는 132.2억 달러(158조 원)로 세계에서 투자신탁업이 가장 잘 발달한 미국의 수익증권수탁고 6,700억 달러의 약 50분의 1 수준이다. 일본의 펀드 규모는 416억 달러로 한국의 3배 이상의 규모를 기록하였으나 미국 펀드 규모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펀드 수에 있어서는 미국의 8,253개와 비슷한 6,632개의 펀드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일본의 펀드수는 2,602개로 상대적으로 펀드수가 적다. 펀드당 운영자산규모는 국내 펀드의 경우 평균적으로 2백만 달러인 데 비해 미국 펀드의 경우에는 8,100달러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펀드당 운영자산규모는 1,600만 달러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 규모의 경계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펀드의 유형별 설정액을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펀드가 주식형(한국 7.1%, 일본 24%)보다는 채권형(한국 67%, 일본 72%)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펀드는 주식형(44.1%)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6> 한·미·일 펀드 유형별 비교

(단위: 억 달러, 개)

	한국				미국				일본			
	설정액 (A)	펀드수 (B)	A/B	비중 (%)	설정액 (A)	펀드수 (B)	A/B	비중 (%)	설정액 (A)	펀드수 (B)	A/B	비중 (%)
주식형	9.5	476	0.020	7.1	2,958.5	4,712	0.628	44.1	101.3	2,315	0.044	24.4
채권형	53.9	2,513	0.021	40.7	1,238.9	2,051	0.604	18.5	299.9	272	1.103	72.1
혼합형	36.5	3,047	0.012	27.6	365.8	492	0.743	5.5	-	-	-	-
MMF	32.2	596	0.054	24.3	2,141.1	998	2.145	31.9	14.8	15	0.985	3.6
총	132.2	6,632	0.020	100.0	6,704.3	8,253	0.812	100.0	416.0	2,602	0.160	100.0

주: 한·미·일의 통계는 각각 2003년 7월, 5월, 9월 기준임.

자료: 한국투신협회, 미국투신협회, 일본투자신탁협회.

2.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앞 절에서 언급한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비교 가능한 지표를 통해 한·중·일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추정하고자 한다. 우선 한·중·일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각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세계 유수의 규모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지니고 있는지를 지수화하였다. 두 번째로는 각 금융기관의 업무 다각화 정도를 파악해서 소위 범위의 경제 정도를 비교하고 이를 지수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금융기관의 수익성변수를 참고하여 세계 우수 금융기관과의 수익성 정도를 비교하였다. 각 금융서비스에 있어 세계 유수의 규모, 업무 다각화 정도 그리고 수익성을 10점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해서 한·중·일 금융서비스 기관의 규모, 업무 다각화 정도 그리고 수익성을 지수화함으로써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국제적인 금융서비스 제공기관과 비교함으로써 한·중·일 금융서비스 기관의 경쟁력을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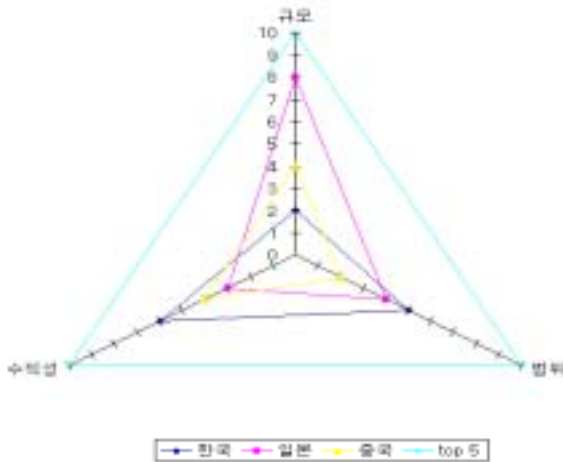
가. 은행

한·중·일 은행의 규모는 각 국 상업은행의 은행당 평균자산규모를 비교하였는데, 일본이 가장 크며, 중국 그리고 한국순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8, 중국은 4 그리고 한국은 2로 각각 지수를 수치화하였다. 한편 범위의 경제 정도를 평가하는 부분은 각국 상업은행의 이자수익 대비 비이자수익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이자수익 대비 비이자수익이 높을수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높고, 일본 그리고 중국순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은 각국 상업은행의 자산수익률을 기초로 하였다. 자산수익률에서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수를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은행산업의 경쟁력지수를 산출한 결과 총 10점 만점에 한국은 4.3, 일본은 5, 중국은 3.3으로 3국 은행의 경쟁력이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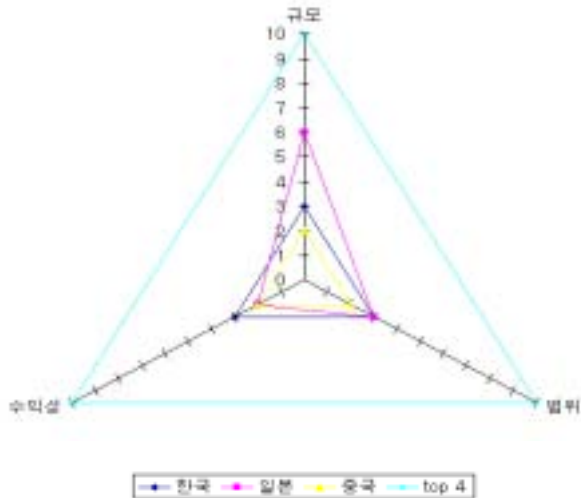
<그림 4-8> 한·중·일 은행업 경쟁력지수



나. 증권

한·중·일 3국 증권사의 규모는 각국 증권사의 1사당 평균자산규모를 통해 비교하였는데,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다각화 정도는 각 증권사의 수익구조를 비교해서 보다 단순위탁매매수익 및 이자수익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수익성비교는 각국 증권사의 자기자본수익률을 비교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한국 증권사의 경쟁력지수는 3, 일본은 3.6, 그리고 중국은 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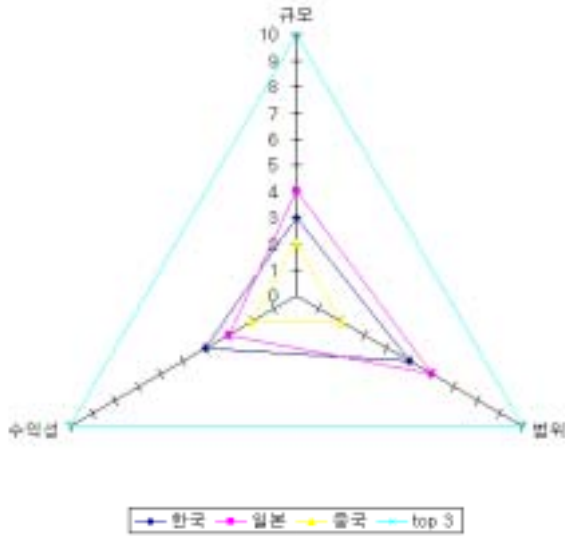
<그림 4-9> 한·중·일 증권업 경쟁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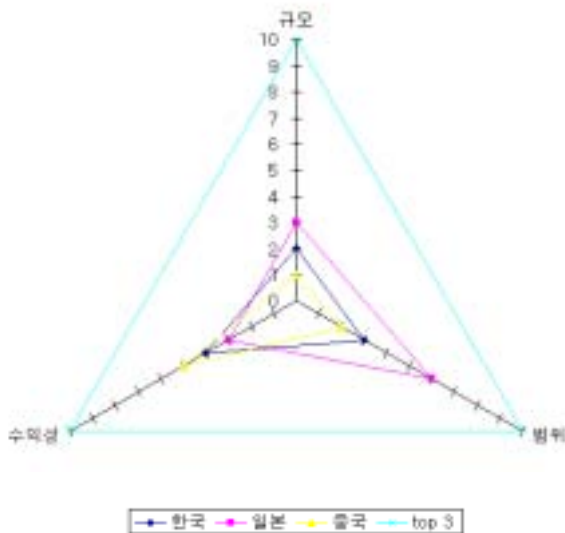
다. 보험업

한·중·일 3국의 보험업 경쟁력지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서 이를 추정하였다. 각국의 보험사의 규모에 대한 지수는 1사당 평균 자산규모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순으로 나타났다. 범위의 경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각국 보험사의 자산운영패턴을 기초하였다. 즉 자산운영에 있어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운영 정도를 업무의 다각화 정도로 추정하였다. 수익성은 자기자산수익률을 통해 지수를 추정하였는데,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순으로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의 경쟁력지수는 한국 4, 일본 4.3, 그리고 중국 2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4-10> 한·중·일 생명보험업 경쟁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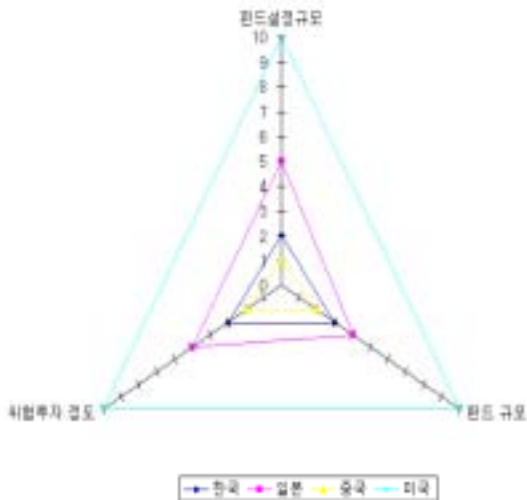
<그림 4-11> 한·중·일 손해보험업 경쟁력지수



라. 투자신탁업

투자신탁업의 경쟁력지수는 우선 규모면에서 펀드의 설정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비교하였다. 또한 투자신탁회사당 펀드 운영규모는 얼마 정도가 되는가를 비교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국의 펀드 성격이 어떠한가를 비교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즉 주식형 펀드의 구성이 높을수록 위험자산을 기초로 한 펀드가 많다고 가정하였고 이를 펀드업무의 선진화 정도로 추정하였다. 중국의 경우 정확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펀드산업이 상당히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경쟁력지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한·중·일 3국의 투신업경쟁력은 한국 3, 일본 5 그리고 중국 2로 각각 추정되었다.

<그림 4-12> 한·중·일 투신업 경쟁력지수



3. 소결

한·중·일 3국 금융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은행업이 다른 분야보다 국제적인 경쟁력에 다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금융서비스의 총 지수를 비교해보면, 한·중·일 은행의 경쟁력지수가 다른 금융서비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중·일 금융서비스 중 은행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한·중·일 공히 가장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증권업과 손보사로 나타났다.

둘째,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기관과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차이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금융기관이 규모면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10년간의 경제 침체 및 금융구조조정의 지연 등으로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금융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기관의 근본적인 경쟁력제고 노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은 아직도 금융 저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본은 대부분의 금융서비스기관에서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금융시장이 지난 10년간 부진한 상황에서 수익성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셋째,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국제적 경쟁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간 시장진출이 미미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국내시장 진출이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일본은 도쿄 미쓰비시를 비롯해서 총 6개 은행법인과 3개 사무소가 국내에 진출해 있으며, 중국은 중국 공상은행을 비롯한 2개 법인과 1개 사무소가 국내에 진출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국내 진출은 미국과 영

국제 은행인 시티은행과 홍콩 상하이은행에 비해 은행업무 영역이 도매 은행업무에 치중되어 있고, 자국기업 관련은행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다. 증권인 경우에는 일본의 노무라 증권과 다이와 증권만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고, 중국의 증권사는 국내에 진출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다.

<표 4-27>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국가	규모	범위	수익성	총 지수
은행	한국	2	5	6	4.3
	일본	8	4	3	5
	중국	4	2	4	3
증권	한국	3	3	3	3
	일본	6	3	2	3.6
	중국	2	2	2	2
생명보험	한국	3	5	4	4
	일본	4	6	3	4.3
	중국	3	2	2	2
손해보험	한국	2	3	4	3
	일본	3	6	3	4
	중국	1	2	5	2.6
투자신탁	한국	2	3	3	2.6
	일본	5	4	5	4.6
	중국	1	2	2	1.6

제5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본 장에서는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체결시 검토되어야 하는 주요항목 및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의 입장에서 국내 금융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떻게 한·중·일 FTA를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고, 결과적으로 본격적인 FTA 협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기재방식은 크게 자유화를 약속하는 분야만을 기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과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가 자유화됨을 상정하고 그렇지 못한 분야나 조치만을 유보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대표적인 것은 GATS이며, EU가 속한 FTA나 최근의 일본-싱가포르의 EPA도 이에 해당한다. 네거티브 리스트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NAFTA를 들 수 있으며, 이후 미국과 체결한 FTA나 한·칠레 FTA도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

두 방식 모두 국내 또는 국제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성적 차이점을 갖는다고 주장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선호하는 측에 따르면 이 방식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장치라고 지적되고 있다.¹³⁾ 첫째,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현상동결(standstill)을 중요한 특성으로 갖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현재 상태를 구

13) OECD(2002), pp. 18~19.

속함으로써 자유화의 보다 강력한 토대를 갖추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현존 자유화 상태에서 후퇴하지 못하게 하는 lock-in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네거티브 방식은 양허된 사항과 실제 적용되는 사항간의 괴리를 허용하는 GATS의 약점을 방지한다. 둘째,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거버넌스를 제고시키는 또 다른 점은 투명성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유보리스트에 의해 잠재적 서비스공급자에게 해당시장에서의 시장접근상 제한조치의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한조치목록은 또한 국내 규제담당자와 협상담당자간의 국내정책 대화의 유용한 수단의 역할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을 갖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협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작용한다. 이 점이 바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실제 국제무역협정에서 빈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국경간 거래의 경우는 국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규제가 마련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협정이 발효할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정부가 미래에 차별적이거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조치를 도입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와 같이 원론적으로 볼 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건상 이를 전면적으로 한·중·일 금융서비스협상에서 채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유보리스트에 금융서비스의 하위분야를 포괄적으로 기재한다면, 오히려 자유화를 촉진시킨다는 당초 목적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한·중·일 3국의 법체계가 포지티브 리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중·일 FTA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금융서비스 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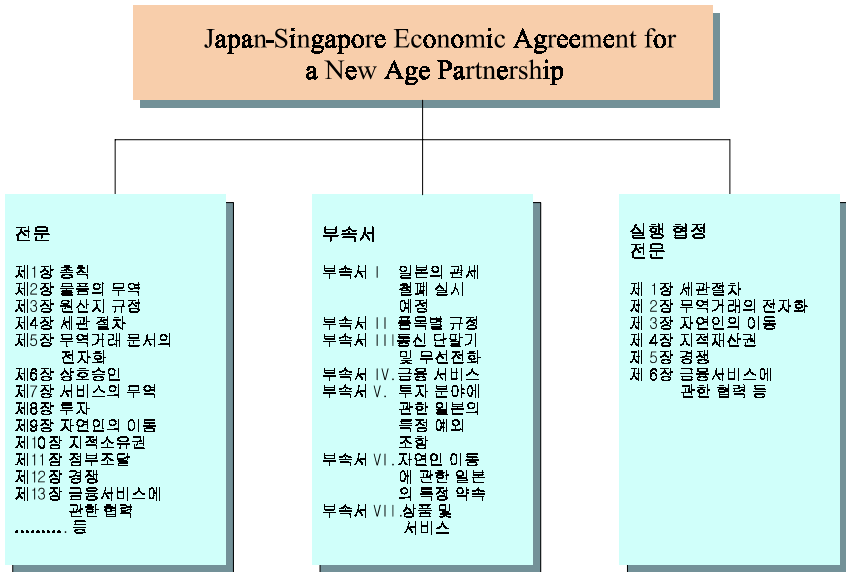
한·중·일 FTA는 기본적으로 GATS의 금융서비스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FTA의 전문에 금융서비스를 독립된 장(chapter)으로 구성하고, 금융부속서와 실행협정을 기재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GATS 형태의 채택은 우선 일본-싱가포르 FTA의 체제와 유사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추가검토의 비용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도 다자간협상이 경험을 통해 그동안 익숙한 체제라는 장점이 있다 (<그림 5-1> 참고).¹⁴⁾

금융서비스의 전문(chapter)에서는 금융서비스 부문의 주요 의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FTA 협정에서의 금융서비스 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재언급하고, 향후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과 싱가포르의 FTA 금융서비스 본문에서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규제감독에 관한 사항(107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108조), 금융시장기반 개선(109조), 아시아 지역 내 금융시장 발전(110조), 금융서비스 협력에 관한 합동위원회 설립(111조) 등을 전문에 기술하고 있다. 금융부속서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국내 규제의 예외인정 문제, 분쟁해결기구,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허용 문제 등을 명확히 설정한다. 실행협정은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는 장이다. 일·싱가포르의 금융서비스 실행협정은 금융규제의 협력, 자본시장 발전 협력, 채권시장의 발전, 공동 equity fund의 설립 및 주식투자 확대, 그리고 통화 및 금융안정 및 엔화 국제화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 특히 한·일 FTA에서의 금융서비스 부분 실행협정은 금융서비스의 교역과 상호

14) 일본 싱가포르의 FTA는 총 22장의 전문, 7개의 부속서와 15장의 실행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출을 촉진하는 부수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합의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5-1> 일·싱가포르 FTA체제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서비스 협상에서의 범위와 정의는 금융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서비스 자유화의 기재 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는 경우,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정의도 GATS 형태와 같이 열거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이 한·중·일간의 금융서비스 범위와 감독체제의 상이성에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의 정의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 제공

기관에 따라 설립요건 및 영업범위, 그리고 감독 규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즉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의 실제 기능보다는 금융 기관 자체의 고유업무에 따라 감독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WTO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정의가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음에 따라 국내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정의에 합치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양허안의 작성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의 금융서비스협상에서는 보다 정확히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정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일의 법률체제가 대륙법(continenta law)에 근거하고 있고, 감독체제가 금융기관별로 분류되어 있어, 다자간 금융서비스협상의 경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정의를 설정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금융감독체제를 기능별로 정비하려 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고 한·중·일 FTA의 금융서비스범위와 정의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시장접근

한국과 일본은 대부분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도 금융서비스 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FTA에서는 기존 GATS 제16조 2항의 시장접근 조항 규정을 원용하는 수준에서 시장접근 조항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한·중 FTA의 금융서비스 부분에서는 중국이 시장접근 제한 사항을 WTO에 제시한 수준보다 높게 양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국경간 거래

국경간 거래의 허용 여부는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부문에서 중요

한 협상대상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양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의 무역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은 더욱이 국내 투자자 및 소비자보호, 금융감독의 건전성 그리고 국내 금융산업의 보호를 이유로 자본이동이 수반된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각국의 금융자유화 및 IT 기술의 발달에 기인하여 금융서비스의 국제적인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도매 금융업뿐만 아니라 소매 금융업에서도 국경간 공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선진국들이 GATS 협상을 통해 국내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및 소비에 대한 개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자간 협상에서의 국경간 거래 개방압력을 당분간 수용하기 어렵다면, 한·중·일 FTA에서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에 대해 서로 자유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일 FTA에서 국경간 공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경간 공급에 대한 차별적 자유화는 국내 감독 및 건전성 규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광고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광고에 대해서 양국의 감독기관이 이를 인가하는 방식을 취해볼 수 있다. 일부 중요한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 등록을 요구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소매금융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국가의 감독당국에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소비자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신금융서비스

일·싱가포르 EPA의 금융서비스 부속서는 신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

외에는 현 GATS의 금융서비스 부속서 내용을 그대로 참고한 것이 대부분이다.¹⁵⁾ 신금융서비스 관련규정은 현재 GATS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의 B.7항을 좀더 발전시킨 것이다. 즉 Understanding B.7항에서는 회원국은 자신의 영토 내에 설립된 타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영토 내에서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싱가포르 EPA에서는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신금융서비스의 조항은 비차별의 전제하에서 이전의 체약국의 관련면허조건, 제도상 및 법적 형태의 요건에 따른다”라는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한·일 FTA에서 이러한 신금융서비스 관련 조항을 채택할 경우,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으나 일본에서는 공급되는 신과생상품의 공급이나, surety bond, 기업연금, ECN(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및 대체증권 거래소(ATP) 등 일본의 금융기관에 의한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자유화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일 금융시장의 현 상황을 비교하여 볼 때 이를 부담으로 우려하기보다는 기회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IMF 구조개혁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신금융서비스가 상당부분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 시장에 비해 크게 부담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신금융서비스는 한국이 동북아 금융 중심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제외한다면 그 설득력이 약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신금융서비스 관련규정을 채택하는 방향에서 향후 가능성이 있는 감독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입장이 바람직하다.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혹 일본의 금융시장이 우위를 갖는 신금융서비스의 추가개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15) 신금융서비스는 기존의 상품 또는 새로운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나 상품이 인도되는 방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특정 체약국 내에서는 어떤 금융기관도 공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체약국 내에서는 공급되는 금융서비스로 정의된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전성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분쟁해결기구

한·중·일 FTA의 금융서비스 chapter에서 금융서비스 부분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쟁해결규정을 삽입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FTA 분쟁해결기구의 주요 체제를 인정하면서 특히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국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분쟁해결위원회의 설정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바. 적용대상 제외

한·중·일 FTA에서는 금융서비스의 건전성 규제를 채택할 권리를 보장받는 건전성 규제의 예외조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 권한의 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외국인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법정사회보장제도나 공공퇴직연금제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한·중·일 FTA 협정에서 통화정책 및 외환정책에 의해 수행되는 조치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 신규조항

최근의 FTA 협정은 금융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의 신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조항의 범위는 FTA의 특성상 다양하며, 유연하게 설정될 수 있다. 한·중·일 FTA에서는 3국 자본시장의 상호발전을 위해 시장통합에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한·중·일 FTA에서의 금융서비스협상은 단순히 금융서비스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한 자유화조치를 검토하는 소극적인 협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즉 한·중·일 FTA에서의 금융서비스협상은 보다 적극적으로 한·중·일 자본시장의 발전 및 통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첫째,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서비스협상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의 금융서비스기관은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금융기관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경쟁력이 미흡하고,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교역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의 국내 자본시장규모는 매우 크다. 만약 한·중·일의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진출을 대폭적으로 활성화시키거나 궁극적으로 시장을 통합시킨다면, 각국의 금융서비스 제공 기관의 입장에서는 자본조달 및 운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성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을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일 3국의 무역거래규모에 비해 3국의 자본거래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의 한·중·일 상호가 국경간 거래의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3국간의 자본시장 연계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2003년 8월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의 주식 총액은 120조 원을 상회하여 전체 시가총액(316조 원)의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으로부터의 주식투자는 전체 외국인 거래비중 중 0.5%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상장 채권 주식의 외국인 보유비중은 2003년 8월 현재 0.19%에 지나지 않는다.

<표 5-1> 국내 외국인 주식투자현황(2003. 8)

(단위: 억 원, 결제기준)

국 별	매 수	매 도	순 매 수	거래비중*
미 국	23,819	13,844	9,975	30.5
영 국	15,775	13,155	2,620	23.4
일 본	213	357	△144	0.5
네덜란드	1,609	1,630	△21	2.6
말레이시아	1,918	1,284	634	2.6
싱가포르	2,240	2,720	△480	4.0
룩셈부르크	5,059	3,453	1,606	6.9
아일랜드	2,287	1,873	414	3.4
버진아일랜드	636	275	361	0.7
기 타	16,905	14,496	2,409	25.4
총 계	70,461	53,087	17,374	100

주: * 전체 외국인 거래대금 중 해당국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금감원, 2003년 8월 중 외국인 투자 현황.

일본 자본시장으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중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는 2002년 전체 일본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0.36%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는 대부분 채권 투자이며 주식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본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중 한국으로의 투자는 2002년 전체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의 0.16%에 불과하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주식보다는 채권에 치중되어 있으나, 한국에 대한 채권투자는 일본의 2002년 전체 채권투자의 0.14%를 기록한 반면, 주식투자는 0.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자본거래의 제약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¹⁶⁾

16) 물론 이는 중국 자료의 부재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표 5-2〉 일본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단위: 1억 엔, %)

	일본으로의 외국인 자본투자			한국으로부터의 자본투자		
	주식	채권	전체	주식	채권	전체
2001	779,015	522,905	1,301,920	4(0.0005)	5,478(1.04)	5,482(0.42)
2002	644,372	582,775	1,227,147	2(0.0003)	4,491(0.7)	4,493(0.36)

주: 투자유입은 금융상품 매수규모를 나타냄.

()는 전체 일본의 외국인 투자 중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비중을 나타냄.

자료: Bank of Japan, 2003.

〈표 5-3〉 일본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단위: 1억 엔, %)

	일본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주식	채권	전체	주식	채권	전체
1997	136,194	1,774,491	1,910,685	262(0.19)	2,191(0.12)	2,453(0.12)
1998	162,507	1,611,979	1,774,486	294(0.18)	1,713(0.16)	2,007(0.11)
1999	198,290	903,361	1,101,651	776(0.39)	1,432(0.15)	2,208(0.20)
2000	222,435	929,894	1,152,329	748(0.33)	1,693(0.18)	2,441(0.21)
2001	176,936	1,401,566	1,578,500	386(0.21)	1,258(0.08)	1,644(0.10)
2002	197,698	1,281,587	1,479,285	667(0.33)	1,832(0.14)	2,499(0.16)

주: 투자유입은 금융상품 매수규모를 나타냄.

()는 전체 일본의 외국인 투자 중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비중을 나타냄.

자료: Bank of Japan, 2003.

셋째, 현재의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개방 정도를 감안할 때, FTA 협상에서 3국이 공히 WTO 이상의 개방을 필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일본은 이미 선진국 수준의 금융서비스 개방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또한 WTO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최근 OECD 가입 조건과 최근 자유화조치를 반영한다면, 국경간 거래를 제외한 부분에서 많은 자유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FTA의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추가적이고 차별적인 자유화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자유화조치가 필요하지만 한국에 대해 FTA 체결에 따라 차별적인 자유화조치를 제공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즉 한·중·일 FTA에서 WTO + 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WTO 수준에서만 극단적으로 금융서비스협상을 한정할 경우, 이는 근본적으로 FTA에서 차별적인 금융서비스 chapter나 annex가 필요 없을 것이다. 물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금융서비스와 국경간 거래 등에서 한국이 WTO에 양허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한·중·일 FTA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근 FTA의 새로운 조류에서 나타나듯이 시장 통합 및 감독의 harmonization과 같은 적극적인 금융서비스협상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 자본시장 연계 및 통합

최근 선진국의 자본시장은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국경간 자본거래가 확대되면서 주요 거래소 시장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각국의 금융자유화 및 정보통신 발전은 자본시장의 경쟁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투자가는 다양한 자산을 구성하고 새로운 파생상품을 설계함에 따라 자본시장간의 연계와 통합이 확대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자본시장의 주요 참가자들 간의 전략적인 제휴는 각국 자본시장의 금융심화와 유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 거래소간의 연계와 통합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거래소 이용자 및 투자가간의 금융비용 감소, 거래기간 단축, 익명성, 24시간 거래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소간의 통합은 확산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통합은 국경간 금융상품의 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거래소 통합은 결국 network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network 효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높인다는 것이

〈표 5-4〉 주요 선진국의 거래소 통합 현황

Market or Exchange network	Average Daily trading volume(\$ billion)	Market Capitalization (\$ billion)	Links with other Exchanges or ECNs
NYSE	35	12,000	Alliance with Tokyo, HK, Australian, Toronto, Mexico, Sao Paulo, Euronext
NASDAQ	41.5	5,020	All ECN; deal with OSAKA, Deutche Boerse, London, Quebec, Hong Kong and Australia
Tokyo Stock Exchange	6.8	4,100	Cooperate links with Korea, Philipines, Singapore, Thailand and NYSE
London Stock Exchange	13.5	2,800	Deutche Boerse Merger, Nasdaq joint venture
Toronto Stock Exchange	2.85	1,700	NYSE, Euronext, HKSE, Mexico Boisa, Sao Paulo
Deutche Boerse	4.53	1,500	Merger with London Stock Exchange(ix), Nasdaq joint venture, Market XT joint venture
Paris Bourse	4.18	1,500	Euronext Alliance
HKSE	1.5	568	Co-listing Agreement with NASDQ, NYSE
Australian SE	0.8	370	NASDAQ, Co-listing with Singapore
Sao Paulo Boverspa	0.4	208	London SE, Lisbon SE, Argent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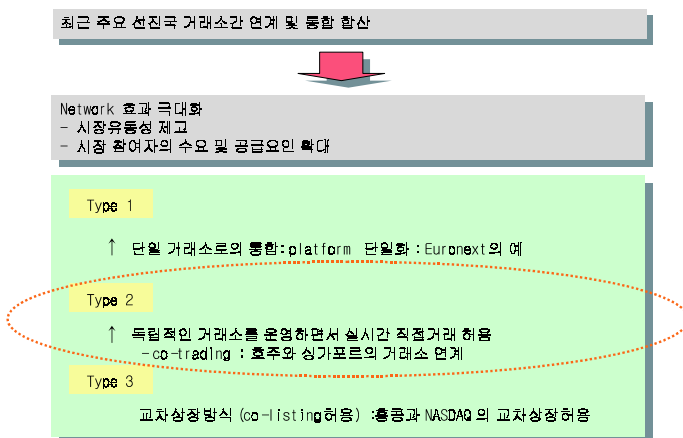
다. 거래소 통합으로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증가시키게 된다. 즉 수요자의 확대로 투자규모는 증가하게 되고,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증대는 균형가격의 설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즉 다양한 투자 동기를 지닌 투자가의 확대는 가격변동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거래소 통합으로 투자기회가 다양화되면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균형가격의 문제가 적어질 수 있다. 또한 상호 연계된 시장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활발히 유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자본시장 연계 및 통합은 아시아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2000년 호주와 싱가포르의 거래소가 통합하였으며,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양국의 거래소 통합을 합의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일 FTA의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각국의 자본 시장 연계 및 통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연계 및 통합은 한·중·일 3국의 국경간 금융상품의 거래를 확대시킬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연계 및 통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거래소의 platform을 단일화하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소를 통해 각 거래소의 거래를 통합시키는 방식이다. Euronext가 대표적인 예이다. Euronext는 유럽 자본시장의 유동성과 거래비용을 축소하고, 단일유럽 자본시장의 구현을 위해 2000년 9월 암스테르담, 브뤼셀 그리고 파리의 거래소를 통합하여 만든 통합거래소이다. 이와 같은 거래소의 완전한 통합은 국경간 거래소를 통합함으로써 완전히 국경간 거래를 국경 내 거래로 전환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두 번째 형태는 체결국 거래소시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각 거래소간의 직접거래를 실시간으로 교차거래(co-trading)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림 5-2> 자본시장 통합방안



싱가포르와 호주의 거래소 연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즉 양국은 각국의 상호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 대해서 국경간 브로커간의 실시간거래를 허용하면서 거래소를 연계하였다. 세 번째 형태는 소위 교차상장(co-listing)을 허용하는 것이다. 홍콩이 미국의 NASDAQ과의 교차상장을 허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중·일 3국의 거래소 통합에 있어 거래소의 완전한 통합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증권거래에 대한 제한이 상당부분 남아 있는 한 3국 거래소의 통합 및 연계는 교차거래(co-trading)이나 교차상장(co-listing)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규제협력

금융시장의 통합은 금융규제의 harmonization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경간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규제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국경간 금융거래의 기술적인 문제, 즉 거래 시스템, 결제 및 청산 시스템의 문제는 해결 가능한 일이나, 규제의 상이성은 국경간 금융상품의 무역을 억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장의 자유화 및 통합화를 위해 규제의 상이성이 걸림돌이 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동일한 규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규제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는 각국의 금융규제가 자국의 금융시스템, 금융시장 발전정도, 시장 인프라, 법률 체계 및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의 상이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의 방식이다.

금융시장 통합에 무엇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유럽의 경우 소위 단일여권(single passport) 방식을 통해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의 국경간 시장 진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과 이에 대한

서비스시장도 자유롭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¹⁷⁾ 이러한 유럽의 시장통합은 소위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에 기초하고 있다. 상호인정이란 기본적으로 각국의 자국규제를 상호인정하고, 자국 규제에 의해 국경간 금융거래를 인정하는 것이다. 유럽은 1987년 로마 의정서의 채택으로 회원국 내의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상호진출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시장접근을 자유화하는 것으로는 단일금융시장으로의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89년 은행간 Second Banking Directives(SBD)를 은행간 서비스시장의 상호인정을 첨가하게 된다. 즉 타국에 설립된 자국의 금융서비스 기관의 감독과 규제는 자국의 금융규제기관이 담당하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 자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를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유럽의 국경간 증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996년 EC는 투자서비스 지침서(Investment Services Directive)를 채택하였다. 이는 EC 내의 증권투자의 시장참여자, 즉 브로커 딜러, 자산관리자 및 투자자문업에 대한 단일여권방식을 포함함은 물론 상호인정을 통해 각국의 금융규제 및 감독을 상호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경간 금융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¹⁸⁾

이러한 상호인정은 WTO의 시장접근방식인 자국민 대우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자국민 대우를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자국민 대우는 기본적으로 내국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동일하게 자국 내 법을 적용함으로써 동등한 위치(level play field)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법률 체제 및 금융 감독 및 규제가 외국과 크게 다르다면,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진출은 상당한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시장접근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는 없는 금융상품을 외국 금융기관이 제공하려 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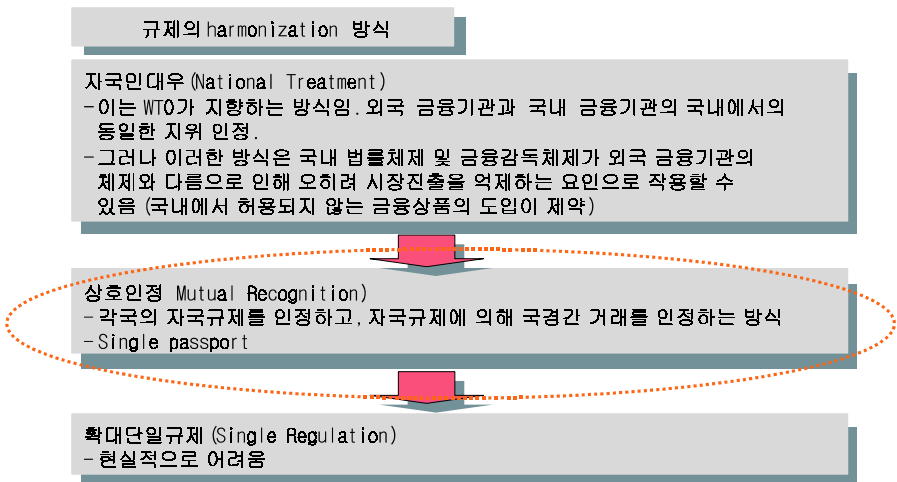
17) 최근 유럽의 시장통합과 관련해서는 Benn(2002) 참고.

18) 유럽의 규제협력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Jordan and Giovanni(2002) 참고.

국내 금융감독기관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외국 금융상품이 국내에 제공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일여권 및 상호인정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이 자국에서 인정된 금융서비스를 국내에서 상호인증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호인정은 내국민대우보다도 더 시장통합에 적극적인 방식이다. 규제의 상호인정은 자국의 금융규제 및 감독을 인정하면서 외국 기관과 국내 기관의 동일한 시장접근을 인정함은 물론 서비스제공기관의 자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일 금융서비스협력에 있어 규제협력은 한·중·일 자본시장의 국경간 거래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WTO 금융서비스 양허를 통해 내국민대우를 인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장접근도 개방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한·일간의 자본거래가 미미하다는 것은 물론 양국간 자본거래의 수익(return)과 위험(risk)이 경제적으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각국의 감독 및

<그림 5-3> 규제 통합방안



규제가 양국의 자본거래를 저해한다면 이는 FTA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인정과 최소규제 harmonization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시장 인프라 협력

한·중·일 자본시장의 통합과 연계에 있어 국경간 자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장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¹⁹⁾ 한·중·일 3국의 자본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 및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경간 자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본거래를 결제하는 하부구조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경간 증권거래의 결제에는 (i) 현지 CSD의 회원인 현지수탁기관(local custodian) (ii) 국제수탁기관(global custodian: GC), (iii) 국제증권보관기관(ICSD), 그리고 (iv) NCSDB간 연계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²⁰⁾

국경간 증권거래 결제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증권이 예탁되어 있는 NCSDB의 회원인 현지수탁기관(local custodian)을 이용하거나 하위 보관기관으로 현지수탁기관을 고용하고 있는 국제수탁기관(global custodian)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지수탁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은 투자자가 투자할 대상국 각각에 별도로 현지수탁기관을 지정해야 하고 현지수탁기관이 요구하는 요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종종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은 지사를 포함한 하위 수탁기관의 영업망을 통해 다수의 시장에서의 결제 서비스를 단일창구에서 제공하는 국제수탁기관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 국제수탁기관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국제수탁기관들이 대부분 국제적인

19) 국경간 증권거래의 연계와 관련된 사항은 Giordano (2002) 참고.

20) 결제청산시스템의 아시아 연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Oh, Park, Park, Rhee (2003) 참고.

거대 상업은행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은행업무와 다국통화에 대한 현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현재 아시아 증권의 결제는 대부분 국제수탁기관을 통해 달러와 같은 국제통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Euroclear와 같은 ICSD에 예약된 채권거래의 경우 매매당 사자가 결제통화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Euroclear가 결제통화로 지정하고 있는 통화는 <표 5-2>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통화로 한정되어 있다. 아시아국가 중 Euroclear의 결제대상 통화는 7개국 통화에 불과하며, 한국, 중국, 인도, 대만의 통화는 결제통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표 5-5> Euroclear의 주요 결제통화

지 역	국 가	비 고
아시아 지역	호주 ARS, 뉴질랜드 NZD, 홍콩 HKD, 인도네시아 IDR, 일본 JPY, 말레이시아 MYR, 필리핀 PHP, 싱가포르 SGD, 태국 THB	9개국 9개 통화
유럽 지역	EURO(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NOK, 스웨덴 SEK, 덴마크 DKK, 스위스 CHF, 영국 GBP, (크로아티아 HRK, 체코 CZK, 아이슬란드 ISK, 슬로바키아 SKK, 에스토니아 EEK, 헝가리 HUF, 리투아니아 LTL, 라트비아 LVL, 폴란드 PLN) ¹⁾	26개국 15개 통화
미주 지역	미국 USD, 아르헨티나ARS, 캐나다 CAD, 멕시코 MXN	4개국 4개 통화
중동 및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ZAR, (쿠웨이트 KWD, 이스라엘 ILS) ¹⁾	3개국 3개 통화
기 타	금 XAU ²⁾	1개 통화
총 계	42개국 32개 통화	

주: 1) () 안은 Euroclear의 결제국은 아니지만 결제통화로 사용되는 경우임.

※ 러시아는 Euroclear의 결제국이지만 러시아 루블은 Euroclear 결제통화가 아님(USD로 결제).

2) 금의 경우 금 가치에 따라 결제통화로 환산하여 결제.

자료: Euroclear(2002), Quick Cash Card.(June)

아시아 주요국의 통화가 Euroclear의 결제통화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이들 통화에 대해서는 태환성(convertibility)에 규제가 있거나 외환규제의 해석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비거주자 원화계정간 원화자금의 이체(won-denominated capital transactions between non-residents)는 모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증권거래규정은 한국에서 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모두 개별적으로 현금계좌(원화계좌 및 외화계좌)를 개설하고 자금거래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ICSD는 한국 CSD에 현금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개설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원화는 Euroclear의 결제통화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제증권보관 기관에 결제통화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결제는 Euroclear와 같은 기관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ICSD와 각국의 CSD 또는 ICSD와 각국 CSD의 회원인 수탁은행간에 연계(linkage)가 필요하다. 이처럼 ICSD와 연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결제국이라 부르는데 2002년 현재, 아시아 9개국, 유럽 16개국, 미주 4개국, 러시아 포함 기타 2개국 등 총 31개국이 결제국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결제계약

<표 5-6> Euroclear 결제 연계 국가

지 역	국 가	비 고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9개국
유럽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16개국
미 주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멕시코	4개국
기 타	러시아, 남아프리카	2개국
총 계	31개국(Specialized Depository, Common Depository, 청산예탁기관 포함)	

자료: Euroclear(2002), *Quick Cash Card*.(June)

국과 금융센터인 홍콩, 싱가포르, 일본을 제외하면 실제로 Euroclear로부터 결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시아국가는 태국과 필리핀의 2개국에 불과하며, 한국, 중국, 대만, 인도, 파키스탄 등 대부분의 아시아국가에 대해서 Euroclear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결제기관의 한국과 중국의 CSD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한·중·일 국경간 자본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거래자가 각국에 개별적으로 수탁은행을 지정하거나 거래계좌를 개설하는 대신 각국의 CSD를 연계함으로써 자국의 CSD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모든 국제거래를 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각국 CSD의 상호연계 구상으로는 유럽증권예탁기관협회(European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Association : ECSDA)의 연계구상과 홍콩 금융당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의 구상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각국의 NCSO간 상호연계(bilateral linkage)가 가능하면 ICSD를 통하지 않고서도 국제 증권거래의 결제(cross border settlement)가 가능해진다.

한·중·일 3국간의 CSD간 상호연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업무처리 절차가 단순화된다. 제반업무를 상대방 CSD에 개설한 해당 투자자의 CSD 통합계좌에 의해 처리하므로 개별보관기관 이용시에 비해 커뮤니케이션 절차가 간단해진다. 또한 CSD간 실시간 연계는 투자자에게 자산에 대한 신속한 권리행사를 가능케 한다. 둘째, 시장 효율성이 제고됨은 물론 투자비용이 절감된다.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개별처리에 비해 투자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창구단일화로 시장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특히 소액투자자의 국경간 증권투자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안전성 외에도 CSD를 통한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효과 때문이다.

한·중·일 3국 각국의 국제결제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결제 시스템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결제 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아 상호연계가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은 결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RTGS와 DVP를 모두 갖춘 반면, 중국의 경우는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금융서비스 협상에서는 적극적으로 결제 시스템의 연계를 고려하고 중국과의 금융서비스 협상에서는 우선 결제 시스템의 결제 위험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결제 시스템의 연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5-7> 아시아 각국의 국제결제시스템 현황

나 라	결제주기	book-entry	RTGS	DVP	Euroclear결제
호주	T+3	○	○	○	○
뉴질랜드	T+3	○	○	○	○
홍콩	T+2	○	○	○	○
인도네시아	T+4	×	×	×	△
말레이시아	T+1	○	○	○	△
태국	T+2	×			○
필리핀	T+0	○	×	○	○
일본	T+3	○	○	○	×
한국	T+2	○	○	○	×
중국	T+1	○			×
대만	T+2	○	×	×	×
싱가포르	T+1	○	○	○	×
인도	×	×	×	×	×
파키스탄	T+3	○	×	○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RTA)이 확산됨으로 인해 우리도 이러한 지역주의 확산에 대해 더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최근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면서 유럽식 경제통합을 목표로 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시장통합문제는 더욱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의 자유무역협정의 특성은 단순히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시장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비교역재로 취급되었던 서비스산업의 국경간 무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체결국간 개방요인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간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FTA에서는 금융서비스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NAFTA 및 일본과 싱가포르의 FTA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관세인하 및 투자제한조치를 철폐하는 것은 물론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 통합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정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일 또는 한·중·일간의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항을 어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추정해본 결과, 한·중·일 3국 금융서비스의 상대적 경쟁력은 모든 부문에서 일본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그리고 중국순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중·일 3국의 국경간 금융상품거래가 미미하고, 각 국 금융서비스기관의 상호 시장진출이 미미한 원인은 한·중·일 금융서비스기관의 국제

적인 경쟁력 미흡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중·일 3국 금융서비스 부문의 국제경쟁력 미흡은 한·중·일 FTA의 금융서비스에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개방을 차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쉽게 개선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현재 한·중·일 3국의 WTO 양허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3국간 또는 양자간 차별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한·중·일 금융서비스기관의 상호 진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3국의 금융서비스기관이 국내 시장에 한정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산조달 및 운영에 있어서도 국내시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더욱이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기관 중 은행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중·일 3국 상업은행의 상호진출과 국경간 거래는 현시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의 경우, 시장진입이 EU 회원국간 자유화되었고, 동일한 화폐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소매금융의 상호진출 및 국경간 거래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도 한·중·일 3국의 은행부분의 상호진출과 국경간 거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한·중·일 3국의 투자은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증권사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경쟁력이 미흡하다. 중국의 경우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친 제약이 상당부분 있어 이를 철폐한다면 일부 기관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최소한 우리의 입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중국진출은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적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후나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중·일 3국 금융서비스의 상호진출과 국경간 거래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한·중·일 금융서비스협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해 각국 금융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고, 각국의 금융 국제화를 촉진시키고, 국제적 경쟁력을 상호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서비스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금융서비스협상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금융서비스협상은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더욱 확대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는 지역무역협정의 기본 골격을 구성한다. 그러나 보다 많은 무역 및 투자의 국경간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의 원활한 국경간 거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금융서비스 협상은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금융산업 및 금융서비스기관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국내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화 및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왔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가입과 WTO 금융서비스 협상 등 다자간 협상체계에서 개방화와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다자간 협상은 한국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개방화와 자유화를 통한 금융선진화를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국제금융허브 구축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이다. 한국이 동아시아 국제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개방화조치가 필요하며, 동시에 국제적 정합성에 부응하는 금융규제 및 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한 금융선진화이다. 즉 한·중·일 또는 향후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시 금융서비스부문의 협정을 보다 적극적인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를 시행하고, 이를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서비스 선진화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서비스부문의 협상은 체결국간의 자본시장 연계를 통해 단순한 금융서비스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시장의 국경간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통합을 보다 가속화시키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장통합을 위한 자본시장의 연계 및 통합, 규제 *harmonization*, 그리고 시

장 인프라의 협력 등 다양한 자본시장의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각 부분의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3국간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기구를 설립하고, 향후 각 부분의 실질적인 시행조치를 위한 금융서비스 행동 계획(Financial Service Action Plan)을 설정하고 이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감원. 『금융통계월보』. 각호.
- 증권업협회. 2002. 『최근 증권회사 영업현황 및 시사점』.
- 김준동·양두용. 2002. 『WTO 금융서비스협상 대응방안』. 용역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영. 2000.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 금융서비스』. 정책연구 00-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ASX-SGX Market Linkage Project. 2002. “Overview of the Australian Stock Exchange/Singapore Exchange Link”
- Benn Steil. 2002. “Building a Transatlantic Securities Market.”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ISMA).
- BIS. 2001. *Quarterly Review*
- Euroclear. 2002. *Quick Cash Card*.(June)
- Giordano, Francesco. 2002 “Cross-border trading in financial securities in Europe: the role of central counterparty.” European Capital Market Institute.
- Jordan, Cally and Giovanni Majnoni. 2002. “Financial Regulatory Harmonization and the Globalization of Finan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919.
- IMF. 1995~2001.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OECD. 2002. Bank Profitability.
- OECD. 2001.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 Oh Gyutaeg, Daekeun Park, Jaeha Park, and Changyong Rhee. 2003. “Building a Settlement Infrastructure for the Asian Bond Markets: Asia Settle.” Preceeding paper, Workshop on East Asia’s Strategy for Regional and Global Financial Cooperation.
- Patricio Contreras, 2003. “Financial Service Trade in the Western Hemisphere.” Mimeo.
- WTO. 1996. “Opening markets in financial services and the role of the GATS.”
-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2000. “A Review of Statistics on Trade Flows in Services.” S/C/W/27/Add. 1. October.
- 鹿野嘉昭. 2001. 『日本の金融制度』. 東洋經濟新報社.
- 証券投資信託協会 編. 『証券投資信託年報』. 1988年版~2002年版.
- 生命保險協會 編. 『生命保險事業概況』. 1988年版~2002年版.
- 生命保險文化センター編. 1989~2003. 『生命保險ファクトブック』.

生命保險文化研究所 編. 1990. 『生命保險新實務口座1 總說』. 有斐閣.
全國銀行協會 金融調査部 編. 2003. 『圖說 わが国の銀行』. 財經詳報社.
全國銀行協會 編. 『全國銀行 財務諸表分析』. 1988年度決算~2002年度決算.
損害保險協會 編. 1989~2002. 『日本の損害保險ファクトブック』.
東京證券去來所 編. 1998~2002. 『證券統計年報』

주요 금융서비스기관 연례보고서

Bank of America, Annual Report, 2003.
Citigroup, Annual Report, 2003.
HSBC Holdings, Annual Report 2002.
JP Morgan Chase, Annual Report, 2003.
Mizuho Financial Group, Annual Report, 2003.
Morgan Stanley, Annual Report, 2003.
Merrill Lynch, Annual Report, 2003.
Goldman Sachs, Annual Report, 2003.
Lehman Brothers, Annual Report, 2003.
ING, Annual Report, 2003.
AXA, Annual Report, 2003.
Nippon Life, Annual Report, 2003.
Avia, Annual Report, 2003.
Allianz, Annual Report, 2003.
AIG, Annual Report, 2003.
State Farm Insurance, Annual Report, 2003.
Munich Re, Annual Report, 2003.

부 록

1. 일·한 자유무역협정 -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검토

小川英治(一橋大学)

일본 정부는 이미 2002년 11월에 싱가포르 정부와 광범위한 자유무역 협정(日本싱가포르經濟連携協定, JSEPA)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무역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양국간 협력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이 양국간 협력 부문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위한 양국간 협력 이니셔티브도 검토되었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나라의 FTA 전략』(외무성 경제국, 2002년 10월)에서 이 日本싱가포르經濟連携協定을 모델로 하여 탄력적으로 여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확장해가는 것을 FTA 전략의 방침으로 하고 있다. 日韓자유무역협정의 체결시 일본과 한국간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면, 일한자유무역협정은 日本싱가포르經濟連携協定을 모델로 하면서도, 그것 이하(JSEPA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JSEPA 플러스)하는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서비스무역자유화 및 양국간 협력은 일한자유무역협정의 주요한 포인트로서 위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WTO(GATS)에서 금융서비스의 양허 가운데 허용가능 목록(positive list)을 일본과 한국에 대해 비교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제한되는 목록(negative list)을 제출하여 비교검토하는 것이 보다 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연결될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법률상의(*de jure*) 차별적 규제뿐만 아니라 법률상에 나타나지 않은 상대국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상의(*de facto*) 차별적 대우를 목록으로 만들어 대처하지 않으면, 표면적인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하에서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1. 금융규제감독

정보기술(IT)의 발전에 수반하여 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금융규제감독은 일국 내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적인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을 회피하고, 그리고 체계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제적인 피해확산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글로벌한 감독을 행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일본과 한국의 금융규제당국이 상호간에 상대국의 금융규제체계를 이해하고, 금융감독을 협력해나가는 것이 국제적인 체계적 위험의 회피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2. 자본시장의 연계

국제자본시장에서는 정보기술(IT)의 발전에 수반해 각국 자본시장간의 연계를 제고함으로써 각각 시장의 폭과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더욱이 각각의 증권거래소 등의 자본시장은 자본시장간의 연계를 제고시키는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경쟁적으로 시장의 폭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여타 시장을 압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일본과 한국의 증권거래소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일본과 한국의 각각의 자본시장간에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촉진하고, 양국의 자본시장에서의 폭과 유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국 자본시장의 연계에 의해 양국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금융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더욱 확대시킨다. 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상품의 교차거래(cross transactions)가 가능하게 되면, 양국 내 및 동아시아지역 내의 투자가, 그리고 구미의 국제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의 자본시장에서 공동거래의 연계가 발전하게 되면, 양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투자가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에게는 국경간 거래(cross border)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거래비용의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시장의 유동성이 제고되는 것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자본시장의 인프라 정비

자본시장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인프라 정비는 정부에 의한 주도가 가능하며, 일본과 한국이 협력하여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증권결제에 있어서 양국의 중앙증권예탁기관의 연계에 의해 투자가가 기존의 기관을 통해 국경간 거래의 결제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일본과 한국간의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의 연계에 의해 외환결제리스크의 최소화에 공헌할 수 있다. 셋째, 국경간 거래시 소액결제의 청산에 관해 아시아지역 청산메커니즘 혹은 일본과 한국의 자동청산기관을 연계시키는 것에 의해 일본과 한국 및 동아시아역 내의 지불흐름(payment flow)이 신속해질 수 있고, 그리고 비용삭감에도 연결될 수 있다.

4. 아시아 채권시장의 육성

아시아 채권시장 구상에서 보여지듯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깊이와 유동성이 있는 효율적인 채권시장의 육성이 ASEAN+3의 지역금융협력의 주요한 과제로 현재 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상술한 자본시장의 연계 그리고 청산 및 결제시스템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인프라 정비를 통해, 선도적으로 아시아 채권시장 구상을 추진하여 협조체제를 정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통화의 안정

일본과 한국의 통화당국은 일본과 한국 및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통화의 안정을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기초해 통화스왑 거래를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화위기의 예방을 위해 양국의 통화당국이 술선하여 감시(surveillance)를 강화해가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 예컨대 사무국의 설립 등)에 대해 양국 정부는 협력을 통해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법률상의(*de jure*) 차별적 규제뿐만 아니라 사실상의(*de facto*) 차별적 대우를 철폐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양국의 금융기관이 상호간에 상대국의 금융시장에 보다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양국간 협력은 일본과 한국간의 금융서비스 활동 및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양대축으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2. 日本金融サービス産業の現状と特徴

小川英治(一橋大学)

3. 日本

3.1. 日本金融産業の概観

3.1.1 現状

(1) 間接金融優位の資金フロー

日本では、銀行を中心とした金融仲介機関を経由した間接金融が優位にある状態が続いている。資金循環勘定表を見ると、国内非金融部門の資金調達残高の内、貸出が高い比率を占めている。しかしながら、近年においてバブル崩壊に伴う金融機関の不良債権増大のために貸し渋りが発生しているために、1990年3月末において貸出が国内非金融部門の資金調達残高の70%近くを占めていたものの、次第にその比率が減少し、2002年3月末においては貸出の比率が55%にまで低下した(表3.1.1-1)。

表 3.1.1-1 国内市場を経由した国内非金融部門の資金調達残高
(企業間信用除く)(億円)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合計		12,390,810	12,927,804	13,418,221	14,041,458	14,568,659	15,129,966	15,502,570	15,951,604	16,133,905	16,701,462	17,018,580	17,267,798	17,238,257
	構成比(%)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貸出		8,614,429	9,045,248	9,326,586	9,661,513	9,869,688	10,058,504	10,122,229	10,300,639	10,235,901	10,157,996	10,019,920	9,911,262	9,531,545
	構成比(%)	69.52	69.97	69.51	68.81	67.75	66.48	65.29	64.57	63.44	60.82	58.88	57.40	55.29
証券など	合計	3,776,381	3,882,456	4,091,635	4,379,945	4,698,971	5,071,462	5,380,341	5,650,965	5,898,004	6,543,466	6,998,660	7,356,536	7,706,712
	構成比(%)	30.48	30.03	30.49	31.19	32.25	33.52	34.71	35.43	36.56	39.18	41.12	42.60	44.71
	柱式以外	2,789,181	2,835,799	3,024,487	3,268,043	3,540,250	3,889,044	4,171,098	4,409,062	4,640,115	5,245,782	5,621,533	5,932,535	6,250,561
	の証券	22.51	21.94	22.54	23.27	24.30	25.70	26.91	27.64	28.76	31.41	33.03	34.36	36.26
	柱式	987,200	1,046,657	1,067,148	1,111,902	1,158,721	1,182,418	1,209,243	1,241,903	1,257,889	1,297,684	1,377,127	1,424,001	1,456,151
	出資金	7.97	8.10	7.95	7.92	7.95	7.82	7.80	7.79	7.80	7.77	8.09	8.25	8.45

資料: 日本銀行資金循環勘定表

(2) 金融機関・金融システムの疲弊

日本の金融機関、特に銀行は、1990年代のバブル崩壊以降、不良債権の増大によって、そのバランスシートを悪化させている。金融機関のバランスシートの悪化は、自己資本比率に現れている。日本の金融機関は、自己資本比率を維持するために、リスクを取ることを回避しようとして、リスクの高い貸出を控え、貸し渋りを引き起こしている。このような日本の金融機関のバランスシートの悪化のために、間接金融優位である日本の金融システム全体が機能不全に陥っている。

(3) 国内金融機関の国際競争力の劣位

前述した金融機関・金融システムの疲弊のために、日本の国内金融機関・金融システムに対する評価が低下している。このような金融機関・金融システムに対する評価の低下は、日本の金融機関が資金調達するに際して日本の金融機関固有のリスク・プレミアム(ジャパン・プレミアム)を要求することになる。そのため、外国で資金を調達することが困難となる時期もあった。一方、日本の金融機関が、バランスシートの悪化からリスクを取ることを回避しようとして、国際銀行融資を減少させている。

(4) 東京金融市場の空洞化

金融機関・金融システムの疲弊とは別に、1980年代後半のバブル期から日本の国内発行体と国内機関投資家が東京金融市場を利用せず、ユーロ債市場を利用するケースが多く見られる。このように東京金融市場の空洞化が発生しているために、ニューヨークやロンドンの金融市場に比較して、東京金融市場の規模が相対的に伸び悩んでいる。近年、ユーロへの通貨統合を成功させたEUにおいては、証券市場の統合によってEUにおける金融市場の効率性を高めるとともに、金融市場の厚みと流動性を増しつつある。一方、東京金融市場の規模が相対的に伸び悩んでいることは、これら

の市場の効率性や市場の厚みと流動性の面でEUの金融市場に比較して劣勢となっている。

3.1.2 日本版金融ビッグバン

(1) 日本版金融ビッグバンの3原則

日本政府は、1996年11月に、前述の諸問題を抱えた日本の金融システムを改革するために日本版金融ビッグバンに取り組み始めた。日本版金融ビッグバンは、自由(Free)、公正(Fair)、国際化(Global)という3つの原則に基づいて、国内金融システムの改革を進めていくこととなった。そして、日本版金融ビッグバンは2001年までにスケジュールに従って一応、完了した。

3つの原則のうち、自由(Free)とは、市場原理が働く自由な市場にすることを意味する。具体的には、銀行・証券・保険分野への参入を促進する。幅広いニーズに応える商品・サービス(長短分離などに基づく商品規制の撤廃、証券・銀行の取扱業務の拡大)を自由化する。多様なサービスと多様な対価を実現するために、各種手数料を自由化する。

公正(Fair)とは、透明で信頼できる市場にすることを意味し、ルールの明確化・透明化及び投資家保護が含まれる。自己責任原則の確立のために十分な情報を提供し、ルールを明確化する。それとともに、ディスクロージャーを充実・徹底する。

そして、国際化(Global)とは、国際的で時代を先取りする市場にすることを意味する。グローバル化に対応した法整備、会計制度、監督体制の整備が含まれる。デリバティブなどの展開に対応した法制度の整備や会計制度の国際標準化を図る。グローバルな監督協力体制を確立する。

(2) 各分野における金融改革

日本版金融ビッグバンによって、金融(銀行)分野においては、1998年3月に金融持株会社制度が導入された。1999年10月には専門金融機関制度に関わる規制が撤廃され、銀行・証券・信託子会社の業務制限が原則として廃止された。また、銀行本体の業務範囲が拡大され、1998年12月に銀行本体による投資信託販売が許可され、2000年10月には銀行による保険会社の子会社化、2001年4月には銀行による保険商品の販売が認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一方、金融システムの健全性を確保するために、銀行に対する早期是正措置が導入された。

証券分野においては、1998年12月に証券業・投資委託業が免許制から登録制へ移行した。また同じく1998年12月に投資信託の商品が多様化された。1999年10月には株式売買委託手数料が完全自由化された。一方で、1998年12月に証券会社の自己資本比率維持が義務付けられた。

保険分野においては、業態間の参入が促進され、前述したように、銀行による保険会社の子会社化が認められるとともに、保険会社による銀行の子会社化も1999年10月に解禁となった。また、前述したように、銀行による保険販売も認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一方で、1998年12月に保険会社に対しても早期是正措置が導入された。

外国為替分野においては、1998年4月に「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旧外為法)が改正され、「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新外為法)が施行された。従来、外国為替公認銀行のみに外国為替業務を許すという「為銀主義」が撤廃されて、外国為替業務への参入規制が撤廃され、自由化された。また、居住者が海外の銀行に預金口座を開設することも自由化された。これによって、国内居住者は、海外の銀行の預金口座を通じてクロスボーダーの決済も可能となった。海外との資本取引についても、事前許可制や事後届出制が廃止され、事後報告制度となった。さらに、企業が非居住者との間で直接にデリバティブ取引を行う際に事前届出制から事後報告制に移行した。

表 3.1.2-1 日本ビッグベンの進捗状況

年度	1997	1998	1999	2000	2001	備考
商品の自由化・多様化						
投資信託の上品の多様化	→	→				1998年 12月 実施
証券総合口座の導入	→	→				1998年 12月 実施
有価証券店頭デリバティブの解禁	→	→				1998年 12月 実施
ABS など債権等の流動化	→	→				1998年 9月 実施
電子マネー・電子決済の実現					→	検討中
業務・組織形態の自由化・多様化						
銀行・証券・信託子会社の業務制限原則廃止		→	→			1999年 10月 実施
保険会社による銀行の子会社化解禁		→	→			1999年 10月 実施
銀行本体による投資信託販売	→	→				1998年 12月 実施
普通銀行による普通社債の発行解禁		→	→			1999年 10月 実施
証券業・投資委託業の免許制から登録制の移行	→	→				1998年 12月 実施
株式販売委託手数料の自由化		→	→			1999年 10月 実施
ノンバンクの社債・CPの発行解禁		→	→			1999年 5月 実施
銀行による保険会社の子会社化				→		2000年 10月 実施
銀行による保険販売					→	2001年 4月 実施
保険相互会社の株式会社化				→		2000年 6月 実施
市場・取引のインフラおよびルールの整備						
外為法の改正	→	→				1998年 4月 実施
上場株券等の取引所集中義務の撤廃	→	→				1998年 12月 実施
柱式の上場承認の事後届出制への移行	→	→				1998年 12月 実施
デリバティブ取引一括清算ネットの導入	→	→				1998年 12月 実施
金融商品販売法の制定					→	2001年 4月 実施
税制・会計制度						
有価証券取引税・取引所税の廃止		→	→			1999年 3月 実施
連結財務諸表制度の見直し		→	→			1999年度決算より

出典: 全国銀行協会金融調査部(2003)より抜粋

3.1.3 金融環境の変化

(1) 金融監督体制の再編

① 金融監督機關の再編

日本の金融監督は、日本銀行が決済システムの円滑な運行の確保を通じて信用秩序の維持に寄与しつつ、金融庁(1998年までは大蔵省)が銀行法等に規定された監督権限に基づき金融行政を行っている。金融行政は金監督機關の裁量によるところがおおきく、かつ、その判断基準が金融機関経営の安定性の確保にあり、銀行を始めとする金融機関を保護する「護送船団方式」の行政であった。

旧大蔵省がこれまで担ってきた金融制度の企画・立案業務と民間金融機関等に対する検査・監督業務を分離することを内容とした金融監督庁設置法が1997年6月に成立した。98年6月に施行され、金融監督庁が設置された。旧大蔵省がそれまで行っていた金融機関の検査・監督業務が金融監督庁に移管された。さらに、日本の行政改革・中央省庁の再編の動きの中で、2001年7月に金融監督庁は金融庁に移行し、金融に関する検査・監督に加え、旧大蔵省金融企画局が所管していた国内金融に関する企画・立案業務についても所掌することとなった。さらに、2001年1月には、金融再生委員会の廃止に伴って、1998年10月以来金融再生委員会が担当してきた金融機関の破綻処理・危機管理が金融庁に移管された(鹿野嘉昭 2001)。

② 早期是正措置

1998年に早期是正措置が各種金融機関に導入された。銀行等の預金取扱金融機関の早期税措置は1998年4月に導入された。証券会社の自己資本比率維持の義務付けと保険会社の早期税制措置は1998年12月に導入された。

これらの早期是正措置は、自己資本比率という客観的な基準に基づき、予め定めた是正措置命令を発動するものである。早期是正措置により、(1)

金融機関の経営状況を客観的な指標で捉え、適時に是正措置を講じることにより、金融機関経営の健全性確保と経営破綻の未然防止を図ること、(2) 是正措置の発動ルールを明確化することにより、行政の透明性確保にも資すること、(3) 結果として、金融機関が破綻した場合の破綻処理コストの抑制につながるなどが期待される。

表 3.1.3-1a 預金取扱金融機関の早期是正措置

区分	自己資本比率		是正措置の内容
	国際基準行	国内基準行	
第1区分	8%未滿	4%未滿	経営改善計画(原則として資本増強に係る措置を含む)の提出・実施命令
第2区分	4%未滿	2%未滿	資本増強に係る合理的と認められる計画の提出・実施、配当・役員賞与の禁止又は抑制、総資産の圧縮又は抑制等
第2区分の2	2%未滿	1%未滿	自己資本の充実、大幅な業務の縮小、合併又は銀行業の廃止等の措置のいずれかを選択した上、当該選択に係る措置を実施
第3区分	0%未滿	0%未滿	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命令

資料: 金融庁.

表 3.1.3-1b 証券会社の自己資本規制比率

自自己資本規制比率	証券会社の対応	監督当局の対応
140%未滿～120%以上	140%を下回った都度、以下の書類を内閣総理大臣へ届出 <ul style="list-style-type: none"> 自己資本規制比率に関する届出書 自己資本規制比率の状況を維持するために自らとるべき具体的措置に関する計画書 	
120%未滿～100%以上	120%を下回った都度、以下の書類を内閣総理大臣へ届出 <ul style="list-style-type: none"> 自己資本規制比率に関する届出書 自己資本規制比率の状況を回復させるためにとるべき具体的措置に関する計画書 	公益又は投資者保護のため必要かつ適当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業務の方法の変更を命じ、財産の供託その他監督上必要な事項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表 3.1.3-1b 계속

自自己資本 規制比率	証券会社の対応	監督当局の対応
100%未滿	同上	<p>公益又は投資者保護のため必要かつ適當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3月以内の期間を定めて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p> <p>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を命じた場合において、その日から3月を経過した日における自己資本規制比率が引き続き100%を下回り、かつ、自己資本規制比率の状況が回復する見込みが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は、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p>

資料: 金融庁

表 3.1.3-1c 保険会社の早期是正措置制度

保険金等の支払能力の充実の状況に係る区分		措置の内容
非対象区分	ソルベンシー・ マージン比率 200%以上	
第1区分	ソルベンシー・ マージン比率 100%以上200%未滿	経営の健全性を確保するための合理的と認められる改善計画の提出の求め及びその実行の命令
第2区分	ソルベンシー・ マージン比率 0%以上100%未滿	<p>次に掲げる保険金等の支払能力の充実に資する措置に係る命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保険金等の支払能力の充実に係る合理的と認められる計画の提出及びその実行 ・配当又は役員賞与の禁止又はその額の抑制 ・新規契約の予定利率の変更 ・リスクの高い投資行動の抑制 ・事業費の抑制 ・一部の営業所又は事務所における業務の縮小 ・子会社等の株式又は持分の処分 ・その他金融庁長官が必要と認める措置
第3区分	ソルベンシー・ マージン比率 0%未滿	機嫌を付した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の命令

(2) 対外環境の変化

ITの発達により金融のグローバル化が進展し、各国の金融機関を始めとする経済主体が国境を越えて金融取引を行い、各国の金融市場間の境目がなくなり、ボーダレス化が進んでいる。このような状況のなか、1999年にEUにおいて共通通貨ユーロが導入されたことをきっかけにして、EU諸国間の金融市場の統合が急速化している。このような金融のグローバル化及びボーダレス化は、先進諸国における金融分野の規制緩和が背景となっている。日本も世界的な規制緩和の潮流の中で金融の自由化・国際化が進んできた。さらには、EUでは、銀行、証券、保険等の金融業務を総合的に営むユニバーサルバンク制度が一般的となる一方、アメリカでは銀行の証券業務・保険業務への進出が規制緩和によって可能となり、1999年に金融持株会社制が導入された。

このような状況において、外国の金融機関は、日本の金融分野における規制緩和に乗って、日本の金融市場に参入しようという動きと、一方で、収益を重視して、他のアジアの金融市場と日本の金融市場を冷静に比較して、日本からの金融市場から退出しようという動きが見られる。外国の金融機関による日本の金融市場への参入は、国内金融機関にとっては一部の分野で競争力が劣勢にあるために、脅威とな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外国の金融機関による日本の金融市場からの退出は、日本の金融市場の発展の観点からは、金融市場の空洞化を進めることになり、懸念される問題となる。

3.2 分野別金融産業サービスの現状

3.2.1 銀行

(1) 銀行数

日本における銀行数は、近年、減少の一途をたどっている(表3.2.1-1)。

その原因として、バブル崩壊後、大量の不良債権を抱え、経営破綻を起した銀行が整理統合されてきたことが挙げられる。一方、大手都市銀行がメガバンクをめざして、合併されてきたことも、銀行数を減少させる一因となっている。

1998年3月に金融持株会社の設立が解禁され、銀行持株会社の下に銀行や証券会社や保険会社を有する総合金融グループを形成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都市銀行を中心として持ち株会社形態を利用した組織再編が進んだ。

2000年9月に第一勧業銀行と富士銀行と日本興業銀行が合併し、銀行持株会社「みずほホールディングス」を設立した。その銀行持株会社の傘下にみずほ銀行と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とみずほ信託銀行に再編された。2001年4月には東京三菱銀行と三菱信託銀行と日本信託銀行が銀行持株会社「三菱東京ファイナンシャル・グループ」を設立した。その際に、三菱信託銀行と日本信託銀行が合併した。同じく2001年4月に三和銀行と東海銀行と陶業信託銀行が合併して、UFJ銀行とUFJ信託銀行となり、銀行持株会社「UFJホールディングス」を設立した。さらに、2001年4月に住友銀行とさくら銀行が合併した三井住友銀行が2002年12月に銀行持株会社「三井住友ファイナンシャルグループ」を設立した。2003年3月には、大和銀行と近畿大阪銀行と奈良銀行による「大和銀行ホールディングス」があさひ銀行とともに「りそなホールディングス」を設立し、りそな銀行等を傘下に置いている。

表 3.2.1-1 全国銀行数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155	154	153	151	150	150	149	146	146	138	137	136	133

出所: 全国銀行協会.

(2) 資産構造

日本の銀行の総資産は、バブル崩壊後、減少し続けている。1990年3月

末には日本の銀行は943兆円の総資産を有していたが、2002年3月末に756兆円にまで総資産が減少した。銀行の資産構造は、表3.2.1-2に示されているように、主として貸出金と有価証券でその大半を占められている。2002年3月末においては、貸出金が総資産の60%を占め、次いで有価証券が総資産の21%を占めている。総資産に占める貸出金のシェアは、1997年3月末にピークの66%に達したが、その後低下している。一方、総資産に占める有価証券のシェアは、1999年3月末までは15~16%で推移していたが、近年、上昇している。

表 3.2.1-2：全国銀行の資産構造(億円)

決算期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総資産	9,435,697	9,275,896	9,144,135	8,594,894	8,497,709	8,450,012	8,482,014	8,559,608	8,479,609	7,563,460	7,372,333	8,042,906	7,560,833
現金預け金	1,533,895	1,264,716	1,067,773	900,953	942,314	876,242	731,552	625,026	496,668	312,708	386,079	393,324	489,080
コールロン	266,712	184,388	174,273	165,475	134,419	135,451	110,115	98,335	144,069	10,792,156	88,615	107,546	90,413
買現先勘定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43,045	11,177
買入手形	16,917	11,176	4,945	3,118	1,205	3,615	12,250	18,715	63,015	50,396	31,095	29,049	NA
買入金銭債権	33,060	13,089	8,406	8,209	12,400	15,287	11,233	14,041	12,337	17,926	15,141	16,181	17,177
特定取得資産	NA	NA	NA	NA	NA	NA	NA	NA	175,644	147,164	151,099	200,360	167,197
上品有価証券	30,274	31,301	35,018	36,853	37,552	33,884	17,496	16,358	164,910	2,818	1,810	3,197	2,784
金銭の信託	74,335	58,172	52,920	56,961	58,665	68,373	64,472	63,641	51,424	32,548	25,729	20,654	14,086
有価証券	1,326,462	1,325,967	1,276,537	1,242,700	1,245,129	1,284,149	1,311,084	1,320,498	1,309,971	1,215,949	1,362,079	1,765,208	1,569,927
投資損失引当金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2,519	-1,056
貸出金	4,962,342	5,216,609	5,373,297	5,424,266	5,390,616	5,385,282	5,542,500	5,615,287	5,386,730	4,870,403	4,746,289	4,745,188	4,563,184
外国為替	121,464	95,293	81,926	69,102	60,637	56,073	57,665	58,925	53,915	40,149	33,323	33,582	34,872
その他資産	380,001	395,031	428,587	137,128	131,058	135,531	148,233	216,628	250,940	218,408	161,798	288,410	242,980
不動産	51,226	58,298	64,997	69,124	68,748	67,885	67,772	66,6302	105,459	97,183	94,428	92,142	88,461
債券繰上資産	NA	1,758	2,908	3,225	1,891	1,803	765	555	304	190	102	110	42
繰延税金資産	NA	NA	NA	NA	NA	NA	NA	NA	NA	88,861	82,283	72,639	106,764
再評価に係る繰延税金資産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55
支払承諾見返り	619,002	620,090	572,541	477,776	413,068	386,429	406,870	444,963	427,478	360,728	314,700	338,939	291,343
貸倒引当金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119,630	-105,510	-127,302
投資損失引当金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94	-107	-63

出所: 全国銀行協会。

(3) 貸出・預金の状況

全国銀行の貸出額は、1997年3月末にピーク(562兆円)となった後に、減少し続け、2002年3月末には456兆円にまで減少している(表3.2.1-3)。

全国銀行の預金額は、1990年3月末の657兆円から減少傾向をたどっている。2002年3月末には557兆円にまで減少している。預金の大半を占めるのは、定期預金であり、預金額全体の46%を占める。次いで、普通預金が預金額全体の34%を占める。これらの定期預金と普通預金で預金額全体の80%を占めている。

表 3.2.1-3 全国銀行の貸出・預金の状況(億円)

決算期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貸出	割引手形	283,437	281,517	252,498	225,522	198,545	191,290	193,062	164,542	150,312	111,306	106,311	113,398	91,502
	手形貸付	1,385,093	1,262,944	1,251,409	1,275,306	1,248,011	1,240,722	1,180,320	1,067,201	981,065	804,069	751,119	732,620	660,887
	証書貸付	2,709,832	2,984,671	3,103,129	3,098,264	3,104,922	3,077,631	3,295,511	3,480,254	3,370,343	3,106,147	3,005,217	3,053,013	3,036,612
	当座貸越	583,978	687,475	766,259	825,172	839,136	875,637	873,606	903,288	885,007	848,879	883,640	846,155	774,181
	計	4,962,340	5,216,607	5,373,294	5,424,263	5,390,614	5,385,280	5,542,498	5,615,284	5,386,728	4,870,401	4,746,287	4,745,186	4,563,182
預金	当座預金	286,551	291,358	276,893	257,881	249,824	223,671	251,925	223,048	201,833	205,354	224,628	260,545	281,690
	普通預金	644,999	639,966	646,525	655,336	689,933	703,475	785,807	842,895	902,694	982,099	1,160,752	1,261,111	1,892,300
	貯蓄預金	NA	NA	NA	7,274	11,347	35,008	86,645	113,694	137,838	144,707	141,343	134,153	118,798
	通知預金	432,553	382,795	340,891	299,814	304,208	297,005	301,371	306,108	259,560	179,446	190,918	204,189	132,262
	定期預金	3,900,856	3,886,043	3,845,669	3,706,132	3,665,485	3,776,699	3,472,859	3,427,099	3,282,877	3,021,049	2,919,386	2,966,527	2,537,631
	定期積金	43,343	37,234	37,763	38,283	38,690	38,290	37,146	35,293	33,305	30,330	28,458	26,303	22,462
	その他の預金	888,415	801,480	670,830	563,606	566,698	486,457	515,591	519,478	432,238	321,709	266,872	267,297	250,206
	譲渡性預金	372,621	352,575	281,410	274,297	258,399	264,760	397,075	451,021	454,711	432,299	412,664	481,144	332,455
	計	6,569,338	6,391,452	6,099,980	5,802,622	5,784,582	5,825,365	5,848,418	5,918,636	5,705,057	5,316,993	5,345,020	5,601,269	5,567,804

(4) 利子率(預貸金利差)

1990年代後半以降、日本経済はバブル経済崩壊後、経済の低迷が長期化したために、低金利時代が長く続いている。1999年2月からは、一時的に解除されたものの、日本銀行によってゼロ金利政策が続けられ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から、1990年代前半と1990年代後半以降とでは、銀行の預貸金利差は不連続な動きが見られる。表3.2.1-4は、資金運用収益を資金運用勘定平均残高で除すことによって資金運用利回りを導出し、そして、資金調達費用と営業系の合計を資金調達勘定平均残高で除すことによって資金調達原価率を導出し、資金運用利回りと資金調達原価率の差を総資金利鞘

として導出し、預貸金利差とした。この預貸金利差を見ると、1990年代前半においては極めて低い水準にあったものの、1990年代後半以降の低金利時代においては預貸金利差が0.3%台にまで上昇している。このような預貸金利差の上昇は、日本銀行による低金利政策に依存するところが大きい。

表 3.2.1-4：銀行の預貸金利差(%)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0.26	0.01	0.01	0.07	0.01	0.17	0.31	0.29	0.26	0.28	0.39	0.35	0.37

出所: 全国銀行協会。

総資金利鞘 = 資金運用利回り - 資金調達原価率。

資金運用利回り = 資金運用収益 ÷ 資金運用勘定平残。

資金調達原価率 = (資金調達費用 + 営業経費) ÷ 資金調達勘定平残。

(5) 不良債権

日本の銀行は、不良債権の開示を1993年3月期決算から始めるようになった。この時点では、破綻先債権額及び延滞債権額の合計を不良債権額として開示した。その後、1995年9月中間決算から金利減免等債権額を公表し始めた。さらに、1998年3月期決算からは、従来、不良債権から除外されていた①利息の支払が3か月以上滞っている貸出金、及び②変更後の貸出金利が公定歩合水準を上回っている金利減免債権についても、公表不良債権に含めることになった。そのため、日本の銀行の不良債権額は時系列的に不連続となるものの、表 3.2.1-5に示されるように、2002年3月末までに不良債権額が増加してきた。

表 3.2.1-5：全国銀行の不良債権額(億円)

決算期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新基準	NA	NA	NA	NA	NA	297,580	296,270	303,660	325,150	420,280
旧基準	NA	NA	NA	285,040	217,890	NA	NA	NA	NA	NA
	85,649	108,402	122,334	230,072	284,939	219,846	NA	NA	NA	NA

出所: 全国銀行協会, NEEDS.

新基準: リスク管理債権 破綻先

債権 + 延滞債権(従来基準) + 3ヶ月以上延滞債権 + 貸し出し条件緩和債権)

旧基準: 不良債権額(上段: 全国銀行協会へ, 下段: NEEDS 調べ)

(6) 貸出構造

貸出構造については、表3.2.1-6に示されているように、証券貸付が最も大きなシェアを占めて、2002年3月末で66%に達している。次いで、当座貸越と手形貸付がそれぞれ17%と14%を占める。割引手形は2%に過ぎない。

表 3.2.1-6 : 全国銀行の貸出構造

決算期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割引手形	283,437	281,517	252,498	255,522	198,545	191,290	193,062	164,542	150,312	111,306	106,311	113,398	91,502
手形貸付	1,385,093	1,262,944	1,251,409	1,275,306	1,248,011	1,240,722	1,180,320	1,067,201	981,065	804,069	751,119	732,620	660,887
証券貸付	2,709,832	2,984,671	3,103,129	3,098,264	3,104,922	3,077,631	3,295,511	3,480,254	3,370,343	3,106,147	3,005,217	3,053,013	3,036,612
当座貸越	583,978	687,475	766,259	825,172	839,136	875,637	873,606	903,288	885,007	848,879	883,640	846,155	774,181
合計	4,962,340	5,216,607	5,373,294	5,424,263	5,390,614	5,385,280	5,542,498	5,615,284	5,386,728	4,870,401	4,746,287	4,745,186	4,563,182

出所: 全国銀行協会。

(7) 政府系金融機関の比率

日本においては、日本郵政公社によって営まれている郵便貯金と簡易保険と政策金融(融資)を行う政府系金融機関が存在する。

郵便貯金は、個人のための小口の貯蓄手段であり、通常貯金、積立貯金、定額貯金、定期貯金、住宅積立貯金、教育積立貯金が提供されている。郵便貯金の限度額は一人1,000万円までで、元利金の支払については法律によって政府が保証している。郵便貯金資金は全額が日本郵政公社によって自主運用されている。2002年3月末において、郵便貯金の資産は296兆円で、中央銀行を除く金融機関の総資産に対して10%のシェアを有している。また、郵便貯金残高は239兆円に達し、個人預貯金に占めるシェアは33%に達している(表3.2.1-7)。

簡易保険は、医師による健康状態の審査を行うことなく、簡単な手続きで保険契約を結ぶことができる保険商品・年金商品である。簡易保険は、養老保険、学資保険、終身保険、定期保険、夫婦保険、年金保険、生涯保

証保険などを提供している。簡易保険にも限度額が設けられていて、最高で一人1,000万円までである。2002年3月末において、簡易保険の総資産は、123兆円で、中央銀行を除く全金融機関の総資産に対して4%のシェアを有している(表3.2.1-7)。

政府系金融機関は、政策金融を実施するために政府によって出資、設立された特殊法人の金融機関である。現在、日本政策投資銀行、国際協力銀行、国民生活金融公庫、住宅金融公庫、農林漁業金融公庫、中小企業金融公庫、公営企業金融公庫、沖縄振興開発金融公庫の2銀行6公庫が存在する。これらは、民間金融機関による金融を量的・質的に補完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予算・決算など国の規制を受けている。政府系金融機関は、財投機関債を発行することによって直接に金融市場から資金を調達することを原則としている。2001年12月に閣議決定された「特殊法人等整理合理化計画」では、住宅金融公庫を5年以内に廃止し、証券化支援業務を行う独立行政法人の設立が決定された。政府系金融機関の総資産は、2002年3月末において193兆円であり、中央銀行を除く全金融機関の総資産に対して7%弱のシェアを有している(表3.2.1-7)。

表 3.2.1-7 : 政府系金融機関の資産(億円)

決算期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郵便貯金	1,436,154	1,496,357	1,739,000	1,939,735	2,122,923	2,318,277	2,538,372	2,718,611	2,935,539	3,143,341	3,234,037	3,097,563	2,957,835
簡易保険	472,324	527,032	588,309	667,014	757,119	842,030	941,864	1,007,720	1,075,151	1,132,296	1,172,683	1,226,321	1,226,835
政府系金融機関	1,211,721	1,327,599	1,437,366	1,528,737	1,691,149	1,793,026	1,820,265	1,896,904	1,942,202	2,001,517	2,034,477	2,029,150	1,931,693
金融機関-中央銀行	22,604,520	23,336,316	23,729,372	24,465,888	25,400,315	25,742,747	26,894,139	27,296,837	28,647,229	28,884,641	29,351,273	29,693,214	28,538,218
郵便貯金の構成比(%)	6.35	6.41	7.33	7.93	8.36	9.01	9.44	9.96	10.25	10.88	11.002	10.43	10.36
簡易保険の構成比(%)	2.09	2.26	2.48	2.73	2.98	3.27	3.50	3.69	3.75	3.92	4.00	4.13	4.30
政府系金融機関の構成比(%)	5.36	5.69	6.06	6.25	6.66	6.97	6.77	6.95	6.78	6.93	6.93	6.83	6.77

出所: 全国銀行協会.

(8) 政策貸出の比率

政府系金融機関の政策貸出は、1990年3月末において日本銀行を除く金

融機関の総貸出額に対して9%のシェアであった。しかし、日本経済の長引く不況の下で政策金融の重要性が増していることと民間金融機関の不良債権が増大したことによって民間金融機関が貸し渋りを起こしていることのために、近年、政策貸出の比率が上昇している。2002年3月末において日本銀行を除く金融機関の総貸出額に対する政策貸出は12%強に達している(表3.2.1-8)。

政策貸出は、住宅金融公庫によって住宅融資、国際協力銀行によって海外経済協力融資、日本政策投資銀行によって社会資本整備促進融資、中小企業金融公庫によって中小企業向け融資、国民生活金融公庫によって一般金融機関から融資を受けられない国民大衆向けに行われている。

表 3.2.1-8 : 政策貸出の比率

決算期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郵便貯金	6,172	5,945	8,795	10,899	11,568	10,829	11,218	10,763	10,019	9,785	9,789	8,199	7,239
簡易保険	179,068	207,455	235,341	259,162	273,232	295,252	308,938	301,723	304,872	305,786	301,627	313,402	304,074
政府系金融機関	1,112,719	1,208,044	1,299,801	1,382,420	1,533,670	1,648,924	1,655,788	1,728,541	1,785,360	1,835,345	1,858,393	1,855,789	1,811,120
金融機関-中央銀行	12,389,316	13,250,196	13,631,842	14,082,032	14,413,180	14,687,092	15,060,429	15,166,009	15,938,399	15,656,530	15,160,863	15,173,009	14,647,050
郵便貯金の構成比(%)	0.05	0.04	0.06	0.08	0.08	0.07	0.07	0.07	0.06	0.06	0.06	0.05	0.05
簡易保険の構成比(%)	1.45	1.57	1.73	1.84	1.90	2.01	1.99	1.99	1.91	1.99	1.99	2.07	2.08
政府系金融機関の構成比(%)	8.98	9.12	9.54	9.82	10.64	11.23	11.40	11.40	11.19	11.72	12.26	12.23	12.37

出所: 日本銀行.

(9) 負債構造

全国銀行の総負債額は、1990年3月末において915兆円であったが、その後、減少しつづけて2002年3月末には727兆円となった(表3.2.1-9)。2002年3月末において、総負債額の77%は預金・譲渡性預金によって占められている。また、一部の銀行に資金調達手段として認められている「金融債」と呼ばれる債券をこの預金・譲渡性預金に加えると、そのシェアは79%に達する。かつて資金余剰の地方銀行から資金不足の都市銀行へ銀行間で短期資金を融通してきたコール市場の取引については、1990年3月末において

コールマネーが総負債額の5.8%であったが、金融機関の経営破綻の影響を受けてコール市場が縮小しているために、2002年3月末にはその比率が2.7%にまで低下した。

表 3.2.1-9 : 全国銀行の負債構造(億円)

決算期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負債の部合計	9,150,381	8,974,496	8,831,468	8,276,975	8,174,783	386,429	8,203,108	8,273,845	8,239,045	7,259,491	7,019,836	7,676,137	7,267,808
預金	6,196,720	6,038,881	5,818,574	5,528,330	5,526,187	5,560,610	5,451,347	5,477,620	5,250,350	4,916,538	4,932,360	5,120,129	5,235,384
譲渡性預金	372,621	352,575	281,410	274,297	258,399	264,760	397,075	451,021	454,711	432,299	412,664	481,144	332,455
債券	460,414	514,945	564,724	564,887	559,750	552,118	533,252	514,885	434,262	248,942	244,804	218,120	180,814
コールマネー	533,376	428,465	467,609	466,990	446,976	425,127	416,331	403,212	337,946	274,860	222,664	281,916	196,567
売現先勘定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93,698	75,205
売渡手形	173,165	143,185	149,418	126,841	76,357	56,846	88,278	52,213	50,068	8,030	16,535	74,907	151,135
コールシセルペーパー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47,477	27,535
特定取引負債	NA	NA	NA	NA	NA	NA	NA	NA	95,480	73,157	54,136	89,870	78,536
借入金	82,628	134,672	157,921	211,812	233,603	237,705	238,091	267,191	300,048	222,356	212,116	197,826	174,237
外国為替	37,952	18,490	18,232	13,897	11,990	9,648	11,952	16,766	11,878	13,332	13,353	11,500	17,481
社債	NA	NA	NA	NA	NA	NA	NA	NA	9,930	15,281	28,560	51,482	72,615
転換社債	21,250	19,109	16,943	12,565	10,875	6,748	6,266	6,485	8,786	6,621	8,450	6,628	6,069
信託勘定借	163,312	179,232	230,524	301,964	341,744	347,789	321,072	271,945	223,564	173,342	181,344	157,040	106,927
その他負債	441,334	476,229	500,888	235,333	222,326	192,285	183,579	234,351	390,767	306,910	315,707	468,154	286,740
貸倒引当金	34,990	35,134	39,499	48,759	59,667	73,049	134,688	122,993	181,644	148,312	NA	NA	NA
賞与引当金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1,072
退職給付引当金	10,441	10,377	10,476	10,457	10,493	10,556	10,505	10,440	10,337	9,638	9,940	10,802	9,403
その他の引当金	26	NA	NA	NA	NA	10	303	6,187	10,406	14,975	16,768	11,158	11,887
特別法上の引当金	3,144	3,106	2,702	3,041	3,340	3,411	3,493	3,567	2	2	2	2	2
繰延税金負債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2,001	733
再評価に係る繰延税金負債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14,202	13,340	11,694
支払承諾	619,002	620,090	572,541	477,776	413,068	386,429	406,870	444,963	427,478	361,767	314,700	338,939	291,343
再評価差額金	NA	NA	NA	NA	NA	NA	NA	NA	40,385	155	NA	NA	NA

出所: 全国銀行協会。

(10) BIS比率

自己資本比率の国際統一基準であるBIS比率は、海外に営業拠点を有する銀行に適用される。国際統一基準が適用される銀行のBIS比率は、表

3.2.1-10에示されているように、2000年3月末に12.20%にまで上昇したが、その後、低下し、2002年3月末には11.02%にまで低下した。一方、海外に営業拠点を有していない銀行に適用される自己資本比率規制国内基準では、リスクウェイト自己資本比率を4%以上と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表3.2.1-10に示されているように、2000年以降、国内基準が適用される銀行のリスクウェイト自己資本比率は9%を超えている。

表 3.2.1-10 : BIS比率(%)

決算期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国際統一基準行	11.88	12.20	11.67	11.02
国内基準行	7.80	9.71	9.68	9.01

出所: 日本銀行.

(11) 単純自己資本比率 :

BIS比率のようにリスクアセットにリスクウェイトを掛けずに、総資産額をそのまま分母に入れて計算した単純自己資本比率は、1990年代から2002年にかけて3%台から4%台で推移している(表3.2.1-11)。

表 3.2.1-11 : 単純自己資本比率(%)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3.29	3.54	3.74	4.05	4.16	4.19	3.58	3.61	3.02	4.47	4.78	4.57	3.88

出所: 全国銀行協会に基づき、筆者が計算。

(12) 外貨借入比率 :

日本の銀行部門の外貨建て債務は、表3.2.1-12に示されているように、1990年3月末に5,990億ドルに達し、債務全体に対して12%であった。しかし、その後、外貨建て債務は減少し、2002年3月末において2,948億ドル、構成比で6%にまで減少した。その原因には、日本の銀行の不良債権が増

大し、バランスシートが悪化したために、外貨建て債務を負う能力が低下したことと、日本の銀行部門に対する不信感からリスク・プレミアムが日本の銀行に付されるというジャパン・プレミアムに見られるように、外国からの日本の銀行に対する評価が低下したことがある。

表 3.2.1-12 : 外貨建て借入(百万ドル)

決算期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銀行部門の外貨建て債務	599,006	579,568	525,283	474,100	432,799	444,316	435,913	448,507	403,173	307,374	252,890	319,654	294,801
銀行部門の債務	4,993,982	5,439,471	5,614,086	6,238,136	7,133,012	8,248,850	6,702,262	5,784,793	5,128,867	5,110,229	5,768,074	5,208,239	4,808,731
外貨建て債務構成比(%)	11.99	10.65	9.36	7.60	6.07	5.39	6.50	7.75	7.86	6.01	4.38	6.14	6.13

出所: 日本銀行に基づき、筆者が計算。

(13) 金融商品

国内銀行が提供している金融商品の主要なものは、預金取扱金融機関として提供している要求払預金(普通預金、当座預金、貯蓄預金、通知預金、納税準備預金)と定期性預金(定期預金、期日指定定期預金、変動金利定期預金、積立定期預金)と外貨預金と非居住者円預金と譲渡性預金である。表3.2.1-3に示されているように、これらの預金の内、定期預金と普通預金で預金額全体の80%を占めている。

銀行の中で、金融債の発行が認められている銀行がある。現在、新生銀行、あおぞら銀行、みずほ銀行、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農林中央金庫、商工組合中央金庫、信金中央金庫が発行している金融債は、利付金融債(償還期限1年、2年、3年、5年)と割引金融債(償還期限1年)に分類される。

前述したように、日本版金融ビッグバンによって、1998年12月に銀行が投資信託を販売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また、2001年4月には銀行が保険商品を販売することもできるようになった(表3.1.2-1)。

(14) 運営経費率(運営経費 / 総利益) :

表3.2.1-13に示されるように、銀行の運営経費率(=(営業費用+経常費用)÷業務利益)は、2002年3月末で431.2%となっている。1990年3月末の300%弱の数値に比較すると、運営経費率は近年上昇している。

表 3.2.1-13 : 運営経費率(運営経費 / 総利益)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292.6	331.1	312.0	250.8	318.9	368.2	351.2	311.8	463.1	595.4	345.5	320.8	431.2

資料: 全国銀行協会に基づき、筆者が計算。
 (営業経費 + 経常費用) ÷ 業務純益 × 100

(15) 店舗数、人員数

銀行の店舗数と人員数は、銀行部門の整理統合(銀行の合併)及び各銀行の業務再整理や縮小に伴い、減少しつつある。店舗数は1994年3月末に17,159店舗をピークとして、2002年3月末には14,952店舗まで減少し、ピーク時の87%にまで減少した。人員数については、同じく1994年3月末に46.7万人をピークとして、2002年3月末には33.5万人まで減少し、ピーク時の72%にまで減少した。

表 3.2.1-14 : 店舗数・人員数

決算期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店舗数	16,247	16,596	16,977	17,141	17,159	17,157	16,954	16,728	16,521	15,861	15,302	15,315	14,952
人員数	442,326	444,978	453,972	460,149	465,790	460,800	445,467	427,000	408,507	385,683	368,657	354,893	334,637

出所: 全国銀行協会.

人員数: 役員数 + 職員数.

3.2.2 証券(と投資信託)

(1) 証券会社数

証券会社数は、1990年12月末において272社であった。その後、1990年

代後半にかけて数社が参入し、291社へ増加してきた(表3.2.2-1)。

表 3.2.2-1 : 証券会社数

1990年12月	1991年12月	1992年12月	1993年12月	1994年12月	1995年12月	1996年12月	1997年12月	1998年12月	1999年12月	2000年12月	2001年12月
272	267	265	268	277	282	289	291	288	288	297	291

出所: 証券業協会.

(2) 相場株式総額、回転率

東京証券取引所の株式時価総額は、バブル崩壊後、変動はあるものの、減少傾向にある。1989年12月末において株式時価総額が630兆円あったものの、2002年12月末には251兆円にまで大きく減少している。一方、東京証券取引所の回転率は、1990年代に減少したものの(1992年12月末に23.90%)、2000年以降上昇している。2002年3月末には65.81%にまで上昇した(表3.2.2-2)。

表 3.2.2-2 : 株式時価総額・回転率

	1989年12月	1990年12月	1991年12月	1992年12月	1993年12月	1994年12月	1995年12月	1996年12月	1997年12月	1998年12月	1999年12月	2000年12月	2001年12月	2002年12月
株式時価総額(億円)	6,301,219	3,935,949	3,919,856	2,992,757	3,355,228	3,710,242	3,782,995	3,585,383	2,882,262	2,815,214	4,662,154	3,647,473	3,006,309	2,510,009
回転率(%)	81.35	44.01	31.60	23.90	29.06	30.08	33.69	35.13	35.95	38.51	48.06	53.59	61.21	65.81

出所: 東京証券取扱所.

(3) 金融商品の種類

証券会社で取り扱われている金融商品には、株式、債券(国債、公債、社債、金融債、外国債)、投資信託(MMF(マネー・マネージメント・ファンド)、公社債投資信託、株式投資信託、外国投資信託)などがある。最近では、株価指数連動型上場投資信託(ETF)や不動産投資信託(日本版REIT)が証券会社で提供されている。この他に、生命保険会社の変額年金保険が証券会社で販売されている。

(4) 外国人の比率

日本の証券市場における外国人の比率について、証券会社、株主数、外国人保有金額の点で見てみよう(表3.2.2-3)。

日本における外国証券会社の比率は、1990年末に19.1%であったが、2001年末には17.2%と若干減少しているものの、17~19%の幅で1990年以降比較的安定して推移している。東京証券取引所の全株主数に占める外国人株主数の比率は、1990年代前半は0.7%であったが、2001年末には0.5%にわずかながら減少している。東京証券取引所の株式時価総額に占める外国人保有額の比率については、1990年末における4.2%から上昇傾向にあり、2000年末には18.8%にまで上昇した。2001年末に若干低下して、18.3%となっている。外国人株主数が変化しないなか、外国人保有額の比率が上昇していることは、外国人株主1人当たりの株式保有額が増加し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

表 3.2.2-3 : 外国人の比率(%)

	1990年	1991年	1992年	1993年	1994年	1995年	1996年	1997年	1998年	1999年	2000年	2001年
証券会社数	19.1	18.7	18.5	17.9	17.7	18.1	19.7	19.9	19.1	19.8	16.8	17.2
株主数	0.7	0.7	0.6	0.7	0.7	0.7	0.7	0.6	0.6	0.6	0.5	0.5
保有金額	4.2	4.7	6.0	7.7	8.1	10.5	11.9	13.4	14.1	18.6	18.8	18.3

資料: 東京証権取引所.

証権会社数 = 外国証券会社の本邦支店数(1社を1支店で数える) ÷ 証券会社総数

株主数 = 外国人株主数 ÷ 全株主数 × 100

保有金額 = 外国人保有金額 ÷ 時価総額

(5) 営業活動(人数、販売、仲介)

日本の証券市場における証券会社の営業活動について、証券会社の外務員数を見てみると(表3.2.2-4)、1990年12月末に10万人の外務員が存在していたが、2001年12月末には7.5万人の外務員数にまで減少している。この間に証券会社数は増加していることから(表3.2.2-1)、証券会社1社当たりの外

務員数が減少していることが意味される。

表 3.2.2-4 : 営業活動(外務員数)

	1990年12月	1991年12月	1992年12月	1993年12月	1994年12月	1995年12月	1996年12月	1997年12月	1998年12月	1999年12月	2000年12月	2001年12月
外務員	101,352	100,769	95,622	87,444	83,746	79,102	75,835	72,554	62,638	69,873	72,846	75,107

資料: 証券業協会.

3.2.3 保険

(1) 保険会社数

日本における保険会社数は、1990年から1996年3月末までは変化がなかったが、1996年に保険業法が改正され、生命保険会社と損害保険会社が相互に子会社方式によって乗り入れ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の保険業法改正を受けて、生命保険会社が損害保険子会社6社を設立し、損害保険会社が生命保険子会社11社を設立した。2001年3月末に生命保険会社が43社、損害保険会社が29社となった。しかし、バブル崩壊後の低金利時代が長引いたことを背景とした保険会社の経営破綻による吸収合併や経営効率化を目的とした合併によって、2001年度に生命保険会社も損害保険会社も減少し、それぞれ43社と29社となった(表3.2.3-1)。

表 3.2.3-1 : 保険会社数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保険会社数	52	55	55	55	55	55	58	71	77	78	81	82	72
生命保険会社数	28	30	30	30	30	30	31	44	44	45	46	49	43
損害保険会社数	24	25	25	25	25	25	27	27	33	33	35	33	29

資料: 生命保険協会、証券業協会.

(2) 保険金総額

生命保険会社の保険金総額は、1996年3月末がピークで、保険契約準備

金で182兆円に達した。しかし、その後、生命保険会社の経営破綻から減少し、2002年3月末においては167兆円にまで保険契約準備金が減少した。一方、損害保険会社の保険金総額は、1998年3月末がピークで、保険契約準備金で25.1兆円となっていた。しかし、その後、2002年3月末までに22.7兆円に減少した(表3.2.3-2)。

表 3.2.3-2 : 保険金総額(億円)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生命保険 + 損害保険													
保険契約準備金	1,297,996	1,458,474	1,584,846	1,730,238	1,869,735	1,967,383	2,064,897	2,053,860	2,035,981	2,019,542	1,997,067	1,963,964	1,896,443
責任準備金	1,227,819	1,379,353	1,596,875	1,636,022	1,773,353	1,871,136	1,969,426	1,960,650	1,943,852	1,930,681	1,910,724	1,879,260	1,863,435
保険金総額	122,970	158,977	190,260	194,815	210,352	230,857	254,222	331,717	353,782	331,188	331,426	292,963	326,603
生命保険													
保険契約準備金	1,102,556	1,242,181	1,365,661	1,501,930	1,637,586	1,730,784	1,820,046	1,804,239	1,784,713	1,771,922	1,745,994	1,730,762	1,669,710
責任準備金	1,048,821	1,180,326	1,296,137	1,426,429	1,560,184	1,653,948	1,744,856	1,732,314	1,714,202	1,704,466	1,681,034	1,668,580	1,662,211
保険金等支払金	96,129	127,854	150,653	157,541	171,205	192,596	216,387	292,465	313,912	290,085	288,262	250,510	284,930
損害保険													
保険契約準備金	195,440	216,293	219,185	228,308	232,149	236,599	244,851	249,621	251,268	247,620	251,073	233,202	226,733
責任準備金	178,998	199,027	200,738	209,593	213,169	217,188	224,570	228,336	229,650	226,215	229,690	210,680	201,224
元受正味保険金	26,841	30,423	39,607	37,274	39,147	38,261	37,835	39,252	39,870	41,103	43,164	42,453	41,673

資料: 生命保険協会、証券業協会.

(3) 保険商品

生命保険会社の保険商品には、大きく分類すると、個人保険、個人年金保険、団体保険、団体年金保険、医療保障保険などがある。2002年3月末において、個人保険が最も有力な生命保険会社の保険商品分野である。個人保険は、死亡保険と生死混合保険と生存保険に分類されるが、死亡保険が個人保険の80%を占める。さらに、個人保険の死亡保険の内、定期付終身保険が死亡保険の61%を占める(表3.2.3-3a)。

損害保険会社の保険商品は、自動車保険、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険(自動車保険の強制保険)、傷害保険、火災保険などに分類される。損害保険の有力な保険商品は、自動車保険であり、2002年3月末において損害保険商品全体の43%を占める。また、自動車保険に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険を加えると、その合計額は損害保険商品全体の55%を占める。次いで、傷害保険(19%)と火災保険(18%)が続く(表3.2.3-3b)。

表 3.2.3-3a : 生命保険商品(億円)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生保	死亡保険	定期保険	607,375	692,490	754,771	823,458	902,745	1,016,546	1,134,379	1,167,325	1,148,423	1,117,818	1,125,331	1,170,528	1,319,559
		定期特約	661,821	825,103	1,013,390	1,167,716	810,025	881,169	963,244	824,651	641,973	NA	NA	NA	NA
		終身保険	5,229,989	6,342,117	7,391,528	8,190,268	1,091,627	936,336	974,941	901,951	882,627	916,518	923,928	915,428	896,717
		定期付終身保険	NA	NA	NA	NA	8,109,980	8,663,851	8,823,427	9,363,361	9,425,167	9,023,717	8,572,599	7,938,099	6,606,584
		利率変動型積立終身保険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890,645
		終身特約	NA	NA	NA	NA	3,844	2,612	2,791	3,352	3,823	NA	NA	NA	NA
		変額保険(終身刑)	94,554	119,413	112,563	103,346	94,879	87,302	81,005	81,587	77,733	74,906	74,499	69,528	72,653
		連生保険	NA	NA	NA	NA	71,809	117,443	162,691	186,952	208,110	NA	NA	NA	NA
		疾病保険	22,427	45,241	49,305	53,315	57,223	60,886	63,995	67,217	69,010	NA	NA	NA	NA
		介護保険	NA	8,427	105,509	10,580	9,138	8,341	7,911	14,568	14,460	NA	NA	NA	NA
		海外旅行生命保険	45	40	39	35	24	31	24	21	3	NA	NA	NA	NA
		その他の死亡保険	703	20	19	13	13	11	88	89	7,950	991,658	996,509	1,002,625	989,579
				6,616,914	8,032,851	9,332,124	10,348,731	11,151,307	11,774,528	12,214,496	12,611,074	12,479,279	12,124,257	11,692,866	11,096,208
	生死混合保険	養老保険	769,130	785,272	794,013	804,326	783,415	763,355	748,059	717,726	641,725	578,109	525,639	477,717	430,231
		養老特約	NA	NA	NA	NA	2,973	2,368	2,354	2,221	2,095	NA	NA	NA	NA
		定期付養老保険	1,367,041	1,209,104	1,065,545	938,840	835,085	770,512	710,401	643,426	588,884	521,038	535,542	458,977	385,228
		生存給付金付定期保険	429,301	480,809	514,613	549,431	534,446	528,161	513,112	493,021	466,239	NA	NA	NA	NA
		生存給付金付定期特約	NA	NA	NA	NA	31,083	36,759	42,784	45,805	46,606	NA	NA	NA	NA
		変額保険(有期刑)	9,717	13,196	12,546	10,585	9,068	7,771	6,418	5,378	3,948	3,395	3,031	2,589	2,785
		連生保険	636	605	508	3,080	186	157	132	127	119	NA	NA	NA	NA
		こども保険	159,963	184,798	208,786	227,913	248,413	256,399	261,631	256,951	245,823	NA	NA	NA	NA
		その他の生死混合保険	152,492	163,146	169,553	172,234	163,155	151,326	141,486	126,142	101,490	811,255	841,219	1,034,075	1,115,511
				2,888,280	2,836,930	2,765,564	2,706,409	2,607,824	2,516,808	2,426,377	2,290,797	2,096,929	1,913,797	1,905,431	1,973,358
	生存保険	こども保険	26,130	26,898	28,451	28,539	28,488	28,139	28,606	29,978	30,079	NA	NA	NA	NA
		貯蓄保険	22,000	22,278	21,797	21,990	21,527	19,787	19,546	20,618	17,721	NA	NA	NA	NA
		その他の生存保険	2,2040	2,213	1,952	2,121	2,339	2,697	3,563	4,364	4,536	NA	NA	NA	NA
			50,334	51,389	52,200	52,650	52,354	50,623	51,715	54,960	52,336	52,097	49,219	50,359	46,739
		9,555,528	10,921,170	12,149,888	13,107,790	13,811,485	14,341,959	14,692,588	14,956,831	14,628,544	14,090,151	13,647,516	13,119,925	12,756,231	
個人年金保険	310,788	417,905	531,978	654,864	773,782	812,953	883,315	871,023	826,612	816,367	778,737	740,962	695,931		

表 3.2.3-3a 계속

		1990년3월	1991년3월	1992년3월	1993년3월	1994년3월	1995년3월	1996년3월	1997년3월	1998년3월	1999년3월	2000년3월	2001년3월	2002년3월
团体保險	团体定期保險	3,391,712	3,851,747	4,254,627	4,406,574	4,522,574	4,606,970	4,622,886	4,466,340	2,678,290	1,586,346	1,568,742	1,525,324	1,463,148
	团体信用保險	770,956	852,843	932,293	1,010,654	1,073,450	1,175,582	1,286,429	1,394,086	1,489,055	NA	NA	NA	NA
	消費者信用团体保險	NA	NA	NA	NA	25,161	34,463	41,411	49,091	58,220	NA	NA	NA	NA
	团体終身保險	1,118	1,091	1,058	1,029	992	947	928	910	855	822	NA	NA	NA
	心身障害者扶養者生命保險	NA	2,645	2,687	2,711	2,730	2,743	5,265	5,056	4,826	4,600	NA	NA	NA
	团体養老保險	7,882	5,787	2,250	1,858	1,142	1,101	1,116	1,099	944	NA	NA	NA	NA
	綜合福祉团体定期保險	NA	NA	NA	NA	NA	NA	NA	NA	NA	998,727	945,964	923,586	882,106
	团体信用生命保險	NA	NA	NA	NA	NA	NA	NA	NA	NA	1,529,127	1,580,099	1,628,617	1,660,630
	消費者信用团体生命保險	NA	NA	NA	NA	NA	NA	NA	NA	NA	64,818	70,770	75,430	77,265
	年金特約	145	189	250	341	445	579	736	905	1,070	1,239	1,404	1,542	NA
	その他の团体保險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5,589	5,360	5,145
		4,171,813	4,714,302	5,193,165	5,423,167	5,626,546	5,822,385	5,958,771	5,917,487	4,233,260	4,185,679	4,172,568	4,159,859	4,088,294
团体年金保險	团体年金保險	7	6	5	5	2	0	0	0	0	0	0	0	0
	企業年金保險	143,765	163,044	164,435	138,871	135,719	98,764	42,059	16,933	8,776	6,519	6,165	5,539	3,561
	新企業年金保險	NA	9,732	33,521	73,794	97,302	132,433	156,574	157,297	155,299	150,658	145,369	141,434	136,016
	拠出型企業年金保險	NA	144	2,196	11,277	15,935	42,025	91,537	121,940	131,783	137,990	137,597	138,583	136,121
	年金福祉事業团体保險	14,218	22,513	30,940	39,030	48,316	51,446	41,038	NA	NA	NA	NA	0	0
	變額年金福祉事業团体保險	3,300	6,975	11,045	15,170	18,095	21,980	25,550	27,070	25,450	19,088	15,442	13,701	9
	厚生年金基金保險	69,932	82,678	97,286	114,234	129,383	143,387	158,027	155,079	153,416	147,708	136,971	132,090	114,535
	厚生年金基金連合會保險	2,723	2,897	3,092	3,280	3,465	3,576	3,745	1,906	1,754	687	411	385	344
	国民年金基金保險	NA	NA	53	171	309	454	524	581	549	499	571	544	428
	国民年金基金連合會保險	NA	NA	265	782	1,409	2,086	2,941	2,230	2,611	3,119	2,814	0	0
	团体生存保險	16,996	26,405	36,348	43,884	55,000	56,089	49,937	33,639	26,991	22,868	15,288	13,762	10,885
	確定拠出年金保險(企業型)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827	2,031	14
	確定拠出年金保險(個人型)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0
	その他の团体年金保險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2,040
	250,941	314,394	379,186	440,498	504,935	552,240	571,932	51,675	506,629	489,136	461,455	448,069	403,953	
財形保險	財形貯蓄保險	4,744	5,451	5,949	6,456	7,032	7,713	8,391	8,946	9,342	9,644	9,759	9,700	9,192
	財形住宅貯蓄積立保險	1,718	2,130	2,455	2,732	2,914	3,099	3,271	3,317	3,359	3,359	3,250	3,107	2,933
	財形給付金保險	37	38	44	55	60	86	94	108	115	125	141	147	71
	財形基金保險	0	0	0	0	0	0	0	0	0	0	0	0	0
	6,499	7,619	8,448	9,243	10,006	10,898	11,756	12,371	12,816	13,128	13,150	12,954	12,196	
財形年金保險	財形年金保險	872	875	877	855	820	772	709	676	629	593	558	499	451
	財形年金積立保險	2,190	2,635	3,319	3,885	4,423	4,985	5,493	5,866	6,129	6,340	6,408	6,417	6,284
	3,062	3,510	4,196	4,740	5,243	5,757	6,202	6,542	6,758	6,933	6,966	6,916	6,735	
医療保險	個人型	1	1	1	1	1	1	1	1	1	1	1	1	1
	团体型	29	34	41	46	51	53	56	58	60	63	64	66	67
	30	35	42	47	52	54	57	59	61	64	65	67	68	
就業不能保障保險	就業不能保障保險	NA	NA	NA	NA	0	0	0	0	0	0	0	0	0
	長期就業不能保障保險	NA	NA	NA	NA	6	7	7	7	4	3	2	1	1
	团体就業不能保障保險	NA	NA	NA	NA	NA	NA	110	151	733	781	720	649	569
	NA	NA	NA	NA	6	7	117	158	737	784	722	650	570	
合計	14,298,661	16,378,935	18,266,903	19,640,349	20,732,055	21,546,253	22,124,738	22,281,146	20,215,417	19,602,242	19,081,179	18,489,402	17,963,978	

表 3.2.3-3b : 損害保険商品(億円)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損害 新種保険	火災保険	18,189	17,351	16,136	16,791	18,218	18,545	18,334	19,027	19,017	17,741	17,443	15,836	15,075	
	自動車保険	22,337	24,618	27,623	30,076	32,937	34,449	35,358	36,491	36,889	35,721	35,999	36,500	36,765	
	自賠償保険	11,599	12,051	11,012	10,763	10,019	10,052	10,343	10,630	9,706	9,556	9,805	9,878	9,866	
	傷害保険	25,998	24,950	26,778	25,422	27,937	26,197	27,306	28,930	26,668	22,954	20,498	18,313	16,253	
	介護費用保険	545	1,115	1,157	993	736	684	675	685	453	488	408	440	281	
	動産総合保険	803	951	1,014	1,075	1,087	1,123	1,185	1,231	1,249	1,190	1,185	1,224	1,219	
	賠償責任保険	1,782	2,024	2,164	2,310	2,365	2,488	2,758	2,949	3,090	3,042	3,051	3,097	3,327	
	労働者災害保証責任保険	688	1,785	1,368	1,068	1,124	1,070	1,245	1,284	1,175	1,034	948	984	852	
		盗難保険	143	158	173	187	194	206	228	250	268	284	276	283	263
		ガラス保険	30	30	32	33	34	35	35	35	33	30	27	24	22
		航空保険	144	127	200	186	149	158	168	188	196	120	137	146	385
		風水害保険	1	1	1	1	2	2	2	2	2	2	3	3	2
		保証保険	36	57	76	107	117	109	93	146	136	142	144	134	167
		信用保険	79	79	83	83	72	72	75	80	79	95	145	201	256
		ボイラ・ターボセット保険	22	23	25	25	26	28	27	29	28	28	27	27	26
		動物保険	27	34	35	30	28	26	26	25	29	28	29	29	27
		機械保険	234	27	333	361	391	383	395	404	425	398	375	371	362
		船客傷害賠償責任保険	12	12	12	12	12	12	12	12	12	11	11	10	8
		建設工事保険	309	385	422	424	401	394	383	418	388	356	355	353	353
		原子力保険	112	87	104	118	136	127	123	122	122	115	112	110	103
		費用利益保険	43	53	60	64	68	72	79	77	529	584	512	589	467
			1,192	1,073	1,556	1,631	1,630	1,624	1,646	1,788	2,247	2,193	2,153	2,280	2,441
		船舶保険	802	888	912	1,024	1,082	1,052	975	922	781	683	597	570	631
		貨物海上保険	1,464	1,576	1,490	1,429	1,305	1,360	1,439	1,611	1,638	1,470	1,279	1,285	1,241
		運送保険	559	616	653	645	632	639	654	674	678	644	639	649	635
		積立保険	31,912	30,784	30,360	28,833	32,076	29,685	30,446	31,663	28,811	24,749	21,923	18,543	15,619
	合計	117,870	119,782	122,223	122,060	131,148	128,968	132,564	137,885	132,402	121,465	115,928	109,599	104,205	

資料: 損害保険ガイドブック

(4) 資金の運営状況

生命保険会社の資産運用については、資産運用総額は1998年3月末にピークに達して、187兆円となっている。その後、保険契約高の減少に伴い、資産運用総額が減少し、2002年3月末には179兆円にまで減少した。生命保険会社の資産運用を種類別に見ると、有価証券への投資額が最も高いシェアを占め、2002年3月末で資産運用総額の62%を占める。次いで、貸付金が多く、資産運用総額の26%を占めている(表3.2.3-4a)。

表 3.2.3-4a : 生命保険会社の資産運用(億円)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預貯金	72,946	72,782	72,378	74,111	126,745	106,120	93,824	65,703	80,973	78,409	71,798	45,212	28,601
コールローン	4,350	8,283	18,335	24,102	32,782	34,704	41,240	34,772	56,105	49,742	44,633	57,089	34,204
買入金銭債券	1,027	1,553	1,058	215	1,163	1,533	1,712	3,234	8,909	18,363	12,557	36,636	28,861
金銭の信託	40,193	47,039	42,652	49,819	66,002	51,812	43,245	45,536	38,183	25,552	28,701	35,862	35,875
投資有価証券	547,783	588,873	628,273	689,435	707,111	794,014	896,410	956,655	951,366	1,001,395	1,049,934	1,104,148	1,110,206
貸付金	410,671	498,943	562,871	611,479	641,671	669,845	673,349	652,954	635,168	591,259	547,613	499,973	470,561
不動産	65,520	71,864	77,684	83,990	89,931	94,751	97,651	97,270	98,595	97,188	91,503	81,589	79,749
合計	1,142,490	1,289,337	1,403,251	1,533,150	1,665,405	1,752,779	1,847,431	1,856,124	1,869,299	1,861,908	1,846,739	1,860,509	1,788,057

損害保険会社の資産運用については、資産運用総額は2001年3月末にピークに達して、31.5兆円となっている。しかし、資産運用総額が減少し、2002年3月末には29.2兆円となった。生命保険会社の資産運用を種類別に見ると、有価証券への投資額が最も高いシェアを占め、2002年3月末で資産運用総額の71%を占める。次いで、貸付金が多く、資産運用総額の13%を占めている。損害保険会社の資産運用は、生命保険会社に比較して、貸付金が少なく、有価証券が多くなっている(表3.2.3-4b)。

表 3.2.3-4b : 損害保険会社の資産運用(億円)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預貯金	25,133	24,901	23,717	20,655	19,689	18,129	18,250	18,511	15,087	14,594	14,849	17,591	19,868
コールローン	3,059	4,152	5,226	7,036	8,329	8,229	10,031	10,105	11,270	8,385	10,390	8,357	5,551
買入金銭債券	1,767	1,909	1,992	2,224	2,286	2,889	2,735	2,570	4,428	8,497	3,737	4,919	2,760
金銭の信託	10,473	10,955	10,174	10,446	11,041	9,832	9,720	9,575	8,167	6,727	5,514	3,839	3,418
投資有価証券	103,946	109,056	111,531	123,148	128,161	139,212	148,111	155,977	161,518	163,883	168,652	218,666	206,436
貸出債権	61,827	76,286	75,570	72,196	67,375	65,749	65,522	65,587	66,635	62,713	54,888	44,522	38,330
不動産	11,083	12,556	14,037	15,687	16,312	18,220	18,177	18,468	18,257	18,170	17,913	16,913	15,429
合計	217,288	239,815	242,247	251,392	253,193	262,260	272,546	280,793	285,362	282,969	275,943	314,807	291,792

資料: 損害保険ガイドブック

3.2.4 その他

(1) 短資会社

短資会社は、短期金融市場及び外国為替市場において主として取引の仲介者として機能している。短期金融市場としては、コール取引、手形売買取引等のインターバンク市場の他、譲渡性定期預金(CD)、政府短期証券(FB)、政府証券(TB)、コマーシャル・ペーパー(CP)においてもその取引の仲介業務を行っている。短資会社には、上田短資、八木短資、東京短資、山根短資、日本短資、名古屋短資の6社があったが、2001年4月に山根短資と日本短資と名古屋短資が合併して、セントラル短資となり、2001年8月には上田短資と八木短資が合併し、上田八木短資となった。その結果、セントラル短資と上田八木短資と東京短資の3社となっている。

(2) 信販会社

信販会社は、消費者が商品・サービスを割賦購入する際に消費者と販売業者の間に入って割賦購入を担当することにある。信販会社の本来の業務は、クレジット・カード業務と割賦債権買取業務にたいべつされる。この他、近年、信販会社は、消費者金融業務(カード・キャッシング等の無担保融資)や信用保証業務(自動車ローンや住宅ローンの信用保証)も行ってい

る。1998年度中の信販会社(44社)の取扱高は19兆円に達している(鹿野2001)。

3.3 分野別金融サービス市場の開放の現状と計画

3.3.1 銀行

(1) 外国銀行の参加数

2002年10月末現在で、日本に支店を開設している外国銀行は72行である(全国銀行協会調査部編 2003)。

(2) 資金繰りの状況

外国銀行の資金調達については、表3.3.1-1に示されるように、資金調達総額は増加傾向にある。その内訳は、2002年3月末では預金が最も大きなシェアを占め、資金調達総額の50%を占める。しかし、その前年の2001年3月末では、コールマネーが最も大きなシェアを占め、47%を占める。外国銀行は、主として、預金とコールマネーによって資金を調達している。国内銀行に比較して外国銀行の資金調達に占める預金の比率が低いこととコールマネーの比率が高いことは特徴的である。

表 3.3.1-1 : 外国銀行の資金調達(億円)

決算期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預金	51,551	50,031	51,554	46,238	43,921	39,712	58,434	93,052	94,008	71,519	77,961	81,866	102,521
譲渡性預金	2,863	2,409	836	725	541	800	427	468	613	566	1,844	1,920	3,578
コールマネー	60,244	56,549	61,563	66,403	62,975	49,048	34,168	41,805	107,343	92,055	46,785	97,850	63,951
売渡手形	9,891	15,772	6,821	5,274	1,615	1,561	1,090	341	4,369	861	998	9,511	23,742
借入金	28,168	31,396	26,932	24,524	21,808	27,364	25,222	30,691	26,192	19,393	31,265	15,707	11,993
合計	152,717	156,157	147,706	143,164	130,860	118,485	119,341	166,357	232,525	184,394	158,853	206,854	205,785

資料: 日本銀行

(3) 資金運営の状況

外国銀行の資産運用については、その資産運用総額が1998年3月末に33兆円に達したが、その後、減少傾向にあり、2002年3月末には22兆円にまで減少した。資産運用の内訳は、2002年3月末で貸付金が資産運用総額の56%を占める。次いで有価証券が資産運用総額の25%を占めている(表3.3.1-2)。国内銀行に比較すると、貸付金の比率が低く、有価証券の比率が高いことが特徴的である。

表 3.3.1-2 : 外国銀行の資産運用(億円)

決算期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現金預け金	58,200	51,195	38,989	41,068	36,515	33,839	40,601	50,519	44,285	28,509	31,171	23,752	23,510
コールローン	25,955	19,695	25,234	19,427	19,626	14,492	23,344	20,811	28,886	38,022	9,560	17,394	16,083
買入手形	4,930	413	120	120	130	691	2,298	33,965	99,979	30,948	636	104	0
有価証券	15,113	17,462	21,666	21,082	24,132	25,844	43,266	36,022	47,209	68,689	64,727	103,121	54,586
貸付金	103,555	122,233	107,662	98,442	78,027	76,064	77,225	101,275	107,444	103,009	82,939	103,505	122,006
合計	207,213	210,998	193,671	180,139	158,430	150,930	186,734	242,592	327,803	269,177	189,033	247,876	216,185

資料: 日本銀行

(4) 貸出・預金比率

外国銀行の貸出・預金比率は、1990年3月末において2.01であったが、その後、低下し、2002年3月末には1.19にまで低下した(表3.3.1-3)。この低下は、貸出が1990年3月末の10兆円から2002年3月末の12兆円へ20%増加したのに対して、預金が1990年3月末の5兆円から2002年3月末の10兆円へ倍増したことを反映している。

表 3.3.1-3 : 貸出・預金比率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2.01	2.44	2.09	2.13	1.78	1.92	1.32	1.09	1.14	1.44	1.06	1.26	1.19

資料: 日本銀行

貸付金/預金

(5) 主要活動領域

外国銀行は、法律上は国内銀行と同様、「銀行法」上の銀行として位置づけられ、支店毎に内閣総理大臣の免許を受け、営業している。外国銀行の業務範囲は、基本的に国内銀行と同様であり、預金、貸出、外国為替などを主に取り扱っている。一般の預金者を対象としたリテール業務を使っていないケースが多いが、シティバンクのように積極的にリテール業務を行っている銀行もある。日本で最も積極的に行っているシティバンクは、個人向けに一般的な銀行業務の他、外貨預金や投資信託などの業務を行っている。また、3億円以上の純資産を保有している資産家を対象にプライベート・バンキング業務を行っている。企業向けには、融資、外国為替業務を行っている。

(6) 国内銀行との競争と協力状況

シティバンクのようにリテール業務を積極的に行っている外国銀行は少ないことから、外国銀行と国内銀行がリテール業務で競合することは多くはない。また、シティバンクもアメリカの銀行であるという特色を強調した銀行業務運営を行っていることから、国内支店網を確立した国内金融機関とは競合状態にはない。但し、外貨預金については、一部の銀行との間で競合している。

銀行業務において国際的な競争が厳しいのは、ホールセール業務やスワップ等のデリバティブ業務さらには国際銀行業務である。しかし、金融のグローバル化が進展した現在においては、これらの業務は、日本における国内銀行と在日外国銀行と間の競争という構図ではなく、日本の銀行の本店と欧米の銀行の本店との間の競争という構図となっている。

3.3.2 証券(と投資信託)

(1) 外国証券会社の参加数

外国証券会社の参加数は、1990年から1995年まではほとんど変化していなかったが、1996年に前年の51社から57社へ増加し、1999年末には59社にまで増加した。しかし、その後、再び減少し、2001年末には50社となっている(表3.3.2-1)。

表 3.3.2-1 : 外国証券会社の本邦支店数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52	50	49	48	49	51	57	58	55	59	57	50

資料: 証券業協会

外国証券会社の本邦支店数(1社を1支店で数える)

(2) 資金調達状況

外国証券会社の資金調達は、大半が有価証券担保借入金によっている。表3.3.2-2に示されているように、有価証券担保借入金は資金調達総額の58%を占めている。次いで、トレーディング商品と短期借入金によって外国証券会社は資金調達を行っている。

表 3.3.2-2 : 外国証券会社の資金調達(億円)

	2001年3月	2002年3月
トレーディング商品	75,744	67,497
信用取引負債	1,786	2,768
有価証券担保借入金	220,137	178,071
短期借入金	27,695	59,984

資料: 東京証券取引所

東証外国総合取引参加者

(3) 資金運営の状況

外国証券会社の資金運用は、大半が有価証券担保貸付金に向けられている。表3.3.2-3に示されているように、有価証券担保貸付金は資金運用総額の65%を占めている。ついで、トレーディング商品に外国証券会社は資金運用を行っている。

表 3.3.2-3 : 外国証券会社の資金運用(億円)

	2001年3月	2002年3月
現金・預金	4,760	3,945
トレーディング商品	125,870	108,377
信用取引資産	2,609	2,905
有価証券担保貸付金	209,300	214,171
短期貸付金	2,115	186

資料: 東京証券取引所
東証外国総合取引参加者

(4) 主要活動領域

外国証券会社は、国内証券会社とほぼ同じ業務を行っている。東京証券取引所においても、外国証券会社は国内証券会社と同様に、会員になることができる。なお、支店網において国内証券に対して劣位にあるため、外国証券会社は、個人投資家よりも法人が主要取引先となっている。

(5) 国内証券会社との競争と協力状況

東京証券取引所においては、外国証券会社がトレーダーとして非常に強力な立場を占め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外国証券会社が非常に優勢な株価指数裁定取引のような特定の分野も含めて、外国証券会社が東京証券取引所の売買高の35%から40%を占めており、市場の残りの3分の2を250社

以上の日本の証券会社が分け合っている。

外国証券会社は、東京証券取引所において非常に大きな市場シェアの実績を築き上げただけでなく、概して日本の証券会社よりはるかに高い収益を上げている。日本の証券会社は欠損を出すなか、大部分の外国証券会社は東京での営業活動から収益を上げ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その背景には、外国証券会社が法人取引または自己売買(自己勘定による株式売買)業務に集中する傾向があるのに対し、国内証券会社の多くは個人投資家からの売買手数料収入にもっぱら依存していることがある。株価が下落・低迷しているなか、個人投資家が株式市場から離れたことが国内証券会社に不利に働いている。

3.3.3 保険

(1) 外資系生命保険会社の参加数：

外資系生命保険会社の参加数は1990年代後半に増加し始めた。2002年3月末には17社が日本の生命保険市場で活動している(表3.3.3-1)。

表 3.3.3-1：外資系生命保険会社数

決算期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外国会社	4	4	3	3	3	3	4	3	3	3	3	4	4
その他の外資系	3	4	3	2	2	2	2	5	5	6	7	9	13
合計	7	8	6	5	5	5	6	8	8	9	10	13	17

資料: 生命保険協会 『生命保険ファクトブック』、各社ホームページ
内国会社中外資50%超の子会社

(2) 資金運営の状況：

外資系生命保険会社の資産運用総額は、外資系生命保険会社数が増加す

るに伴って、増加している。2002年3月末には、外資系生命保険会社の資産運用総額は、14兆円に増加している。外資系生命保険会社の資産運用は、資産運用総額の80%を有価証券に向けている。次いで、資産運用総額の15%が貸付金として資産運用されている。国内生命保険会社に比較して、外資系生命保険会社による有価証券への資産運用の比率が高く、貸付金への資産運用の比率が低い。

表 3.3.3-3 : 外資系生命保険会社の資産運用

決算期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預貯金	1,283	1,464	835	664	772	359	306	439	362	1,155	12,483	4,037	4,935
コールローン	652	401	775	634	576	448	367	456	279	148	560	5,478	1,999
買入金銭債権	65	32	53	64	50	20	0	0	65	0	217	255	763
金銭の信託	133	278	195	198	210	62	41	34	20	10	32	11,635	18,608
有価証券	10,668	12,946	14,547	16,317	18,828	22,259	26,881	30,540	34,655	40,175	49,847	66,019	126,176
貸付金	76	100	501	720	1,245	1,476	1,841	2,235	2,385	2,664	8,940	15,636	27,423
合計	12,878	15,221	16,905	18,597	21,681	24,625	29,437	33,704	44,153	44,153	72,079	103,060	179,903

資料: 生命保険協会 『生命保険事業概況』.

(3) 主要活動領域

外資系生命保険会社の生命保険商品の金額の推移が表3.3.3-4に示されている。生命保険商品別に見ると、2002年3月末において、個人保険が外資系生命保険会社の生命保険商品全体の74%を占めている。次いで、団体保険が21%を占めている。個人保険の内、死亡保険(定期保険、定期付終身保険、終身保険)が個人保険の92%を占める。

表 3.3.3-4 : 外資系生命保険会社(百万円)

		1990年3月	1991年3月	1992年3月	1993年3月	1994年3月	1995年3月	1996年3月	1997年3月	1998年3月	1999年3月	2000年3月	2001年3月	2002年3月	
個人保険	死亡保険	定期保険	2,564,655	2,902,045	2,857,047	3,043,335	3,313,870	3,659,108	4,038,831	4,766,287	5,432,245	6,707,788	9,588,205	16,314,911	31,464,667
	定期特約	92,422	190,607	1,622,435	2,354,599	3,131,501	4,266,510	5,552,792	6,459,942	7,570,777	10,746,391	NA	NA	NA	
	終身保険	1,359,345	1,532,225	1,770,712	2,337,656	3,078,943	4,021,302	5,004,646	6,018,008	7,170,690	8,933,626	12,441,192	15,563,849	18,163,041	
	定期付終身保険	NA	NA	NA	NA	0	0	0	0	0	0	1,117,099	1,315,196	25,281,408	
	利率変動型積立終身保険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482,402	
	終身特約	NA	NA	NA	NA	11,371	30,551	46,018	48,505	50,389	51,705	NA	NA	NA	
	変額保険(終身刑)	1,748,619	2,157,245	2,285,737	1,714,805	1,214,634	1,767,950	1,776,723	1,816,710	1,807,599	1,785,671	1,847,663	2,507,577	2,798,999	
	連生保険	NA	NA	NA	NA	59,661	57,657	57,265	16,698	60,446	66,244	NA	NA	NA	
	疾病保険	30,892,235	2,108,123	2,312,781	2,516,968	2,717,578	2,925,891	3,067,507	880,385	111,771	171,770	NA	NA	NA	
	介護保険	20,945	769,990	973,188	982,932	836,802	752,598	697,411	34,506	402	378	NA	NA	NA	
	海外旅行生命保険	0	0	0	0	0	0	0	0	0	0	NA	NA	NA	
	その他の死亡保険	585,288	1,733	1,567	895	741	677	623	531	412	389	23,650,671	23,012,583	25,077,196	
			37,263,509	9,661,968	11,823,467	12,951,190	14,365,101	17,482,244	20,241,816	20,041,572	22,204,731	28,463,962	48,644,830	58,714,116	103,267,713
	生死混合 保険	養老保険×1	44,836	700,847	951,039	1,044,910	1,014,084	1,014,040	973,968	944,081	912,792	948,725	1,535,295	2,242,714	4,019,482
養老特約		NA	NA	NA	NA	2,969	2,701	1,174	1,106	1,118	1,164	NA	NA	NA	
定期付養老保険		0	0	0	0	0	0	0	0	0	0	284,798	323,981	2,919,597	
生存給付金付定期保険		0	0	0	0	0	0	0	0	0	0	NA	NA	NA	
生存給付金付定期特約		NA	NA	NA	NA	0	0	0	0	0	21,436	NA	NA	NA	
変額保険(有期刑)		239,368	384,919	452,871	367,823	331,190	47,786	241,273	210,483	178,302	124,495	140,229	145,543	183,872	
連生保険		0	0	0	480	590	633	754	1,235	2,278	0	NA	NA	NA	
こども保険		0	0	0	0	0	676	1,955	5,297	9,620	9,299	NA	NA	NA	
その他の生死混合保険		21,423	30,417	31,268	30,713	29,715	48,943	114,508	186,898	244,029	319,306	855,991	722,934	1,751,199	
		305,627	1,116,183	1,435,178	1,443,926	1,378,548	1,114,779	1,333,632	1,349,100	1,348,139	1,424,425	2,816,313	3,435,172	8,874,150	
生存保険	こども保険	0	0	0	0	0	0	0	0	0	0	NA	NA	NA	
	貯蓄保険	67,284	58,334	48,703	39,391	32,701	28,523	26,171	24,285	17,800	16,938	NA	NA	NA	
	その他の生存保険	0	0	0	7,498	25,567	55,072	103,416	192,857	247,806	330,031	NA	NA	NA	
		67,284	58,334	48,703	46,889	58,268	83,595	129,587	217,142	265,606	346,969	412,010	419,226	532,122	
個人年金保険	37,636,420	10,836,485	13,307,348	14,442,005	15,801,917	18,680,618	21,705,035	21,607,814	23,818,476	30,235,356	51,873,153	62,568,514	112,673,985		
	1,045	1,274	2,320	155,342	515,345	838,410	1,103,504	5,024	18,078	90,538	1,464,096	3,630,123	5,912,304		

表 3.2.3-3a 계속

		1990년3월	1991년3월	1992년3월	1993년3월	1994년3월	1995년3월	1996년3월	1997년3월	1998년3월	1999년3월	2000년3월	2001년3월	2002년3월
团体保險	团体定期保險	987,030	1,342,424	1,552,376	1,598,954	1,650,199	1,793,007	1,799,628	1,891,197	1,735,221	7,928,219	9,004,353	17,749,957	19,880,998
	团体信用保險	216,776	352,859	290,352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消費者信用团体保險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团体終身保險	0	0	0	0	0	0	0	0	0	0	NA	NA	NA
	心身障害者扶養者生命保險	0	0	0	0	0	0	0	0	0	0	NA	NA	NA
	团体養老保險	0	0	0	0	0	0	0	0	0	NA	NA	NA	NA
	綜合福利团体定期保險	NA	NA	NA	NA	NA	NA	NA	NA	NA	7,928,219	1,908,068	1,918,110	3,349,903
	团体信用生命保險	NA	NA	NA	310,417	320,287	477,360	555,333	581,112	615,896	643,141	1,586,784	4,884,347	7,137,642
	消費者信用团体生命保險	NA	NA	NA	0	0	0	0	0	0	150,281	697,070	1,431,310	
	年金特約	9	6	14	14	13	13	26	34	53	57	766	5,586	6,442
	その他の团体保險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648	44,683	78,523
			1,203,815	1,695,289	1,842,742	1,909,115	1,970,499	2,270,380	2,354,987	2,472,353	2,351,170	16,499,636	12,650,900	25,299,753
生保 团体年金 保險	团体年金保險	0	0	0	0	0	0	0	0	0	0	0	0	4
	企業年金保險	0	0	0	0	0	0	0	0	0	0	908	2,493	31,899
	新企業年金保險	0	0	0	0	0	0	0	0	0	0	73,869	666,645	933,604
	繰出型企業年金保險	0	0	0	0	0	0	0	0	0	14,255	99,245	389,637	685,247
	年金福利事業团保險	0	0	0	0	0	0	0	NA	NA	NA	NA	NA	NA
	麥額年金福祉事業团保險	0	0	0	0	0	0	0	0	0	0	0	0	0
	厚生年金基金連合會保險	0	0	0	0	0	0	0	0	0	0	25,321	31,619	87,810
	厚生年金基金連合會保險	0	0	0	0	0	0	0	0	0	0	0	0	0
	国民年金基金連合會保險	0	0	0	0	0	0	0	0	0	0	149	138	311
	国民年金基金連合會保險	0	0	0	0	0	0	0	0	0	0	0	0	NA
	团体生存保險	0	0	0	0	0	0	0	0	0	0	0	0	0
	確定拠出年金保險(企業型)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0	0
	確定拠出年金保險(個人型)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0	NA
	その他の团体年金保險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0	0	0
		0	0	0	0	0	0	0	0	14,255	199,492	1,090,532	1,738,875	
財形保險	財形貯蓄保險	0	0	0	0	0	0	0	0	0	127	4,377	4,126	9,045
	財形住宅貯蓄積立保險	0	0	0	0	0	0	0	0	0	53	4,038	3,993	9,365
	財形給付金保險	0	0	0	0	0	0	0	0	0	0	6	7	116
	財形基金保險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0	8,421	8,126	18,526
財形年金 保險	財形年金保險	0	0	0	0	0	0	0	0	0	0	1,165	49,915	5,581
	財形年金積立保險	0	0	0	0	0	0	0	0	0	0	4,423	641,722	14,646
		0	0	0	0	0	0	0	0	0	0	5,588	691,637	20,227
医療保障 保險	個人型	0	0	0	0	0	0	0	0	0	0	0	158	0
	团体型	6	6	9	9	9	9	10	9	18	26	96	0	288
就業不能 保障保險		6	6	9	9	9	9	10	9	18	26	96	158	288
	就業不能保障保險	NA	NA	0	0	0	0	0	0	0	0	0	0	0
	長期就業不能保障保險	NA	NA	0	0	0	0	0	0	0	0	0	0	0
	团体就業不能保障保險	NA	NA	0	0	0	0	0	0	0	0	325	261	181
	0	0	0	0	0	0	0	0	0	0	325	261	181	
合計	38,841,286	12,533,054	15,152,419	16,506,471	18,287,770	21,789,417	25,163,536	24,085,190	26,187,742	46,839,991	66,202,071	93,289,104	152,249,204	

資料: 生命保險事業概要

(4) 国内保険会社との競争と協力状況

外国生命保険会社は、マーケティング政策面で新機軸を導入することによって、成熟化・競争激化が進む国内生命保険市場の一角に食い込み、成長してきた。マーケティング政策面においては、国内生命保険会社が大量の外務員を有する外務員制度を利用して、保険契約を獲得しているのに対して、外国生命保険会社は、インターネットや電話に夜も仕込みによって保険契約の獲得に努めている。

欧米諸国には、日本の社会・経済状況からみて、国内生命保険市場が、特に年金市場を中心に成長を続けるものとの見方が多く、今後とも日本の生命保険市場への進出を窺う外国生命保険会社が続く。これを受けて、日本の生命保険業界内の競争がますます激しさを加えるものと予想される(生命保険文化研究所 1990)。

3.3.4 その他

(1) 短資会社

日本の短資会社は、現在、セントラル短資と上田八木短資と東京短資の3社のみとなっており、外国の短資会社は存在しない。

(2) 信販会社

信販会社の各種業務には外資系企業が参入にしている。例えば、クレジット・カード業務(総合斡旋業務)においては、代表的な外資系企業として、シティコープ・カードサービスやGEコンシューマー・ファイナンス株式会社等がある。

3.3.5 WTO(GATS)における金融サービスのコミットメント

日本は、GATSの下ですべての金融サービスにおいて自由化のコミットメントをしている。日本が唯一自由貿易協定としてシンガポールと結んでいる日本シンガポール経済連携協定(JSEPA)においても、GATSと同様にすべての金融サービスにおいて自由化のコミットメントをしている。貿易自由化のコミットメントをしているすべての金融サービスは、詳細には、銀行及びその他の金融サービスと保険及び保険関連サービスを含む。これらの金融サービスの詳細は、表3.3.5-1に示されている。このように、日本の金融分野は、WTO(GATS)上、完全に開放されている。

表 3.3.5-1：日本の金融サービスにおけるコミットメント分野

		GATS	JSEPA
A. 全ての保険及び保険関連サービス	a. 生命保険、傷害保険及び疾病保健サービス	○	○
	b. 生命保険以外の保険サービス	○	○
	c. 再保険	○	○
	d. 保険に関連したサービス	○	○
B. 銀行及びその他の金融サービス(保険を除く)	a. 公衆からの預金及びその他の再支払資金受入	○	○
	b. 貸付	○	○
	c. ファイナンシャルリース	○	○
	d. 支払・送金サービス	○	○
	e. 保証サービス	○	○
	f. 自らの又は顧客のために行う次のものの取引	○	○
	g. 証券発行	○	○
	h. 資金媒介業	○	○
	I. 資金管理	○	○
	j. 決済サービス	○	○
	k. その他の金融関連サービス	○	○
l. 金融データサービス	○	○	
C. その他		○	○

出典：外務省

3.4 分野別外国金融機関の制度上の隘路事柄

3.4.1 銀行

WTO(GATS)上においては、日本政府は、銀行が提供する金融サービス分野における自由化へのコミットメントを行っている。(詳細については、表3.3.5-1を参照せよ。)

日本国内の銀行法及び銀行法施行令において国内銀行と外国銀行との相違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が、外国銀行を不利に取り扱う内容ではない。

(1) 営業・解散・廃業・合併

外国銀行の営業の免許は、国内銀行と同様に内閣総理大臣から受ける必要がある。但し、外国銀行は株式会社である必要がない。他の金融機関でも構わないことを意味する。解散・廃業については、国内銀行の場合には内閣総理大臣の認可を必要とするが、外国銀行は届出だけでよい。合併については、国内銀行の場合には内閣総理大臣の認可を必要とするが、外国銀行は届出だけでよい。

(2) 支店設置

従たる支店の設置については、国内銀行と同様に内閣総理大臣の認可が必要である。支店の位置変更は、国内銀行と同様に外国銀行は内閣総理大臣への届出が必要である。

(3) 資本額の変更

国内銀行が資本額を減少させるときは内閣総理大臣の認可を必要とするが、外国銀行は資本額をしたとき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3.4.2 証券(と投資信託)

WTO(GATS)上においては、日本政府は、証券会社が提供する金融サービス分野における自由化へのコミットメントを行っている。(詳細については、表3.3.5-1を参照せよ。)

日本国内の証券取引法及び外国証券会社に関する法律において国内証券会社と外国証券会社との相違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が、認可業務(デリバティブの売買と有価証券の元引受と電子取引)における一定期間の経験の必要性和準備金の積立を除き、ほとんどすべての条件において、外国証券会社を不利に取り扱う内容ではない。

(1) 組織

国内証券会社は株式会社でなければならないが外国証券会社は外国において証券業を営む者であればよい。つまり株式会社である必要はなくまた銀行でもかまわない。但し、外国証券会社の国内法人は株式会社でなければならない

(2) 営業の登録・認可

国内証券会社と同様に、外国証券会社は、商号、資本額、役員、本店を記載した登録申請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内閣総理大臣に営業の登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なお、一部の営業については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認可業務とはデリバティブの売買と有価証券の元引受と電子取引である。これらの認可業務については、国内証券会社と同様に外国証券会社も取り扱え、その認可の申請は同じ条件で行える。認可の審査基準については、国内証券会社とほぼ同じ基準(資本額、純財産額、損失を回避する体制の整備など)で、外国証券会社も認可を受けるために審査を受ける。但し、外国証券会社は外国で認可を受けようとする業務について

政令で定める期間以上業務を継続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外国証券業者として登録を受けない外国証券業者は国内では証券業を証券会社以外の者に対して営めないが、元引受業は内閣総理大臣の許可を受ければ可能となる。この規定は、国内証券会社に比較して、外国証券業者や外国証券会社が有利に働くものではないと考えられる。

(3) 準備金

準備金については、国内証券会社は証券取引責任準備金を取引数量に応じて積み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外国証券会社の場合は、これに加えて損失準備金を営業利益の10%までの範囲で積み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なお、外国の証券会社は証券取引責任準備金、損失準備金と負債の一定額に相当する資産を国内で保有しなければならない。

3.4.3. 保険

WTO(GATS)上においては、日本政府は、すべての保険サービス及び保険関連サービスにおける自由化へのコミットメントを行っている。(詳細については、表3.3.5-1を参照せよ。)

日本国内の生命保険業法において国内保険会社と外国保険会社との相違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外国保険会社は、供託と資産の国内保有義務において国内保険会社にはない条件が課されている。また、日本に支店を設けない外国生命保険会社及び損害保険会社は日本の居住者、財産、船舶、航空機にかかわる保険契約はできないという規制がある。

(1) 免許

外国生命保険会社は、国内生命保険会社と同様に、生存、死亡、疾病、傷害の保険およびこれらの再保険を引き受けることができる。一方、外国

損害保険会社は、国内損害保険会社と同様に、偶然の事故、疾病、傷害の保険およびこれらの再保険を引き受けることができる。但し、日本に支店を設けない外国生命保険会社及び損害保険会社は日本の居住者、財産、船舶、航空機にかかわる保険契約はできない。

免許の申請に際しては、国内保険会社は商号、資本の額、役員の氏名、免許の種類、本店の所在地を記載した免許申請書を、外国保険会社は本国の国名、商号、日本における代表者、免許の種類、日本における主たる店舗を記載した免許申請書、当該外国保険業者の保険業の開始又は当該外国保険業者に係る法人の設立が適法に行われたことおよび当該免許を受けて行おうとする日本における保険業と同種類の保険業を本国において適法に行っ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本国の権威ある期間が発行する証明書をそれぞれ内閣総理大臣に提出する。

外国保険会社は外国通貨建ての保険契約を政令で定める相手のみの限定する場合にのみ免許が交付される。国内保険会社に関してこの種の記載はない。

(2) 供託

外国保険会社は政令で定める金額を供託所に供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内保険会社に関してこの種の記載はない。

(3) 資産の国内保有義務

外国保険会社は、責任準備金、支払備金、供託金、自己資本それぞれの一定額に相当する資産を国内において保有しなければならない。

3.4.4 その他

(1) 短資会社

短資会社は、コール資金の貸付またはその貸借の媒介及び取引に伴う受

渡業務を業務の中核とする専門的業態であり、その短資業を体系的に規制する業法は存在しない。貸金業の規制との関係では、現行の貸金業法においては政令により貸金業から適用除外を受けたうえ、旧出資法の部分適用により金融監督当局への届出・報告・立入調査等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いる。また、短資会社が行う証券業務については、銀行等他の金融機関と同様に証券取引法に基づく体系的な監督規制を受けている。これらの法律では、国内短資会社と外国短資会社の区別がなされていない。なお、証券取引法については、前述したように、外国証券会社に関する法律が別途定められている。

(2) 信販会社

信販会社は、割賦販売法に基づき、割賦購入斡旋業者として経済産業省に登録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ている。経済産業省に備える割賦購入斡旋業者登録簿に登録を受けた法人でなければ、クレジット・カード業務(総合斡旋業務)を含めて割賦購入斡旋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この割賦販売法において、国内信販会社と外国信販会社の区別がなされていない。

参考文献

- 鹿野嘉昭『日本の金融制度』東洋経済新報社、2001年
 証券投資信託協会編『証券投資信託年報』1988年版～2002年版
 生命保険協会編『生命保険事業概況』1988年版～2002年版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編『生命保険ファクトブック』1989～2003年
 生命保険文化研究所編『生命保険新実務口座1総説』有斐閣、1990年
 全国銀行協会金融調査部編『図説わが国の銀行』財経詳報社、2003年
 全国銀行協会編『全国銀行財務諸表分析』1988年度決算～2002年度決算
 損害保険協会編『日本の損害保険 ファクトブック』1989～2002
 東京証券取引所編『証券統計年報』1998年～2002年

<부표 1> 중국 공상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총액	31,075.0	36,295.7	29,367.8	32,387.4	35,398.7	39,737.4	43,180.7
자기자본	927.1	941.5	968.6	1,838.9	1,814.8	1,873.7	1,909.9
예금총액	14,443.0	17,974.6	21,611.7	25,032.1	28,335.1	32,447.6	33,829.7
대출총액	14,054.1	16,331.3	19,092.8	21,705.5	23,334.9	23,936.4	25,756.0
지점수	38,583	38,219	41,990	36,986	36,908	31,671	28,345
직원수	599,983	565,955	536,816	567,230	540,178	471,097	429,709
영업수익	6,525.49	7,503.59	7,968.17	1,808.27	1,877.41	1,798.04	1,621.81
이자수익	1,500.98	1,776.52	1,682.97	1,497.09	1,471.73	1,410.89	1,151.07
수수료수익	6.69	11.91	14.96	14.51	16.14	26.08	30.65
기타 영업수익	5,017.82	5,715.16	6,270.24	296.67	389.54	361.07	440.09
영업비용	6,478.8	7,445.49	7,937.66	1,771.99	1,773.5	1,641.49	1,483.26
이자비용	1,029.96	1,280.06	1,162.85	996.51	1,140.56	992.6	727.6
수수료비용	26.47	33.87	39.31	41.49	23.29	3.46	2.85
기타영업비용	5,422.37	6,131.56	6,735.5	733.99	609.65	645.43	752.81
세전수익	-	-	-	34.52	168.94	173.57	148.13
당기순이익	46.69	58.1	30.51	-	41.26	50.87	58.93
ROA	0.15%	0.16%	0.10%	0.00%	0.12%	0.13%	0.14%
ROE	5.04%	6.17%	3.15%	0.00%	2.27%	2.72%	3.09%
대출/예금	97.31%	90.86%	88.34%	86.71%	82.35%	73.77%	76.13%
단순자기 자본비율	2.98%	2.59%	3.30%	5.68%	5.13%	4.72%	4.42%
자산총액/ 직원	0.0518	0.0641	0.0547	0.0571	0.0655	0.0844	0.1005
당기순이익/ 직원	0.000078	0.000103	0.000057	-	0.000076	0.000108	0.000137

<부표 2> 중국 농업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총액	12,309.5	14,669.5	15,739.5	20,224.3	22,758.4	21,848.9	25,279.9
자기자본	407.8	421.6	397.6	1,348.3	1,344.7	1,347.4	1331.6
예금총액	6,939.3	8,950.1	11,189.4	13,348.6	15,492.2	17,515.9	20,244.5
대출총액	6,553.8	7,712.9	9,809.2	13,666.1	15,527.5	14,497.2	16,045.9
지점수	67,092	65,870	63,679	58,466	56,539	50,546	44,417
직원수	564,731	539,780	536,816	514,484	539,298	509,572	490,999
영업수익	1,179.87	1,307.92	1,224.58	-	965.60	882.05	855.38
이자수익	1,166.89	1,260.17	1,210.37	1,158.79	953.41	865.37	830.81
수수료수익	5.83	33.7	5.96	6.88	7.62	11.98	18.2
기타 영업수익	7.15	14.05	8.25	-	4.57	4.7	6.37
영업비용	1,112.8	1,238.49	1,207.86	-	954.95	865.66	857.91
이자비용	875.15	939.6	862.11	77.69	553.32	512.88	410.9
수수료비용	28.35	36.78	45.29	4.74	29.64	3.6	3.68
기타영업비용	206.3	262.11	300.46	-	371.99	349.18	443.33
법인세 차감전 수익	43.04	46.81	7.86	9.13	-3.55	2.97	11.52
당기순이익	19.37	21.06	5.27	-9.13	-3.55	2.97	11.52
ROA	0.16%	0.14%	0.03%	-0.05%	-0.02%	0.01%	0.05%
ROE	4.75%	5.00%	1.33%	-0.68%	-0.26%	0.22%	0.87%
대출/예금	94.44%	86.18%	87.67%	102.38%	100.23%	82.77%	79.26%
단순자기 자본비율	3.31%	2.87%	2.53%	6.67%	5.91%	6.17%	5.27%
자산총액/ 직원	0.021797	0.027177	0.029320	0.039310	0.042200	0.042877	0.051487
당기순이익/ 직원	0.000034	0.000039	0.000010	-0.000018	-0.000007	0.000006	0.000023

<부표 3> 중국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총액	19,706.11	20,820.03	22,317.14	24,753.93	26,180.09	26,851.13	25,966.42
자기자본	705.74	791.25	877.13	1,395.5	1,468.67	1,607.85	2,185.52
예금총액	3,904.21	4,864.3	5,864.29	7,308.79	8,652.15	9,904.18	11,871.31
대출총액	4,179.33	4,751.5	5,630.04	6,503.82	7,318.2	7,291.32	14,338.44
지점수	13,637	13,863	15,251	15,227	14,355	12,925	12,539
직원수	195,754	198,555	200,135	197,547	197,534	192,279	184,529
영업수익	1,403.33	1,405.55	1,413.3	1,407.98	-	-	-
이자수익	1,233.72	1,216.73	1,063.47	1,086.25	1,183.24	1,260.59	955.19
수수료수익	-	-	41.1	49.61	46.47	69.08	-
기타 영업수익	-	-	308.73	272.12	-	-	-
영업비용	1,299.19	1,289.79	1,373.54	1,404.31	-	-	-
이자비용	1,044.65	1,049.11	728.74	751.31	891.41	874.62	613.07
수수료비용	-	-	17.56	24.42	25.23	10.24	-
기타영업비용	-	-	627.24	628.58	-	-	-
법인세 차감전 수익	104.14	115.76	58.74	35.22	43.41	59.41	31.08
당기 순이익	46.86	52.09	39.35	23.6	29.09	39.8	26.46
ROA	0.24%	0.25%	0.18%	0.10%	0.11%	0.15%	0.10%
ROE	6.64%	6.58%	4.49%	1.69%	1.98%	2.48%	1.21%
대출/예금	107.05%	97.68%	96.01%	88.99%	84.58%	73.62%	120.78%
단순자기 자본비율	3.58%	3.80%	3.93%	5.64%	5.61%	5.99%	8.42%
자산총액/ 직원	0.100668	0.104858	0.111510	0.125307	0.132535	0.139647	0.140717
당기순이익/ 직원	0.000239	0.000262	0.000197	0.000119	0.000147	0.000207	0.000143

<부표 4> 중국 건설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총액	12,517.58	15,761.88	16,817.59	19,236.46	22,010.65	25,316.95	27,649.6
자기자본	400.1	455	495.8	1,004.76	1,068.69	1,148.5	1,201.55
예금총액	7,588.86	10,333.3	12,555.15	14,689.38	16,845.5	18,977	21,565.02
대출총액	6,135.33	7,457.19	10,291.71	11,735.64	11,275.56	13,105.79	14,338.44
지점수	35,895	35,118	32,788	30,470	27,889	25,767	23,921
직원수	356,864	383,593	382,932	378,523	324,360	320,682	316,329
영업수익	1,044.27	1,197.06	1,217.12	-	-	-	-
이자수익	742.14	925.76	945.95	1,243.45	1,108.83	992.37	992.62
수수료수익	11.08	11.71	9.65	10.2	14.93	23.45	32.56
기타 영업수익	-	259.59	261.52	-	-	28.55	960.06
영업비용	989.63	1,178.42	1,207.51	-	-	-	-
이자비용	461.44	635.07	621.93	654.99	597.07	491.22	439.37
수수료비용	14.95	23.08	23.08	-	4.75	2.94	3.36
기타영업비용	513.24	520.27	562.5	-	-	431.79	-
법인세 차감전 수익	-	48.33	18.78	16.44	73.66	84.83	51.91
당기순이익	61.72	-	-	10.87	49.58	75.4	51.67
ROA	0.49%	0.00%	0.00%	0.06%	0.23%	0.30%	0.19%
ROE	15.43%	0.00%	0.00%	1.08%	4.64%	6.57%	4.30%
대출/예금	80.85%	72.17%	81.97%	79.89%	66.94%	69.06%	66.49%
단순자기 자본비율	3.20%	2.89%	2.95%	5.22%	4.86%	4.54%	4.35%
자산총액/ 직원	0.035077	0.041090	0.043918	0.050820	0.067859	0.078947	0.087408
당기순이익/ 직원	0.000173	0.000000	0.000000	0.000029	0.000153	0.000235	0.000163

<부표 5> 교통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총액	3,328.45	3,978.83	4,497.48	4,839.23	5,380.5	6,281.82	6,690.67
자기자본	201.66	216.28	233.8	233.13	269.15	307.26	324.23
예금총액	1824.2	2,277.42	2,698.31	3,014.6	3,385.14	4,045.57	4,725.08
대출총액	1,210.89	1,486.55	1,824.21	2,148.69	2,435.37	2,913.18	3,291.11
지점수	2,497	2,710	2,788	2,864	2,756	2,881	2,383
직원수	47,348	52,612	47,072	47,584	46,453	47,121	57,602
영업수익	253.9	291.74	287.03	255.52	232.07	272.86	273.42
이자수익	182.36	209.75	200.81	195.68	159.82	174.52	175.01
수수료수익	5.99	6.35	6.75	5.25	4.8	6.9	9
기타 영업수익	65.55	75.64	79.47	54.59	67.45	91.44	86.41
영업비용	212.46	259.71	268.76	262.15	206.45	240.26	243.11
이자비용	139.76	167.88	155.75	140.94	115.74	111.42	105.05
수수료비용	3.26	4.32	4.85	4.36	3.54	2.38	2.32
기타영업비용	69.44	87.51	108.16	116.85	87.17	126.46	135.74
법인세 차감전 수익	56.24	57.81	52.21	26.67	26.85	26.68	25.64
당기순이익	37.66	36.21	28.48	14.46	18.47	2.25	19.09
ROA	1.13%	0.91%	0.63%	0.30%	0.34%	0.04%	0.29%
ROE	18.67%	16.74%	12.18%	6.20%	6.86%	0.73%	5.89%
대출/예금	66.38%	65.27%	67.61%	71.28%	71.94%	72.01%	69.65%
단순자기 자본비율	6.06%	5.44%	5.20%	4.82%	5.00%	4.89%	4.85%
자산총액/ 직원	0.070298	0.075626	0.095545	0.101699	0.115827	0.133313	0.116153
당기순이익/ 직원	0.000795	0.000688	0.000605	0.000304	0.000398	0.000048	0.000331

<부표 6> 중신(中信)실업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총액	864.9	1,086.7	1,258.19	1,336.08	1,573.44	2,346.36	3,003.96
자기자본	46.46	54.97	69.6	79.81	80.35	85.63	95.09
예금총액	337.07	540.36	692.78	790.5	938.17	1,289.24	1,847.47
대출총액	154.4	244.04	374.45	459.55	607.92	969.78	1,271.89
지점수	78				235	293	340
직원수	2,870	4,172	5,279	5,907	6,664	7,733	8,850
영업수익	62.27	89.27	72.61	62.22	68.67	85.18	103.19
이자수익	59.59	82.49	43.3	42.07	51.22	47.7	60.98
수수료수익	1.05	1.01	1.18	1.07	1.25	1.71	2.24
기타 영업수익	1.63	5.77	28.13	19.08	16.2	35.77	40.68
영업비용	52.19	73.46	64.11	52.3	57.28	66.42	82.79
이자비용	42.9	55.6	36.86	30.71	36.66	31.12	38.39
수수료비용	0.43	0.54	0.66	0.5	0.69	0.71	0.8
기타영업비용	8.86	17.32	26.59	21.09	19.93	34.59	43.6
법인세 차감전 수익	10.09	15.82	20	20.01	11.39	14.52	15.73
당기순이익	6.77	10.64	13.71	14.19	7.6	9.24	9.45
ROA	0.78%	0.98%	1.09%	1.06%	0.48%	0.39%	0.31%
ROE	5.37%	5.06%	5.53%	5.97%	5.11%	3.65%	3.17%
대출/예금	45.81%	45.16%	54.05%	58.13%	64.80%	75.22%	68.84%
단순자기 자본비율	5.37%	5.06%	5.53%	5.97%	5.11%	3.65%	3.17%
자산총액/ 직원	0.301359	0.260475	0.238339	0.226186	0.236110	0.303422	0.339431
당기순이익/ 직원	0.002359	0.002550	0.002597	0.002402	0.001140	0.001195	0.001068

<부표 7> 광대(光大)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총액	282.63	470.54	609.2	747.3	1,678.93	2,041.96	2,654.05
자기자본	15.26	21.89	55.84	60.79	92.35	126.02	125.35
예금총액	133.83	248.76	300.69	411.58	565.58	1,307.3	1,804.94
대출총액	66.35	159.89	235.27	296.97	366.84	886.81	1,357.58
지점수	13	-	-	-	32	32	31
직원수	1,594	-	-	2,669	5,334	6,456	7,249
영업수익	26.3	40.42	48.73	47.39	60.57	78.49	92.34
이자수익	12.04	18.49	28.21	32.33	40.65	50.39	57.38
수수료수익	0.73	0.77	0.75	0.58	0.82	1.3	2.12
기타 영업수익	13.53	21.16	19.77	14.48	19.1	26.8	33.84
영업비용	20.98	30.16	29.88	31.23	50.15	67.09	80.07
이자비용	9.52	14.35	15.38	14.91	23.15	28.1	32.21
수수료비용	0.15	0.2	0.27	0.2	0.27	0.48	0.48
기타영업비용	11.31	15.61	14.23	16.12	26.73	38.51	47.38
법인세 차감전 수익	4.51	8.9	16.18	13.01	6.77	7	4.15
당기순이익	3.05	7.03	11.02	8.78	6.77	6	1.76
ROA	1.08%	1.49%	1.81%	1.17%	0.40%	0.29%	0.07%
ROE	19.99%	32.12%	19.73%	14.44%	7.33%	4.76%	1.40%
대출/예금	49.58%	64.27%	78.24%	72.15%	64.86%	67.84%	75.21%
단순자기 자본비율	5.40%	4.65%	9.17%	8.13%	5.50%	6.17%	4.72%
자산총액/ 직원	0.177309	-	-	0.279993	0.314760	0.316289	0.366126
당기순이익/ 직원	0.001913	-	-	0.003290	0.001269	0.000929	0.000243

<부표 8> 화하(華廈)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총액	122.59	226.52	401.32	498.69	611.31	951.07	1,366.38
자기자본	11	29.32	30.05	30.8	31.8	33.96	38.91
예금총액	55.57	140.7	239.2	339.33	442.12	711.76	1,013.75
대출총액	39.79	83.47	125.44	201.43	267.58	463.26	616.41
지점수	13	-	-	-	32	32	31
직원수	1,594	-	-	2,669	5,334	6,456	7,249
영업수익	6.72	12.09	20.95	26.16	33.24	33.47	45.61
이자수익	4.92	7.89	11.64	15.28	18.4	27.54	36.53
수수료수익	0.12	0.23	0.23	0.21	0.36	0.84	1.39
기타 영업수익	1.68	4.78	9.08	10.67	14.48	5.09	7.69
영업비용	4.57	8.59	16.08	21.98	29.31	26.74	38.08
이자비용	2.66	5.18	7.98	8.67	8.7	9.58	14.66
수수료비용	0.09	0.1	0.09	0.13	0.1	0.2	0.2
기타영업비용	1.82	3.31	8.01	13.18	20.51	16.96	23.22
법인세 차감전 수익	1.99	4.14	5.29	4.93	5.12	7.55	9.22
당기순이익	-	-	-	-	-	-	-
ROA	1.62%	1.83%	1.32%	0.99%	0.84%	0.79%	0.67%
ROE	18.09%	14.12%	17.60%	16.01%	16.10%	22.23%	23.70%
대출/예금	71.60%	59.32%	52.44%	59.36%	60.52%	65.09%	60.80%
단순자기 자본비율	8.97%	12.94%	7.49%	6.18%	5.20%	3.57%	2.85%
자산총액/ 직원	0.076907	-	-	0.186845	0.114606	0.147316	0.188492
세전수익/ 직원	0.001248	-	-	0.001847	0.000960	0.001169	0.001272

<부표 9> 민생(民生)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억 위안,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총액	85.94	183.4	252.35	363.08	680.58	1,366.38
자기자본	14.01	16	16.55	14.78	59.96	38.91
예금총액	35.92	123.48	160.79	260.79	527.15	1,039.82
대출총액	19.68	50.35	98.84	150.25	375.94	735.64
지점수				47	74	105
직원수	364	870	1,253	1,948	2,124	3,094
영업수익	2.89	8.28	11.2	16.24	27.1	51.31
이자수익	1.15	3.26	6.84	9.07	16.16	32.06
수수료수익	0.01	0.04	0.15	0.18	0.49	0.7
기타 영업수익	1.73	4.98	4.21	6.99	10.45	18.34
영업비용	3.82	7.28	11.47	12.95	22.31	40.12
이자비용	1.07	2.66	4.22	4.49	6.93	13.91
수수료비용	0.01	0.05	0.02	0.05	0.27	0.21
기타영업비용	2.74	4.57	7.23	8.41	15.11	26
법인세 차감전 수익	1.17	3.87	2.45	2.45	3.69	9
당기순이익	-	-	-	2	2.38	6.46
ROA	0.00%	0.00%	0.00%	0.55%	0.35%	0.47%
ROE	0.00%	0.00%	0.00%	13.53%	3.97%	16.60%
대출/예금	54.79%	40.78%	61.47%	57.61%	71.32%	70.75%
단순자기 자본비율	16.30%	8.72%	6.56%	4.07%	8.81%	2.85%
자산총액/ 직원	0.236099	0.210805	0.201397	0.186386	0.320424	0.441622
당기순이익/ 직원	0.000000	0.000000	0.000000	0.001027	0.001121	0.002088

<부표 10> 초상(招商)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총액	648	925.77	1,190.05	1,380.8	1,624.8	2,195.08	2,663.17
자기자본	45.31	56.96	72.57	82.32	99.5	36.85	51.16
예금총액	357.38	520.96	500.05	673.28	904.73	1,277.9	1,801.3
대출총액	285.17	414.01	366.86	493.73	618.58	850.99	1,178.16
지점수	-	-	-	-	191	249	293
직원수	-	-	-	-	8,721	11,077	12,922
영업수익	48.99	67.59	83.31	73.48	67.14	74.96	104.92
이자수익	-	-	57.4	58.22	54.62	55.25	64.83
수수료수익	-	-	3.37	1.76	2.03	3.65	4.07
기타 영업수익	-	-	22.54	13.5	10.49	16.06	36.02
영업비용	31.01	45.74	56.04	59.99	62.81	70.09	79.06
이자비용	-	-	30.65	31.74	27.69	29.92	33.78
수수료비용	-	-	0.69	0.45	0.59	1	1.18
기타영업비용	-	-	24.7	27.8	34.53	39.17	44.1
법인세 차감전 수익	17.51	24.23	28.71	20.01	12.7	16.75	21.1
당기순이익	11.49	16.39	21.3	14	7.97	11.16	14.31
ROA	1.77%	1.77%	1.79%	1.01%	0.49%	0.51%	0.54%
ROE	25.36%	28.77%	29.35%	17.01%	8.01%	30.28%	27.97%
대출/예금	79.79%	79.47%	73.36%	73.33%	68.37%	66.59%	65.41%
단순자기 자본비율	6.99%	6.15%	6.10%	5.96%	6.12%	1.68%	1.92%
자산총액/ 직원	-	-	-	-	0.186309	0.198166	0.206096
당기순이익/ 직원	-	-	-	-	0.000914	0.001007	0.001107

<부표 11> 광동발전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총액	547.21	758.38	890	1,069.25	1,208.38	1,489.39	1,388.98
자기자본	33.46	25.9	36.93	44.96	44.27	47.34	54.25
예금총액	298.01	361.98	475.51	614.79	698.13	981.42	1,388.74
대출총액	220.17	266.07	310.67	413.28	500.93	632.62	921.13
지점수	-	-	-	-	516	541	560
직원수	-	-	-	-	10,707	10,352	11,009
영업수익	46.46	57.76	63.07	59.12	57.03	61.23	69.13
이자수익	38.57	48.11	51.88	49.94	33.22	36.65	46.55
수수료수익	-	-	-	-	-	-	-
기타 영업수익	-	-	-	-	-	3.53	4.02
영업비용	40.17	53.72	61	56.41	50.81	54.2	61.2
이자비용	27.92	37.82	37.73	32.05	18.25	23.25	23.98
수수료비용	-	-	-	-	-	-	-
기타영업비용	-	-	-	-	-	2.07	3.07
법인세 차감전 수익	6.29	4.05	2.28	2.7	3.17	3.58	4.25
당기순이익	4.18	1.69	2.24	2.2	2.73	2.43	2.75
ROA	0.76%	0.22%	0.25%	0.21%	0.23%	0.16%	0.20%
ROE	12.49%	6.53%	6.07%	4.89%	6.17%	5.13%	5.07%
대출/예금	73.88%	73.50%	65.33%	67.22%	71.75%	64.46%	66.33%
단순자기 자본비율	6.11%	3.42%	4.15%	4.20%	3.66%	3.18%	3.91%
자산총액/ 직원	-	-	-	-	0.112859	0.143875	0.126168
당기순이익/ 직원	-	-	-	-	0.000255	0.000235	0.000250

<부표 12> 심천발전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총액	203.12	300.22	312.99	394	439.12	600.06	1,201.27
자기자본	19.55	25.35	29.12	36.77	11.42	35.18	36.28
예금총액	107.43	164.08	182.07	249.5	308.8	445.66	789.37
대출총액	76.87	102.83	128.74	177.91	210.93	333.47	489.65
지점수	-	-	-	-	126	163	172
직원수	-	-	-	-	3,724	4,533	5,089
영업수익	21.05	26.1	27.95	28.03	22.03	27.89	43.29
이자수익	13.28	17.74	19.53	21.74	16.29	20.52	31.95
수수료수익	0.27	1.05	0.4	0.3	0.24	0.49	0.8
기타 영업수익	7.5	7.31	8.02	5.99	5.5	6.88	10.54
영업비용	15.34	16.9	19.31	19.24	17.66	20.53	35.05
이자비용	7.39	10.18	11.01	9.08	7.43	7.71	13.07
수수료비용	0.07	0.12	0.12	0.12	0.07	0.1	0.17
기타영업비용	7.88	6.6	8.18	10.04	10.16	12.72	21.81
법인세 차감전 수익	5.07	9.19	10.02	8.57	2.75	5.47	5.59
당기순이익	4.35	7.87	8.62	7.64	2.24	5.07	4.02
ROA	2.14%	2.62%	2.75%	1.94%	0.51%	0.84%	0.33%
ROE	22.25%	31.05%	29.60%	20.78%	19.61%	14.41%	11.08%
대출/예금	71.55%	62.67%	70.71%	71.31%	68.31%	74.83%	62.03%
단순자기 자본비율	9.62%	8.44%	9.30%	9.33%	2.60%	5.86%	3.02%
자산총액/ 직원	-	-	-	-	0.117916	0.132376	0.236052
당기순이익/ 직원	-	-	-	-	0.000602	0.001118	0.000790

<부표 13> 북건흥업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총액	1,196.94	243.61	290.57	355.78	491.83	856.13	1,248.41
자기자본	13.59	18.62	33.91	35.29	35.54	53.86	58.68
예금총액	138.65	168.84	170.32	224.21	286.12	471.41	793.79
대출총액	102.51	116.7	121.67	150.35	209.98	331.04	719.04
지점수	-	-	-	-	235	246	255
직원수	-	-	-	-	4,660	5,105	5,815
영업수익	19	30.92	37	30.8	17.04	29.56	45.81
이자수익	10.43	13.18	14.22	13.31	13.34	18.22	28.24
수수료수익	0.58	2.06	2.59	1.7	0.21	0.66	0.65
기타 영업수익	7.99	15.68	20.19	15.79	3.49	10.68	16.92
영업비용	16.86	28.21	31.75	26.93	16.53	23.62	36.3
이자비용	5	8.24	10.09	9.32	7.2	9.69	14.82
수수료비용	0.1	0.18	0.17	0.13	0.06	0.08	0.13
기타영업비용	11.76	19.79	21.49	17.48	9.27	13.85	21.35
법인세 차감전 수익	2.14	2.71	5.76	5.5	4.38	4.64	7.25
당기순이익	-	-	3.46	3.71	3.13	3.2	4.82
ROA	0.00%	0.00%	1.19%	1.04%	0.64%	0.37%	0.39%
ROE	0.00%	0.00%	10.20%	10.51%	8.81%	5.94%	8.21%
대출/예금	73.93%	69.12%	71.44%	67.06%	73.39%	70.22%	90.58%
단순자기 자본비율	1.14%	7.64%	11.67%	9.92%	7.23%	6.29%	4.70%
자산총액/ 직원	-	-	-	-	0.105543	0.167704	0.214688
당기순이익/ 직원	-	-	-	-	0.000672	0.000627	0.000829

<부표 14> 상해포동발전은행 자산 및 경영 현황

(단위: 억 위안,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총액	435.69	649.69	816.4	873.38	1016.43	1,297.41	1,736.91
자기자본	16.03	22.1	33.34	31.72	64.87	70.67	64.87
예금총액	228.27	371.81	522.5	632.71	722.65	939.5	1361
대출총액	154.81	231.22	341.78	415.58	479.85	666.53	882
지점수	-	-	-	-	158	194	240
직원수	-	-	-	-	4,149	4,680	5,743
영업수익	32.01	51.68	53.28	47.93	49.46	57.1	71.85
이자수익	30.77	48.87	33.54	32.91	30.04	35.02	47.84
수수료수익	-	-	1.06	0.73	0.97	1.04	1.58
기타 영업수익	-	-	18.68	14.29	18.45	21.04	22.43
영업비용	25.05	40.75	44.16	40.61	38.01	43.99	53.9
이자비용	20.15	32.59	25.86	20.87	18.33	18.52	25.16
수수료비용	-	-	0.4	0.38	0.51	0.48	0.53
기타영업비용	-	-	-	19.36	19.17	24.99	28.21
법인세 차감전 수익	7	12.5	9.9	11.6	8.82	9.91	14.41
당기 순이익	4.74	8.82	6.45	8.59	7.29	7.97	10.62
ROA	1.09%	1.36%	0.79%	0.98%	0.72%	0.61%	0.61%
ROE	29.57%	39.91%	19.35%	27.08%	11.24%	11.28%	16.37%
대출/예금	67.82%	62.19%	65.41%	65.68%	66.40%	70.95%	64.81%
단순자기 자본비율	3.68%	3.40%	4.08%	3.63%	6.38%	5.45%	3.73%
자산총액/ 직원	-	-	-	-	0.244982	0.277224	0.302439
당기순이익/ 직원	-	-	-	-	0.001757	0.001703	0.001849

Executive Summary

The Issues and Strategies for Financial Service Sector in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June-Dong Kim *et al.*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general position of Korea in financial service sector for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also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rais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for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y henceforth. In order to decide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FTA negotiation in financial service sector, research not only ab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ervice in three countries but also about institutional restrictions on foreign financial companies and current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should be preceded. Fundamental investigations over the financial service industry of each country such as banking, securities, insurance and investment-trust were performed. Based on this, competitive power of prominent financial service institutions in three countries is estimated and comparison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other world dominant institutions is studied as well. The results provided analysis of main negotiation agenda for FTA of three countries and introduced some policy suggestions that could be developed into negotiation agenda hereafter.

The Korean financial service market has changed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however, economies of scale and economies of scope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are still not prevalent in general. In case of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the size of financial companies is absolutely small in comparison with world dominant institutions and realization of economy of scale as well as economies of scope is low. Meanwhile, the profitability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is low as well. Although the profitability of banking sector is getting better recently, that of securities and insurance industry is still suffer from lower profitability. Due to these problems,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 tendency to attach only on stable investment in terms of asset management and operation style of bank and stock industry. To rai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ctive financial market opening to international investors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re required. Introduction of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to domestic market should be understood in the aspect of making domestic financial industry competitive. In other words, provision of various services by foreign institutions should be succeeded to effective development of domestic financial industry. From this perspective, foreign institutions in domestic market should be induced to positively influence on advanced development of domestic regulations and improvement of financial infrastructure. In addition, while the effect of foreign institutions in domestic market is maximized, gradual advance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into international market should be considered. Basically it requires growth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stitutions and most of all improvement of restrictions on capital transaction and effective supervision system should be preceded

In Japan, indirect finance, which moves via financial intermediating agency centering of banking sector, continued to attain superiority. According to fund flow table from Bank of Japan, loan takes a large portion among financing balances of domestic non-financial sector. Recently credit crunch has caused

by increase of insolvent oblig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due to collapse of bubble. Japanese financial institutions especially banks have experienced deteriorated balance sheet since 1990s and it appeared as decrease of capital adequacy ratio. Japanese financial institutions try to avoid risks to maintain its capital adequacy ratio and it resulted in credit crunch. As a result, the whole financial system of Japan has not been effectively functioning. As a result, Japan premium is required for Japanese financial institutions related to fund-raising. Separately from the problem of dysfunction, Japanese domestic issuers have used Eurocurrency market not Tokyo financial market.

Chinese financial industry has experienced a sharp growth, which excels the growth of real sector since the opening of market. However, during the expansion process of production, improvement of management efficiency and healthiness in financial industry was not accompanied. While prevalent inefficiency problem in the whole financial industry was unsolved, the market opening due to joining in WTO was perceived as a great shock and workout has been accelerated for recent a few years.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for next several years and efficiency of financial industry would be improved partially. In case of banking sector, the four government-owned banks still maintain the monopoly power although profitability of them is very low in comparison to private banks. Enormous amount of accumulated insolvent loans is recognized as a very urgent problem in bank sector.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owned banks, management of insolvent loans through creation of four asset management corporations, transferring into corporation system and listing in stock market are actively promoted. The monopolistic competition is maintained in insurance industry as well and negative spread of interest rate has obstructed general profitability in insurance industry since mid 1990s, which was caused by low interest and

excessive competition with new private insurance companies. In securities industry, several companies are suffering from net loss because of expedient management that is prevalent in the industry and stagnation of stock market since 1999. Chinese government decides to choose a limited and gradual opening policy through QFII under the situation that stock companies are lack of competitiveness while the market needs inflow of foreign investment. In case of investment-trust industry, extensive restructuring has started since the late 1990s due to the bankruptcy of Gwang-dong investment trust. The Trust Act was declared in 2001 re-examination, operation permission and registration has been performed based on this act since 2002. Thus, it requires some time to make an exact evaluation over newly operating investment-trust companies.

As the result of estimating competitiveness in financial service sector of Korea, China and Japan, Japan is distinguished in every categories, the next is Korea and then, China. However, up to date, cross-border transaction of financial goods among three countries is very inactive and it is mainly caused by absence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expected that this problems will not be easily improved even when more active opening in financial sector is admitted discriminatively.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have a sharp increase of active market access of financial service institutions although market opening is admitted mutually or tripartitely among three countries. It seems to be more reasonable with recognizing the fact that financial service institutions of three countries are operating strictly in domestic market and having domestic market base in asset management.

Consequently, it is hard to get a short-term result in active cross-border transactions in financial service industry among three countries. Then, what can we expect to get from the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 among three

countries? The negotiation should in process under the principles of followings in order to expand functions of financial service in each country, to motivate financial globalization and to uplif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mutually.

The principles are; firstly, the negoti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 activation that can formulate basic frame of regional trade agreement. However, smooth transnational transactions are needed for more trade and investment activities. Secondly, the negotiation should be examined to rai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nancial industry and financial service. Thirdly, the negotiation should be studied whether it can contribute not only for financial service transactions but also for transnational transactions of financial goods and financial service market through linkage of capital market among member countries. It must be able to accelerate market integration. Therefore, various measures can be considered such as linkage and unification of capital market for market integration, harmoniza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and cooperation in building effective market infrastructure. To accomplish this, establishment of committees in each sector in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 providing thorough investigation and analysis over three countries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ervice Action Plan for actual operation of each measure by the financial service committe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KIEP 발간자료 목록 (1997~2003. 12)

■ 정책연구

- | | |
|---|--|
| <p>97-01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 王允鍾</p> <p>97-0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 王允鍾 編著</p> <p>97-03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礙要因과 促進方案
/ 金準東</p> <p>97-04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 / 崔秀雄</p> <p>97-05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立法現況과 示
唆點 / 金鍾範</p> <p>97-06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
/ 李鍾華·李晟鳳</p> <p>97-07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方案
/ 王允鍾·羅秀燁</p> <p>97-08 中國經濟의 浮上和 韓國의 對應 / 李昌在 外</p> <p>97-09 東아시아 貿易·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
/ 金南斗 外</p> <p>97-10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 趙明哲</p> <p>97-11 韓·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策課題 / 鄭余泉</p> <p>97-12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의 對應課題
/ 金元鎬 外</p> <p>97-13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 / 金寬濬 外</p> <p>97-14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와 改善方案
/ 趙顯竣</p> <p>98-01 IMF體制下의 韓國經濟(1997.12~1998.6): 綜合深
層報告□□ / 張亨壽·王允鍾</p> <p>98-02 中國 金融改革의 現況과 과제 / 李章揆 外</p> <p>98-03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役割
/ 王允鍾·金琮根</p> | <p>98-04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에 관
한 탐색연구 / 權泰亨 外</p> <p>98-05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 成克濟</p> <p>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 / 王允鍾 編</p> <p>98-07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柳在元·李弘求</p> <p>98-08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 李昌在 外</p> <p>98-09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투자인센티브 / 李晟鳳·李炯根</p> <p>98-10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自由地域 / 李晟鳳 外</p> <p>98-11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
안을 중심으로 / 張亨壽·李昌在·朴映坤</p> <p>98-12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 / 崔秀雄</p> <p>98-13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現況, 問題點 및 展開方
向 / 徐錫興</p> <p>98-14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 Byung-il Choi · Eun Mee Kim</p> <p>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
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
/ 張亨壽·元容杰</p> <p>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 鄭仁教</p> <p>98-17 최근 國際投資 紛爭事例의 研究 / 金寬濬·李性美</p> <p>98-18 通商關聯 電子商去來 論議動向과 示唆點
/ 尹昌仁</p> <p>98-19 中·東歐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現況과 전망
/ 鄭余泉·崔秉熙·韓貞澈</p> <p>98-20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 趙明哲·洪翼杓</p> |
|---|--|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 98-21 중국 항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 全載旭·崔義炫
- 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 曹琮和 編
- 99-02 韓·브라질 21世紀 協力 비전과 課題 / 金元鎬 編
-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 金博洙·王允鍾·申東和·李炯根
-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 王允鍾·鄭在完·金琮根·李鴻培
-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 / 曹琮和 編
-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 (IAPs)평가 / 安炯徒 編著
-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1 동북아 경제협력: 총괄편 / 李昌在
-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2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 鄭仁敎 外
- 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金益洙
- 99-10 東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 崔秀雄
- 99-11 IMF體制下的 韓國經濟 II(1998.7~1999.12): 綜合深層報告2 / 黃祥仁·王允鍾·李晟鳳
-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3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 李晟鳳 外
-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4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 王允鍾 外
-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 崔洛均·蔡旭·金準東·宋有哲·尹美京·徐暢培
-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 / 金準東·姜仁洙
-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 鄭余泉
- 00-04 WTO 뉴라운드 工產品協商的 시나리오별 實證分析和 韓國의 協商戰略 / 崔洛均·李明憲·朱文培
-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 金準東·李長榮·李漢煥·金龍奎·崔重熹·許琮·李障源
-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 宋有哲·朴芝賢·李載玉·魚明根·任廷彬
-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の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 鄭仁敎·李景姬
-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 金準東·蔡旭·梁俊哲
-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 趙明哲·權栗·李哲元·金恩志
-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주요쟁점연구 / 金世植·楊斗鏞·王允鍾·黃祥仁
-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 / 尹昌仁 外
-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 / 趙明哲·洪翼杓
- 00-13 WTO 뉴라운드協商的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 / 蔡旭·崔洛均
- 00-14 선진국 주요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 尹昌仁·韓宅煥·庾相喜
-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 李鍾華
- 00-16 農産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 宋有哲·朴芝賢
-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 南相烈
-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敎
-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 黃祥仁·金寅培·辛仁錫
- 01-04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敎
-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 金尙謙·朴仁元
-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대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 曹琮和·金于珍
-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 梁俊哲·金鴻律
-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 尹德龍·朴淳讚
-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李鍾華·朴淳讚
-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 宋有哲 外
-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 外
-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 시사점 / 崔洛均 外
-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의 시사점 / 尹昌仁 外
-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 蔡 旭·徐暢培
- 02-01 DDA 총점검-2002 / 崔洛均 外
- 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 宋有哲·朴芝賢·李載玉·林頌洙
- 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범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高俊誠·具文謨·朴淳讚
- 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 崔洛均·鄭在皓
- 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 姜文盛·魯在峯·李鍾華
- 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 尹美京·崔允僖
- 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 南相烈·權 栗
- 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 崔洛均·朴淳讚
- 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 姜三模·王允鍾
- 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姜文盛·羅秀樺
- 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 尹德龍·鄭在植·曹琮和
- 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李彰洙
- 02-13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 金良姬·趙炳澤
- 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 池晚洙
- 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 權 栗·金玆慶
- 02-16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과 활용전략 / 趙顯坡
- 02-17 1990년대 이후 韓·美간 무역구조의 변화 / 梁俊哲·金鴻律
-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 尹德龍·鄭衡坤·南英淑
-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 金興鍾
-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李昌在
- 02-21 韓·中·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 洪裕洙
-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 金鴻律
-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 白權鎬 外
-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 朴大權·楊斗鏞·吳奎澤·金恩京
- 02-25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국제산업연관도넬에 의한 실증연구 / 李鴻培
- 02-26 북한경제백서 / 趙明哲 外
- 03-0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 申寬浩·王允鍾·李鍾和
- 03-02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 姜三模·朱尙榮
- 03-03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 洪裕洙·李彰洙·姜丁實
- 03-04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 安炯徒 外
- 03-05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략 / 池晚洙·李 榮
- 03-06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 洪裕洙·池晚洙·韓正和
- 03-07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 鄭仁教·吳東胤
- 03-08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 權 栗·鄭仁教·朴仁元
- 03-09 일본의 통상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 李鴻培·金良姬·金恩志·程 勳
- 03-10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曹琮和·李炯根
- 03-1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 姜文盛·金元鎬·朴淳讚·全鍾奎·權奇洙·金眞梧·羅秀樺
- 03-1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 安炯徒·尹德龍
- 03-13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 경제개혁의 전망 / 趙明哲 外
- 03-14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 사회의 역할 / 趙明哲 外
- 03-15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 경제협에 주는 시사점 / 趙明哲
- 03-16 DDA 중간점검 - 2003 / 崔洛均 外
- 03-17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 宋有哲 外
- 03-18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 金準東·鄭永虎·崔秉浩·安德宜
- 03-19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崔洛均·鄭在皓
- 03-20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 姜文盛·朴淳讚·李彰洙
- 03-21 WTO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 尹美京
- 03-2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 金準東·金鍾一·姜俊求
- 03-2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鄭仁教 外
- 03-24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 姜文盛·朴淳讚·宋有哲·尹美京·李根
- 03-25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 楊斗鏞 外
- 03-26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 申寬浩·楊斗鏞·王允鍾·李鍾和
- 03-27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2003년 연구의 주요 결과 / 鄭仁教 外

■ 지역연구

- 03-01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로코를 중심으로 / 金興鍾·金良姬·朴英鎬
- 03-02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 金興鍾·李哲元·朴映坤·朴慶錫
- 03-03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

李章揆·趙顯竣·吳東胤

- 03-04 메콩강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鄭在完·權耿德

■ 조사분석

- 97-01 韓國企業의 對中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 朴相守
- 97-02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 / 鄭在完
- 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 鄭在完
- 97-04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現況 / 李哲元
- 97-05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 徐承源
- 97-06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 鄭在完·權耿德
- 97-07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 李聖揆·崔秉熙
- 97-08 인도네시아의 金融産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 金完仲
- 97-09 中國의 에너지産業 現況과 韓國에 대한 示唆點 / 崔義炫
- 97-10 WTO 紛爭解決事例 研究: 日本의 酒稅에 관한 研究 / 蔡旭
- 97-11 WTO 紛爭解決事例 研究: 美國의 「취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 李鎬生
- 97-12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 / 權栗
- 97-13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 洪翼杓
- 97-14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 / 金琮根
- 97-15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 / 朴月羅
- 97-16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投資 制度 / 李炯根
- 98-01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 羅成變
- 98-02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 鄭仁教·李昌在 編著
- 98-03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 趙潤濟·金鍾燮
- 98-04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

/ 李永雨

98-0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 鄭聖哲 · 李明振

98-06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 朴成勳

98-07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과 對APEC 정책
/ 李載裕 · 李載榮

98-08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 朴泰鎬 · 文字植 · 白珍鉉

98-09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 孫正植 · 韓弘烈

98-10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 朴氣弘

98-11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 통상환경의 변화 / 李鍾華 外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 김애리

98-13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서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 蔡 旭

98-14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 蔡 旭 · 徐暢培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 金裕燦 · 李晟鳳

99-01 OECD연구시리즈 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李晟鳳 · 李炯根

99-02 주요 산업별 해외 M&A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 金琮根

00-01 透明性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 / 朴映坤 · 金于珍 · 羅秀燁

00-02 주요 이슈별 韓 · 美 通商懸案 政策課題
/ 梁俊哲 · 金鴻律

00-03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출범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 金元鎬 · 姜文盛 · 羅秀燁 · 金眞梧

00-04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 安炯徒 外

00-05 國際協力體 설립을 통한 北韓開發 지원방안
/ 張亨壽 · 朴映坤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 鄭在完

01-02 아프리카 市場特性 分析 및 韓國의 輸出擴大

方案 / 朴英鎬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e-Trade를 중심으로 / 孫讚鉉 · 尹眞那

01-04 WTO 농업협상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 宋有哲 · 朴芝賢

01-05 韓 · 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金良姬 · 金鍾杰

01-06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 鄭余泉

01-07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 權奇洙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 權 栗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 金眞梧

01-10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李哲元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 尹美京 · 李性美

01-12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 趙明哲

01-13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 洪翼杓

02-01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 姜文盛 · 羅秀燁

02-02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 방안 / 朴英鎬

02-03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 宋有哲

02-04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 李奎億 · 尹美京

02-05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덴마크 · 영국 · 스웨덴 ·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 朴映坤 · 尹錫明

■ Policy Analyses

00-01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Crisis
/ Tae-Joon Kim, Jai-Won Ryou, and Yunjong Wang

00-02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Chae-Shick Chung, Sangyoung Joo, and Doo Yong Yang

- 01-01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2-01 Currency Union in East Asia / Han Gwang Choo and Yunjong Wang
- 02-02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 Inkyo Cheong
- 02-03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Capital Flows in Korea: An Empirical Investigation / Sammo Kang,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2-04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 Chan-Hyun Sohn
- 03-01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Exchange Rat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Market Issues / Sung Yeung Kwack, Choong Yong Ahn, and Young-Sun Lee
- 03-02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 Nakgyoon Choi, Soon Chan Park, and Changsoo Lee

■ Policy Papers

- 97-01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 Inkyo Cheong
- 97-02 Regional Inte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 Honggue Lee and Jai-Won Ryou
- 97-03 Northeast Asia's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s: A Pragmatic Approach / Sang-Don Lee and Taek-Whan Han
- 98-01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 Chan-Hyun Sohn and Junsok Yang eds.
- 98-02 Adjustment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December 1997 - June 1998) / Yunjong Wang and Hyoungsoo Zang

■ 정책자료/Policy References

- 00-01 南北經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 趙明哲

- 00-02 제3차 ASEM 정상회의와 한국의 전략 / 李鍾華 · 李東輝 · 趙泓植
- 01-01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 孫讚鉉 編
- 01-02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주요산업별 효과분석 / 孫讚鉉 · 尹眞那
- 01-03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 孫讚鉉 編
- 01-04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2001년 경제동향 / 姜文盛 · 羅秀禔
- 01-05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 / 李晟鳳 · 沈相烈 · 王重植
- 01-06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 李鍾華
- 03-01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과제 / 李晟鳳 · 金寬濼 · 金仁夙

■ 행사결과보고/Conference Proceedings

- 97-01 Internat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 / Young-Rok Cheong ed.
- 97-02 제5차APEC頂上會議의 意義와 對策— APEC연구컨소시엄 라운드테이블 / 安炯徒 編
- 97-03 21세기 韓 · 中經濟의 비전과 同伴者關係의 모색—韓 · 中修交 5주년 세미나 / 鄭永錄 編
- 97-04 러시아의 外國人 投資環境과 韓 · 러關係 / 李昌在 · 金秉熙 編
- 97-05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 Bak-Soo Kim ed.
- 98-01 新政府의 輸出支援戰略과 通商政策課題: GATT/WTO 체제 50주년기념 정책세미나 / 孫讚鉉 編
- 98-02 Korea and Central America: Toward a New Partnership in Changing / Won-Ho Kim ed.
- 98-03 Korean Economic Restructuring: Evaluation and Prospects / Mikyung Yun ed.
- 98-04 21세기를 향한 韓 · 中 · 日 經濟協力の 새로운 모색 / 李昌在 編
- 99-01 Exchange Rate Regim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 00-01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 王允鍾 編
- 00-02 Shared Prosperity and Harmony
/ Kyung Tae Lee ed.
- 00-03 The Seoul 2000 Summit: The Way Ahead for the Asia-Europe Partnership / Chong-Wha Lee ed.
- 00-04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 Il SaKong and Yunjong Wang eds.
- 00-05 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 Yunjong Wang and Hyong-Kun Lee eds.
- 01-01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Issues and Prospects
/ Yoon Hyung Kim and Yunjong Wang eds.
- 01-02 Korea's Five Years in the OECD: Finding a New Path / Hyungdo Ahn ed.
- 02-01 Korea's Road to a Sound and Advanced Economy / Hyong-Kun Lee ed.
- 02-02 중국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의 진출방안 / 朴月羅·崔義炫 編
- 02-03 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 / 趙明哲 編
- 03-01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 Young-Rok Cheong, Doo Yong Yang, and Wang Tongsan eds.
- 03-02 Financi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 Choong Yong Ahn, Takatoshi Ito, Masahiro Kawai, and Yung Chul Park eds.
- 03-03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 Heungchong Kim ed.
- 03-04 Structural Reforms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of the Northeast Asia / Chan-Hyun Sohn ed.
- 03-05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 Chang-Jae Lee ed.
- 03-06 China'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 Yunjong Wang ed.
- 00-01 Policies and Regional Cooperation / Kihoon Lee and Wankeun Oh
- 00-02 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 / Byung-il Choi
- 00-03 A Model Development for Measur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in the Asia-Pacific Region / Chulwon Kim
- 00-04 Investment Enviro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 Taeho Bark and Hwyo-Chang Moon
- 00-05 Measures for Promoting Knowledge-based Economies in the APEC Region / Yoo Soo Hong
- 00-06 Issues of the WTO New Round and APEC's Role
/ Sung-Hoon Park
- 00-07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 Sang-yirl Nam
- 02-01 Culture and Trade in the APEC - Case of film industry in Canada, Mexico and Korea
/ Byung-il Choi
- 02-02 Diffusion Factors of Electronic Trade for Trade Facilitation in the APEC Region: A Case of Korean Small Business
/ Yongkyun Chung and Yongwhan Park
- 02-03 Narrowing the Digital Gap in the APEC Region
/ Yoo Soo Hong
- 02-04 Implementing the Bogor Goals of APEC
/ Hongyul Han
- 03-01 Trade Structure and Complementarity among APEC Member Economies / Sang-yirl Nam

■ Discussion Papers

■ APEC Study Series

- 00-01 Review of APEC'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Focussing on Non-OECD Economies of APEC / Hyungdo Ahn, Junsok Yang, and Mikyung Yun
- 00-02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s in Ligh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 01-01 Korea's FTA (Free Trade Agreement) Policy:

- 00-01 An Analysis of CO2 Emission Structures of the APEC Economies: Implications for Mitigation

-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 01-02 An Appraisal of ASEM Economic Dialogues and Future Prospects / Chong Wha Lee
- 02-01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 Yunjong Wang and Deok Ryong Yoon
- 02-02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 Inkyo Cheong
- 02-03 Update on Korean Economic Reforms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conomic Competitiveness / Junsok Yang
- 02-04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 Yunjong Wang
- 02-05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 Sammo Kang and Yunjong Wang
- 02-06 Korea's Trade Policy Regi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 Nakgyoon Choi
- 02-07 Reform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China: Issues and Policies / Eui-Hyun Choi
- 02-08 Reverse Sequencing: Monetary Integration ahead of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2-09 Can East Asia Emulat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 02-10 Debt Resolution, Cross-Border M&As, Governance and Control in Korea's Post-Crisis Corporate Restructuring / Chan-Hyun Sohn
- 02-11 Liberalization Measures in the Process of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Trade, Investment and Capital Account Market Openings / Chan-Hyun Sohn, Junsok Yang and Seung Beom Kim
- 03-01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Recent Performance and Future Agenda / June-Dong Kim
- 03-02 The Need for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merging East Asian Economies / Jonghwa Cho
- 03-03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 Haesik Park and Yunjong Wang
- 03-04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a Roadmap to Cancun*

- / Chan-Hyun Sohn and Junsok Yang
- 03-05 Moving Forward on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Surveillance System and an Improved Financial Architecture for East Asia / Yunjong Wang and Wing Thye Woo

■ Working Papers

- 97-01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June-Dong Kim
- 97-02 APEC's Eco-Tech : Prospects and Issues / Jaebong Ro and Hyungdo Ahn
- 97-03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 논의와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 王允鍾·李晟鳳
- 97-04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alization / Inkyo Cheong
- 97-05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 李晟鳳
- 97-06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 Jong-Bum Kim
- 97-07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 Sang-In Hwang
- 97-08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CGE Model / Seung-Hee Han and Inkyo Cheong
- 97-09 IMF 救濟金融事例 研究 :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 事例를 중심으로 / 金元鎬 外
- 97-10 韓·EU 主要通商懸案과 對應方案 / 李鍾華
- 97-11 러시아 外國人投資 現況 및 制度的 與件 / 鄭鎔株
- 98-01 韓·日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 / 程 勳·李鴻培
- 98-02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 Mikyung Yun
- 98-0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美 投資協定の 意義와 展望 / 金寬濤
- 98-04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 / June-Dong Kim and Sang-In Hwang
- 98-05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1948-1998 Why the Era of Active Policy is Over / Chan-Hyun Sohn etc.
- 98-06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 Chong Wha LEE
- 98-07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1] 英國 / 申東和
- 98-08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2] 인도네시아 / 金完仲
- 98-09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3] 美國 / 朴英鎬
- 98-10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4] 中國 / 金琮根
- 98-11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5] 泰國 / 權耿德
- 98-12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 Hyungdo Ahn and Hong-Yul Han
- 98-13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 金準東 外
- 98-14 最近 國際金融環境變化와 國際金融市場動向 / 王允鍾 外
- 98-15 Technology-Related FDI Climate in Korea / Yoo Soo Hong
- 98-16 構造調整과 國家競爭力 / 洪裕洙
- 98-17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통관 절차 및 상품의 국경이동을 중심으로 / 孫讚鉉 · 任曉成
- 98-18 주요국의 투자자관계 관리사례 / 申東和
- 98-19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 尹美京 · 朴英鎬
- 99-01 改革推進 外國事例와 示唆點 / 金元鎬 外
- 99-02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 蔡旭 · 徐暢培
- 99-03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 Inkyo Cheong and Yunjong Wang
- 99-04 Korea's FTA Policy Consistent with APEC Goals / Inkyo Cheong
- 99-05 OECD연구시리즈[3]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 이행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 / 張權鎬
- 99-06 Restructuring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 Korean View / Yunjong Wang
- 99-07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 Myung-Chul Cho and Hyoungsoo Zang
- 99-08 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 / Hyungdo Ahn
- 99-09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and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Korea / June-Dong Kim
- 99-10 OECD연구시리즈[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姜聲嶺
- 99-11 Distressed Corporate Debts in Korea / Jae-Jung Kwon and Joo-Ha Nam
- 99-12 Capital Inflows and Monetary Policy in Asia before the Financial Crisis / Sung-Yeung Kwack
- 99-13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Implications for Global Efforts to Fight Corruption / Jong-Bum Kim
- 99-14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Need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 Yunjong Wang
- 99-15 Developing an ASEM Position toward the New WTO Round / Chong Wha LEE
- 99-16 OECD연구시리즈[4]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 權 栗
- 99-17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 王允鍾 · 申東和 · 李炯根
- 99-18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Membership Enlargement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Agenda Solutions for ASEM III / Simonetta Verdi
- 99-19 An Assessment of the APEC's Progress toward the Bogor Goals: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to Tariff Reductions / Honggue Lee
- 99-2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Trade Policy Options for APEC in the 21st Century / Sung-Hoon Park
- 99-21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 / Byung-il Choi
- 99-22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R&D and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APEC Economies: A Time Series Analysis

- / Sun G. Kim and Wankeun Oh
- 99-23 Ecotech and FEEEP in APEC / Ki-Kwan Yoon
- 99-24 OECD연구시리즈⑤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尹美京 · 金琮根 · 羅榮淑
- 99-25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a Feasible Approach
/ Inkyo Cheong
- 99-26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The
Realities and Prospects of Korea's Participation
/ Jae-Wan Cheong
- 99-27 OECD연구시리즈⑥ OECD 규제개혁 국별검토: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 梁俊哲 · 金鴻律
- 99-28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 Hyungdo Ahn
- 99-29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 張亨壽 · 朴映坤
- 99-30 How to Sequenc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Inseok Shin and Yunjong Wang
- 99-31 Searching for an Economic Agenda for the 3rd
ASEM Summit: Two Scenarios / Chong Wha LEE
- 99-32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Japanese
Enterprise Groups After the Economic Recession
of the 1990s: The Impact of Financial
Restructuring on the Keiretsu Structure
/ Yongsok Choi
- 99-33 Exchange Rate Policies in Korea: Has Exchange
Rate Volatility Increased After the Crisis? /
Yung Chul Park, Chae-Shick Chung, and Yunjong
Wang
- 99-34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Industry and its Relationship with Export Growth
/ Sang-yirl Nam
- 00-01 Issues in Korean Trade 1999: Trends, Disputes
& Trade Policy / Junsok Yang and Hong-Youl Kim
- 00-02 Competition and Complementarity in Northeast
Asian Trade: Korea's Perspective
/ Sang-yirl Nam
- 00-03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 Jong Bum Kim
- 00-04 East Asian-Latin American Economic Relations:
A Korean Perspective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 Won-Ho Kim
- 00-05 The Effects of NAFTA on Mexico's Economy and
Politics / Won-Ho Kim
- 00-06 Corporate Leverage, Bankruptcy, and Output
Adjustment in Post-Crisis East Asia
/ Se-Jik Kim and Mark R. Stone
- 00-07 Patent Protection and Strategic Trade Policy
/ Moonsung Kang
- 00-08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Case of Korea
/ Chae-Shick Chung and Doo Yong Yang
- 00-09 Patent Infringement and Strategic Trade Policies:
R&D and Export Subsidies / Moonsung Kang
- 00-10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 Jong-Il Kim and June-Dong Kim
- 00-11 Trade Policy Mix under the WTO: Protection of
TRIPS and R&D Subsidies / Moonsung Kang
- 00-12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Evaluation of Performances and Future Challenges
/ Seong-Bong Lee
- 00-13 The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 Sang In Hwang and In-Sok Shin
- 01-01 Does the Gravity Model Fit Korea's Trade
Patterns? Implications for Korea's FTA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Trade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 01-02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 Wook Chae and Hongyul Han
- 01-03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 Kyung Tae Lee and Inkyo Cheong
- 01-04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The Korean
Experience / Mikyung Yun and Sungmi Lee
- 01-05 Aggregate Shock, Capital Market Opening, and
Optimal Bailout / Se-Jik Kim and Ivailo Izvorski
- 02-01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2-02 A Framework for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 Michael Dooley, Rudi Dornbusch, and Yung Chul Park
- 02-03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 Chae-Shick Chung and Se-Jik Kim
- 02-04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 Seong-Bong Lee
- 02-05 Interdependent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Growth Effect of Geographical Agglomeration / Soon-chan Park
- 02-06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 Sammo Kang, Yunjong Wang, and Deok Ryong Yoon
- 02-07 Korea's FDI Outflows: Choice of Locations and Effect on Trade / Chang Soo Lee
- 02-08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Asian Countries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2-09 A Dynamic Analysis of a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bed Asia-Pacific Model / Warwick J. McKibbin, Jong-Wha Lee, and Inkyo Cheong
- 02-10 Bailout and Conglomeration / Se-Jik Kim
- 02-11 Exchange Rate Regimes and Monetary Independence in East Asia / Chang-Jin Kim and Jong-Wha Lee
- 02-12 Has Trade Intensity in ASEAN+3 Really Increased? - Evidence from a Gravity Analysis / Heungchong Kim
- 02-13 An 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Natural Trading Blocs in East Asia / Chang-Soo Lee and Soon-Chan Park
- 02-14 How FTAs Affect Income Levels of Member Countries: Converge or Diverge? / Chan-Hyun Sohn
- 02-15 Measuring Tariff Equivalents i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 Soon-Chan Park
- 02-16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 Chang-Soo Lee and Chang-Kyu Lee
- 02-17 How far has Regional Integration Deepened? - Evidence from Trade in Services / Soon-Chan Park
- 02-18 Changes in Industrial Interdependency between Japan and Korea since 1985 -A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 HongBae Lee
- 03-01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ast Asi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3-02 How to Mobilize the Asian Savings within the Region: Securitization and Credit Enhancement for the Development of East Asia's Bond Market / Gyutaeg Oh, Daekeun Park, Jaeha Park, and Doo Yong Yang
- 03-03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3-04 Dynamics of Open Economy Business Cycle Models: The Case of Korea / Hyungdo Ahn and Sunghyun H. Kim
- 03-05 The Effects of Capital Outflows from Neighboring Countries on a Home Country's Terms of Trade and Real Exchange Rate: The Case of East Asia / Sammo Kang
- 03-06 Fear of Inflation: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 Sammo Kang and Yunjong Wang
- 03-07 Macroeconomic Adjustments and the Real Economy In Korea and Malaysia Since 1997 / Zainal-Abidin Mahani,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3-08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 on Trade in the Korean and World Motor Vehicle Industry / Sang-yirl Nam and Junsok Yang
- 03-09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 Chang-Soo Lee
- 03-10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 Yung Chul Park, Wonho Song, and Yunjong Wang
- 03-11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 Kwanho

- Shin and Yunjong Wang
- 03-12 The Decision to Invest Abroad: The Case of Korean Multinationals / Hongshik Lee
- 03-13 Financial Integration and Consumption Risk Sharing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3-14 Intra-Industry Trade and Productivity Structure *Application of a Cournot-Ricardian Model* / E. Young Song and Chan-Hyun Sohn
- 03-15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mpirical Evalua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Programs / Choong Yong Ahn and Doo Yong Yang
- 03-16 Specialization and Geographical Concentration in East Asia: Trends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 Soon-Chan Park
- 03-17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 *A New Loo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Growth* / Chan-Hyun Sohn and Hongshik Lee

■ OECD 연구시리즈

- 00-01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규제개혁 / 梁俊哲 · 金鴻律
- 00-02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농업 / 宋有哲 · 朴芝賢
- 00-03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금융 · 자본시장 / 黃祥仁 · 李炯根
- 00-04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 尹昌仁
- 01-01 OECD 규제개혁 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 梁俊哲 · 金鴻律
- 01-02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OECD 국가들의 비교법적 고찰 / 張勝和
- 01-03 한국과 독일의 최근 세계개편에 대한 평가 / 金裕燦
- 01-04 프로스포츠와 競爭法: OECD국의 사례평가 및 시사점 / 金元俊

■ 동북아연구시리즈/CNAEC Research Series

- 03-01 Korea's FDI in China: Status and Perspectives

/ Yao Shumei

- 03-02 금융개발과 금융발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朱尙榮
- 03-0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결정요인 및 그 시사점 / 李鍾郁
- 03-04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 安桐徒

■ 지역리포트

-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 朴英鎬
-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 金恩志
-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 朴映坤
- 01-03 유럽경제통합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 鄭厚榮
-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 정책 / 朴映坤
-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 河由貞
-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 吳東胤 · 林泓修
- 02-02 일본 수입축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金恩志
-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 朴映坤
-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 河由貞
- 02-05 인도의 정보기술 산업 발전현황과 한 · 인도간 협력 방안 / 崔允壽
-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裴熿娟
-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 배경과 시사점 / 權耿德
- 02-08 동아시아의 산업내무역 증가 추이와 시사점 / 朴在旭
-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 현황과 평가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 李哲元
-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 崔義炫 · 趙錫軍 · 禹辰勳

- 03-03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 權耿德
- 03-04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 朴馥永
· 裴嬉娟

■ 지역연구회시리즈

-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 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 鄭銀淑
-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 吳勇錫
-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元容杰
-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 李榮洙·徐煥周
- 00-05 日·北 經濟協力の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 申志鎬
-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 朴濟勳
-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化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 蔡熙律
-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 張善德
-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 金正湜
-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 嚴久鎬
-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 楊平燮
-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の 評價와 向後課題 / 金讚浣
-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 金昌男·千寅鎬
-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 高在模·全載旭
-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 辛源龍
- 00-16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尹玄德
- 00-17 경제전환기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李殷九
-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 金泳世
-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朴繁洵

-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 李忠烈
- 01-04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 姜應善
-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 鄭基虎·李滿基
-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 沈義燮·李光勳
-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 尹澤東
- 01-08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朴明浩
- 01-09 NAFTA 이후 멕시코 산업정책 변화와 진출전략 / 鮮于鍵
- 01-10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 韓鍾萬·成源鏞
- 01-11 유럽연합(EU)의 중등유럽 확대 : 라켄 유럽이 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 李奎榮
- 01-12 中國의 地域經濟協力 認識과 東北亞 經濟統合 可能性 / 安錫教·許興鎬
-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 李忠彦
- 02-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 程 勳
- 02-03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金鍊鐵
- 02-04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cent Development / Chang Woon Nam
- 03-01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 吳明錫
- 03-02 대만기업의 對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 魏艾·范錦明·趙顯竣

金準東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現, E-mail: jdkim@kiep.go.kr)

著書 및 論文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공저, 2000)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공저, 2000) 외

金洪起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무역학 박사

한남대학교 경영학부 국제통상학과 교수(現, E-mail: hongkee@mail.hannam.ac.kr)

著書 및 論文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Asian Economies using Panel Cointeg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Vol. 23, 2004(발간예정))

「한국에서 불안정적 패널자료를 활용한 인적자본과 지역간 소득수렴화」(『한국경제의 분석』, 2003) 외

朴大權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Harvard 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現, E-mail: parkdk@hanyang.ac.kr)

著書 및 論文

「한국 외환위기의 자기실현성에 관한 실증연구」(2001)

“Measuring the Degree of Currency Misalignment Using Offshore Forward Rates”(*Journal of Asset Management*, 2002) 외

辛星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MIT 대학교 경영학 박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現, E-mail: shshin@hongik.ac.kr)

著書 및 論文

“Design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Corporate Bonds in Korea - Empirical Study on Corporate Bond Indentures in Korea” (Conference Proceedings, KDI conference on Corporate Governance, 공저, 2003)

“Optimal currency composition of equity: Minimizing volatility of equity vs. minimizing probability of default” (2000) 외

楊斗鏞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現, E-mail: yangdy@kiep.go.kr)
著書 및 論文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Korean Perspectives (공저, 2001)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공저, 2000) 외

吳奎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Yale 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채권연구원장(現, E-mail: gtoh@kfiri.go.kr)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現, E-mail: gtoh@cau.ac.kr)
著書 및 論文

“Power Industry Liberalization and Financing Strategies for Power Projects” (*Korea Economic Journal*, 공저, 2001)
“Interest Rate Forecasting with Diffusion Process in Korean Bond Markets” (*Economic Analysis*, 2001) 외

李準曄

중국 북경대학 경제학원 졸업
중국 북경대학 경제학원 경제학 박사
한남대학교 중국경제학부 부교수(現, E-mail: junyeop@mail.hannam.ac.kr)
著書 및 論文

「한·중·일 산업내무역구조 분석을 통한 동북아 국제 분업체계 연구」(『한국경제연구』, 2003)
「중국의 금융개혁과 경제성장」(『경제발전연구』, 2002) 외

李炯根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hklee@kiep.go.kr)
著書 및 論文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공저, 2003)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공저, 2002) 외

小川英治(Eiji Ogawa)

B.A., Commerce, Hitotsubashi University

Ph.D., Commerce, Hitotsubashi University

Professor of Hitotsubash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mmerce and Management

(現, E-mail: ogawa.eiji@srv.cc.hit-u.ac.jp)

著書 및 論文

International Finance (with Hideo Fujiwara and Toshiki Jinushi), Yuhikaku, 2001. (in Japanese)

“On the desirability of a regional basket currency arrangement” (with Takatoshi Ito,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Vol. 16, No. 3, 2002) 외

政策研究 03-25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2003년 12월 23일 인쇄

2003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인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대표 김규식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1195-7 94320

정가 12,000원

89-322-1072-1(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2천원		1만원
B	(월간)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02)3460-1179 FAX:02)3460-1144
 E-mail: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B)발간자료, 週報(인쇄물), 전문가풀 토의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Joint Research Series on FTA Issues 03-08

The Issues and Strategies for Financial Service Sector in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June-Dong Kim *et al.*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은 국내 금융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은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를 촉진하고, 나아가 각국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일 금융서비스 현황 및 각국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강조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시장통합을 위한 자본시장의 연계 및 통합, 규제의 harmonization, 그리고 시장 인프라의 협력 등 다양한 자본시장의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1179 FAX: 3460-1144



정가 12,000원